

2005년
증권제도동향

2006. 1

연구위원 정윤모

연구원 서의경

한국증권연구원

Korea Securities Research Institute

서 언

지난 2005년은 우리 증권시장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장한 한 해였다. KOSPI 지수와 KOSDAQ지수가 각각 1,300p, 700p를 넘어서면서 증권시장의 시가총액도 700조원을 돌파하는 등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하였다. 또한, 연금·기금의 투자 확대가 이루어지고 적립식 투자펀드가 활성화되면서 기관주도형의 간접투자 패턴이 정착되어 안정적인 장기성장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처럼 증권시장이 성장한 이면에는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기업의 실적개선이 기여했겠지만, 지난 1997년의 경제위기 이래로 지속되어온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기업구조조정 추진, 증권시장 및 증권산업에 있어서의 규제 완화 및 시장경쟁원리 확대와 같은 제도개선 노력이 뒷받침되었으리라 본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인 무한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동북아 금융허브의 구축을 국가적인 목표로 삼고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놓인 수많은 과제들을 해결해야만 할 것이다. 지금의 시기가 위기가 되느냐 기회가 되느냐는 이러한 과제들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본다. 현재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성을 쌓기 보다는 길을 닦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본시장 통합법의 제정 작업이나 외국기업의 국내증시 상장 추진과 같은 것은 우리 자본시장을 국제적인 금융시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길을 닦는 한 가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005년에 변경된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증권시장에 있어서는 적대적 M&A 증가에 대비하여 공정한 경영권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과도한 경영권 위협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개매수제도 및 주식대량보유 공시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주식워런트증권(ELW)의 상장기준·상장폐지기준·매매방법 등을 마련하였고, 코스닥시장 상장종목 중 30종목을 선별하여 스타지수선물거래 제도를 도입하였다. 기업의 상장유지부담 경감을 위하여 정보의 중요성이 낮은 일부 수시공시 의무사항을 축소·정비하였다.

증권산업분야에서는 증권회사 지배주주의 변경에 대해 금감위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 증권회사에 대하여 신탁업과 장외파생금융상품업무의 겸영을 허용하였다. 또한 금융회사의 업무위탁에 대해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 규제방식을 도입

하였다. 그리고 자산운용회사의 재무건정성 감독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자산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규제를 완화 개선하였다.

증권감독 측면에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및 과징금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증권회사에 대한 명령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리스크가 큰 금융회사 및 부문을 중심으로 검사자원을 배분하는 리스크 중심 검사(risk based examination)원칙을 천명하였다. 또한 증권선물거래소에서는 약식제재금 부과제도를 신설하고, 시장감시위원회 및 분쟁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발행기업에 대해서는 비공개 중소기업에 대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을 유예하고, 회계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방법을 확대하고 이사회 결의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기업구조조정에 있어서는 구조조정 추진 중인 증권회사에 대해 후순위채 만기요건을 완화하였고, 금융기관이 사모투자전문회사, SOC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특수목적 회사 등을 지배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본 보고서는 본문과 부록의 2원적 체제로 편성되었다. 먼저 본문에서는 증권제도의 변경사항을 증권시장·증권산업·증권감독·발행기업·기업구조조정 등 각 분야별로 분류하여 수록하였으며, 부록에서는 이들 내용을 법령·금융감독위원회규정·증권선물거래소규정·증권업협회규정·증권결제예탁원규정 등 각 규정별로 구분하여 수록하였다.

본 보고서는 한국증권연구원의 정윤모 연구위원과 서의경 연구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저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 그리고 원고 정리와 편집을 담당한 엄선란 연구조원에게도 감사드린다. 본 보고서가 우리 증권시장과 증권산업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

2006년 1월

한국증권연구원

원장 최도성

< 목 차 >

I. 증권시장	1
1. 주식시장	1
2. 채권시장	59
3. 파생금융상품시장	59
4. 증권예탁·결제	95
5. 기업공시	104
II. 증권산업	129
1. 증권회사	129
2. 자산운용회사	149
3. 선물회사	159
III. 증권감독	165
1. 법적규제기관	165
2. 자율규제기관	177
IV. 발행기업	194
1. 기업경영감시	194
2. 지원·관리제도	196

V. 기업구조조정	197
1. 일반기업	197
2. 금융기관	198
VI. 기타	201

< 부록 > 규정별 변경내용

I . 법령		219
1. 증권거래법		219
2. 증권거래법 시행령		222
3.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225
4.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226
5. 선물거래법		226
6. 선물거래법 시행령		227
7. 선물거래법 시행규칙		228
8.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229
9.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시행령		230
10. 신탁업법		231
11. 신탁업법 시행령		232
1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33
1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3
14. 금융지주회사법		234
15.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235
16.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6
17. 선박투자회사법		237
18.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239
19. 기금관리기본법		241
20.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43

21. 한국투자공사법	243
22.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245
2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47
2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247
25. 법인세법 시행령	248
26. 소득세법 시행령	249
27.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250

II. 금융감독위원회 규정 251

1.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51
2. 증권업 감독규정	254
3. 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263
4. 간접투자 자산운용업 감독규정	263
5. 간접투자 자산운용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267
6. 선물업 감독규정	270
7. 선물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272
8. 신탁업 감독규정	273
9. 증권·선물조사 업무규정	278
10.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281
11.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282
12.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87
13. 금융분쟁조정세칙	288
14. 증권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289

15. 금융기관 분담금징수 등에 관한 규정	290
16.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291
17. 은행업 감독규정	294
18. 퇴직연금 감독규정	295
19. 퇴직연금 감독규정 시행세칙	298

Ⅲ. 증권선물거래소 규정 300

1.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300
2.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07
3.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312
4.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317
5.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321
6.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325
7.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328
8.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32
9.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340
10.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351
11.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357
12.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364
13. 공정공시 운영기준	370
14. 선물시장 업무규정	370
15.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76
16.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388

17.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시행세칙	394
18. 선물시장 업무규정 위임사항 결정에 관한 기준	403
19. 시장감시규정	403
20. 시장감시	405
21. 분쟁조정규정 시행세칙	407
22. 회원관리규정	408
23. 회원관리규정 시행세칙	416
IV. 증권업협회 규정	417
1.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417
2.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419
3. 증권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칙	424
4. 증권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426
5.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정	427
V. 증권예탁결제원	430
1.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430
2.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432
3. 유가증권 명의개서대행 업무규정	433
4. 유가증권 명의개서대행 업무규정 시행세칙	434
5. 담보콜거래관리 업무규정	436
6. 외화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436
7. 장외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담보관리 업무규정	438

I. 증권시장

1. 주식시장

가. 발행시장

- 익명조합 등의 출자지분의 유가증권성 인정 (증권거래법 시행령 2조의3 1항 3호의5·8호 : 2005/3/28 개정, 3/29 시행)
 - 상법상 익명조합·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파생금융상품과 전통적 유가증권의 성격이 결합된 파생결합증권을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으로 인정함
 - 출자지분 등의 모집·매출시에 일정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도모

- 전환사채 등의 전환가액 산정기준 개선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61조 : 2005/12/29 개정, 2006/1/1 시행)
 -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일반공모방식 발행에 대하여 다음의 3개 시가 중 '높은 가액 이상'에서 '낮은 가액 이상'으로 변경
 - ① 1개월 평균종가·1주일 평균종가·최근일 종가의 산술평균, ② 최근일 종가, ③ 청약일 3거래일전의 종가

○ 관련법규의 변동에 따른 용어변경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

2005/1/26 개정, 1/27 시행)

- 협회중개시장 → 코스닥시장
- 협회등록법인 → 코스닥상장법인
- 한국증권거래소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 유가증권 상장규정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주권예비상장심사청구서 → 주권상장예비심사청구서
- 등록예비심사청구서 → 상장예비심사청구
- 협회등록공모 → 코스닥상장공모
- 비상장·비등록법인 공모 → 장외법인 공모

○ 기업공개시 고수익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폐지 (유가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9조 1항 2호·4호 : 2005/3/31 개정, 4/1 시행)

- 기업공개 또는 코스닥상장공모시 고수익 간접투자기구에 공모주식의 30%를 배정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배정후 잔여주식은 기관투자자 또는 고수익 간접투자기구에 배정

○ 주권상장법인의 공모증자시 잔여주식의 배정비율 변경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9조 2항 3호·4호 : 2005/3/31 개정, 4/1 시행)

-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공모증자시 잔여주식의 배정비율을 변경

- 고수의 간접투자기구에게 30%, 기타 청약자에게 70% 배정
→ 잔여주식을 고수의 간접투자기구 또는 기타청약자에게 배정

○ 대표주관계약의 체결시한 단축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3조 2항 : 2005/7/26 개정, 8/1 시행)

— 기업 자금조달의 적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는 시한을 단축

- 상장예비심사청구일 6월 이전 → 상장예비심사청구일 3월 이전

○ 주관회사의 자격제한 완화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6조 : 2005/7/26 개정, 8/1 시행)

— 증권회사가 소유하는 지분율이 1% 미만인 발행기업에 대해서는 IPO 주관업무의 수행을 허용

○ 초과배정옵션 제도개선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10조 : 2005/7/26 개정, 8/1 시행)

— 초과배정제도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 공모가의 95% 이상인 시장매입가격을 90% 이상으로 인하

나. 유통시장

- 주식 등의 공개매수제한 폐지 (증권거래법 23조 3항 : 2005/1/17 개정, 3/29 시행)
 - 공개매수광고일부터 과거 6월간 공개매수를 통하여 주식 등을 매수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한 공개매수제한을 폐지

- 공개매수기간 중 유가증권 발행 허용 (증권거래법 23조 4항 : 2005/1/17 개정, 3/29 시행)
 - 공개매수기간에도 주식 등의 발행인이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의결권에 변동을 초래하는 유가증권의 발행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

- 시세고정·안정행위의 원칙 금지, 예외 허용 명시 (증권거래법 188조의4 3항 : 2005/12/29 개정, 2006/3/30 시행)
 - 유가증권의 시세고정·안정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시장조성·안정조작의 개념, 주체 등을 규정함

- 호가중개시스템(제3시장) 관련규정의 정비 (증권업 감독규정 5-47조 : 2005/4/27 개정·시행)
 - 호가중개시스템의 운영주체가 증권업협회로 변경됨에 따라, 중개대상 유가증권의 지정·해제기준 등의 업무기준을 증권업협회가 정하여 금감위에 통보하도록 변경

- 증권업감독규정상 호가중개시스템의 지정·해제기준, 매매거래방법, 결제방법 등에 관한 규정 삭제
 - 증권거래법 시행령에서 금감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인의 재무상태 등을 공시하도록 함에 따라, 정기·수시공시사항 및 공시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증권회사의 부수업무 사전신고제 폐지 (증권업 감독규정 5-64조 : 2005/4/27 개정·시행)
- 증권회사의 경영자율성 제고를 위해 부수업무 개시 7일 전 금감위에 대한 사전신고의무를 폐지
 - 단, 부수업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감독차원에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므로, 부수업무 개시 또는 폐지 후 최초로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도록 업무보고서식을 보완
- 외국인의 장외거래 허용범위 확대 (증권업 감독규정 7-8조 : 2005/4/27 개정·시행)
- 장외거래의 부작용이 적고 거래내역에 대한 감시가 용이한 거래를 대상으로 장외거래의 허용범위를 확대함
 - 국내에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경쟁입찰방식을 통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 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로 인한 유가증권의 취득

○ 외국인의 공공적 법인 주식취득한도 초과취득사유 추가

(증권업 감독규정 7-6조 : 2005/4/27 개정 · 시행)

— 외국인이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 등의 행사로 인해 불가피하게 공공적 법인의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한도초과를 인정하는 초과취득사유를 확대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의한 일시적인 한도초과도 예외사유에 추가

○ 증권금융의 고객예탁금 운용대상을 확대 (증권업 감독규정 3-3조 : 2005/4/27 개정 · 시행)

— 고객예탁금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MMF의 건전성 제고 등 금융환경이 변화한 점을 감안하여 운용수단을 확대함

— MMF 운용한도를 콜론과 합산하여 20%에서 30%로 확대

- MMF가 편입자산의 신용등급 상향, 잔존 만기단축, 분산투자요건 강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건전성이 대폭 향상된 점을 반영

— 투자대상채권의 범위에 주택저당증권(MBS), BIS 10%를 초과한 은행이 발행한 은행채를 추가(후순위채 및 주식관련채권은 제외)

— Repo 매수대상채권에 신용등급 AAA인 비상장법인 발행채권을 추가

— 직접취득, Repo 매수, 담보대출로 취득한 유가증권의 대여를 제한적으로 허용

- 유가증권 대여의 거래상대방은 적격금융기관으로 한정
- 유가증권 대여한도는 유가증권의 종목별 50% 이내로 제한
- 유가증권 대여시, 담보로 취득한 자금으로 유가증권을 매수하거나 담보로 취득한 유가증권의 매도 금지

- 증권거래소 업무규정의 규제대상 일부조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
2005/1/21 제정, 1/27 시행)
 - 기존의 증권거래소 업무규정의 매매거래 및 수탁제도의 기본 내용을 유지하면서 일부 사항을 이관·통합
 - 회원의 종류, 결제의 위임금지, 결제의 위탁 및 배상기금적립
 - 회원관리규정
 - 이상매매의 심리, 회원감리 및 분쟁조정
 - 시장감시규정 및 분쟁조정규정
 - 경매시장규정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 공매도관련 규정의 국제정합성 제고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 17조, 18조
: 2005/1/21 제정, 1/27 시행)
 - 공매도를 유가증권을 소유하지 않거나(소유가 불분명한 경우 포함) 차입한 증권으로 결제하기 위한 매도로 정의
 - 결제불이행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의 허용범위를 확대
 - * DR의 원주전환청구로 취득한 주식매도로서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
 - * 고객과 VWAP으로 시간외시장에서 거래하기로 약정한 수량범위 내에서 장중에 미리 매도하는 경우 등
 - 차입한 증권의 매도시, 직전가 이하의 가격으로 매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가격이 상승중인 경우에는 직전가로 호가하는 것을 허용

- 단, 원활한 차익거래를 위해 가격제한의 예외를 확대
 - * 해외 DR과 원주와의 차익거래를 위한 매도
 - * 동일한 지수를 대상자산으로 하는 ETF간 차익거래를 위한 매도 등

○ 매매거래중단제도의 변경 및 개선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26조, 49조 :
2005/1/21 제정, 1/27 시행)

- 업무규정의 종목별 '매매거래중단'을 종목별 '매매거래정지'로 변경
 - 공시규정에 의한 매매거래정지와 업무규정에 의한 매매거래중단의 혼용으로 인한 투자자의 혼란예방
- 매매거래정지 사유의 변경
 - 풍문 등의 내용 중 '자본금 전액잠식'사유를 '자본금의 50% 이상 잠식'으로 변경하고, 매출액 50억원 미만 요건을 신설

○ 장중 대량매매의 허용 및 대량매매요건의 완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31조, 32조, 35조, 36조 : 2005/1/21 제정, 1/27 시행)

- 정규시장의 매매시간 중의 대량매매 및 바스켓매매를 허용
 - 단, 가격은 당일 형성된 최고가격과 최저가격 이내로 제한
- 시간외대량매매 및 바스켓매매의 가격범위를 당일의 가격제한폭 이내로 확대

○ 결제관련업무의 명확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73조~76조 : 2005/1/21
제정, 1/27 시행)

-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이행책임의 주체가 면책적 채무인수의 방법에 의하여 거래소임을 규정
 - 결제회원과 거래전문회원간에는 결제위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제회원이 거래전문회원의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
-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의 확정은 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통합하여 증권 또는 대금을 차감
-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의 수수는 결제회원이 결제시한 이전에 거래소에 납부하고 거래소는 결제시한 이후에 결제회원에게 지급
 - 거래소의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의 수수업무는 증권예탁결제원이 수행
 -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의 수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증권예탁결제원이 정하는 결제업무규정에 의하며, 증권예탁결제원이 동 규정을 변경할 경우 거래소와 협의
- 결제회원의 결제불이행시 증권예탁결제원은 이를 즉시 거래소에 통보하고, 거래소는 결제회원에게 대해 매매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회원의 수탁 및 주문처리와 관련된 금지행위 개선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83조 2항, 85조 2항 : 2005/1/21 제정, 1/27 시행)

- 위탁자의 거래목적, 규모 및 경험 등을 고려하지 않은 투자권유를 하거나, 근거 없는 투자판단자료를 제공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

- 위탁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수탁없이 위탁자의 재산으로 매매거래하는 행위를 금지

- 장종료 후 시간외시장의 매매거래시간 확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4조 : 2005/5/13 개정, 5/30 시행)
 - 장종료 후 시간외시장의 매매거래 종료시간을 연장함
 - (기존) 16:00 → (개정) 18:00
 - 단, 장종료 후 시간외 종가매매의 매매거래시간은 단축함
 - (기존) 15:10 ~ 16:00 → (개정) 15:10 ~ 15:30

- 장종료 후 시간외시장에 시간외단일가매매제도 도입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34조의2 : 2005/5/13 개정, 5/30 시행)
 - 매매거래시간 : 15:30 ~ 18:00
 - 매매거래방법 : 주기적 단일가매매방법
 - 호가가격범위 : 종가대비 $\pm 5\%$ 범위 이내 (단, 당일 정규시장 중 가격제한폭 범위 이내)

- 주식워런트증권의 매매방법 규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4조, 19조, 26조 : 2005/7/22 개정, 10/31 시행)
 - 주식시장 등과 구별된 별도의 시장개설
 - 주식워런트증권에 유동성공급제도 도입

- 시장에 제출된 호가의 범위가 주식워런트증권의 발행인이 정하여 거래소에 신고한 최대스프레드를 벗어난 경우, 5분 내에 유동성호가를 제출하도록 함
- 주식워런트증권의 매매거래 정지사유를 정함
 - 기초주권의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 주식워런트증권 발행인에 관한 부도 등의 품문 등이 있는 경우
-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회원자격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20조의2 : 2005/11/25 개정, 2006/1/2 시행)
 - 자기매매 영업허가를 받은 결제회원
 - 과거 유동성공급실적이 있는 경우 그 실적을 평가한 결과가 일정수준 이상인 회원
- 유동성공급계약의 체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20조의3 : 2005/11/25 개정, 2006/1/2 시행)
 -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권상장법인과 유동성공급과 관련된 내용을 정하도록 함
- 유동성공급호가의 제출 의무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20조의4 : 2005/11/25 개정, 2006/1/2 시행)
 - 스프레드비율이 3% 이내에서 회원과 주권상장법인이 계약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
 - * 스프레드비율 = (매도호가의 가격 - 매수호가의 가격)/매수호가의 가격 × 100

○ 유동성공급호가의 제출방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20조의5 : 2005/11/25 개정, 2006/1/2 시행)

— 유동성공급호가는 별도계좌를 통하도록 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취지를 고려하여 호가의 가격을 다음과 같이 정함

-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 < 매도호가의 가격 ≤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 × (1+스프레드비율)'과 최우선매도호가의 가격 중 높은 가격
- '최우선매도호가의 가격 × (1-스프레드비율)'과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 중 낮은 가격 ≤ 매수호가의 가격 < 최우선매도호가의 가격

—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도·매수 양방의 호가를 제출

○ 유동성공급회원에 대한 평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20조의6 : 2005/11/25 개정, 2006/1/2 시행)

—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한 회원에 대한 평가근거를 마련함

○ 공매도 관련규정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3조, 27조, 28조 : 2005/1/25 제정, 1/27 시행)

— 공매도를 수탁시 회원이 확인서 등에 의하여 결제가능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개선

- 기존의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상의 확인방법을 유지하되, 적격기관투자자로서의 신용도가 높은 경우 확인절차 생략 가능

— 차입주식매도에도 불구하고 가격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로서 ETF간 차익거래 및 주식예탁증서 차익거래의 개념을 신설

- 장중 대량매매 허용 및 대량매매의 요건 완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48조, 49조, 50조, 52조 : 2005/1/25 제정, 1/27 시행)
 - 신고대량매매 및 시간외 대량매매의 수량 및 금액요건 개선
 - 대량매매요건을 매매수량단위의 500배 이상 또는 1억원 이상으로 변경
 - * 기존의 대량매매요건 : 1만주 이상 또는 2억원 이상
 - 정규시장의 매매시간 중 대량매매 및 바스켓매매를 허용
 - 요건 및 절차 등 매매제도는 시간외시장의 매매제도를 준용

- 결제관련업무의 명확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00조, 101조 : 2005/1/25 제정, 1/27 시행)
 - 결제기일이 동일한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을 차감하지 않는 예외를 규정
 - 회원이 복수회원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회원번호별로 차감
 - 시장관리상 필요한 경우 특정종목을 제외하거나, 채권의 당일결제 거래의 경우 매매건별로 결제증권과 결제대금을 확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매매거래시간의 변경 등 시장관리상 필요한 경우 증권예탁결제원에 결제시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회원의 시스템정보 보고의무 신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31조 : 2005/1/25 제정, 1/27 시행)
 - 호가입력내용과 관련된 회원시스템의 IP주소를 매월 5일까지 거래소에 보고

- 시간외 단일가매매제도의 매매방법 규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1조, 12조, 14조, 51조의2 : 2005/5/13 개정, 5/30 시행)
 - 호가접수시간 : 15시 30분부터 장종료후 시간외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종료시까지
 - 호가의 종류 : 지정가호가에 한정
 - 매매체결주기 : 매 30분 (총 5회)
 - 매매수량단위 : 1주
 - 호가의 우선순위 : 가격 및 시간우선원칙 적용
 - 가격결정 직전 5분간의 예상체결가격과 30분 시점에서의 잠정체결가격과의 괴리율이 3% 이상일 경우 호가접수시간을 5분 이내에서 연장하여 가격을 결정하도록 함

- 기타 시장운영과정상의 미비점 보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2조 32조, 109조 : 2005/5/13 개정, 5/30 시행)
 - 대표투자자계좌 외에 증권회사의 통합계좌를 이용한 외국인투자자의 주문의 경우에도 이를 구분하도록 함 (12조 : 2005/7/18 시행)
 - 회원이 다른 회원 또는 비회원 증권회사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은 경우, 원위탁자를 기준으로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함
 - 상장지수펀드(ETF)의 호가가격단위를 5원으로 일원화 (32조 : 2005/7/18 시행)
 - 전자우편, 메신저 등의 방법으로 주문을 위탁받아 회원의 임·직원이 주문내용을 입력하는 경우, 전화로 수탁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함을 명시

- 주식워런트증권(ELW)의 매매방법 명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0조, 29조, 40조 : 2005/8/26 개정, 10/31 시행)
 - 주식워런트증권의 경우 지정가호가에 한하여 인정함
 - 유동성공급호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양방향호가를 제출하도록 하고, 유동성 공급호가제출의 면제사유를 정함
 - 풍문 등으로 매매거래가 정지될 경우 매매거래 재개방법을 정함

- 기준가격제도의 개선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0조, 별표 1·2 : 2005/8/26 개정, 9/1 시행)
 -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주식소각을 함으로써 자본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주식병합과 동일한 기준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함
 - 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시가기준가종목으로서 기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평가가격을 다음 매매일의 기준가격으로 정함
 - * 기세요건 : 정규시장 종료시에 평가가격보다 높은 매수호가 또는 낮은 매도호가 존재
 - 배당락 또는 권리락시의 기준가격을 신주인수권의 가치에 중점을 두고 산정
 - 선박투자회사 등이 신규상장전 공모금액의 일부를 소액주주에게 지급 시 이를 반영하여 평가가격을 산정함

- Paper Company에 대한 유동성공급자제도의 비적용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1조의2 : 2005/12/1 개정, 2006/1/2 시행)
 - Paper Company에 대해서는 유동성공급자제도를 도입하지 않음

○ 유동성공급계약의 포함내용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1조의4 :
2005/12/1 개정, 2006/1/2 시행)

- 정규시장에 유지하여야 할 호가스프레드비율
- 호가수량 및 계약기간
- 유동성공급자가 매매한 수량이 일정수량 이상일 경우 유동성공급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사항 등

○ 유동성공급호가 제출 면제사항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1조의5 :
2005/12/1 개정, 2006/1/2 시행)

- 스프레드(비율)이 의무스프레드(비율) 범위 이내인 경우
- 단일가매매를 위한 호가접수시간 및 그 때부터 5분 이내
- 유동성공급자가 매도할 수량이 없는 경우
- 기초자산의 가격이 상한가 또는 하한가인 경우 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한 유동성공급호가 등

○ 유동성공급호가의 제출방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1조의6 :
2005/12/1 개정, 2006/1/2 시행)

- 최우선평가가 없는 경우 예상최우선평가 및 직전가격을 감안하여 호가가가격의 범위를 정함
- 주권의 경우 매도(매수)측에 회원이 제출한 유동성공급호가 있는 상태에서 매수(매도)측에 제출하는 유동성공급호가는 회원이 신고한 호가스프레드비율을 충족할 수 있는 가격으로 제출하도록 함

- 유동성공급호가의 호가수량을 정함
 - 주권 : 매매수량단위의 5배 이상으로서 회원과 상장법인이 합의한 수량
 - 상장지수펀드 및 주식워런트증권 : 100주(증권)
- 유동성공급호가에 대한 가격을 정정하는 경우의 호가수량을 정함
 - 미체결잔량이 신규호가 제출시 적용되는 최소수량 미만인 경우 미체결수량 전량에 대해서는 정정이 가능하도록 함
- 상장지수펀드의 매매수량단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3조 : 2005/12/1 개정, 2006/1/16 시행)
 - 상장지수펀드의 매매수량단위를 1주로 정함
- 자기주식매매신청서의 제출방법 다양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57조 : 2005/12/1 개정, 2006/1/16 시행)
 - 자기주식매매신청서를 문서 외에 K-BloX 등을 이용한 전자통신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상장규정의 체계 정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 2005/1/21 제정, 1/27 시행)
 - 유가증권의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청구부터 상장폐지까지의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
 - 8장 3절 52조 → 7장 8절 105조

○ 통합거래소 출범에 따른 용어 변경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 2005/1/21
제정, 1/27 시행)

— 한국증권선물거래법상의 정의규정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반영

- 거래소 상장법인 → 주권상장법인
- 협회등록법인 → 코스닥상장법인

○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시행에 따른 용어 변경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
2005/1/21 제정, 1/27 시행)

— 증권투자회사법, 증권투자신탁업법이 폐지되고, 간접투자 자산운용업
법으로 통합됨에 따른 용어정리

- 증권투자회사 → 투자회사
- 상장지수 증권투자회사 → 상장지수 간접투자기구 투자회사
- 상장지수 투자신탁 → 상장지수 간접투자기구 투자신탁

○ 부채비율의 적용기준 개선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32조 1항 5호 가목 :
2005/7/22 개정, 7/25 시행)

— 재무적 안정성, 산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
우, 부채비율요건을 적용제외함

○ 상장전 유·무상 증자제한 완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32조 2항 :
2005/7/22 개정, 2005/7/25 시행)

— 기업 필요에 따른 자유로운 상장전 유·무상증자를 허용하되, 기존의
유·무상증자 제한범위 초과분에 대해서는 상장후 매각제한(lock-up)
을 하는 경우 유·무상증자 제한적용을 제외

-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비율 변동제한 완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32조 1항 13호 : 2005/7/22 개정, 2005/7/25 시행)
 - 상장적격성과 관련이 없는 소유주식비율 변동제한의 범위를 기존 1%에서 5% 이상 주주로 완화
 - 변동범위는 0.1%로 동일

- 주식워런트증권의 신규상장기준 마련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41조의2 : 2005/7/22 개정, 10/4 시행)
 - 장외파생금융상품 인가를 받은 증권회사가 KOSPI 100 구성 주식 및 주식바스켓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공모를 통해 10억원(프리미엄) 이상 발행할 것
 - 잔존권리행사기간이 3월 이상 3년 이내이고 회원증권사 1사 이상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 주식워런트증권의 상장폐지기준 마련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86조의2 : 2005/7/22 개정, 10/4 시행)
 - 발행회사가 자기자본규제비율 또는 자기자본요건에 미달하거나 부도·은행거래정지·회사정리·해산을 한 경우
 - 기초자산인 대상주식의 상장폐지기준 해당, 대상 주가지수 산출중지, 권리행사기간의 만료 또는 권리행사의 완료, 유동성공급자가 없거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1월 이내 미지정, 발행회사가 주식워런트증권을 전부 보유한 경우

- 주식워런트증권의 매매거래정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95조 : 2005/7/22 개정, 10/4 시행)
 - 기초자산인 주권이 매매거래정지되거나 주가지수 산출이 중단된 경우
 - 자기자본규제비율 또는 자기자본요건에 미달된 경우

- 우회상장 유사행위(지배권 변동)에 대한 매각제한 제도 개선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46조 : 2005/12/9 개정, 12/12 시행)
 - 합병시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만 매각제한
 - 포괄적 주식교환 등을 통해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비상장법인 최대주주 등의 신주에 대한 매각제한 신설

-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관리종목지정제도 폐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75조 1항 12호 : 2005/12/9 개정, 12/12 시행)
 -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인한 검찰기소, 증선위의 검찰고발·검찰통보 의결시 관리종목지정제도를 폐지

- 감사의견 관련 퇴출제도 보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93조 4항 : 2005/12/9 개정, 12/12 시행)
 - 계속기업으로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감사의견거절·부적정의 경우로서 상장폐지 이전에 당해 사유 해소시 회생기회 부여

- 유동성공급계약 체결시 거래량요건 면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75조 1항 6호 마목 : 2005/12/9 개정, 2006/1/2 시행)
 - 업무규정에 유동성공급자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유동성공급계약 체결 시에는 퇴출규정 중 거래량요건의 적용을 면제

- 상장신청 및 상장심사 가능기간 확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10조 1호 : 2005/12/9 개정, 12/12 시행)
 - 연중 상장신청 및 상장심사가 가능하도록 상장이예비심사청구시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의 기준 사업년도를 탄력적으로 적용

- 국내기업 신규상장요건 개선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32조 1항 : 2005/12/23 개정, 12/26 시행)
 - 기업규모와 관련된 투자지표로서의 효용성이 미흡한 자본금요건 폐지
 - 기업의 자율적 재무활동을 제약하고 재무안정성 판단기준으로서의 신뢰성이 미흡한 부채비율요건 폐지
 - 주식분산요건 중 최대주주 등 지분율 요건을 폐지함으로써 우량대형 기업의 원활한 신규상장 도모

- 국내기업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제도 개선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75조 1항 : 2005/12/23 개정, 12/26 시행)
 - 거래량요건 산정방법과 적용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상장법인의 상장부담의 경감을 도모

- 유동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퇴출되는 불합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분산요건 중 최대주주 등 지분율요건을 폐지
- 공시의무위반과 관련된 벌점제에 의한 퇴출기준 폐지 및 관리종목지정기준의 합리적 개선

○ 외국기업의 상장요건 개선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34조, 34조의2 :

2005/12/23 개정, 12/26 시행)

- 증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외국기업의 1차상장(primary listing)을 허용
- “국내·외기업 차별금지 및 동등대우 원칙”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일한 신규상장요건을 적용
 - 다만 본국법 규제 등 외국법인의 특성을 고려해 일부 요건을 탄력적으로 변경
- 외국지주회사에 대해서도 국내지주회사와 동일하게 자회사 실적 등을 고려한 상장요건 적용방법을 신설

○ 외국기업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제도 개선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76조,

83조 : 2005/12/23 개정, 12/26 시행)

- 진입시와 동일하게 “국내·외기업 차별금지 및 동등대우 원칙”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일한 퇴출요건을 적용
 - 다만 본국법 규제 등 외국법인의 특성을 고려해 일부 요건을 탄력적으로 변경

○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

2005/1/26 제정, 1/27 시행)

—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등의 제·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 주권상장 증권투자회사 → 주권상장 투자회사
- 상장지수 증권투자회사 → 상장지수 간접투자기구 투자회사
- 상장지수 투자신탁 → 상장지수 간접투자기구 투자신탁
- 부동산투자회사의 일반사무수탁회사 → 일반사무 등 위탁기관
- 주권상장 증권투자회사의 일반사무수탁회사 → 일반사무관리회사
-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위탁회사 →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의 자산운용회사

○ 수익증권 상장신청시 제출서류 관련사항 신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

세칙 14조 1항 3호 : 2005/1/26 제정, 1/27 시행)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상장신청시 제출하는 첨부 서류 관련사항을 신설

- 수익증권의 권종별 견양, 채권유동화계획서 사본, 채권관리 위탁계약서 사본, 주택저당증권 신탁약관 등

○ 소유주식변동 상황명세서 제출대상 축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4조 : 2005/7/22 개정, 7/25 시행)

— 상장규정 개정으로 지분변동제한 대상을 1% 이상 주주에서 5% 이상 주주로 변경함에 따라, 신규상장시 첨부서류인 소유주식변동 상황명세서 제출대상도 1% 이상인 주주에서 5% 이상 주주로 변경

- 전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변경상장수수료 개선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2 : 2005/7/22 개정, 7/25 시행)
 - 주주의 전환권 행사로 인한 종류변경 상장신청시 신주상장수수료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상장법인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

- 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 등 신고사항 신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35조의2 : 2005/9/14 개정, 10/4 시행)
 - 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 등 주요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고 공정한 가격형성을 도모

- 주식워런트증권 등의 유동성공급자 의무이행 평가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48조 : 2005/9/14 개정, 10/4 시행)
 - 상장지수펀드 및 주식워런트증권의 유동성공급자 의무이행 평가기준을 정비하고 신설
 - 유동성 공급이 필요한 상태가 5분 이상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공급호가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 주식워런트증권의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부과기준 등 신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50조 5항 2호, 별표2 : 2005/9/14 개정, 10/4 시행)
 - 채권, 신주인수권증권 등에 준해 주식워런트 증권에 신규상장수수료, 변경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부과기준 등 신설

- 주식워런트증권의 기초자산인 주가지수의 한정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4조의2 : 2005/10/28 개정, 10/31 시행)
 - 시장개설 초기임을 감안해 상장이 가능한 주식워런트증권의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를 코스피200지수로 한정

- 최대주주의 소유주식 변동보고서 서식 개선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지 24호 서식 : 2005/10/28 개정, 2005/12/1 시행)
 - 금감위의 5% Rule 및 임원/주요주주의 소유주식변동보고서 서식 중 개인정보관련 서식이 개정됨에 따라 동 사항을 반영

- 부채비율 산정방법 삭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4조 : 2005/12/28 개정, 12/29 시행)
 - 진입요건 중 부채비율요건 삭제에 따라 부채비율 산정방법을 삭제

- 관리종목지정 및 해제기준 정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42조 1항·2항 : 2005/12/28 개정, 12/29 시행)
 - 관리종목지정기준 및 해제기준 변경에 따른 관리종목지정·해제 관련 조항을 정비

- 외국주 관리종목지정 및 해제기준의 정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42조 3항 : 2005/12/28 개정, 12/29 시행)
 - 국내법인 관리종목지정 및 해제시기 등을 준용한 외국주 관리종목지정 및 해제시기 관련조항을 정비

○ 연부과금 면제조항의 신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50조 5항 13호 : 2005/12/28 개정, 12/29 시행)

— 유동성공급기간 동안의 연부과금 면제조항을 마련

○ 코스닥시장의 호가의 가격제한폭 확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14조 2항 : 2005/3/25 개정, 3/28 시행)

— 호가의 가격제한폭을 기준가격대비 $\pm 12\%$ 에서 $\pm 15\%$ 로 확대

○ 시간외시장의 매매시간 연장 및 단일가매매 근거 마련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4조 2항 : 2005/5/16 개정, 5/30 시행)

— ECN시장기능 수용을 위해 장종료 후 시간외시장을 18시까지 연장

- 기존의 시간외 종가매매는 15시30분까지로 단축하고, 시간외 단일가매매는 15시30분부터 18시까지 운영

구 분	기 존	개 정
장종료 후 시간외시장	15:10 ~ 16:00	15:10 ~ 18:00
· 시간외 종가매매	15:10 ~ 16:00	15:10 ~ 15:30
· 시간외 단일가매매	<신설>	15:30 ~ 18:00

○ 시간외 단일가매매의 운영방법 규정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21조의2 : 2005/5/16 개정, 5/30 시행)

— 매매대상 : 정규시장 매매형성 종목

— 매매방법 :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 가격제한폭 : 종가대비 $\pm 5\%$ (상·하한가 한도)

○ 공매도개념의 명확화 및 허용범위의 확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2조 11항, 9조의2 1항 : 2005/5/16 개정, 5/30 시행)

— 공매도의 개념을 유가증권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매도 후 유가증권의 제공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포함)에서의 매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함

- 기존에는 차입한 유가증권의 매도에 국한되는 것으로 정의

— 공매도의 허용범위를 DR의 원주전환청구로 취득할 주권의 매도와 대여중인 유가증권의 매도로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까지 확대

구 분	기 존	개 정
허용 대상	· 타기관에 보관된 증권매도	<좌동>
	· 차입증권의 매도	<좌동>
	· 매수증권의 결제전 매도	<좌동>
	· 유상증자, 전환청구 등으로 취득한 증권 또는 ETF의 입고전 매도	<좌동>
	<신설>	· DR의 원주전환청구후 매도
	<신설>	· 대여증권의 반환전 매도

○ 공매도 가격규제의 실효성 제고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9조의3 : 2005/5/16 개정, 5/30 시행)

— 공매도 호가를 직전가보다 높은 가격으로만 가능하도록 하여 가격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함

- 단, 상승장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전가호가도 허용

— 공매도 가격제한 예외인정의 범위를 DR 차익거래를 위한 매도시까지 확대

구 분	기 준	개 정
가격제한	· 직전가 또는 그 이상가격으로 호가가능	· 직전가보다 높은 가격만 가능 · 단, 상승장인 경우 직전가도 가능
가격제한 예외인정	· 지수차익거래를 위한 매도 · ETF 차익거래를 위한 매도 · <신설>	<좌동> <좌동> · DR 차익거래를 위한 매도

○ 호가유형의 다양화를 위한 조건부 지정가호가 도입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2조 6항 5호 : 2005/5/16 개정, 5/30 시행)

— 지정가호가로서 종가결정 전까지 체결이 안 된 경우, 종가결정시 시장가호가로 전환되는 조건부 지정가호가를 도입

기 준	개 정
· 지정가호가, 시장가호가	<좌동>
· 최유리지정가호가	<좌동>
· 최우선지정가호가	<좌동>
<신설>	· 조건부 지정가호가

○ 시간외 대량매매시 당일결제의 근거 마련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7조의2 : 2005/5/16 개정, 5/30 시행)

— 정부출자법인 등으로부터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해 자기주식을 매수할 경우 당일결제제도를 도입하여 자기주식 취득의 원활화를 도모

- 전산장애 또는 호가폭주시 매매중단 등의 근거 마련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25조의2 : 2005/5/16개정, 5/30 시행)
 - 전산장애 또는 호가폭주로 인해 전산장애가 우려되는 경우, 매매거래를 중단하거나 호가접수를 중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대용증권의 지정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의 범위 확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43조 2항·3항 : 2005/5/16 개정, 5/30 시행)
 - 상장된 외국주식예탁증서를 추가하여 대용증권의 범위를 확대
 - 코스닥법인이 발행한 주권, 상장지수펀드(ETF), 유가증권시장 대용증권에 상장외국 DR을 추가
 - 사정비율에 관한 사항은 업무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도록 위임

- 장중대량매매 허용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19조의2 : 2005/11/25 개정, 동세칙에서 정하는 날 시행)
 - 종래 시간외시장에 한하여 운영중인 대량매매를 장중에도 허용함으로써 대량매매 기능의 원활화를 기함

기 준	개 정
< 신 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중대량매매제도 도입 — 매매거래시간 : 09:00 ~ 15:00 — 가격제한폭 : 최고·최저가 이내 — 금액요건, 매매수량 및 호가 가격단위 : 세칙에 위임

○ 시간외대량매매의 가격제한 완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21조 2항 :

2005/11/25 개정, 동세칙에서 정하는 날 시행)

— 시간외대량매매의 가격 허용범위를 당일 가격제한폭 이내로 확대

기 존	개 정
당일 종가의 $\pm 7\%$ 이내 (당일 가격제한폭 한도) 또는 거래량가중평균가격	당일 가격제한폭 이내

○ 이상급등종목 지정요건 및 지정예고요건 변경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

세칙 54조 1항·4항 : 2005/3/25 개정, 3/28 시행)

— 가격제한폭이 15%로 확대됨에 따라 '지정예고요건'을 변경

기 존	개 정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60% 이상인 경우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75% 이상인 경우

— 가격제한폭이 15%로 확대됨에 따라 '지정요건'을 변경

기 존	개 정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60% 이상 2일간 계속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75% 이상 2일간 계속
최근 20일간 최저종가지수 대비 최고종가지수 상승률의 4배 이상	최근 20일간 주가지수 상승률의 4배 이상

- 시간외 단일가매매의 매매방법 등 마련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6조, 25조의2 : 2005/5/16 개정, 5/30 시행)

— 장종료 후 시간외시장의 호가접수시간을 조정

구 분	기 준	개 정
장종료 후 시간외시장	15:00 ~ 16:00	15:00 ~ 18:00
· 시간외 종가매매	15:00 ~ 16:00	15:00 ~ 15:30
· 시간외 단일가매매	<신설>	15:30 ~ 18:00

— 시간외 단일가매매방법 : 30분 단위의 단일가 매매

— Random End 적용 : 예상체결가가 3% 이상 변동할 경우

- 주문유형의 신설 및 주문수탁제도의 개선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7조의2, 41조 : 2005/5/16 개정, 5/30 시행)

— 주문유형을 신설하고 목표가주문에 대한 근거 마련

— 전자우편, 메신저 등의 방법으로 주문을 위탁받아 회원의 임·직원이 주문내용을 입력할 경우 전화수탁과 동일하게 처리

- 대용증권 및 기준가격산정 제도 개선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48조, 48조의2 : 2005/5/16 개정, 5/30 시행)

— 사정비율 이내에서 회원사가 사정비율을 변경하도록 허용

— 대용증권 중 유가증권 상장종목의 경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대용가격을 적용함

○ 각종 보고 및 서식 등을 통일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8조, 39조, 43조, 51조, 업무서식(별지) : 2005/5/16 개정, 5/30 시행)

- 주간프로그램 매매현황 보고사항 중 지수차익거래와 비차익거래로 분류하여 보고하던 것을 비차익거래만 보고하도록 개선
- 계좌설정시 성명, 비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함
- 증권회사의 약관 등의 보고·통보시한을 정비함

통보 및 보고사항	기존	개정
· 개별약관 변경통보	7일 이내	5매매일 이내
· 위탁증거금 징수기준 변경보고	2일 이내	5매매일 이내
· 위탁수수료 징수기준 변경통보	2일 이내	5매매일 이내

- 각종 신청서 및 보고서의 수신주체를 이사장 및 한국증권선물거래소로 일원화하되 본부를 구분하도록 함

○ 조건부 지정가호가의 시장가호가 전환조항 신설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8조, 8조의2 : 2005/6/28 개정, 10/24 시행)

- 장중 미체결수량에 대해 종가결정시 가격우선·시간우선원칙에 따라 시장가호가로 전환
- 신규·재상장, 가격제한이 있는 공매도호가, 종가결정을 위한 호가시에는 조건부 지정가호가를 제한

○ 공매도 확인방법 명시 및 가격규제의 예외인정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8조의3, 8조의4, 9조의2 : 2005/6/28 개정, 7/18 시행)

- 공매도 확인방법을 결제이행확약서 징구, 구두·전화·모사전송 등으로 확인하고 녹음 등으로 기록·유지하도록 명시

- 공매도 가격규제의 실효성이 없는 시가, 상한가 매매 및 시간외 대량 매매의 경우 가격규제의 예외를 인정
- DR 차익거래 방법 명시
 - DR 매수(매도)와 동시 또는 전후에 원주의 매도(매수)
- 동시호가 수량배분의 개선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9조 : 2005/6/28 개정, 7/18 시행)
 - 동시호가 수량배분으로 인한 매매체결 지연, 실효성 미흡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률배분방식을 정량배분방식으로 변경
- 자사주 매입시 당일결제거래 지정 신설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4조의2 : 2005/6/28 개정, 7/18 시행)
 - 정부출자법인 등으로부터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한 자사주 매입시 당일결제로 지정
- 대용가격산출 특례인정범위 확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48조 : 2005/6/28 개정, 7/18 시행)
 - 신규상장 등의 경우 매매개시 당일 대용증권 지정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인정하고, 공모가격 등을 적용하도록 함

- 최초 매매개시 기준가격 산정방식 개선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별표 1 : 2005/6/28 개정, 7/18 시행)

- 최저호가가격을 상장공모가격과 같이 합리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90%로 적용하고, 기타 재상장 등의 경우 50%를 적용

<최저호가가격 산정시 적용비율>

대 상		기 준	개 정
신규상장	보통주	90%	(좌동)
	우선주	90%	50%
재 상 장	보통주	90%	50%
	우선주	90%	50%
주식병합	보통주	50%	(좌동)
	우선주	50%	(좌동)

- 전산장애시 시장운영방법의 명확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4조,
30조, 30조의2 : 2005/6/28 개정, 7/18 시행)

- 전산장애 판단범위를 회원시스템 장애의 경우도 포함하고, 회원시스템 장애의 판단기준을 명시

- 장애가 발생한 회원의 주식거래량이 전체거래량의 75% 이상시

- 전산장애시 매매거래 중단·재개 등의 근거를 명시하고, 재개시 단일 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법으로 정함

- 매매거래 폭주종목의 판단근거

- 매매계약 체결이 60분 이상 지연되는 경우

- 전산장애로 인한 정규시장의 매매거래 연장의 종결시점 근거 명시

- 외국인투자자 매매편의 제고 및 관리개선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7조 : 2005/6/28 개정, 7/18 시행)
 - 투자자집단을 위한 대표투자자 계좌 또는 증권회사 명의의 외국인거래 전용계좌를 이용하여 호가가 가능하도록 함
 - 외국인투자자 관리 등을 위해 대표투자자 계좌 또는 외국인거래 전용계좌를 구분하여 입력하도록 함

- 자기매매 위탁·위탁매매의 재위탁 규제의 효율성 제고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7조 : 2005/6/28 개정, 7/18 시행)
 - 자기매매의 위탁·위탁매매의 재위탁에 관한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기매매를 위탁받은 경우, 위탁한 증권회사 명의로 호가를 구분하여 표시
 - 위탁매매 재위탁시 원위탁자 기준으로 호가내용을 입력
 - 위탁매매 또는 자기매매의 구분, 계좌번호, 투자자분류 코드 등

- 거래전문회원의 매매거래내용 통보사항 신설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9조 : 2005/9/27 개정, 9/28 시행)
 - 거래소는 거래전문회원의 매매거래에 대해 다음의 매매거래내용을 지정결제회원에게 통지함
 - 거래전문회원 회원번호
 - 종목별 매수(도)수량
 - 종목별 매수(도)거래대금

- 프로그램매매 관리 기준지수의 변경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조, 부칙 3조 : 2005/10/14 개정, 11/7 시행)
 - 지수차익거래·비차익거래, 프로그램매매호가 효력정지제도(Sidecar)의 적용기준이 되는 대상지수를 스타지수로 변경
 - * 비차익거래 대상종목수 10종목 (기존 유지)
 - 다만, 프로그램매매 관리 강화와 공시기능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코스닥50지수에 대한 프로그램매매도 당해 선물·옵션 상장폐지까지 프로그램매매로 관리

- 권리락 및 배당락 기준가격 산정방식 개선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별표2 : 2005/10/14 개정, 11/7 시행)
 - 신주인수권의 가치에 중점을 둔 기존 기준가격조정방식을 유지하되, 산식을 단순화하고 용어를 명확히 함(유가증권시장과 통일)
 - 보통주만 상장된 경우에 우선주를 배정하는 경우 배당락의 경우와 동일하게 권리락 조치를 통해 기준가격 조정

- 최초 매매개시기준가격 산정기준 중 일부 개선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별표1 : 2005/10/14 개정, 11/7 시행)
 -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주식소각에 의해 자본이 감소하는 경우 주식병합의 경우와 동일하게 감자비율을 적용하여 기준가격 결정방법을 적용
 - 주권의 신규상장, 재상장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해 최초 매매기준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당일 가격 미형성 및 기세요건 미해당시 당해 종목의 평가가격을 익일 기준가격으로 적용

- 외국주, 외국주식예탁증서의 평가가격을 모집 또는 매출시의 발행가액으로 산정토록 신설
 - 재상장 및 변경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이 “양”이 아닌 경우 최저호가 가격 등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장중대량매매의 수량 요건 및 호가 가격단위의 명시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2조의2 5항 : 2005/12/23 개정, 2006/4/24 시행)
- 시간외대량매매의 경우와 동일하게 수량요건은 1억원 이상, 호가가격 단위는 1원으로 함
- 대량매매네트워크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규정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2조의2 1항~4항 : 2005/12/23 개정, 2006/4/24 시행)
- 시간외대량매매 및 장중대량매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대량매매등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동 네트워크 장애시 처리 방법을 정함
- 전자문서에 의한 자기주식매매 신청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0조 4항 : 2005/12/23 개정, 2006/1/16 시행)
- 자기주식매매신청은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산장애시 등의 처리방법을 정함

- 매매체결정보에 대한 투자참고사항 공표 범위 확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52조 6항 : 2005/12/23 개정, 2006/4/24 시행)
 - 대량매매, 자기주식매매의 체결정보를 투자참고사항으로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중견기업요건의 폐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7조 : 2005/3/25 개정, 3/28 시행)
 - 진입요건 중 중견기업요건을 폐지하여 코스닥시장을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시장으로 차별화

- 성장형 벤처기업에 대한 상장특례 인정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7조 : 2005/3/25 개정, 3/28 시행)
 - 기술력·성장성이 인정되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수익성요건(ROE, 경상이익)의 적용을 면제함
 -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ROE(일반 10%, 벤처 5%) 및 경상이익요건을 충족해야 함
 - 기술력 및 성장성의 검증을 위해 상장위원회, 전문가 자문제도 및 전문평가기관을 적극 활용하도록 함

- 코스닥상장기업의 신규상장시 부채비율요건을 개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6조 : 2005/3/25 개정, 3/28 시행)
 - 부채비율 상장요건을 코스닥상장기업의 동업종 평균부채비율 또는 코스닥상장기업 전체 평균부채비율 중 큰 것의 1.5배 미만으로 변경

- 외환위기 이후 코스닥상장기업의 평균부채비율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부채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

<진입요건의 신·구 비교>

		기 존			개 정	
		일반	중견	벤처	일반	벤처*
규모	자본금	10억	-	5억	10억	5억
	자기자본	-	100억	-	-	-
	자산총계	-	500억	-	-	-
안정성	자본잠식	없을 것	없을 것	없을 것	없을 것	없을 것
	부채비율	1.5배** (100%)	1.0배 (100%)	-	1.5배**	-
수익성	경상이익	있을 것	-	있을 것	있을 것	있을 것
	ROE	10%	-	5%	10%	5%

* 기술력·성장성이 인정되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수익성요건의 적용을 면제

** 부채비율의 배수기준 : 동업종평균(기준), 동업종평균과 전체 코스닥상장 기업평균 중 큰 것(개정)

- 관리종목 지정사유 확대로 사전 경고기능 강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8조 1항 2호의2·3호 : 2005/3/25 개정, 3/28 시행)

— 반기보고서상 자본전액이 잠식된 기업을 관리종목으로 지정

○ 상장폐지 유예기간 단축 등 퇴출절차의 신속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8조 1항 3호 : 2005/3/25 개정, 3/28 시행)

— 자본잠식요건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경우 상장폐지까지의 유예기간을 단축함

• 1년 → 6월

— 사업연도말 자본잠식요건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상장기업의 퇴출요건 강화

• 반기보고서상 감사의견 미달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 한정) 및 반기감사보고서 미제출시 퇴출사유에 추가

○ 수익성 악화기업의 조기퇴출 유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8조 1항 2호의2, 38조 1항 4호의2 : 2005/3/25 개정, 3/28 시행)

— 수익성 악화가 지속된 기업의 조기퇴출을 유도

• 경상손실이 자기자본의 50% 이상으로 2년 이상 지속시 관리종목 지정, 3년 이상 지속시 상장폐지 (2005년, 2006년 연속한 법인부터 관리종목 지정)

○ 시가총액에 의한 상장폐지기준 강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38조 1항 8호 : 2005/3/25 개정, 10/1 시행)

— 상장폐지기준이 되는 시가총액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강화

< 퇴출요건의 신·구 비교 >

기 준	개 정
(관리종목) ·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률이 50%이상 · (신설) · 시가총액 10억미만 (30일연속) · (신설)	(관리종목) ·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률이 50%이상 · 반기보고서상 자본전액잠식 · 시가총액 20억미만 (30일연속) · 자기자본 50%이상의 경상손실이 2년 계속
(퇴출) · 사업연도말 자본 전액잠식 · 관리종목(자본잠식률 50%)지정법인이 - 다음 사업연도말 자본잠식률 50% 이상 - (신설) - (신설) · 시가총액 10억미만 (일정기간) · (신설)	(퇴출) · 사업연도말 자본 전액잠식 · 관리종목(자본잠식률 50%)지정법인이 - 다음 사업연도말 자본잠식률 50% 이상 - 다음 반기말 자본잠식률 50%이상 - 다음 반기말 감사의견 미달(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 한정) 및 반기 감사 보고서 미제출 · 시가총액 20억미만 (일정기간) · 자기자본 50%이상의 경상손실이 3년 계속

○ 중대한 증권범죄의 발생시 퇴출조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38조 1항 22호

: 2005/3/25 개정, 3/28 시행)

— 중대한 증권범죄로 투자자보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퇴출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

○ 부실기업에 대한 현장실사의 근거 마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38조 7항 : 2005/3/25 개정, 3/28 시행)

— 일정한 경우 코스닥기업에 대한 현장실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중대한 증권범죄로 인한 상장폐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 주된 영업의 정지나 양도결정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의 신속한 상장폐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 거래량에 의한 퇴출기준 개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7조 : 2005/3/25 개정, 3/28 시행)

— 기존에는 거래량 부족에 대한 획일적 시장조치로 인해 주식분산이 우수한 기업의 자전거래 등 기업부담이 증가하였음

— 주식분산기준을 발행주식총수에서 유동주식총수로 개선하여 유가증권 시장과 동일하게 운영하고, 거래실적 부진에 의한 퇴출기준을 개선하되, 주식분산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

- 발행주식총수의 0.3%~1% → 유동주식총수의 1%

* 유동주식수 = 보통주식수 - (정부소유주식 + 외국투자자 소유주식 + 회사정리법 등에 따라 발행된 주식 중 보호예수된 주식)

- 절대거래량(월간 5만주 이상) 충족기업 또는 주식분산 우량(소액주주의 수가 300인 이상이고 소액주주의 지분이 20%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

○ 매각제한기간(lock-up period)의 단축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1조 : 2005/3/25 개정, 3/28 시행)

—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매각제한제도를 합리적으로 완화

- 증권선물거래소 설립일(2005/1/27)이후 예비심사청구법인부터 적용

대 상	기 준	개 정
최대주주 등	2년(1년 경과시 매월 5%)	1년(6월 경과시 매월 5%)
상장주선인*	6월	폐지

* 상장주선인에 대한 상장예정기업의 주식소유금지

○ 코스닥 상장후 무상증자 제한폐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34조 : 2005/3/25 개정, 3/28 시행)

— 최대주주 등의 무상증자분 매각제한조치에 따라 자본이득 취득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폐지

- 종래에는 상장 후 1년간 이익배당한도 내에서만 무상증자가 가능하였음

○ 시장이전비용 징수제도 등의 폐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51조 : 2005/3/25 개정, 3/28 시행)

— 코스닥시장과 유가증권시장의 운영주체가 통합됨에 따라 시장이전비용 징수제도를 폐지

- 종래에는 코스닥 상장후 단기간 내(5년 이내)에 시장을 이전할 경우 일정액(IPO 금액의 0.1%~0.3%)의 시장이전비용을 징수

○ 상장을 주선한 증권사의 주선기업 주식보유의무 폐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6조 : 2005/3/25 개정, 3/28 시행)

— 코스닥시장의 유동성 확보로 상품보유를 통한 호가제출의 실익이 없으므로 폐지

- 종래에는 상장주선 대상인 코스닥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 또는 1천만원 중 적은 금액이상을 상장후 1년간 보유

○ 합병요건 심사대상 축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19조 : 2005/7/22 개정, 7/25 시행)

— 코스닥상장기업과 비공개기업과의 합병시 비공개기업의 합병요건 심사대상을 축소

- 비공개기업이 자산·자본금·매출액 중 2가지 이상이 코스닥상장기업보다 큰 경우에만 합병요건*을 심사

* 합병요건 : 자본잠식, 경상이익, 부채비율, 유·무상증자제한, 감사의견, 지분변동제한, 소송 및 부도

기 준	개 정
코스닥기업과 합병하는 모든 비상장기업에 대해 거래소가 정하는 합병요건을 적용	코스닥기업과 합병하는 비상장기업이 자산, 자본금 및 매출액중 2가지 이상이 큰 경우 당해 비상장기업에 대해 거래소가 정하는 합병요건을 적용

- 부채비율 요건의 합리적 개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6조 1항 7호 :
2005/7/22 개정, 7/25 시행)
 - 부채비율 요건은 유지하되 재무적 안정성, 산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예외를 인정

- 프리보드 지정법인에 대한 우대방안 마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6조 1항 15호 : 2005/7/22 개정, 7/25 시행)
 - 지분변동 제한요건 적용대상을 종래대로 최대주주 등과 5% 이상 주주로 유지하되, 프리보드 지정법인에 한해 최대주주 등 및 10% 이상 주주로 요건적용대상을 완화

- Lock up 대상 확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2조의3 : 2005/12/9 개정, 12/12 시행)
 - 3자배정증자와 연계한 영업·자산양수(주식스왑 포함)의 경우에도 합병 및 포괄적주식교환에 준하는 보호예수의무 부과

- 우회상장 성격에 따른 Lock up 기간 차등 적용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2조의4 : 2005/12/9 개정, 12/12 시행)
 - 합병 및 포괄적주식교환
 - 현행대로 2년을 적용하되,
 - * 우회상장과 관련하여 지배권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으로 단축
 - * 지배권 변동이 있고 비공개기업이 재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강화

- 3자배정 증자와 연계한 영업(자산)양수(주식스왑 포함)
 - 지배권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년, 있는 경우에는 2년 적용

- 연중 상시심사체계 구축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4조 : 2005/12/9 개정, 12/12 시행)
 - 연중 상시심사체계 구축으로 기업의 상시청구가 가능토록 함으로써 기업의 적기 자금조달 계획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예비심사 청구 시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의 기준 사업연도를 탄력적으로 적용
 - 결산확정전(1~2월) 청구시에는 전년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 등으로 우선 심사하고 직전사업연도 결산후 심사결과 확정

- 성장형 벤처기업에 대한 퇴출요건 보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8조 : 2005/12/9 개정, 12/12 시행)
 - 성장벤처 특례를 적용받은 벤처기업에 대해 일정기간(상장일이 속하는 당해연도 및 익년도)동안 매출액 미달(30억원 미만)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 및 퇴출조치 적용 유예

- 증권선물위원회 조치와 연계한 시장조치 개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8조, 29조 : 2005/12/9 개정, 12/12 시행)
 - 분식회계 및 불공정거래와 관련하여 증선위 조치결과와 연계한 시장조치 폐지

○ 감사의견에 의한 즉시퇴출제도 개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38조 : 2005/12/9 개정, 12/12 시행)

— 감사의견에 의한 퇴출사유 발생기업에 대해 그 사유가 「계속기업 불확실성」인 경우에 한해 일정기간 퇴출을 유예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10일 이내에 동일한 감사인의 사유해소에 대한 의견서 제출시 반기까지 퇴출 유예
- 반기보고서상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퇴출여부 결정 (유예 불인정)

○ 상장요건 개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6조, 7조 : 2005/12/23 개정, 12/26 시행)

— 기업규모 요건을 자본금 기준(일반기업 10억원, 벤처기업 5억원)에서 자기자본 기준(일반기업 30억원, 벤처기업 15억원)으로 변경하여 기업규모 측정 지표의 유의성 제고

— 자기자본이익률 요건(일반 10%, 벤처 5%)을 자기자본이익률과 이익규모(일반 20억, 벤처 10억) 중 선택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장기이익누적 등으로 자기자본이 증가한 기업에 대한 상장기회 확대

— 일률적인 부채비율 요건(업종 또는 코스닥전체평균의 1.5배)을 폐지하고 이를 재무안정성에 대한 질적 심사로 대체하여, 기업별 최적자본구조 선택 및 투자 활성화를 지원

○ 퇴출요건 개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7조, 38조 : 2005/12/23 개정, 12/26 시행)

— 거래량요건의 개선

- 퇴출요건 적용을 위한 거래량 산정주기를 확대하여 일시적인 시장 상황(시장의 전반적인 유동성 저하)에 의한 퇴출을 방지하고, 비율에 의한 거래량요건의 적용을 면제받는 절대거래량 기준을 현실화

기 준	개 정
- 거래량부진*이 3월간 계속되는 경우 퇴출 * 월간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 (단, 월간거래량 5만주 이상 시 적용 예외)	- 거래량부진*이 2분기간 계속되는 경우 퇴출 * 분기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 (단, 월간거래량 1만주 이상 시 적용 예외)

— 삼진아웃제의 폐지

- 불성실공시 횟수(2년간 3회, 삼진아웃제)에 의한 상장폐지기준은 폐지하되 성실공시 담보를 위해 고의·중과실에 의한 공시위반시 상장폐지 근거 마련
-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주의 환기를 위해 투자유의종목 지정제도는 유지하되 지정기준 완화(2년 2회 → 1년 1.5회)

— 상호저축은행 관련 투자유의종목 지정제도 폐지

- 금융감독원의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적기 시정조치(5% 미만) 등 여타 투자자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상호저축은행과 관련된 투자유의종목 지정 제도를 폐지

○ 외국기업 상장예비심사 제도 도입 등 상장절차 개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4조의2·3, 41조 : 2005/12/23 개정, 12/26 시행)

- 외국기업(1차상장, 2차상장 공통)도 국내기업과 동일한 상장예비심사를 거치도록 심사절차를 개선하여, 외국기업에 대한 심사기능 제고

- 외국기업의 경우 코스닥상장 추진시 상장대리인 선임 및 거래소와의 사전협의(상장절차 및 시기 등 관련)를 의무화
 - 외국기업의 경우 투자유의·관리종목 지정 및 퇴출결정시의 이의신청 기한을 국내기업과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외국기업 상장요건 및 퇴출요건 개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7조의2, 41조 : 2005/12/23 개정, 12/26 시행)
- “국내·외기업 차별금지 및 동등 대우 원칙”에 따라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국내기업과 동일한 규제 적용
 - 다만, 본국법 규제 등 외국법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 불가능하거나 타당성을 결여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 1차상장과 2차상장의 차이를 고려하여 규제 차별화가 필요한 요건 정비
- 외국지주회사 상장요건 적용방법 명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7조의2 : 2005/12/23 개정, 12/26 시행)
- 외국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재무요건 심사시 연결재무제표를 반영하고 자회사의 영업기간을 고려하는 등 지주회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상장요건을 적용

- 수익성요건의 적용이 배제되는 벤처기업의 범위 명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7조 3항 : 2005/3/30 개정, 4/1 시행)
 - 수익성(ROE, 경상이익) 요건의 적용을 배제하는 성장형 벤처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심사요건 적용의 객관성을 제고함
 - 정부가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등의 업종으로서,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기술평가결과가 A등급 이상인 기업

- 코스닥시장의 질적심사기준의 개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8조 : 2005/3/30 개정, 4/1 시행)
 - 기업의 특성에 따른 질적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심사기준을 구체화
 - 수익성(ROE, 경상이익) 요건 충족기업
 - 재무상태, 경영성 및 시장성(매출의 지속여부)을 반영
 - 수익성(ROE, 경상이익) 요건 미충족기업
 - 시장성, 수익성, 재무상태, 기술성 및 경영성을 반영

- 기술평가제도의 개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9조 : 2005/3/30 개정, 4/1 시행)
 - 성장형 벤처기업(ROE 및 경상이익 요건의 미충족기업)에 대해 기술평가를 의무화함
 - 거래소가 지정하는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도록 함 (평가비용은 청구기업이 부담)

— ROE 및 경상이익 요건을 충족한 기업의 상장예비심사청구시에는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기술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평가비용은 거래소가 부담)

- 다만, 수익성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상장적격성 판단을 위해 일부기업*에 대해서는 기술평가를 의무화함 (평가비용은 청구기업이 부담)

*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설립후 경과년수가 2년 미만인 기업,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최근 3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기업

○ 청문위원 구성 등의 명확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11조, 35조 : 2005/3/30 개정, 4/1 시행)

— 상장 및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시 청문절차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심의절차의 투명성을 제고

- 청문위원의 구성 : 코스닥시장 본부장, 상장위원회 위원중 2인 및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4인 이내

○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시기의 명확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6조 : 2005/3/30 개정, 4/1 시행)

— 매출액(30억원) 및 자본잠식(사업연도말 50%) 요건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시기를 명확화

- 신설되는 관리종목 지정사유인 “반기말 전액 자본잠식” 및 “경상손실지속”요건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시기 신설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시기의 신·구 비교>

구 분		기 준	개 정
매출액 30억원 미만	지정	확인된 날의 익일	사업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 날의 익일
	해제	차기 사업보고서에 의하여 사유해소가 확인된 날의 익일	(기존과 동일)
사업연도말 자본잠식률 50%이상	지정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익일	(기존과 동일)
	해제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익일	차기 사업보고서에 의하여 사유해소가 확인된 경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익일
반기말 전액 자본잠식	지정	(신 설)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익일
	해제	(신 설)	사업보고서에 의하여 사유해소가 확인된 경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익일
경상손실 2년연속 자기자본의 50%이상	지정	(신 설)	사업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 날의 익일
	해제	(신 설)	차기 사업보고서에 의하여 사유해소가 확인된 날의 익일

- 상장주선인의 주식보유현황의 보고의무 폐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3조 : 2005/3/30 개정, 4/1 시행)
 - 상장주선인의 주선기업 주식보유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된 현황보고의무도 폐지

- 퇴출요건(경상손실 지속) 신설에 따른 퇴출절차 정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33조 : 2005/3/30 개정, 4/1 시행)
 - 경상손실 지속요건은 상장위원회의 심의 및 이의신청대상에서 제외

- 상장요건 특례대상이 되는 프리보드 지정법인의 범위 명확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 2005/7/22 개정, 7/25 시행)
 - 상장요건 중 지분변동제한 특례*를 적용받는 프리보드 지정법인의 범위를 프리보드 지정후 1년이 경과한 법인으로 명확화
 - * 프리보드 지정법인에 대해서는 지분변동이 제한되는 주주의 범위를 축소(일반법인 5% 이상 주주 → 지정법인 10% 이상 주주)

- 기술평가 결과의 효력에 대한 유효기간 신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 2005/7/22 개정, 7/25 시행)
 - 기술평가 후 6월 이내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기술평가 결과의 유의성을 제고

- 상장예비심사 결과통보 기한의 연장근거 마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 2005/7/22 개정, 7/25 시행)
 - 상장위원회 심의의 연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비심사결과 통지기한(3월)의 연장을 가능하게 하여, 상장심사의 효율성을 제고

- 주된 영업정지의 범위 확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41조의2 : 2005/7/22 개정, 7/25 시행)
 - 주된 영업활동의 정지(관리종목 지정) 대상에 분기매출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연중상시심사체계 도입에 따른 서류제출시기 조정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3조 : 2005/12/12 개정 · 시행)
 - 공모 이전에 주식분산요건을 갖춘 기업이 결산확정 이전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사업보고서의 제출시기를 결산확정 이후로 유예 (연중상시심사에 따른 탄력 적용)

- 우회상장시 최대주주변경에 대한 기준 설정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조의2 : 2005/12/12 개정 · 시행)
 - 우회상장시 Lock-up 기간이 가중되는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
 - 합병 및 포괄적 주식교환의 경우
 - 합병 및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가 코스닥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 영업·자산양수의 경우

- 영업·자산양수 신고서 제출일 이후 6월 이내에 비공개법인 또는 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가 제3자배정으로 주식등을 배정받아 코스닥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 주식스왑의 경우

- 자산양수 신고서 제출일 이후 6월 이내에 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가 제3자배정으로 주식 등을 배정받아 코스닥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 매각제한주식의 질권설정을 위한 예외인출 허용 사유 명확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1조 : 2005/12/12 개정·시행)

- 유상증자 대금 마련을 위한 질권설정 허용에 있어서, 주주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만 인정

○ 차명계좌 보유 최대주주에 대한 추가 Lock-up기간 합리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2조 : 2005/12/12 개정·시행)

- 차명 보유분을 포함한 전체 매각제한대상 주식에 대하여 당초 보호예수기간에 1년을 추가하여 적용

○ 외국기업의 제출서류 개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3조의2, 13조, 18조 : 2005/12/26 개정·시행)

- 외국기업의 상장예비심사 청구, 신규상장 및 변경·추가상장시 제출하는 서류를 외국기업의 특성에 맞게 정비

- 투자유의 종목 지정 및 해제시기 정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4조 : 2005/12/26 개정·시행)
 - 거래량 산정기간이 분기로 확대됨에 따라 투자유의종목 지정·해제시기 및 거래량 요건 적용기준 정비
 -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투자유의 종목지정 기준이 완화(2년 2회 → 1년 1.5회)됨에 따라 투자유의종목 지정 및 해제시기 정비
 - 상호저축은행 관련 투자유의종목 지정제도 폐지에 따른 조문정비

- 감사의견에 의한 즉시퇴출제도 개선에 따른 필요사항 정비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9조 : 2005/12/12 개정·시행)
 - 계속기업 불확실성 사유 해소로 퇴출이 유예되는 경우 감사의견 확인 이후 퇴출결정시까지 매매거래정지
 - 감사인의 사유해소에 대한 의견서 서식 신설

- 벤처기업 및 정규시장 퇴출기업의 진입요건 완화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정 3조 : 2005/3/15 개정, 4/1 시행)
 -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벤처기업 및 정규시장 퇴출기업의 진입을 허용

- 소속부 제도의 정비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정 10조의2, 10조의3 : 2005/3/15 개정, 협회장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
 -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에 따라 벤처기업부와 일반기업부로 구분

- 결제전 매매제도 도입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정 24조 3항 :
2005/6/16 개정, 7/4 시행)
 - 투자자의 효율적 위험관리가 가능하도록 매매체결후 결제일(T+2일) 이전에 매매를 허용
 - 기존에는 결제일까지 3일 동안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되었음

- 가격제한폭의 축소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정 26조 2항 : 2005/6/16 개정, 7/4 시행)
 - 호가분산으로 인한 저조한 체결율 개선 및 과도한 가격변동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가격제한폭을 축소
 - 50% → 30%

- 호가단위의 세분화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정 27조 : 2005/6/16 개정, 7/4 시행)
 - 기준가격이 5,000만원 미만인 주권의 호가가격단위를 조정하여 합리적 가격결정기능을 제고
 - 10원 → 5원

- 불합리한 호가의 제한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정 28조 2항 : 2005/6/16 개정, 7/4 시행)
 - 호가제출시점에 가장 높은 매수호가보다 10호가 가격단위 이상 낮은 매도호가, 또는 가장 낮은 매도호가보다 10호가 가격단위 이상 높은 매수호가를 제한
 - 가격과 수량이 일치하는 경우, 매매가 체결되는 전량호가제도 폐지

- “매매거래의 결제”에 관한 조항 신설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정 33조~36조 : 2005/6/16 개정, 7/4 시행)
 - 증권거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매매거래 결제방법에 관한 규정이 증권업감독규정에서 협회규정으로 이관

- 투자유의사항 공시 확대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정 45조 2항 : 2005/6/16 개정, 시행일은 자율규제위원회 부위원장이 별도로 정함)
 -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자본이 잠식된 경우도 투자유의사항으로 공시
 - 기존의 투자유의사항
 - 거래부진 4개월 이상
 - 불성실공시 2회 이상

- 신규지정 후 최초매매거래 기준가격 산정방식의 개선
 -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정 별표1 : 2005/10/5 개정·시행)
 - 기존 액면가액으로 하고 있는 신규지정 후 최초 매매거래 기준가격을 주당 순자산가치로 개선
 - 최근 6월 이내에 공모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공모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고 있음

2. 채권시장

- 채권의 신고매매제도의 확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76조 : 2005/8/26 개정, 8/29 시행)
 - 국채금융대행기관이 국고채 전문딜러와 Repo 거래시 신고매매 허용

- 채권에 대한 기관투자자 결제에 파생결합증권을 추가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23조의5 2호 : 2005/4/19 개정, 4/26 시행)
 - 채권에 대한 기관투자자 결제시에 주가연계증권 외에 파생결합증권을 추가함

3. 파생금융상품시장

- 장외신용파생금융상품 거래의 위험한도 명시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36조의18 4항 : 2005/3/2 개정, 3/29 시행, 2008/3/28일까지 유효)
 - 증권회사의 장외신용파생금융상품의 거래에 따른 거래상대방 1인당 위험액의 한도를 자기자본의 5%로 제한
 - 장외신용파생 금융상품거래를 통한 계열회사 등에 대한 부당한 지원을 방지

○ 파생결합증권의 발행기준 및 기초자산 명시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1조의3
2항·3항 : 2005/3/28 개정, 3/29 시행)

— 주식과 관련된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인을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의 겸
영허가를 받은 증권회사로 한정하고,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을 유가
증권 및 신용위험 외에 외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통화 및
일반상품으로 함

- 파생결합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회사의
업무영역을 확대

○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선물거래법 시행령 6조의2 1항, 6조의3 :
2005/1/27 개정·시행)

—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총적립금액, 회원별 적립률 및 적립방법은 선물시
장에서의 회원별 거래위험, 기타 상황을 고려하여 증권선물거래소가
회원관리규정으로 정함

-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한도에 관한 규정은 폐지

○ 공개된 정보의 범위 (선물거래법 시행규칙 2조 : 2005/1/27 개정·시행)

— 미공개 정보의 이용행위 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개된 정보의 범위
를 규정

- 금감위와 증권선물거래소에 법령에 따라 신고되거나 보고된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로서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비치된
날부터 1일이 지난 정보

-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신문 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신문에 그 내용이 게재된 날부터 1일이 지난 정보
- 전국을 가시청권으로 하는 방송을 통하여 그 내용이 방송된 후 12시간이 지난 정보
- 금감위 또는 거래소가 설치·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하여 그 내용이 공개된 후 24시간이 지난 정보

○ 주식옵션 권리행사시의 결제방식 변경 (선물시장 업무규정 196조 4항 :

2005/7/22 개정, 10/31 이내에서 세척이 정하는 날 시행)

— 주식옵션 권리행사시의 결제방법을 실물인수도방식에서 유동성 제고에 유리한 현금결제방식으로 변경

- 정밀도 높은 헤지의 원활화, 자산운용수단의 다양화 및 연계거래를 통한 주식시장의 유동성 제고 등 주식옵션시장의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함

○ 최종거래일의 거래시간 단축 (선물시장 업무규정 197조 1항 1호·3호 :

2005/7/22 개정, 10/31 이내에서 세척이 정하는 날 시행)

— 현금결제방식의 경우 주식시장보다 늦게 종료할 필요가 없고 주식시장 종가에 미치는 영향의 차단을 위해, 최종거래일의 거래시간을 단축

- 주식시장의 종가 단일가결정을 위한 호가접수시간(14:50 ~ 15:00)의 개시시점인 14시 50분에 주식옵션거래를 종료

- 기초주권 선정대상에서 정리매매종목 제외 (선물시장 업무규정 203조 1항
1호 : 2005/7/22 개정, 10/31 이내에서 세척이 정하는 날 시행)
 - 정리매매종목을 기초주권으로 하는 경우, 주식옵션 상장기간의 한정, 투자자의 불측의 손해가능성, 극히 낮은 프리미엄의 옵션종목 속출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정리매매종목을 기초주권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 현금결제 주식옵션의 4개 결제월 동시상장 (선물시장 업무규정 부칙 2항~4항 : 2005/7/22 개정, 10/31 이내에서 세척이 정하는 날 시행)
 - 현금결제 주식옵션의 상장일에 4개 결제월을 모두 상장하고 기존의 실물인수도 주식옵션 4개 결제월의 최종결제일을 상장일의 전일로 앞당겨 일괄 상장폐지되도록 함
 - 전산시스템의 단순화, 중복상장에 따른 유동성 분산 및 투자자의 혼란 방지

- 3년 국채선물에 협의대량거래 허용 (선물시장 업무규정 25조 5항·6항 : 2005/7/22 개정, 10/31 이내에서 세척이 정하는 날 시행)
 - 3년 국채선물에 협의대량거래를 허용하여, 기관투자자 등 대량거래를 충족시키고 대량거래에 따른 가격급등락을 방지하며, 대량포지션의 원활한 이월(Roll-over)을 가능하게 하여 3년 국채선물시장의 헤지기능을 제고
 - 3년 국채선물 협의대량거래의 가격제한범위는 협의가 완료된 때의 직전 15분간의 최고가격과 최저가격 이내로 함

- 호가잔량기준 5개에서 호가 Tick 기준 5개로 변경 (선물시장 업무규정 231조 1항 3호·6호 : 2005/7/22 개정, 10/31 이내에서 세칙이 정하는 날 시행)
 - 최우선평가가가격을 포함한 호가Tick기준 연속 5개 가격의 호가잔량을 공개
 - 매도 : 최우선매도호가의 가격 및 그 가격에 호가가격단위를 순차적으로 더한 4개 가격의 호가수량
 - 매수 :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 및 그 가격에서 호가가격단위를 순차적으로 뺀 4개 가격의 호가수량

- 금리관련 품목의 연말휴장 (선물시장 업무규정 3조 1항 4호 : 2005/7/22 개정, 10/31 이내에서 세칙이 정하는 날 시행)
 - 거래수요의 부족과 회원업무의 부담에 따라 금리관련 품목도 연말에 휴장

- 대용증권범위에서 투자유의종목 제외 (선물시장 업무규정 54조 1항 1호 : 2005/7/22 개정, 10/31 이내에서 세칙이 정하는 날 시행)
 - 코스닥시장의 투자유의종목 등을 대용증권에서 제외하여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대용증권범위와 균형을 도모하고 결제안전성을 제고

- 미국달러옵션의 권리행사기준 가격 변경 (선물시장 업무규정 123조 : 2005/7/22 개정, 10/31 이내에서 세칙이 정하는 날 시행)
 - 미국달러옵션의 권리행사기준가격을 기존 최종거래일 12시의 환율에서 미국달러옵션의 거래종료시점인 11시 30분의 환율로 변경

- 주식옵션의 실행인수도 관련제도 폐지 (선물시장 업무규정 247조 2항 단서·3항 단서·5항·7항, 251조, 255조 : 2005/7/22 개정, 10/31 이내에서 세척이 정하는 날 시행)
 - 손실발생시 권리행사 허용, 이익발생시 권리행사 포기 및 실행인수도 곤란시의 권리행사제한 제도를 폐지
 - 권리행사시 주권과 그 대가인 권리행사대금의 수수제도를 폐지
 - 결제대용증제도를 폐지

- 스타지수선물거래 제도 (선물시장 업무규정 198조 1항 2호, 214조 2항 2호 : 2005/10/14 개정, 11/7 시행)
 - 선물거래의 대상
 - 지수명칭 : 스타지수
 - 구성종목 :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중 30종목
 - 기준일 : 2003년 1월 2일(기준일의 지수를 1,000포인트로 함)
 - 산출기관 : 거래소
 - 산출방법 : 시가총액방식
 - 1계약의 금액
 - 스타지수에 1만원을 곱한 금액
 - * 스타지수선물거래의 1계약 금액(1,000P×1만원)은 코스닥50선물(100P×20만원)의 1/2, KOSPI200선물(100P×50만원)의 1/5 수준임
 - 여타 제도 : 한국주가지수 200 선물거래와 동일함

구 분	제 도 내 용
결제월	3·6·9·12월
최장거래기간	1년(항상 4개 결제월 존재)
최종거래일	각 결제월의 두번째 목요일
거래개시일	최종거래일의 익일
거래시간	최종거래일이 아닌 날 : 09:00 ~ 15:15 최종거래일 : 09:00 ~ 14:50
호가 종류	지정가·시장가·조건부지정가 및 최유리지정가호가
거래체결방법	개별경쟁거래, 전산거래
거래임의중단	거래소 또는 회원의 시스템 장애시 등
거래필요중단	서킷트브레이크 발동시
선물스프레드거래	종목수는 최근월물과 여타 각 원월물과의 3개 종목 가격 : 원월물 가격 - 최근월물 가격 매도(매수)성립시 원월물 매도(매수)와 동시에 최근월물 매수(매도)된 것으로 함
회원과 거래소간 결제	결제시한 : T+1, 16시 최종결제가격 : 최종거래일의 최종현물스타지수
거래증거금	순위험기준으로 산출하되, 양 지수의 가격상관성을 감안 하여 KOSPI 200 선물거래증거금과 상쇄가능 T+1, 12시까지 거래소에 예탁 전액 대용증권으로 예탁가능
미결제약정 보유한도	순미결제약정 5,000계약(투기포지션 기준)

○ 스타지수선물 결제월의 거래개시방법 (선물시장 업무규정 부칙 4조 :

2005/10/14 개정, 11/7 시행)

— 시행일에 4개 결제월을 동시에 거래개시함

- 2005년 11월 7일에 2005년 12월물, 2006년 3월물·6월물 및 9월물
일괄상장

○ 코스닥50 선물 및 옵션의 상장폐지방법 (선물시장 업무규정 부칙 2조, 3조,
5조 : 2005/10/14 개정, 11/7 시행)

- 시행일 이후에는 새로운 결제월을 상장하지 아니함
- 시행일의 전일 이후 거래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코스닥50선물 또는 코스닥50옵션 결제월의 미결제약정이 없는 날의 익일부터 거래를 하지 아니함(상장폐지)
- 코스닥50선물 또는 코스닥50옵션 결제월이 마지막으로 상장폐지되는 날의 익일부터 코스닥50선물 및 코스닥50옵션에 관한 규정은 삭제되는 것으로 함(2005/10/14 시행)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의 개정 (선물시장 업무규정 부칙 6조 : 2005/10/14
개정, 11/7 시행)

- 코스닥시장의 프로그램매매호가 효력정지제도(Sidecar)는 스타지수선물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스타지수선물과 코스닥50선물이 중복 상장되는 경우 빈번한 Sidecar 발동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중복상장 기간에도 스타지수선물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Sidecar : 스타지수선물의 전일 거래량 최대 결제월(통상 최근월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대비 6%이상 변동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에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을 5분간 정지하여 주식현물시장에의 충격을 완화하는 제도

○ 주식옵션 기초주권의 재무상태 등의 기준 명시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
세칙 70조 : 2005/9/16 개정, 9/26 시행)

- 기초주권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관리종목 제외)으로서 유통주

식수(1,000만주 이상), 소액주주수(10,000인 이상), 거래대금(연간 5,000 억원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권중 시가총액 및 「재무상태 등」을 감안하여 세척에서 정하도록 한 바, 「재무상태 등」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기초주권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함

- 선정일(2005. 5. 2) 직전 3개월 주가평균이 1만원(액면가 5,000원 기준) 이상인 주권일 것
- 선정일 직전 5사업년도의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 50%이상인 법인이 발행한 주권이 아닐 것
- 선정일 직전 5사업년도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적정인 법인이 발행한 주권일 것
- 선정일 직전 5사업년도중에 회사정리절차, 화의, 거래은행 또는 채권금융기관이 경영관리 또는 공동관리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권이 아닐 것

— 시가총액이 큰 순서로 23개 기초주권 추가 선정

- 광범위한 투자자에게 정밀도 높은 헤지 및 자산운용의 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주권중에서 시가총액이 큰 순서로 23개 기초주권을 추가로 선정함

* 종래 7개 기초주권은 대부분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가 보유하고 있어 주식옵션거래의 수요진작에 한계가 있었음

기 존 (7개)	추 가 (23개)
삼성전자, 포스코, SK텔레콤, 한국전력, 국민은행, 케이티, 현대자동차	LG전자, SK, 신한금융지주, 삼성SDI, 케이티앤지, 하나은행, 현대모비스, 기아자동차, LG, 삼성화재, 강원랜드, LG화학, 현대중공업, 한국가스공사, 삼성물산, 삼성전기, GS홀딩스, CJ, 한국타이어, 한진해운, 삼성증권, 대한항공, INI스틸

○ 권리행사가격의 간격 축소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72조 1항 3호 : 2005/9/16 개정, 9/26 시행)

— 종래 권리행사가격간 간격의 최소단위인 100원·250원 및 500원중 250원을 200원으로 축소함으로써 기초주권의 현물가격이 가급적 최고·최저의 권리행사가격(ATM±4)범위내에서 변동하도록 함

< 주식옵션 행사가격 설정간격 >

행사가격(S)	기 존		개 선	
	간격(A)	ATM±4간격(B)/S	간격(A)	ATM±4간격(B)/S
5천원 미만	100원	8.0%~	100원	8.0%~
5천원~1만원 미만	250원	10~20%	200원	8~16%
1만원~2만원 미만	500원	10~20%	500원	10~20%
2만원~5만원 미만	1,250원	10~25%	1천원	8~20%
5만원~10만원 미만	2,500원	10~20%	2천원	8~16%
10만원~20만원 미만	5천원	10~20%	5천원	10~20%
20만원~50만원 미만	12,500원	10~25%	1만원	8~20%
50만원~100만원 미만	2만5천원	10~20%	2만원	8~16%
100만원 이상	5만원	~20%	5만원	~20%

○ 최종거래일 근접시 최근일물의 권리행사가격 특별설정 제한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77조 : 2005/9/16 개정, 9/26 시행)

— 기초주권의 분할·병합, 유·무상증자 등이 있는 경우, 통상 전후의 주식옵션가치가 일치하도록 행사가격 및 승수를 조정하고 동시에 이와 별도로 표준화된 승수 및 행사가격의 간격으로 행사가격을 특별히 설정

- 동일한 행사가격이 2개 이상이 되는 때에는 한개만 설정함
 - 그러나 최근월물의 최종거래일이 속하는 첫영업일부터 최종거래일까지의 기간에 표준 방식으로 행사가격을 특별 설정할 경우 유동성이 분산되고 기 보유 미결제약정의 해소가 곤란하므로 조정만 하고 특별 설정을 하지 않음
 - 기초주권의 현물가격변동에 따라 추가 설정할 경우 조정행사가격의 위 또는 아래에 표준방식으로 설정함
- 기관투자자의 입증 헤지·차익거래의 거래증거금수준 인하 (선물시장 업무 규정 시행세칙 111조 5항·6항 : 2005/9/16 개정, 9/26 시행)
- 적격기관투자자의 입증 헤지거래 또는 차익거래의 거래증거금을 통상보다(10%) 낮은 수준인 8%로 인하하여 기관투자자의 헤지·차익거래 활성화 및 현·선물간 적정 균형가격 발견기능을 제고함
 - 인하 거래증거금의 산출이 용이하도록 기존의 10% 거래증거금액(옵션가격증거금액 + 선물·옵션가격변동증거금액 + 선물스프레드증거금액)의 80%(8/10)와 최소선물·옵션순위험거래증거금 중 큰 금액으로 함
- 인하 거래증거금 계좌의 거래소 신고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08조 2항·3항 : 2005/9/16 개정, 9/26 시행)
- 회원이 인하 거래증거금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인하 거래증거금융 헤지 또는 차익거래 계좌와 함께 이와 연계된 주식계좌를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하여 헤지·차익거래의 입증을 용이하게 함
 - 회원이 인하된 거래증거금을 예탁하는 때에는 헤지·차익거래의 증빙서류(위탁매매의 경우 증빙서류 사본)을 지체없이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함

○ 차근월종목의 시장가호가 입력허용기간 단축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80조 1호 : 2005/9/16 개정, 9/26 시행)

— 차근월종목에 대한 시장가호가 및 시장가호가 성격이 있는 호가(조건부지정가호가 및 최유리지정가호가)의 입력허용시점을 종래 최근월종목의 최종거래일이 속하는 월의 첫영업일에서 최종거래일이 속하는 주의 첫영업일로 변경

- 시장운영결과 최근월종목의 최종거래일이 속하는 월의 초일부터 최종거래일까지의 기간중(9~12일) 초반은 유동성이 극히 낮아 시장가호가의 단점(가격급등락 및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이 종종 발생하나 후반은 어느 정도 유동성이 있어 시장가호가의 장점 발휘 가능 (신속한 거래)

○ 거래증거금 구간수치간 간격 단축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10조 2항 : 2005/9/16 개정, 9/26 시행)

— 위탁증거금과 거래증거금의 구간수치간격을 동일하게 하되, 간격을 1%로 축소하여 증거금 산출의 정확도를 제고함

- 기존에는 거래증거금용 구간수치(11개) 각각의 간격(2% : 거래증거금률 $10\% \times 1/5$)과 위탁증거금용 구간수치(11개) 각각의 간격(3% : 위탁증거금률 $15\% \times 1/5$)의 불일치로 선물·옵션간 적절히 조합된 포트폴리오의 경우 거래증거금이 위탁증거금보다 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었음

○ 거래증거금 관련 기초주권군 분류 및 가격상관율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14조 : 2005/9/16 개정, 9/26 시행)

— 업종별로 위험상쇄를 위한 기초주권군 분류

- 동일업종에 속하는 기초주권은 통상 가격상관성이 높으므로 업종(중분류)을 기준으로 기초주권군을 분류하되, 동일계열사에 속하는 기초주권간에도 높은 가격상관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6개 기초주권군으로 분류함

* 가격상관성이 높은 서로 다른 기초주권옵션의 미결제약정을 반대방향으로 보유할 경우 위험이 상쇄되므로 서로 위험을 상쇄시킬 기초주권군을 선정

중분류업종 등	기초주권군
통신업종군	KT, SK텔레콤
금융업종군	국민은행, 삼성증권, 신한지주
자동차제조업종군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전자제조업종 및 동일계열군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물산, LG전자, LG화학
전기업종군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운송업	대한항공, 한진해운

— 가격상관을 설정

- 동일한 기초주권에 속하는 기초주권간 가격상관율(결정계수 : R^2)은 증거금의 보수적 운영을 위하여 최저율로 함

중분류업종 등	기초주권군	가격상관율
통신업종군	KT, SK텔레콤	30%
금융업종군	국민은행, 삼성증권, 신한지주	30%
자동차제조업종군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25%
전자제조업종 및 동일계열군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물산, LG전자, LG화학	20%
전기업종군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10%
운송업	대한항공, 한진해운	20%

○ 국채선물의 주문가격제한범위 축소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8조 1항 : 2005/9/16 개정, 9/26 시행)

— 착오매매방지를 위하여 설정한 기존 일부 품목의 주문가격 제한범위가 과대 설정되어 제도의 취지달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축소하여 투자자를 보호

• 3년 국채선물 : $\pm 4.00p \rightarrow \pm 3.00p$

• 5년 국채선물 : $\pm 6.00p \rightarrow \pm 4.50p$

○ 3년 국채선물 협의대량거래의 거래가능수량 등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6조 ~ 19조 : 2005/9/16 개정, 9/26 시행)

— 3년 국채선물 협의대량거래의 거래가능수량은 500 ~ 3,000계약으로 정하고, 미국달러선물 협의대량거래의 최대거래수량도 동일하게 3,000계약으로 확대 (18조)

— 협의대량거래의 신청방식이 종전의 팩스신청방식에서 전산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협의대량거래의 신청 종료시간을 14시 30분에서 14시 50분으로 20분 연장하여 협의대량거래의 기회를 확대 (16조)

○ 통안증권금리선물과 5년 국채선물의 거래증거금률 인하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6조 2항 : 2005/9/16 개정, 9/26 시행)

— 통안증권금리선물과 5년 국채선물의 증거금률이 현물시장의 변동성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인하하여 선물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함

• 통안증권금리선물 : 0.3% \rightarrow 0.2%

• 5년 국채선물 : 1.5% \rightarrow 1.2%

- 미결제약정 상계방식의 변경 허용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4조 3항 : 2005/9/16 개정, 9/26 시행)
 - 자동상계방식에서 신청상계방식으로 미결제약정 상계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허용

- 주식옵션 행사신고 의제금액 인하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20조 1항 2호 : 2005/9/16 개정, 9/26 시행)
 - 종래 회원은 거래금액의 일정률로 위탁수수료를 부과하고 현금결제 주식옵션의 경우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음을 감안하여, 권리행사신고 의제금액을 기존 5,000원에서 5원으로 대폭 인하하여 회원의 업무 부담 경감 및 신고누락에 따른 투자자의 손실을 방지

- 대용증권의 범위 확대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9조 1항 5호 : 2005/9/16 개정, 9/26 시행)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각각 대용증권으로 지정된 유가증권은 거래증거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별 대용증권의 범위를 일치시키고 보유유가증권의 활용도를 제고함

- 기존 실물인수도방식의 주식옵션에 대한 호가입력 제한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부칙 3조 : 2005/9/16 개정, 9/26 시행)
 - 실물인수도와 현금결제방식의 주식옵션을 중복 상장할 경우, 一物二價, 유동성분산, 주문착오 등 투자자 혼란, 전산시스템의 비효율의 문제가 있으므로 실물인수도방식의 모든 결제월의 최종거래일을 현금결제방식 시행일의 전일로 앞당겨 일괄적으로 상장 폐지함

- 시행일전에 실물인수방식의 주식옵션 호가의 입력시 반대매매 곤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의 불측의 손해방지를 위하여 시행전 일정기간부터 호가입력을 제한함
- 시행일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부칙 1항 : 2005/11/2 개정, 11/7 시행)
- 스타지수선물시장 개설관련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7일부터 시행
 - 다만, 코스닥 50 선물과 옵션에 관한 규정은 그 결제일이 마지막으로 상장폐지되는 날의 다음날에 삭제
- 호가가격단위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86조 2호, 89조 2호 : 2005/11/2 개정, 11/7 시행)
- 스타지수 선물거래 및 스타지수 선물스프레드거래의 호가가격단위를 각각 코스피200선물(0.05P=25,000원)의 1/5 수준이 되도록 0.50P(5,000원)로 설정함
 - 스타지수선물 1계약의 금액(1,000P×1만원=1,000만원)이 코스피200선물(100P×50만원=5,000만원)의 1/5 수준임을 고려
- 임의적 거래중단 장애발생 주식종목수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00조 3항 2호 : 2005/11/2 개정, 11/7 시행)
- 코스닥시장의 장애발생으로 스타지수 구성종목(30종목)의 50%인 15종목 이상이 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 스타지수선물거래를 중단·정지할 수 있도록 함

- 코스피200선물의 경우 주가지수 구성종목(200종목)의 50%(100종목) 이상에 장애 발생시 거래를 중단·정지할 수 있음을 고려

- 필요적 거래중단 선물가격 급변 기준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02조 1항 1호 나목, 102조 1항 2호 : 2005/11/2 개정, 11/7 시행)
 - 스타지수선물의 선물가격 급변관련 필요적 중단(Circuit Breakers) 기준은 유가증권시장의 Sidecar(5%)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코스피200선물과 같이 6% 이상으로 함

- 계약당 거래증거금액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11조 2항 2호 : 2005/11/2 개정, 11/7 시행)
 - 최소증거금액 산출을 위한 스타지수선물의 계약당 선물거래증거금액은 코스피200선물(5만원)의 1/5인 1만원으로 함
 - 스타지수선물 1계약의 금액($1,000P \times 1\text{만원} = 1,000\text{만원}$)이 코스피200선물($100P \times 50\text{만원} = 5,000\text{만원}$)의 1/5 수준임을 고려

- 계약당 선물스프레드 거래증거금액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11조 3항 2호 : 2005/11/2 개정, 11/7 시행)
 - 스타지수선물의 계약당 선물스프레드 거래증거금액은 코스닥시장의 상관계수(0.283)를 고려하여 코스피200선물(100만원)의 1/2 수준인 50만원으로 함

- 선물거래의 순위험 거래증거금은 대상지수가 10% 변동할 경우 근월물과 원월물 모두 동일한 위험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나 실제 시장에서는 근월물과 원월물의 가격변동폭이 다르므로 선물스프레드 증거금제도를 두고 있음

< 스타지수선물과 코스피200선물의 비교 >

구 분	스타지수선물	코스피200선물
호가가격단위	0.50P	0.05P
임의중단기준 주식시장 장애 종목수	15종목 이상	100종목 이상
Circuit Breakers 발동 선물가격 급변 기준	6% 이상	5% 이상
계약당 거래증거금액	1만원	5만원
계약당 선물스프레드 거래증거금액	50만원	100만원

○ 거래증거금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10조, 111조 : 2005/11/2 개정, 11/7 시행)

- 거래증거금은 주가지수선물·옵션(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옵션 및 스타지수선물)에 관한 거래증거금과 주식옵션에 관한 거래증거금을 별도로 산출한 후 합산한 금액으로 함
- 주가지수상품에 관한 거래증거금은 원칙적으로 옵션에 관한 가격증거금, 선물에 관한 스프레드증거금, 선물과 옵션에 공통적인 가격변동증거금의 합계로 함

- 가격변동증거금의 산출을 위한 스타지수선물의 거래증거금구간수치는 코스피200과 동일하게 최종스타지수, 최종스타지수의 1% 간격으로 최종스타지수에 순차적으로 더한 10개 및 최종스타지수에서 순차적으로 뺀 10개의 총 21개로 함

- 시스템장애로 인한 거래시간의 변경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69조 : 2005/11/2 개정, 11/7 시행)

- 거래소시스템에 10분 이상 장애가 발생하거나 약정수량을 기준으로 75% 이상 회원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 거래소는 거래시간을 변경할 수 있음

- 차익거래 및 헤지거래의 정의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79조 : 2005/11/2 개정, 11/7 시행)

- 주가지수차익거래

- 스타지수와 연동되는 주식집단의 가격과 스타지수선물의 가격과의 차를 이용한 이익목적의 연계거래

- 주가지수헤지거래

- 스타지수와 연동되는 주식집단의 가격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실의 회피·경감을 위한 스타지수선물의 매도 또는 매수

○ 스프레드거래 호가의 입력제한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80조 5호 :
2005/11/2 개정, 11/7 시행)

- 최근월물과 원월물을 동시에 매도·매수하는 선물스프레드거래의 성
질상 스타지수선물 최근월물의 거래시간 종료후(14:50~15:15)에는 스
프레드거래호가의 입력을 제한함

○ 스타지수 선물거래의 기준가격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84조 :
2005/11/2 개정, 11/7 시행)

- 각 결제월별 거래개시일에는 전일 스타지수의 종가지수 등을 기준으
로 산출되는 선물이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함
- 거래개시일 익일부터 최초의 거래성립일까지는 전일의 기세 또는 전
일의 기준가격, 최초의 거래성립일 익일 이후에는 전일의 정산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함

○ 선물가격 급변기준(6%)을 제외한 Circuit Breakers 기준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02조 : 2005/11/2 개정, 11/7 시행)

- 코스닥시장의 단일가호가시간 종료 후 5분 이후부터, 선물가격이 1분
이상 지속하여 기준가격보다 6% 이상 높고(낮고) 현재의 스타지수를
기준으로 산출되는 중단이론가격보다 3% 이상 높은(낮은) 경우에는
스타지수선물거래를 5분간 중단함
- 코스닥지수의 10% 이상 하락으로 코스닥시장 모든 종목의 거래가 중
단되는 경우에는 스타지수선물거래를 20분간 중단함

- 거래종료가 임박한 14시 20분 이후 또는 선물가격 급변으로 스타지수 선물을 중단한 이후 다시 선물가격 급변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타지수선물거래를 중단하지 않음

- 하나은행과 관련된 기초주권의 변경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별표7 의2 : 2005/12/16 개정, 12/19 시행)
 - 기초주권에서 하나은행을 제외하고 하나금융지주를 기초주권에 추가함
 - 주식옵션거래의 대상인 기초주권(30개)에서 하나은행의 주권을 제외하고 하나금융지주의 주권을 기초주권으로 선정함

- 기초주권 선정기준 정비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70조 7항 : 2005/12/16 개정, 12/19 시행)
 - 합병·분할·지주회사의 설립 등으로 재상장·신규상장되는 회사의 재무상태 등 실질적 기준이 종전회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산출기간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기초주권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기존 기초주권의 발행회사가 지주회사의 설립, 합병 등으로 신규상장·재상장되는 경우 재무상태 등이 선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산출기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실질적 기업내용과 무관하게 기초주권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였음

- 사후위탁증거금의 적용품목 확대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28조 5항 :
2005/7/22 개정, 10/31일 이내에 세척이 정하는 날 시행)
 - 국채선물 등 모든 품목에 사후위탁증거금을 허용하여 품목간 제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기관투자자의 선물시장 참여도를 제고함

- 적격기관투자자의 모든 거래유형에 사후위탁증거금 적용 (선물시장 수탁 계약준칙 28조 5항, 54조 2항·4항 : 2005/7/22 개정, 10/31일 이내에 세척이 정하는 날 시행)
 - 적격기관투자자의 모든 거래(헤지·차익·투기거래)에 대하여 사후위탁증거금을 적용함으로써 헤지·차익거래 증빙이 불필요하게 되어 활발한 이용을 기대

- 증빙된 헤지·차익거래의 경우 위탁증거금 차등징수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54조 2항·4항 : 2005/7/22 개정, 10/31일 이내에 세척이 정하는 날 시행)
 - 증빙된 헤지·차익거래에 대해서는 투기거래(15%)보다 낮은 수준(12%)의 위탁증거금을 예탁하도록 함
 - 금융기회비용의 축소, 헤지·차익거래를 통한 선물시장의 유동성 제고 및 현·선물가격간의 적정한 균형 유지

- 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시한 단축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2005/7/22 개정, 10/31일 이내에 세척이 정하는 날 시행)
 - 사후위탁증거금 예탁시한인 익일 12시를 거래종료후 당일중 회원이 정하는 시한으로 단축하여 결제의 안정성 제고 (28조 5항, 54조 2항)

- 사후위탁증거금은 거래가 성립한 날에 적용하므로 추가증거금(마진콜)은 거래가 없는 날에 한하여 적용 (32조 1항, 56조 1항)
 -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추가 위탁증거금 미납시와 동일하게 미결제약정의 반대매매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34조 1항, 57조 1항)
- 사후위탁증거금 미납자에 대한 수탁거부 근거마련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16조 1항 2호 : 2005/7/22 개정, 10/31일 이내에 세칙이 정하는 날 시행)
-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지 않은 적격기관투자자가 주문할 경우 수탁을 거부하도록 하여 결제의 안정성을 제고
- 대용증권 범위에서 투자유의종목 제외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18조 1항 1호 다목·라목 : 2005/7/22 개정, 10/31일 이내에 세칙이 정하는 날 시행)
- 코스닥시장의 투자유의종목 등을 대용증권에서 제외하여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대용증권 범위와 균형을 도모하고 결제의 안정성을 제고함
- 협의대량거래 신청시 위탁증거금 면제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28조 4항 : 2005/7/22 개정, 10/31일 이내에 세칙이 정하는 날 시행)
- 포지션의 이월목적으로 행하는 협의대량거래는 기존 결제월분에 대하여 예탁한 위탁증거금이 타 결제월분으로 충당·대체되는 것에 불과하고 순위험이 증가하지 않으므로 신청시에 위탁증거금을 면제함으로써 거래불편을 해소하여 이용도를 제고

- 회원의 고객 미결제약정 반대매매시 주문유형을 세칙으로 이관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34조 2항, 49조 1항·2항 : 2005/7/22 개정, 10/31일 이내에 세칙이 정하는 날 시행)
 - 고객이 위탁증거금 및 결제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고객의 미결제약정 해소를 위한 (반대매매) 주문의 유형을, 3년 국채선물 등은 수탁계약준칙에서, KOSPI 200 선물 등은 동 시행세칙(52조)에서 정하므로, 소관규정을 시행세칙으로 단일화

- 주식옵션의 현금결제에 따른 불필요한 제도 폐지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66조 2항·3항, 68조, 69조 : 2005/7/22 개정, 10/31일 이내에 세칙이 정하는 날 시행)
 - 손실발생시 권리행사 허용 및 이익발생시 권리행사 포기제도를 폐지
 - 실물인수방식의 경우 권리행사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의결권 등을 위해 권리행사를 할 수 있고,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주가변동으로 주권수령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나, 현금결제시에는 이를 인정할 실익이 없음
 - 권리행사시 주권과 그 대가인 권리행사대금의 수수제도를 폐지
 - 권리행사로 수령할 기초주권의 결제시한전 매도제도를 폐지

- 스타지수선물거래 수탁제도 : 한국주가지수200 선물과 동일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2005/10/14 개정, 11/7 시행)

항 목	주 요 내 용
계좌개설등	· 한국주가지수200선물· 옵션과 통합계좌 사용
기본예탁금	· 1,500만원 이상에서 회원이 정하는 금액
위탁증거금	· 사전위탁증거금(주문시 징수하는 위탁증거금) - 적격기관투자자 이외의 투자자에 적용 · 사후위탁증거금(거래종료후 징수하는 위탁증거금) - 결제이행능력이 충분하다고 회원이 인정하는 적격기관투자자에 적용 · 미결제약정에 대한 위탁증거금은 순위험 기준으로 산출하되, 양지수의 가격상관성을 감안하여 KOSPI 200 선물위탁증거금과 상쇄 가능 · 추가위탁증거금은 T+1, 12시까지 예탁
미결제약정 보유한도	· 순미결제약정 5,000계약(투기포지션 기준)

○ 코스닥50선물 및 옵션 관련조항 폐지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부칙 2항 : 2005/10/14 개정·시행)

— 선물시장 업무규정 개정 부칙 제5조에 의한 결제월이 마지막으로 상장폐지되는 날의 익일에 코스닥50선물 및 옵션에 관한 규정은 삭제되는 것으로 함

○ 시행일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부칙 1항 : 2005/11/2 개정, 11/7 시행)

— 스타지수선물시장 개설관련 개정규정 등은 2005년 11월 7일부터 시행

- 코스닥 50 선물과 옵션에 관한 규정은 그 결제월이 마지막으로 상장폐지되는 날의 다음날에 삭제

- 위탁증거금 총당시의 예탁현금에 전일 대응증권 매도대금을 반영하는 개정규정은 회원의 시스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05년 11월 30일 이내에서 회원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

○ 계약당 선물스프레드 위탁증거금액 등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36조 2항 2호, 37조 3항 2호, 48조 2항 2호 : 2005/11/2 개정, 11/7 시행)

- 스프레드거래의 주문시에 예탁하는 계약당 선물스프레드 위탁증거금액과 선물스프레드 포지션에 대한 계약당 체결선물스프레드 위탁증거금액은 계약당 선물스프레드 거래증거금액과 동일하게 코스피200선물(150만원)의 1/2 수준인 75만원으로 함
- 계약당 선물스프레드 유지위탁증거금액의 최저금액도 동일한 방법으로 코스피200선물(100만원)의 1/2 수준인 50만원으로 함

○ 계약당 위탁증거금액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37조 2항 2호 : 2005/11/2 개정, 11/7 시행)

- 최소증거금액 산출을 위한 스타지수선물의 계약당 선물순위험 위탁증거금액은 코스피200선물(5만원)의 1/5인 1만원으로 함
 - 스타지수선물 1계약의 금액($1,000P \times 1\text{만원} = 1,000\text{만원}$)이 코스피200선물($100P \times 50\text{만원} = 5,000\text{만원}$)의 1/5 수준임을 고려

< 스타지수선물과 코스피200선물의 비교 >

구 분	스타지수선물	코스피200선물
계약당 선물스프레드 위탁증거금액	75만원	150만원
계약당 체결선물스프레드 위탁증거금액	75만원	150만원
계약당 체결선물스프레드 유지위탁증거금의 최저금액	50만원	100만원
계약당 위탁증거금액	1만원	5만원

○ 위탁증거금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32조 2항 2호, 37조 1항, 48조 4항 2호
: 2005/11/2 개정, 11/7 시행)

- 위탁증거금은 주가지수선물·옵션(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옵션 및 스타지수선물)에 관한 위탁증거금과 주식옵션에 관한 위탁증거금을 별도로 산출한 후 합산한 금액으로 함
- 가격변동증거금의 산출을 위한 스타지수선물의 위탁증거금구간수치는 코스피200과 동일한 방법으로 전일의 최종스타지수, 전일 최종스타지수의 1% 간격으로 전일 최종스타지수에 순차적으로 더한 15개(이상) 및 전일 최종스타지수에서 순차적으로 뺀 15개(이상)의 총 31개(이상)로 함
- 유지증거금 산출을 위한 스타지수선물의 유지위탁증거금구간수치는 코스피200과 동일한 방법으로 전일의 최종스타지수, 전일 최종스타지수의 1% 간격으로 전일 최종스타지수에 순차적으로 더한 10개(이상) 및 전일 최종스타지수에서 순차적으로 뺀 10개(이상)의 총 21개(이상)로 함

- 위탁자파약사항에 적격기관투자자 인정여부 등 추가 (선물시장 수탁계약 준칙 시행세칙 4조 1항 6호·7호 : 2005/9/16 개정, 9/26 시행)
 - 선물·옵션계좌개설시 회원이 파약하는 위탁자관련사항(know your customers rule)에 적격기관투자자의 인정여부, KOSPI 200선물·KOSPI 200 옵션 및 주식옵션의 위탁증거금 할인계좌 등 계좌구분을 추가

위탁증거금 계좌 구분	계좌의 성격
사전계좌	모든 유형의 거래 주문시 15% 위탁증거금이 적용되는 선물·옵션계좌
사후 일반계좌	적격기관투자자의 모든 유형의 거래에 대해 15% 위탁증거금을 사후에 징수하는 선물·옵션계좌
사후 할인계좌	적격기관투자자의 입증 헤지·차익거래에 대해 12% 위탁증거금을 사후에 징수하는 선물·옵션계좌

- KOSPI 200 선물 등의 사후계좌 신고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시행세칙 4조 2항 : 2005/9/16 개정, 9/26 시행)
 - KOSPI 200 선물·KOSPI 200 옵션 및 주식옵션의 경우 계좌의 구분에 따라 거래증거금 수준이 상이하므로 회원은 적격기관투자자의 사후위탁증거금계좌를 설정·변경 또는 해지하는 때에는 사전에 그 사실을 거래소에 신고
 - 사후일반계좌 및 사후할인계좌의 헤지거래 또는 차익거래와 연계된 주권계좌도 함께 신고

○ KOSPI 200 선물 등의 수탁거부사유에 사후위탁증거금 관련사항 추가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시행세칙 7조 2항 : 2005/9/16 개정, 9/26 시행)

- 회원의 수탁거부사유에 사전계좌, 사후일반계좌 및 사후할인계좌 등 계좌구분에 부합하지 않는 위탁을 받는 경우를 추가함
- 사후할인계좌(12% 수준)의 경우 차익·헤지거래의 증빙을 하지 않고 또한 15% 수준의 위탁증거금도 예탁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빙을 하거나 15% 수준의 증거금을 예탁할 때까지 회원은 수탁을 거부하도록 함

○ 적격기관투자자의 범위 확대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시행세칙 21조의2 : 2005/9/16 개정, 9/26 시행)

- 사후위탁증거금 적용을 받는 적격기관투자자의 범위를 선물업감독규정상의 범위까지 확대하되, 거래수요 및 결제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자산유동화회사·투자자문회사·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제외하고, 선물업자·우체국예금자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운용자·간접투자자산운용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적격기관투자자의 범위에 추가함
- 상호저축은행, 기금의 관리·운용법인 및 공제사업법인에 적용되는 자산규모 또는 자산운용규모 1,000억원 이상의 요건은 이들 적격기관투자자에 대한 헤지·차익거래의 과도한 제한, 여타 기관투자자와의 형평성 및 사후증거금 적용여부는 최종적으로 회원이 고객의 결제이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점을 감안하여 그 요건을 삭제함

○ 국채선물 등의 사후위탁증거금액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시행세칙 21조
의3 : 2005/9/16 개정, 9/26 시행)

- 국채선물 등의 사후위탁증거금은 신규거래(각 종목의 순미결제약정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가 성립된 적격기관투자자에 한하여 적용함
 - 거래가 전혀 없거나 각 종목의 순미결제약정수량을 감소시키는 거래만 한 경우에는 사후위탁증거금이 적용되지 않고 추가증거금제도가 적용
- 사후위탁증거금은 당일(장종료후)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이 경우 증거금기준가격은 해당 거래일의 증거금기준가격을 적용
- 사후위탁증거금을 적용받는 계좌의 경우에도 장중에는 사전증거금을 적용하는 경우와 동일한 기준으로 인출을 제한하며, 인출가능금액은 사전증거금을 적용하는 경우와 동일
 - * KOSPI 200선물·옵션과 달리 차익·헤지거래에 대한 증거금률 차등은 적용되지 않으며, 차익·헤지거래의 증빙도 불필요

○ KOSPI 200 선물 등의 사후위탁증거금액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시행세칙
37조의2 : 2005/9/16 개정, 9/26 시행)

- 사후위탁증거금은 신규거래(각 종목의 매도·매수별 미결제약정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가 성립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거래가 전혀 없거나 반대매매(각 종목의 매도·매수별 미결제약정수량을 감소시키는 거래)만 한 경우에는 사후위탁증거금이 적용되지 않고 추가증거금제도가 적용
- 15% 수준의 사후위탁증거금은 당일(장종료후)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적격기관투자자의 헤지·차익·투기거래 등 모든 유형의 거래에 적용하여 헤지·차익거래의 증빙 곤란 등에 따른 이용도 저조 현상을 해소

- 증빙된 차익·헤지거래에 대하여는 낮은 수준의 사후위탁증거금(12%)을 적용함으로써 거래비용 축소를 통한 헤지·차익거래의 활성화 및 현·선물간 적정 균형가격 발견 기능을 제고
 - 12% 적용 사후위탁증거금은 산출이 용이하도록 기존의 15% 적용 위탁증거금액(옵션가격증거금액 + 선물·옵션가격변동증거금액 + 선물스프레드증거금액)의 80%(12/15)와 최소선물·옵션위탁증거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함
- 위탁증거금 할인적용 차익·헤지거래요건 등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시행세칙 38조 2항 : 2005/9/16 개정, 9/26 시행)
 - 위탁증거금할인의 차익거래는 현·선물간 적정한 균형가격발견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현·선물간 가격피리기준 및 동시 발주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로 한정
 - 매수차익거래(선물매도와 현물매수)의 경우 직전의 선물가격이 현물가격보다 높고, 매도차익거래(선물매수와 현물매도)의 경우 직전의 선물가격이 현물가격보다 낮을 것
 - 연계되는 현물과 선물의 주문이 동시(시간적 근접성이 가까운 것 포함)에 제출될 것
 - 합성선물의 경우 기초자산·결제월·행사가격이 각각 동일한 옵션의 매도와 매수를 합성한 선물로 한정함
 - 위탁증거금할인의 헤지거래는 매도헤지거래(현물매수와 선물매도)로 한정하여 증빙을 용이하게 함

○ KOSPI 200 선물 등의 차익·헤지거래의 증빙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시행
세칙 38조 4항·5항 : 2005/9/16 개정, 9/26 시행)

— 회원은 위탁증거금할인적용 차익거래 또는 헤지거래의 증빙서류를 당일중 회원이 정하는 시간까지 제출받아 확인·보관하고 그 사본을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함

- 거래소 및 회원은 증빙이 부실한 때에는 증빙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회원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보완하지 않는 경우 포함)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15% 적용 위탁증거금의 예탁 요구
- 미결제약정의 반대매매 또는 대용증권의 매도
- 장종료후의 경우 고객에 대해 사후할인계좌를 사후일반계좌 또는 사전계좌로의 변경 요구, 미결제약정의 사후일반계좌 또는 사전계좌로의 이관 요구

○ KOSPI 200 선물 등의 사후현금위탁증거금액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시행
세칙 45조의2 : 2005/9/16 개정, 9/26 시행)

— 사후현금위탁증거금은 신규거래(각 종목의 매도·매수별 미결제약정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가 성립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거래가 전혀 없거나 반대매매(각 종목의 매도·매수별 미결제약정수량을 감소시키는 거래)만 한 경우에는 사후현금위탁증거금이 적용되지 않고 추가현금증거금제도가 적용

— 5% 사후현금위탁증거금은 당일(장종료후)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적격기관투자자의 헤지·차익·투기거래 등 모든 유형의 거래에 적용

— 증빙된 차익·헤지거래에 대하여는 낮은 수준의 사후현금위탁증거금 (4%)을 적용

- 다만, 산출이 용이하도록 기존의 5% 적용 사후현금위탁증거금액(옵션가격증거금액 + 선물·옵션가격변동증거금액 + 선물스프레드증거금액)의 80%(4/5)와 최소선물·옵션위탁증거금액중 큰 금액으로 함

○ KOSPI 200 선물 등의 장중 사후위탁증거금 지급·충당시 사전증거금액 산출방식 적용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시행세칙 45조의2 : 2005/9/16 개정, 9/26 시행)

— 장중에 사후일반증거금은 사전계좌와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하고 사전할인증거금의 경우 주문분증거금 및 미결제약정분 증거금은 각각 할인하되, 당일옵션순매수금액은 전액 반영함

○ 통안증권금리선물과 5년 국채선물의 위탁증거금률, 계약당 주문증거금 인하 및 유지증거금률의 인하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시행세칙 19조 1항, 20조 1항, 22조 1항 : 2005/9/16 개정, 9/26 시행)

— 통안증권금리선물과 5년 국채선물의 증거금률이 현물시장의 변동성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인하하여 선물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함

품 목	위탁증거금률	계약당 주문증거금	유지증거금률
통안증권금리선물	0.45% → 0.3%	100만원 → 70만원	0.3% → 0.2%
5년국채선물	2.25% → 1.8%	280만원 → 230만원	1.5% → 1.2%

- 롤오버거래에 대한 주문증거금의 면제요건 완화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시행세칙 21조 : 2005/9/16 개정, 9/26 시행)
 - 롤오버 목적의 정형복합주문에 대한 사전증거금 면제요건을 전 품목 및 전 기간으로 확대하고, 동일 목적의 협의대량거래의 신청에 대해서도 사전증거금 면제요건을 마련함

- 기본예탁금 예탁(유예)제도 정비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시행세칙 31조 2항 : 2005/9/16 개정, 9/26 시행)
 - 미결제약정의 전량해소후 익일 12시전에는 선물·옵션기본예탁금의 납부없이도 주문이 허용되고 만약 1계약도 체결되지 않고 익일 12시가 경과된 때에도 예탁의무가 없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익일 12시 후에는 기본예탁금을 예탁하거나 제출된 주문 전부를 취소하도록 함
 - * 기본예탁금은 미결제약정이 없는 위탁자가 주문시에 예탁하여야 하나 미결제약정 전량 반대매매후에는 익일 12시까지 기본예탁금 예탁없이도 주문 허용

- 위탁증거금구간수치의 간격 및 수 변경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시행세칙 32조 2항, 48조 4항 : 2005/9/16 개정, 9/26 시행)
 - 위탁증거금과 유지증거금의 구간수치간격을 동일하게 하되, 간격을 1%로 축소하여 증거금 산출의 정확도를 제고함
 - 종래의 경우 위탁증거금용 구간수치(11개) 각각의 간격(3% : 위탁증거금률 15%×1/5)과 유지증거금용 구간수치(11개) 각각의 간격(2% : 유지위탁증거금률 10%×1/5)의 불일치로 선물·옵션간 적절히 조합된 포트폴리오의 경우 유지증거금이 위탁증거금보다 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었음

○ 위탁증거금 관련 기초주권군 분류 및 가격상관율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시행세칙 : 2005/9/16 개정, 9/26 시행)

- 업종별로 위험상쇄를 위한 기초주권군 분류
- 동일업종에 속하는 기초주권은 통상 가격상관성이 높으므로 업종(중분류)을 기준으로 기초주권군을 분류하되, 동일계열사에 속하는 기초주권간에도 높은 가격상관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6개 기초주권군으로 분류함
 - * 가격상관성이 높은 서로 다른 기초주권옵션의 미결제약정을 반대방향으로 보유할 경우 위험이 상쇄되므로 서로 위험을 상쇄시킬 기초주권군을 선정

중분류업종 등	기초주권군
통신업종군	KT, SK텔레콤
금융업종군	국민은행, 삼성증권, 신한지주
자동차제조업종군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전자제조업종 및 동일계열군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물산, LG전자, LG화학
전기업종군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운송업	대한항공, 한진해운

— 가격상관율 설정

- 동일한 기초주권에 속하는 기초주권간 가격상관율(결정계수 : R^2)은 증거금의 보수적 운영을 위하여 최저율로 함

중분류업종등	기초주권군	가격상관율
통신업종군	KT, SK텔레콤	30%
금융업종군	국민은행, 삼성증권, 신한지주	30%
자동차제조업종군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25%
전자제조업종 및 동일계열군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물산, LG전자, LG화학	20%
전기업종군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10%
운송업	대한항공, 한진해운	20%

- 옵션매수 미결제약정만 보유한 경우의 기본예탁금 인출제도 개선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시행세칙 47조 2항 2호·3항 : 2005/9/16 개정, 9/26 시행)
 - 종래의 경우 옵션의 매수미결제약정보유자가 최저호가가격(KOSPI 200 옵션 : 0.01P, 주식옵션 : 10원)으로 전량 매도주문한 경우에는 익일 12시 이전에 기본예탁금을 인출할 수 있었음
 - 그러나 최저호가한도가격이 최저호가가격단위보다 높은 경우에는 사실상 기본예탁금 인출이 곤란하므로 이 경우에는 최저호가한도가격으로 전량 매도주문한 때에는 인출을 허용하도록 하여 투자자의 편의를 도모함

- 회원의 반대매매시 호가가격의 합리화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시행세칙 49조의2 : 2005/9/16 개정, 9/26 시행)
 - 회원이 결제·추가증거금(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을 불이행한 위탁자의 미결제약정을 접속매매로 반대매매할 경우 상대호가를 기준으로 호가잔량의 유무와 관계없이 최우선호가를 포함하는 연속 10개 가격 범위내의 지정가격으로 하여 상대호가유인에 의한 가격연속성 도모 및 고객의 불측의 손실을 방지함
 - 다만 고객의 동의가 있거나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장가호가를 허용하여 반대매매의 신속성을 도모함
 - * 종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시장가호가이어야 하며 시장가호가가 허용되지 않는 종목의 경우 5개 우선호가의 가격 이내로 함

- 미국달러선물의 정산가격 결정시 회원제시가격 감안 (선물시장 업무규정 위임사항 결정에 관한 기준 2-가 : 2005/6/17 개정, 9/1 시행)
 - 거래시간 종료전 1분간 거래체결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업무규정 59조 3항·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정산가격으로 함
 - 예외적으로 그 정산가격이 미국달러의 현물환거래에서 형성되는 최종환율에 회원이 제시한 가격을 가산한 가격중에서 상하 각 2개의 가격을 제외한 가격의 평균가격(회원제시가격)보다 0.3원 이상 크거나 작은 경우에는 회원제시가격을 정산가격으로 함
 - 회원이 제시하는 가격은 종목별로 적정한 정산가격으로 인정되는 가격에서 최종환율을 차감한 가격으로 함

4. 증권예탁·결제

- 채권에 대한 기관투자자 결제에 파생결합증권을 추가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23조의5 2호 : 2005/4/19 개정, 4/26 시행)
 - 채권에 대한 기관투자자 결제시에 주가연계증권 외에 파생결합증권을 추가함

- 예탁유가증권의 원리금 수령대상에 파생결합증권 관련사항 추가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40조 1항·4항 : 2005/4/19 개정, 4/26 시행)
 - 예탁유가증권의 원리금 수령대상에 파생결합증권의 만기상환액을 추가함

- 예탁증명서 재발행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26조의2 4항 : 2005/7/5 개정, 7/7 시행)
 - 예탁증명서를 발행받은 예탁자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탁원에 예탁증명서의 재발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유는 세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함
 - 예탁증명서의 재발행을 신청받은 예탁원은 그 사유 등을 심사하여 필요한 경우 예탁증명서를 재발행할 수 있도록 함

- 상환주식의 권리행사에 관한 사항 신설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34조 : 2005/7/5 개정, 7/7 시행)
 - 예탁자가 예탁원을 통해 상환주식에 부여된 권리(상환권)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외화통화로 표시된 채권에 대한 예탁수수료의 징수기준 마련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별표 : 2005/7/5 개정, 7/7 시행)
 - 외화표시채권의 경우 외화표시가액에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에서 고시하는 최근거래일의 매매기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거래전문회원의 매매성립내용 통지방법 신설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23조의11 1항 2호 : 2005/9/30 개정, 10/4 시행)
 - 증권선물거래소 거래전문회원의 매매성립시 증권예탁결제원에 매매성립내용을 통지하도록 함

- 증권회사가 예탁한 신탁재산에 대한 예탁수수료 징수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 2005/9/30 개정, 10/4 시행)
 - 증권회사의 신탁업법상 신탁재산에 한하여 당해 증권회사로부터 예탁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함

- 매매성립내용의 통지시한에 관한 규정의 적용대상 조정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8조의3 1항 : 2005/10/4 개정·시행)
 - 매매성립내용 통지시한에 관한 규정의 적용대상인 “거래소의 회원 아닌 증권회사”를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결제업무규정상의 결제 참가자가 아닌 증권회사”로 변경함

- 실질주주명세의 통지기간 단축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31조 1항 1호 : 2005/10/4 개정, 2006/1/1 시행)
 - 정기주주총회 및 중간배당시 이루어지고 있는 당원의 실질주주명세 통지기간을 주주명부 폐쇄기준일부터 “20영업일 이내”에서 이를 “18 영업일 이내”로 단축함

- 결제대금추진제도의 이용요건 완화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8조의10 3항 : 2005/11/8 개정, 11/14 시행)
 - 결제대금차입자는 매수채권에 대한 반대매도거래의 약정이 없더라도 결제대금을 대여받을 수 있도록 함

- 명의개서 대행업무의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의 범위 확대 (유가증권 명의
개서대행 업무규정 2조 3호·4호 : 2005/5/31 개정·시행)
 - 유가증권의 범위에 파생결합증권을 새로 추가함
 - 파생결합증권의 증권용지는 예탁결제원에서 별도로 정함
 - 통일규격 유가증권 취급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유가증권에 추가

- 인감 등 관리업무의 개선 (유가증권 명의개서대행 업무규정 38조 : 2005/5/31
개정·시행)
 - 인감표의 제출수량을 축소함
 - 2매 → 1매
 -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이미 등록된 인감표를 제출한 바 있는 청구인
등이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당해 인감증명서 등에 등록된
인감표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함

- 기본수수료의 징수시기 조정 등 (유가증권 명의개서대행 업무규정 21조 :
2005/9/30 개정, 11/1 시행)
 - 신규로 수탁계약을 체결한 위탁회사의 기본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징수
 - 주권발행의 신청이 있는 경우 : 당해 신청 전까지
 - 그 밖의 경우 : 사무인수일로부터 20일 이내
 - 기본수수료를 미납한 위탁회사의 대행업무 처리요청에 대하여는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인터넷 등을 통한 대행업무 처리의 근거 마련 (유가증권 명의개서대행 업무 규정 81조 : 2005/9/30 개정, 11/1 시행)
 - 증권예탁결제원과 위탁회사·주주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대행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인터넷 등을 통한 대행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증권예탁결제원이 따로 정하도록 함

- 업무처리시스템 운영근거 및 시스템 참가에 관한 사항 (유가증권 명의개서대행 업무규정 시행세칙 26조, 27조 : 2005/10/7 개정, 11/1 시행)
 - 예탁원은 위탁회사 및 주주와 인터넷을 통한 업무처리 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위탁회사는 예탁원소정의 신청서에 의하여 시스템 참가를 신청하고 예탁원은 이를 고려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함

- 전자문서의 작성 및 송수신 등에 관한 사항 (유가증권 명의개서대행 업무 규정 시행세칙 28조 : 2005/10/7 개정, 11/1 시행)
 - 위탁회사는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전자문서가 예탁원의 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상대방이 이를 수신한 것으로 봄
 - 참가자는 권한이 있는 자로 하여금 전자문서 송수신업무를 취급하도록 함
 - 참가자는 전자문서를 송수신한 경우 지체없이 그 결과를 확인하도록 함

- 전자문서의 효력에 관한 사항 (유가증권 명의개서대행 업무규정 시행세칙 29조 : 2005/10/7 개정, 11/1 시행)
 - 전자문서상의 공인전자서명은 직접 날인 또는 서명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을 명시함
 - 전자문서의 내용에 관하여 참가자와 서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시스템에 기록된 전자문서의 내용에 따르도록 함
 - 전자문서가 예탁원에 수신되어 업무처리가 완료된 경우에는 참가자가 이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함

- 예탁자통신시스템운용규정의 준용에 관한 사항 (유가증권 명의개서대행 업무규정 시행세칙 30조 : 2005/10/7 개정, 11/1 시행)
 - 전자서명법 등 관련법령의 준용, 공인인증서의 발급 및 관리, 시스템 운용시간 및 이용의 해지, 참가자의 의무 등 시스템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준용함

- 주주의 인터넷을 통한 주주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유가증권 명의개서대행 업무규정 시행세칙 31조 : 2005/10/7 개정, 11/1 시행)
 -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한 후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 예탁원에 주소변경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담보대상 유가증권의 범위 확대 (담보콜거래관리 업무규정 14조 2호·5호 : 2005/7/5 개정·시행)
 - 상장채권에 국한된 담보대상채권의 범위를 예탁원이 예탁대상으로 지정한 채권으로 확대

- 업무환경 변화 및 새로운 담보대상 유가증권의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이에 관한 위임규정을 마련

○ 예탁외화증권의 대여거래제도의 도입 (외화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34조~34조의7 : 2005/4/19 개정, 4/20 시행)

- 예탁외화증권의 대여조건

- 외국보관기관이 중개하는 대차거래로 당해 외국보관기관이 대여증권의 상환을 보증하여야 함

- 예탁외화증권 대여관리부의 작성 및 비치

- 예탁원은 예탁외화증권을 대여할 것을 통보한 예탁자별로 예탁외화증권 대여관리부를 작성·비치해야 함

- 예탁외화증권의 대여방법 명시

- 예탁외화증권을 대여하고자 하는 예탁자는 그 종목, 종류, 수량 기타 대여조건을 예탁원에 통보해야 함
- 예탁원은 통보내용에 따라 대차중개기관에 예탁외화증권의 대여를 신청함

- 예탁유가증권 대여거래 체결내역의 통지

- 예탁원이 대차중개기관으로부터 대여거래 체결내역을 통보받으면 이를 지체없이 예탁자에게 통보함

- 예탁외화증권 대여거래의 중도상환 및 상환불이행시의 처리

- 예탁자는 예탁외화증권 대여거래의 종료일 이전이라도 중도상환을 신청할 수 있음

- 예탁외화증권 대여거래의 종료일에 대여증권의 상환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예탁원은 상환불이행 사실 및 해당 대차중개기관의 이행보증에 관한 사항을 예탁자에게 통보함
- 예탁외화증권 대여거래와 관련하여 예탁자에게 필요한 정보제공
 - 대여거래의 체결방법, 차입자, 담보제공 등 관련정보를 대차중개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예탁자에게 제공함
- 외화증권 매도대금의 국내송금방법을 일원화 (외화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23조 3항 : 2005/4/19 개정, 4/20 시행)
 - 외국보관기관이 외화증권 매도대금을 국내로 예탁자에게 송금할 경우 당해 예탁자의 외화예금계정으로 직접 이체하도록 함
- 조세관련업무의 범위를 확대 (외화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33조 2항 : 2005/4/19개정, 4/20시행)
 - 원천징수업무에 국한되었던 조세관련업무를 조세업무 전반으로 확대
- 담보관리대상의 확대 (장외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담보관리 업무규정 2조 1항 2호, 3조 1호·2호 : 2005/4/19 개정, 5/2 시행)
 - 담보관리대상에 “미국통화로 된 현금”과 “예금(미국·유럽연합·일본 통화로 표시된 것을 포함)”을 추가

- 상임대리인에 관한 사항 신설 (장외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담보관리 업무 규정 7조, 12조, 22조 1항 : 2005/4/19 개정, 5/2 시행)
 - 참가자가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관련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상임대리인을 둘 수 있도록 함

- 예금의 담보권 설정, 예금담보의 담보권 실행방법, 예금담보의 해지방법 명시 (장외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담보관리 업무규정 11조 1항 2호, 18조 3항 2호, 19조 2항 2호 : 2005/4/19 개정, 5/2 시행)
 - 담보권자를 질권자로 하여 금융기관에 예치된 담보권설정자의 예금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도록 함
 - 채무불이행시 예금담보에 대한 담보권 실행방법은 담보권자와 담보권 설정자가 협의하여 정함
 - 예금담보의 해지방법은 담보권자와 담보권설정자가 협의하여 정함

- 현금·예금담보의 시가평가방법 신설 (장외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담보관리 업무규정 15조의2 : 2005/4/19 개정, 5/2 시행)
 - 담보권자와 담보설정자가 협의하여 정한 방법에 따라 매 영업일마다 다음의 담보를 평가하도록 함
 - 미국통화로 된 현금담보
 - 미국·유럽연합·일본의 통화로 표시된 예금담보

5. 기업공시

- 주식대량보유 보고시 경영권 취득목적 여부의 명시 의무화 (증권거래법 200조의2 1항 : 2005/1/17 개정, 3/29 시행)
 - 주식의 대량보유(주식 총수의 5% 이상 보유) 등의 보고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명시하여 보유목적은 보고하도록 함
 - 보유목적의 경영권에 대한 영향 유무를 기준으로 주식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내용을 차등화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주식대량보유 목적의 변경이 있는 경우의 보고의무화 (증권거래법 200조의2 4항, 200조의3 2항 : 2005/1/17 개정, 3/29 시행)
 - 주식의 대량보유목적의 변경이 있는 경우 5일 이내에 금감위와 증권선물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하고, 보유목적은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하는 자에 대하여 5일 동안 의결권을 제한하며, 주식 등의 추가취득을 금지

- 허위보고 등에 대한 제재 및 처벌 (증권거래법 200조의3 1항, 210조 5호의2 : 2005/1/17 개정, 3/29 시행)
 - 주식대량보유의 보고상황 및 그 변동내용 중 중요내용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기재를 누락한 자에 대하여 위반주식 등에 대한 의결권행사를 제한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 사업보고서 기재방법의 개선 (증권거래법 시행령 83조의3 4항~6항 :

2005/3/28 개정, 3/29 시행)

—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의무가 있는 법인은 사업보고서 작성시 연결재무제표를 주된 재무제표로 하되,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경과 후 30일까지 연결재무제표의 제출을 유예

-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의무가 있는 법인도 개별재무제표를 주된 재무제표로 사용하여 투자자가 회사의 재무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종속회사를 포함하여 충실하고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공시하도록 하여 투자자보호를 강화함

○ 주식 등의 대량보유목적에 따른 보고내용 차등화 (증권거래법 시행령 86

조의7, 86조의9 : 2005/3/28 개정, 3/29 시행)

—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등을 위해 회사나 그 임원에게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주식의 대량보유가 아닌 경우에는 보고내용을 간소화함

- 주식 등의 보유목적에 따라 보고내용을 차등화하고, 보유목적 변경시에도 보고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의 내용과 보고방법의 세부사항을 정함

○ 주식대량보유 등의 보고서 보유목적별 보고사항의 이원화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134조 : 2005/3/28 개정·시행)

— 경영참가 또는 단순투자 등 보유목적에 따른 세부보고사항을 정함

- 경영참가의 경우 보고자의 실체 및 취득재원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
- 보고자가 paper company인 경우 당해 회사 및 자산운용자 각각에 대하여 인적사항 등을 기재
- 단순투자사에는 보유목적 미기재 등 보고부담을 완화

○ 새로운 증권에 대한 유가증권신고서 기재사항 마련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17조, 20조 : 2005/4/27 개정·시행)

-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범위에 상법상 익명조합·합자회사·유한회사의 출자지분증권 및 파생금융상품과 전통적 유가증권의 성격이 결합된 파생결합증권이 추가됨에 따라, 유가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등을 정함

○ 유가증권신고서 등의 공시기간 연장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8조, 33조, 44조, 74조, 96조, 118조, 114조 : 2005/4/27 개정·시행)

- 증권거래법 시행령상 유가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 등의 비치·열람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유가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 등의 공시기간을 연장
 - 등록법인결산서류, 유가증권신고서, 사업설명서, 사업보고서, 합병 등 신고서, 자기주식취득처분신고서 등
 - 증권거래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가능기간(3년)과의 일관성 유지

- 주요 경영사항 신고항목의 축소·정비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68조, 68조의2, 69조, 70조, 71조 : 2005/12/29 개정, 2006/4/1 시행)
 - 상장법인의 주요경영사항 신고항목 중 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법인의 경영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만 존치하고, 기타 시급히 공시할 필요성 및 정보의 중요성이 낮은 사항은 삭제하거나 거래소규정으로 이관 (200개 → 71개)
 - 법령 사항(44개), 회사의 존폐 및 조직변경 관련사항(8개), 기업지배 구조 관련사항(4개), 국내외 동시상장법인의 공시사항(4개) 등 71개 사항은 존치
 - 정기·특수공시 등의 공시사항과 중복되거나 시급히 공시할 필요성이 적은 사항 등 129개 사항은 삭제하거나 거래소규정으로 이관(거래소규정 이관 42개, 자율공시 전환 41개, 삭제 46개)

- 외부평가기관과의 합병비율 평가계약 체결내역에 대한 공시의무 폐지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83조 : 2005/12/29 개정, 2006/1/1 시행)
 -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계약 체결공시는 합병정보의 사전유출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중복적인 공시규제이므로 폐지함

-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의 보고기간 산정 시 토요일 제외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133조 : 2005/12/29 개정, 2006/1/1 시행)
 - 공시서류의 토요 접수제 폐지에 따라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5% 보고)의 보고기간(5일) 산정 시 토요일을 제외

○ 수시공시관련 3개 규정을 통합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 2005/1/21 제정, 1/27 시행)

— 기존의 수시공시관련 규정인 「상장법인 공시규정」, 「자산운용회사 등의 상장법인 의결권행사 등에 관한 규정」 및 「상장법인 등의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의 3개 규정을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으로 통합

- 수시공시 관련 3개 규정을 통합하여, 이용편의성 및 효율성을 제고

○ 수시공시 의무사항의 삭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7조 1항·2항, 11조 : 2005/12/23 개정, 2006/4/1 시행)

— 외환위기 이후 경영투명성 강화에 따라 누적적으로 증가되어온 공시 의무사항 중 중복되는 사항 및 정보가치가 낮은 사항을 삭제 (56개 사항)

- 사업목적 변경·집중투표제(주총의안·결과공시와 중복), 주식관련 사채의 행사가격조정·중도상환(상장규정 신고사항)·발행완료(사후관리), 최대주주등과의 거래 등

○ 수시공시의무 비율기준의 재조정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7조 1항·2항 : 2005/12/23 개정, 2006/4/1 시행)

— 기존 4단계인 공시의무 비율기준을 공시실효성 및 공시항목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2단계(5%, 10%)로 조정 (24개 사항)

- 재무지표의 1%, 3%, 5% → 5%, 10% → 유지

— 누계금액(잔액)기준 공시항목을 건별금액기준으로 변경

- 누계금액(잔액)공시는 공시사항 발생 이후 상당기간 경과 후 공시되어 적시성이 떨어지고 정기보고서의 기재내용과도 중복

○ 자율공시의 확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28조 : 2005/12/23 개정, 2006/4/1 시행)

- 기존 수시공시 의무사항에서 호재성 공시사항 및 중요성이 다소 떨어지는 공시사항 중 자율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을 자율공시로 전환 (43개 사항)

- 장래계획 및 자진공시제도는 자율공시제도로 수용

○ 수시공시업무절차 등 개선

- 분식회계의 거래소 대신공시 삭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5조 : 2005/12/23 개정, 12/26 시행)

- 증선위로부터의 조기 통보채널 불비 및 증권관련 집단소송 등 따른 거래소 개입소지

- 공시위반사실 제보자 포상제도 폐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82조 : 2005/12/23 개정, 2006/4/1 시행)

- 조사권 없는 거래소 입증한계 및 조회공시 등으로 사전해결가능

- 주총개최 결의·결과공시를 익일에서 당일공시로 변경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7조 1항 : 2005/12/23 개정, 2006/4/1 시행)

- 주총결의사항과 중복되는 공시 삭제 등으로 주총공시의 중요성 증대

- 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조회공시위반 제재기준 개선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30조 3호 : 2005/12/23 개정, 2006/4/1 시행)
 - 공시위반 대상을 외부결정사항을 제외한 모든 사항을 적용하는 방식에서 시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한정하는 방식으로 개선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관련 제도 개선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시 매매정지와 중복제재 소지가 있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시 매매정지제도 폐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40조 1항 : 2005/12/23 개정, 2006/4/1 시행)
 - 다만, 투자자보호를 위해 조회공시요구 불응시 매매정지제도 존치
 - 이의신청법인의 공시위원회 출석·의견진술기회 부여 근거 명확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34조 3항 : 2005/12/23 개정, 2006/4/1 시행)
 - 공시위원회 심의기능 강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35조 3항·4항·6항 : 2005/12/23 개정, 2006/4/1 시행)
 -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위반·과실정도, 공시내용의 진실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예고별점을 기준으로 2점 이내의 별점 범위내에서 가중·경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성실공시법인에 대한 별점경감제도 신설 (경감 별점 3점 이내)
 - 공시의무 위반사유에 의한 상장폐지기준 적용시에는 공시위원회 심의절차 의무화

- 불성실공시 미지정 또는 벌점부과 후 1년내 허위증빙자료 등으로 결정의 부당함이 발견될 경우 제재조치 근거 마련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35조 5항 : 2005/12/23 개정, 2006/4/1 시행)
 - 이의신청에 의한 미지정법인으로 한정되어 있는 세척내용을 모든 관련법인으로 확대하면서 규정으로 이관

- 상장외국법인의 수시공시 의무사항 조정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25조 1항·2항·5항 : 2005/12/23 개정, 2006/4/1 시행)
 - 투자자보호 및 역차별 해소를 위해 원칙적으로 국내법인과 동일한 공시의무 부과
 - 주요경영사항공시,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공시 및 자율공시 등
 - 상장외국법인 특유의 공시사항 추가 : 본국 등에서 공개매수·안정조작 발생, 본국 등에서 받은 증권관련제재 원인사유발생 등
 - 공시시한
 - 본국(해외)거래소에 공시하는 사항은 지체 없이 공시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공시의무사항은 국내공시시한 적용(당일 또는 익일)
 - 조회공시
 - 상장외국법인에 부과되는 공시의무사항 및 이에 준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적용하되 답변시한은 1일 이내로 하며, 보도수집범위 조정 근거 마련

- 공시 화폐단위 조정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25조 4항 : 2005/12/23 개정, 2006/4/1 시행)
 - 본국 화폐 및 기준 환율에 따른 한국 화폐단위로 병기

○ 공시대리인의 정의 명확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26조 4항 : 2005/12/23 개정, 2006/4/1 시행)

— 상장외국법인의 경우 공시대리인을 공시담당자로 간주

* 공시대리인 :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자로서 외국법인의 모든 신고에 대하여 당해법인을 대리하는 자

○ 조회공시 관련사항 정비

—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조회공시번복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시사항을 구체적으로 한정함

• 시황변동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 후 15일 이내 매매거래정지 대상 중요정보 등을 공시하는 경우 제재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9조 : 2005/12/27 개정, 2006/4/1 시행)

매매거래정지 사항	증자 또는 감자, 주식의 이익소각, 주식배당,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탈퇴, 주식교환·주식이전, 영업양수도·합병·분할
기타 중요공시사항	자기주식 취득·처분, 매출액의 10% 이상 단일판매계약·공급계약, 주식분할·병합, 자기자본의 5% 이상 출자·출자지분 처분, 현금배당, 간이합병·소규모합병, 상장폐지결정, 주식관련사채·해외 DR 발행결정

— 조회공시 불응시 매매거래 정지신설에 따른 정지기간 명확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16조 3항 1호 : 2005/12/27 개정, 2006/4/1 시행)

• 당해 조회공시요구에 응하여 답변공시하는 때 매매거래 재개
 • 조회공시요구시 매매거래정지대상의 공시사항의 경우 답변공시후 30분 경과 후 매매거래재개

○ 자율공시 관련 공시사항 구체화

- 공시 필요성을 당해법인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자율공시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함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7조의2 : 2005/12/27 개정, 2006/4/1 시행)

14개 사항	<p>기술도입·이전, 자원개발 투자·개발자원 경제성 판명, 특허권 양수·양도, 단기차입금 감소, 파생상품거래 이익발생, 채무면제 이익발생, 회사정리절차 종결·폐지 신청, 재산증여·수증, 상호저축은행 과점주주·BIS비율 하락·재무제표 확정, 합병·영업양수도 등 승인 주총결의의 무효 또는 취소소송의 제기 등,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대여,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개선조치 요구, 금융기관이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받은 때,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p>
--------	---

○ 불성실공시법인 제재 합리화 관련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13조, 13조의2 : 2005/12/27 개정, 2006/4/1 시행)

-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벌점부과 절차 명확화
 -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벌점부과기준”을 “예고벌점기준”으로 하여 거래소 실무자가 부과벌점을 예고하고
 - 당해법인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 예고벌점과 동일한 벌점 부과
 -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 : 예고벌점 또는 당해 예고벌점을 기준으로 가감·조정한 벌점 부과
- 벌점경감의 대상이 되는 성실공시법인의 구체적 기준 명시
 - 최근 5년 이상 공시위반사실이 없는 법인

- 최근 3년 이상 공시위반사실이 없는 법인으로서 다음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 최근 1년간 당해법인 총 공시건수 중 자율공시건수의 비율이 30% 이상이고 그 공시건수가 15건 이상인 법인
 - * 최근 1년간 풍문·보도와 관련한 조회공시 건수가 없는 법인

○ 매매정지·재개 관련 사항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16조 1항 : 2005/12/27 개정, 2006/4/1 시행)

- 영업활동 및 생산활동 관련사항에 대한 매매정지대상 명확화
 - 영업활동 및 생산활동 관련사항 중 정지·중단사항만 매매정지 대상으로 하되,
 - 노사분규·재해발생 또는 생산활동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시적 생산활동 중단은 매매정지대상에서 제외
-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탈퇴전 주식교환·이전이 있는 경우 동일사항에 대한 자회사 편입·탈퇴시 매매정지대상에서 제외

○ 공시시한 관련 사항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25조 : 2005/12/27 개정, 2006/1/1 시행)

- 토요일공시휴무 실시로 일수를 매매거래일 기준으로 계산
 - 주권상장법인의 집단휴가·창사기념일 등으로 인한 회사의 휴무일수는 기간에 불산입
 - 연말 휴장일은 기간에 산입(회사의 휴무일수는 제외)

— 공시운영시한 단축으로 당일·익일공시시한 및 당해 시한종료일이 오
후인 조회공시시한은 당해 시한종료일의 18시를 기준으로 명확화

- 다만, 당일·익일공시시한의 경우 당해 신고사항이 시한종료일 18
시 이후에 발생하는 등 당해법인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익일 07시 20분까지 신고가능

○ 수시공시 의무사항 삭제 및 시장신고 전환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6조 1항·
2항 : 2005/12/27 개정, 2006/4/1 시행)

— 수시공시 의무사항 중 중복되거나 정보가치가 낮은 사항의 삭제 및
사후 관리적 성격의 공시사항에 대한 시장신고 전환

< 삭제 및 시장신고 전환 >

삭제	이익소각을 위한 주식취득 및 주식소각 완료, CB·BW·EB·DR 발행완료, 해외 일반채권 발행결정(완료), 장기차입결정, 회계정책·추정변경 결정, 사업목적 변경, 외부감사 중도해지, 은행거래재개, 법정관리(화의) 종결·폐지신청 및 결정사실 통보 등, 최대주주등과의 거래
시장신고 전환	발행주식총수의 1%이상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전환권·신주인수권·교환청구권 행사, CB·BW·EB 행사 가격(시가하락) 조정, CB·BW·EB 중도상환

○ 수시공시의무 비율조정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6조 1항 : 2005/12/27 개
정, 2006/4/1 시행)

— 종래 3단계인 공시의무 비율기준을 공시실효성, 항목간 형평성 등을
고려 2단계(5%, 10%)로 조정

- 재무지표(자기자본, 자산총액, 매출액)의 3%, 5%, 10% → 5%, 10%
- 누계금액(잔액) 기준 공시항목을 건별금액기준으로 단순화
 - 누계금액공시는 발생 이후 상당기간 경과후 공시되어 적시성이 떨어지고 분기별로 제출되는 정기보고서의 기재내용과도 중복

○ 대규모기업 기준 차등적용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6조 1항 : 2005/12/27 개정, 2006/4/1 시행)

- 코스닥시장의 대규모기업 기준을 기존 자산 2조원(4개사)에서 자산총액 1천억원(103사) 이상(코스닥대기업)으로 변경하여 유가증권시장과 차별
 - 코스닥대기업(자산 1천억원 이상)에 대해 차등적용 하더라도 공시비율기준 적정화를 통하여 신규로 대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추가 공시부담은 없음

○ 자율공시 확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6조 1항, 15조 : 2005/12/27 개정, 2006/4/1 시행)

- 공시의무중 호재성 정보 및 중요성이 다소 떨어지는 사항은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자율공시로 전환하고, 기존 자진공시도 자율공시로 수용
 - 초기 시행에 따른 혼란예방을 위해 자율공시사항은 세칙에 예시적으로 열거
 - 자율공시라 하더라도 공시번복·공시변경·기공시내용 변동의 경우 불성실공시 제재 부과

< 자율공시 전환 >

특히 양수·도, 기술도입계약체결(해지), 자원개발 투자결정·경제성 판명, 단기차입금 감소, 채무면제를 받은 경우, 증여결정·수증사실, 파생상품 거래이익 발생, 관계상호저축은행 관련사항,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 등 조치, 합병·영업양수도 등 무효(취소) 소송제기

- 자기자본 변동분의 적정반영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2조 6항 : 2005/12/27 개정, 2006/4/1 시행)
 - 사업연도 중 합병, 회사분할 등에 따른 대규모 자기자본 변동을 반영

- 고정자산 취득 및 처분 공시대상 축소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6조 1항 : 2005/12/27 개정, 2006/4/1 시행)
 - 가격변동 위험이 커서 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공시건수가 많은 토지, 건물 등 유형자산으로 한정

- 출자 및 출차지분 처분 공시대상 제한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6조 1항 : 2005/12/27 개정, 2006/4/1 시행)
 - 공개매수에 의한 출자, 금융기관의 단기매매증권 취득·처분(담보 등 권리실행을 위한 경우 포함)을 제외

- 조회공시 위반에 대한 불성실공시 및 매매거래정지 제도개선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29조 3호, 35조 1항 5호 : 2005/12/27 개정, 2006/4/1 시행)
 - 시황변동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 후 15일 이내 공시의무사항 발생시
공시번복으로 제재하는 기준을 세척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제재대상을
축소하여 합리적으로 개선
 - 조회공시 요구에 대하여 당해 기업이 불응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 근
거 신설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관련 업무 개선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33조, 33조의2
: 2005/12/27 개정, 2006/4/1 시행)
 - 불성실공시법인의 지정횟수
 - 자율공시 정착을 위해 성실하게 공시하는 기업에 대해 불성실공시
제재(심의)시 감경(영문공시, IR 등 세척반영)
 - 공정공시 및 자율공시 위반에 대하여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횟수를
1/2로 적용
 - 불성실공시법인의 지정절차
 - 불성실공시법인으로 미지정하는 경우 성실공시 이행 촉구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법인의 이의신청시 의견진술권 부여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시 금감위 통보대상을 명확화(공시규정 및 금
감위규정(제6장제2절)의 공통규정사항)

- 소송이 제기된 발행 유가증권의 공시대상 통일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6조 1항 : 2005/12/27 개정, 2006/4/1 시행)
 - 상장 이전 유가증권에 대한 소송제기도 수시공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해당 조문을 명확화
 - 코스닥상장주권 → 상장 또는 상장대상 유가증권

- 시황급변 조회공시 답변시한 연장 및 요구면제 제도 도입 (코스닥시장 공시 규정 12조 2항 : 2005/12/27 개정, 2006/4/1 시행)
 - 시황급변 관련 조회공시 요구시 답변을 위한 충분한 시간부여
 - 반나절 → 익일까지
 - 시황급변 관련 조회공시를 요구한 이후 15일 이내 재차 동일 사유해당시 조회공시 요구 면제

- 기공시내용의 변동사항 미신고시 처리절차 통일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28조, 31조 : 2005/12/27 개정, 2006/4/1 시행)
 - 기공시내용의 변동사항 미신고시 불성실공시 유형(공시불이행 간주)으로 명확화하고 공시시한(원래 공시 시한 적용) 명시

- 공시의무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현지출장 근거 신설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34조 2항 : 2005/12/27 개정, 2006/4/1 시행)
 - 기업의 해당 공시의무 성실히 이행 여부에 대한 실체파악(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의 사실확인 등)이 용이토록 현지출장 근거를 신설
 -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현지방문을 통한 이행점검 제도 시행중

- IR 관련 자료의 신고 등 업무처리 절차 개선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37조 : 2005/12/27 개정, 2006/4/1 시행)
 - IR 관련 신고의 공시기관을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에서 거래소로 변경하고, IR 제공자료의 공정성·객관성 유지 및 공정공시 대상정보의 신고의무 부여

- 상장법인 등에 대한 표창 및 포상제도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43조 : 2005/12/27 개정, 2006/4/1 시행)
 - 코스닥상장기업의 성실공시 풍토정착을 위하여 공시업무 모범기업 및 임·직원의 표창근거 신설

- 공시위원회의 심의기능 확충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44조 1항 : 2005/12/27 개정, 2006/4/1 시행)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지정횟수 심의 이외에 공시제도 및 운영에 관한 의견 제시

- 공시시한 단축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12조 3항 : 2005/12/27 개정, 2006/4/1 시행)
 - 토요일공시 폐지로 인한 조회공시 시한 개선
 - 오전 → 당일오후 / 오후 → 다음날(매매일) 오전

○ 외국기업의 수시공시의무 및 조회공시 적용기준 정비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16조 : 2005/12/27 개정, 2006/4/1 시행)

- 원칙적으로 해외증시 상장여부를 불문하고 국내기업과 동일한 수시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수시공시의무 인정 범위를 기준으로 조회공시 가능토록 개선

○ 외국기업에 대하여 공시대리인 선임 의무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16조의3 : 2005/12/27 개정, 2006/4/1 시행)

- 외국기업에 대하여 공시책임자 외에 공시대리인 선임을 의무화함으로써 전문가의 후견(Sponsor)을 통한 투자자보호 도모
 - 당해 외국기업이 공시대리인에게 대리권한을 부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개선

○ 외국기업 공시서류의 작성방법(공시언어·화폐단위)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16조의4 : 2005/12/27 개정, 2006/4/1 시행)

- 국내 투자자보호를 위해 수시공시의 경우 한글공시를 원칙으로 함
 - 금액표시는 본국통화·원화(환율 포함) 표시 병기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본국통화 표시 허용

○ 외국기업에 대한 공시시한의 탄력적 운용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16조의5 : 2005/12/27 개정, 2006/4/1 시행)

- 공시신고 시한은 공시사유 발생 시점의 국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당해 외국기업의 시차를 고려하여 공시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명확화

○ 외국기업의 불성실공시 적용예외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16조의6 :

2005/12/27 개정, 2006/4/1 시행)

- 국내기업에 준하여 처리하되, 외국기업의 지리적 여건·본국의 관습 등 고려하여 불성실공시 적용예외 가능

○ 조회공시 요구대상 풍문·보도 등 범위 명확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6조 2항·3항 : 2005/12/27 개정, 2006/4/1 시행)

- 조회공시 요구대상 풍문·보도 등을 거래소가 수집한 내용 및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지(경제지)에 게재된 기사로 명확화
- 토요일 폐지로 조회공시 요구·답변이 불가능한 토요일을 요구·답변시한 산정시 제외

○ 조회공시 반복에 대한 제재기준 완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8조 : 2005/12/27 개정, 2006/4/1 시행)

- 시황변동에 대한 조회공시 반복시 제재기준(공시반복)을 매매거래정지 대상 중요정보 등으로 한정
 - 시황변동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후 15일 이내 매매거래정지 대상 중요정보 등 공시하는 경우 제재

< 매매거래정지 대상 중요정보 등 >

매매거래 정지대상	증자·감자, 이익소각, 주식배당,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탈퇴, 주식교환·이전, 영업양수도·합병·분할
기타 중요정보	자사주 취득·처분, 매출액의 10%이상 단일판매계약·공급계약, 주식분할·병합, 자기자본의 5%이상 출자·출자지분 처분, 현금배당, 간이합병·소규모합병, 상장폐지 결정

- 조회공시 불응시 매매거래정지 신설에 따른 정지기간 명확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11조 2항 4호 : 2005/12/27 개정, 2006/4/1 시행)
 - 위반사실 확인시점부터 조회결과를 공시한 후 60분이 경과한 후 매매
거래를 재개
 - 다만,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종료 9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매매거래 재개, 당일 정규시장 개시 이전인 경우에
는 당일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 후 60분이 경과한 후 재개

- 자율공시 대상 공시의무사항의 예시적 열거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6조의2 : 2005/12/27 개정, 2006/4/1 시행)
 - 공시의무 중 호재성 정보 및 중요성이 다소 떨어지는 사항은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자율공시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초기 시행에
따른 혼란예방을 위해 예시적으로 열거

< 자율공시 대상 공시의무사항 >

예시적 열거 (8개 사항)	특허권 및 중요한 자산 양수·도, 기술도입·이전 계약체결·해지, 자원개발 투자결정, 재무상태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칠 단기차입금 감소·채무면제 받은 때·증여·수증·파생상품 이익, 상호저축은행 과 점주주·BIS비율 8%미만 하락·재무제표 확정·소 송제기 등,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개선권고·요구· 명령, 합병·영업양수도 등 승인 주총결의의 무효 또는 취소 소송의 제기 등
-------------------	---

- 반기 자본전액잠식 사실 및 분식회계 공시시 매매거래정지 신설 (코스닥 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11조 1항 : 2005/12/27 개정, 2006/4/1 시행)
 - 반기말 자본전액잠식 사실을 공시하는 경우 중요내용 공시에 준하여 매매거래정지 신설
 - 분식회계에 대한 거래소의 대신공시 및 관리종목 지정제도 폐지에 따라 해당 사실을 당해 기업이 공시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주의환기토록 매매거래정지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시 매매거래정지 폐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11조 2항 5호 : 2005/12/27 개정, 2006/4/1 시행)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시의 매매거래정지(60분)는 해당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의 제재이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시의 매매거래정지(1일)와 중복제재이므로 폐지

- 최대주주 변경시 상세정보 추가요구 및 매매거래 재개시기 연장 제도 폐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11조 4항 : 2005/12/27 개정, 2006/4/1 시행)
 - 변경후 최대주주에 대한 추가 상세정보 요구 및 동 상세정보 제공시까지 매매거래를 재개하지 않는 기존 제도를 폐지
 - 공시실무상 코스닥상장법인이 변경 후 최대주주에 대한 상세정보를 현실적으로 알 수 없는 경우까지도 매매거래가 재개되지 않는 불합리 제거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횟수 세분화 및 성실공시 기업에 대한 제재 가중·감경 제도 도입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별표1 : 2005/12/27 개정, 2006/4/1 시행)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횟수 결정시 가중·감경의 범위 및 제재의 최대·최소한도를 명확화

- 가중·감경의 범위 : 0.25회 기준
- 제재의 최대·최소한도 : 1.25회~0회

— 위반의 동기 및 중요성을 기준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횟수 부과범위를 개선

- 3단계(1회, 0.5회, 0회) → 5단계(1회, 0.75회, 0.5회, 0.25회, 0회)

< 제재 심의기준표 >

위반의 동기 / 위반의 중요성	고의·중과실	과실	단순착오
중대한 위반	1회	0.75회	0.5회
통상의 위반	0.75회	0.5회	0.25회
경미한 위반	0.5회	0.25회	0회

— 성실공시 관행 정착을 위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횟수 결정시 제재 감경 기준 신설

- 최근 2년간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
- 최근 1년간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없는 법인이 다음의 1에 해당시
 - * 최근 1년간 총 공시건수 중 자율공시 건수의 비율이 30%이상이거나 15건 이상

- * 최근 3년간 공시업무 또는 IR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상 경력이 있는 법인
- * 최근 1년간 풍문·보도 등과 관련하여 조회공시 건수가 없는 법인
- * 최근 1년간 영문공시 건수의 비율이 당해 법인의 전체 공시건수 대비 10%이상이거나 10건 이상인 법인
- * 최근 1년간 IR 개최사실을 거래소에 신고한 횟수가 2회 이상인 법인

— 성실공시 관행 정착을 위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횟수 결정시 제재 가중 기준을 신설

-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으로 거래소가 성실공시 이행촉구 등 조치하였으나 그 후 6월내 재차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는 경우
- 최근 1년간 규정 제36조, 제38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법인의 이의신청시 의견진술권 보장에 따른 관련 서식 개정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공시서식 2 : 2005/12/27 개정, 2006/4/1 시행)

— 이의신청 법인의 의견진술권 보장이 공시규정에 명문화됨에 따라 이의신청서 제출시 의견진술권을 행사할 것인가의 여부를 표시토록 개선

○ 공시운영시간 단축에 따른 공시신고기한 등 개선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14조 : 2005/12/27 개정, 2006/4/1 시행)

— 연말 휴장일(1일)은 매매일이 아니지만 공시기간 계산시 이를 산입토록 명시하여 투자자보호를 도모

— 공시운영시간 단축으로 당일·익일공시, 조회공시 답변시한 등 공시시한은 18시를 기준으로 함을 명시

- 다만, 의결권행사 공시의 경우 자산운용회사의 업무 특성 등을 고려 신고시한을 전자공시시스템 운영시간까지로 연장

* 전자공시시스템 장애 및 공시처리시간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시시한(18:00, 7:20)을 연장하여 운영 가능토록 개선

○ 외국기업 조회공시 요구대상 “보도”의 범위 한정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6조의3 : 2005/12/27 개정, 2006/4/1 시행)

— 외국기업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대상 중 “보도”의 범위는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거래소가 수집한 내용 및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지(경제지)에 게재된 기사로 한정

○ 외국기업 주권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신고사항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6조의4 : 2005/12/27 개정, 2006/4/1 시행)

— 공시규정 제17조의 시장신고사항

— 외국주식예탁증서 발행에 따른 예탁기관 또는 예탁계약 내용 변경

— 외국주식예탁증서의 실질소유자 명부가 작성되었을 경우

— 외국주식예탁증서의 외국주권 전환청구로 인하여 외국주식예탁증서의 수가 변경되었을 경우

- 외국기업 공시(금액표시)에 적용될 기준 환율 마련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6조의5 : 2005/12/27 개정, 2006/4/1 시행)
 -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고시되는 매매기준율 및 재정된 매매기준율로 금액표시하여 공시토록 함

- 공시대리인 대리권한 수여에 관한 입증서식 마련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공시서식 4 : 2005/12/27 개정, 2006/4/1 시행)
 - 공시대리인 선임(변경 포함)시 외국기업이 당해 공시대리인에게 대리권한을 부여하였음을 증명할 입증서류를 신설

- 토요일공시 휴무에 따른 신고시한 조정 (공정공시 운영기준 7조 : 2005/12/27 개정, 2006/1/1 시행)
 - 매매거래시간 이전에 간담회 등을 통한 중요정보를 제공하거나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신고시한에서 토요일 관련사항을 삭제

II. 증권산업

1. 증권회사

가. 진입규제

○ 증권회사 지배주주의 변경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승인

(증권거래법 32조의3 : 2005/7/29 개정, 2006/1/30 시행)

- 증권회사 주식의 취득으로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충분한 출자 능력을 갖추어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없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감독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명령을 할 수 있음

○ 합병 및 영업양수도 (예비)인허가 신청시 연명신청 근거마련

(증권업 감독규정 1-3조, 1-7조 : 2005/4/27 개정 · 시행)

- 증권회사가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시 그 상대방이 금융기관인 경우 당사자가 연명으로 (예비)인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나. 영업 · 상품규제

○ 증권회사의 겸영업무 범위의 확대 (증권거래법 시행령 36조의2 : 2005/3/28 개정, 3/29 시행)

— 증권회사의 업무기반을 확대하고 영업의 자율성을 제고

- 증권회사에 대하여 신탁업과 장외파생금융상품의 겸영 허용
- 장외파생금융상품의 겸영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 삭제
- 투자일임업 · 투자자문업 겸영시 수수료 징수제한 규정 삭제

○ 증권회사의 고객에 대한 재산상이익의 제공한도 신설 (증권업 감독규정 4-8조 : 2005/4/27 개정 · 시행)

— 증권회사의 영업자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경품 등 재산상이익의 제공을 허용함

- 고객 1인에게 1년간 제공되는 재산상이익의 합계액은 증권회사가 직전 사업연도 중에 당해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수수료의 10% 이내
- 고객 전체에게 1사업연도 동안 제공하는 재산상이익의 합계액은 증권회사의 직전사업연도 중 당해영업에서 발생한 수수료수익의 1% 이내
- 재산상이익의 범위는 물품, 금전, 할인권, 상품권 등으로 함

- 투자자집단의 대표투자자계좌 운용방식의 확대 (증권업 감독규정 7-8조 : 2005/4/27 개정·시행)
 - 증권회사 명의의 통합계좌(외국인거래전용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한 후, 투자집단 소속 펀드별로 배분하는 방식도 허용
 - 다수의 펀드로 구성된 투자자집단내의 특정펀드의 계좌를 대표투자자계좌로 정하여 다수 펀드의 주문을 일괄처리하는 기존의 방법은 계속 유지

- 투자자집단의 가격배분방식의 명확화 (증권업 감독규정 7-8조 : 2005/4/27 개정·시행)
 - 증권회사가 투자자집단의 일괄주문을 받아 체결한 경우, 사전에 합의된 가격(예: 거래량 가중평균가격)으로 개별 외국인계좌에 각각 배분할 수 있도록 함

- 투자자집단 신고제도 간소화 (증권업 감독규정 7-10조 : 2005/4/27 개정·시행)
 - 외국인이 투자자집단제도 이용시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증권회사에 신고하도록 하며, 증권회사가 투자자집단의 여부 등을 확인·관리하도록 함

- 조사분석자료의 공표와 자기매매금지 관련규제의 보완 (증권업 감독규정 4-7조 : 2005/4/27 개정·시행)
 - 증권회사는 조사분석자료 작성과정에 참여한 자에게 공표후 24시간 전까지는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거래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조사분석자료의 작성과정에의 참여하지 못하도록 함

- 최선의 매매거래 집행기준의 완화 (증권업 감독규정 4-25조 : 2005/4/27 개정·시행)
 - 증권회사가 장외에서 고객의 유가증권 매매거래를 수탁·중개·대리할 경우 2인 이상의 업자로부터 호가를 확인해야 최선의 매매거래를 집행한 것으로 인정하던 조항을 삭제
 - 유가증권 거래여건의 변화로 규제의 현실성이 저하됨

- 일반투자자의 투자대상 외화증권의 범위 확대 (증권업 감독규정 5-73조 : 2005/4/27 개정·시행)
 - 외국주가연계증권은 국내 ELS와 성격이 유사하고 외국 ELS와 유사한 성격의 파생상품형 수익증권이 일반투자자의 투자대상으로 이미 허용된 점 등을 감안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대상 외화증권에 추가

- 합병증권회사의 종합금융업무 겸영기간을 연장 (증권업 감독규정 1-11조 : 2005/6/29 개정·시행)
 - 합병증권회사의 종합금융업무 겸영기간을 7년에서 금산법이 허용하고 있는 10년으로 연장
 - 우리투자증권과 동양종합금융증권은 과거 종합금융회사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계열 종합금융회사를 합병하여 7년 동안 종합금융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바, 이들이 계속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금융회사의 업무위탁에 대한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 규제방식(negative system)의 도입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3조 : 2005/7/27 개정·시행)

- 금융회사의 업무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다음의 업무위탁은 금지
 -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 관련법령에서 금융기관이 수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 금융기관의 건전성·신인도를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 및 금융이용자의 피해발생이 심히 우려되는 경우
- 본질적 요소를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기타 사항은 원칙적으로 위탁을 허용하여, 감독당국의 재량에 의한 판단을 배제
 - 금융회사의 입장에서 구체적 업무의 위탁가능성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 업무위탁대상에 후선·지원업무의 추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2조 : 2005/7/27 개정·시행)

- 후선·지원업무 위탁에 대한 정책의 일관성·투명성 및 금융회사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업무위탁에 대한 정의조항을 신설하여 후선·지원업무를 대상업무에 포함
 - 업무위탁 : 금융기관이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 제 3자의 용역 또는 시설 등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행위
- 후선·지원업무에 대해 원칙적으로 위탁을 허용하되, 관련법령에서 금융기관이 수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거나, 금융이용자의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

- 개인에 대한 업무위탁의 명시적 허용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2조 : 2005/7/27 개정·시행)
 - 업무위탁대상을 제3자(개인 포함)로 명시하여 규정해석상의 혼란을 예방하고 위탁범위의 확대를 도모

- 보고생략 대상의 명확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4조 : 2005/7/27 개정·시행)
 - 주된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 대한 업무위탁시 보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에 명시

- 중요사항에 대한 사전보고제 확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4조 : 2005/7/27 개정·시행)
 - 부적절한 업무의 위·수탁의 사전방지 등 감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새로운 유형의 업무위탁에 대해서는 사후보고제를 사전보고제로 전환

- 약식보고 실시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4조 : 2005/7/27 개정·시행)
 - 보고누락을 방지하고 상시감시를 원활히 하기 위해 기존의 보고생략 대상 업무위탁에 대해 반기별로 약식보고하도록 함
 - 별도의 첨부자료 없이 정해진 보고양식에 의거하여 계약이유 등을 약술하여 보고

- 업무 위·수탁 운영기준(금융회사 내부지침) 마련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3조의2 : 2005/7/27 개정·시행)
 - 업무 위·수탁에 따른 리스크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해 금융회사가 업무 위·수탁 운영기준을 마련·운영하도록 함
 - 업무위탁규정에 제시된 업무 위·수탁기준을 반영하고 각 금융권역 별 특성 및 위탁대상자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마련

- 업무수탁에 대한 감독 보완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5조 : 2005/7/27 개정·시행)
 -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신인도 저해, 금융질서의 문란, 금융이용자의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업무수탁을 제한
 - 금감원장이 변경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증권회사 주문수탁제도의 개선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2조, 84조 : 2005/5/13 개정, 5/30 시행)
 - 거래량 가중평균가격(VWAP) 등 특정가격수준을 목표로 매매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주문유형을 허용
 - 원칙적으로 미수위탁자에 대하여 금지했던 신규주문의 수탁 및 현금·유가증권의 인출을 증권회사가 약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 장외파생금융상품의 취급자격요건 폐지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4-19조 : 2005/1/20 개정·시행)
 - 장외파생 금융상품의 매매거래에 관한 투자상담을 선물거래상담사 자격소지자로 제한한 실익이 없으므로 당해 취급자격요건을 폐지함

- 등록전문인력의 조회시스템 구축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4-28조 3항 : 2005/1/20 개정·시행)
 - 일반투자자들이 등록전문인력 해당여부를 증권업협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
 - 무자격 투자상담행위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회사 및 증권업 종사자가 입을 수 있는 선의의 피해를 예방

- 종합자산관리계좌(Wrap Account) 편입주권의 범위 확대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2-26조 3항 : 2005/2/17 개정, 2/24 시행)
 - 증권회사가 5% 이상 소유하고 있는 주권 중 고객계좌에 편입할 수 있는 주권의 범위를 확대
 - 기존의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의 주권(뮤추얼 펀드)에,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권 및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의 주권을 추가함

- 홈쇼핑광고시의 준수사항 신설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3-16의2 : 2005/2/17 개정, 2/24 시행)
 - 고객과의 대면접촉 없이 장시간 동안 증권회사의 광고내용만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홈쇼핑광고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홈쇼핑채널을 통한 금융상품 광고시의 주요한 준수사항을 마련함

- 녹화방송 형태로만 광고를 하고 방송내용을 녹화·보존할 것
- 광고내용에 대한 설명은 당해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직접할 것
- 고객의 주문전화 등은 증권회사의 영업점을 이용하도록 할 것
-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은 가급적 광고내용에 포함하지 말 것
- 매매거래의 위험성 등을 고지하여야 하는 광고인 경우 시청자가 총 광고시간의 3분의 1이상의 시간동안 위험고지 내용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할 것

○ 광고의 종류별로 심의결과의 유효기간을 명시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3-24의2 : 2005/2/17 개정, 2/24 시행)

— 증권회사가 광고예정기간을 장기로 설정하면, 심의 당시에는 적정하였더라도 실제 광고가 이루어지는 시기에는 법령에 저촉되거나 사실에 배치될 소지가 있으므로, 광고의 종류별로 당해 광고의 사용가능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유가증권 등의 운용실적이나 수익률·수수료·증거금·대출 등 수량적 문구가 포함되어 변동성을 감안한 광고의 적시성 확보가 요구되는 광고 : 3월
- 채권, ELS, 펀드Wrap, 선박펀드 등 금융상품의 판매안내와 관련된 광고 : 6월 (단 금융상품 판매광고 내에 수익률이나 운용실적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3개월)
- 회사 및 영업점 등의 대고객 이미지 제고를 위한 광고 : 2년
- 기타 이상의 유효기간을 광고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광고 : 협회가 별도로 통보
- 상기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 광고의 경우에는 짧은 유효기간을 적용함

- 자율규제위원회의 광고심의·의결 근거 마련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3-17조 3항 : 2005/2/17 개정, 2/24 시행)
 - 자율규제위원회가 증권회사간의 공정거래질서 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광고를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함
 - 광고심의위원회는 위험고지 및 경고문구 등 광고내용의 적정성 심의를 주요업무로 하고 있음

- 자산관리자에 대한 문화상품권 제공허용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1-24조 : 2005/9/7 개정, 9/20 시행)
 - 증권회사의 마케팅활동 지원과 식사·향응 등에 비하여 그 성격이 건전한 점 등을 감안, 예술공연 및 운동경기 관람 등과 관련된 문화상품권의 제공을 허용

- 채용금지 대상자 중 자격시험 부정행위자 제외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4-4조 : 2005/9/7 개정, 9/20 시행)
 - 전문인력 자격시험과 관련된 부정행위의 경우 증권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가 아니므로 증권회사의 채용금지 대상에서 제외

- 사면근거 신설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6-6조의3 : 2005/9/7
개정, 9/20 시행)
 - 정부 또는 감독기관의 사면조치 등으로 증권업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권업협회가 부과한 제재기록 및 제재효과 등을 소멸시킬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

- 인프라펀드 주권의 종합자산관리계좌 편입허용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2-26조 3항 : 2005/9/7 개정, 9/20 시행)
 -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경우 수익구조 등이 채권과 유사한 점을 감안, 종합자산관리계좌 편입을 허용

- 영업보고서 양식의 개선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별지 4호 서식 : 2005/10/5 개정, 10/10 시행)
 - 정보이용자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보제공과 회원사 영업보고서 작성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영업보고서의 양식을 매분기마다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는 “사업보고서” 및 “업무보고서”의 양식과 일치시킴

- 파생금융상품거래설명서의 개별주식옵션의 실물결제 관련조항 삭제 및 현금결제 설명 추가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별표3 : 2005/10/5 개정, 10/10 시행)
 -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선물시장 수탁계약규정 시행세칙”이 개정되어 개별주식옵션이 실물결제에서 현금결제로 변경됨에 따라, 파생금융상품 거래설명서상의 개별주식옵션 내용을 삭제 및 변경함

- 증권투자상담사의 업무범위에 주식워런트증권 추가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4-19조, 1-8조 : 2005/12/7 개정, 12/8 시행)
 - 주식워런트증권의 법률체계 및 매매거래 방식 등의 주식과의 유사성 등을 고려, 주식워런트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투자상담 및 권유 등을 증권투자상담사의 업무로 규정함

- 아울러 주식워런트증권의 매매거래의 특성 및 위험성 등에 대한 고객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일반고객에 대한 주식워런트증권 거래설명서의 교부 및 위험고지를 의무화

○ 조사분석자료의 범위확대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1-12조 : 2005/12/7 개정, 12/8 시행)

- 주식옵션의 기초자산이 상장주식인 점과 가격변동이 당해 주식의 가격 및 당해 주식 발행기업의 경영실적 등에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점 등을 감안
 - 주식옵션을 조사분석자료와 관련된 협회규정의 적용범위내로 편입함

○ 조사분석자료 공표 제한범위 확대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1-15조 : 2005/12/7 개정, 12/8 시행)

- 증권회사의 조사분석자료 공표 제한범위에 자기가 발행한 주식과 자기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을 추가
 - 증권회사가 조사분석자료를 통하여 자기가 발행한 주식 등의 매매거래를 권유하는 경우 증권회사와 투자자간에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행할 수 있음

○ 미수발생 위탁자로부터의 주문수탁 자율화 (증권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칙 4조 : 2005/9/7 개정, 9/20 시행)

- 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에 따라 미수발생 위탁자에 대한 주문수탁 거부 및 현금·유가증권 인출제한 여부 등을 증권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변경

- ECN시장 관련조항 삭제 (증권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칙 1조, 8조 : 2005/9/7 개정, 9/20 시행)
 - ECN시장에서의 매매거래기능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시간 외시장으로 수용됨에 따라 ECN 시장 관련 조항 삭제

- 프리보드 지정주식의 반대매매시 매도호가 제한 완화
(증권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칙 8조 : 2005/9/7 개정, 9/20 시행)
 - 프리보드 지정주식의 가격제한폭이 기준가격의 30%로 개정된 점을 감안, 결제불이행시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반대매매 호가범위를 100분의 85 이상에서 100분의 70 이상으로 개정

- 사후위탁증거금 예탁시한 단축 (증권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칙 4조 : 2005/10/5 개정, 10/10 시행)
 - 사후위탁증거금 예탁시한을 익일 12시에서 거래종료 후 당일 중 증권회사가 정하는 시한으로 단축하여 결제안전성을 제고

- 사후위탁증거금 적용범위 확대 (증권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칙 4조 : 2005/10/5 개정, 10/10 시행)
 - 사후위탁증거금의 적용범위를 기존 “증빙된 헤지·차익거래”에서 “회사가 결제이행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적격기관투자자의 모든 거래(헤지·차익·투기거래)”로 확대

- 위탁증거금 차등징수 (증권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칙 4조 : 2005/10/5 개정, 10/10 시행)
 - “증빙된 헤지·차익거래”에 대하여는 투기거래(15%)보다 낮은 수준 (12%)의 위탁증거금을 적용토록 하여 금융기회비용 축소 및 헤지·차익거래를 통한 현물시장의 유동성 제고 도모

- 사후위탁증거금 미납자에 대한 수탁거부 근거마련 (증권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칙 5조 : 2005/10/5 개정, 10/10 시행)
 - 회사가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지 아니한 적격기관투자자의 주문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 반대매매시 호가방법 변경 (증권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칙 7조 : 2005/10/5 개정, 10/10 시행)
 - 위탁자가 결제금액 또는 추가증거금(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지 아니하여 회사가 당해 위탁자의 미결제약정을 반대매매하는 경우, 호가방법을 최우선평가를 포함하는 연속 10개의 가격범위내에서 지정가호가 (또는 조건부지정가호가)로 변경
 - 다만, 고객의 동의가 있거나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장가 호가를 허용하여 반대매매의 신속성 도모

- 위탁자 예탁유가증권의 임의처분시의 수량 및 순서 명시 (증권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칙 별표1 : 2005/10/5 개정, 10/10 시행)
 - 증권회사가 미수금 회수를 위하여 위탁자의 예탁유가증권을 임의처분하는 경우에 증권회사의 임의처분 수량 및 처분순서를 구체적으로 명시

- 임의처분 수량은 반대매매 예정종목의 처분당일 하한가를 기준으로 거래 단위 수량을 감안하여 산정
- 위탁자를 위하여 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임의처분 순서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름

○ 증권저축약관의 교부조항 삭제 (증권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칙 별표 4 : 2005/10/5 개정, 10/10 시행)

— 저축계약 성립요건 중 약관교부 조항을 삭제하고, 저축자에 대한 약관 설명의무는 별도로 분리하여 상위법과 규제내용의 통일성을 도모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자에게 약관 중요내용의 고객설명은 의무화하고 있으나, 교부는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다. 재무건정성규제

○ 외국증권회사 국내지점의 건전성 감독 개선 (증권업 감독규정 2-63조의3, 2-69조 : 2005/4/27 개정 · 시행)

— 외국증권업자 국내지점의 결산대차대조표 공고기한을 '회계연도 경과 후 60일 이내'에서 국내 증권회사와 동일하게 '회계연도 경과후 3월 이내'로 완화

— 외국증권회사 국내지점이 매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을 당기순이익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함

— 외국증권회사 국내지점의 결산결과, 보유자산이 영업기금과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보전시한을 결산일로부터 60일로 정함

○ 고객예탁금 운용방법의 변경 (증권업 감독규정 3-3조 : 2005/4/27 개정 · 시행)

— 고객예탁금 예치기관인 증권금융의 국제담보대출 상대방을 지정함

• 금감위의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국고채 전문딜러)으로 정함

* 단, 적기시정조치의 대상이거나 조치가 유예중인 기관은 제외

— 예치기관은 고객예탁금 관리시, 현물고객예탁금과 선물고객예탁금을 구분하여 관리

○ 적격금융기관 이외의 금융회사에 대한 거래상대방 위험액 조정

(증권업 감독규정 별표 12 : 2005/4/27 개정 · 시행)

— 증권회사의 영업용 순자본비율관련 거래상대방 위험액 산정시, 신용등급이 없는 적격금융기관 이외의 금융회사라도 금융권별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투자적격업체(BBB 등급)의 위험값(3.2%)을 적용

• 기존에는 자산운용회사·상호저축은행 등 적격금융기관이 아닌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신용등급이 없으면 투자부적격 등급법인(BB이하)에 해당하는 높은 위험값(8.0%)을 적용하였음

○ 구조조정 추진 중인 증권회사에 대한 후순위채 만기요건의 완화

(증권업 감독규정 2-15조 : 2005/6/29 개정 · 시행)

— 금산법상 합병 등에 의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증권회사의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금감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만기 2년 이상의 후순위차입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

- 동양종합금융증권은 동양오리온투자증권의 구조조정을 위해 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나, 규정상 만기 5년 이상인 후순위차입(채권발행 포함)의 경우만을 영업용순자본으로 인정하고 있어,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증권회사가 시장에서 후순위차입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합병 시 자금조달의 애로요인인 후순위채의 만기요건을 완화

○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별 적용위험값을 세분화 (증권업 감독규정 별표 12 : 2005/6/29 개정 · 시행)

—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별 적용위험값을 세분화하여 신용상태에 따라 필요자본규모를 차별화함

- 신BIS협약에서도 신용등급에 따라 신용위험을 차별화하도록 권고

< 거래상대방 신용등급별 위험값 >

구 분	AAA, AA-	A+, A-	BBB+, BBB-	BB+, BB-	B+, B-	개인	Workout등
기 존(%)	1.6		3.2	8			8 or 16
개 정(%)	1.2	1.6	3.2	8	12	8	12

— 신용파생상품거래에 의한 신용보장 제공의 경제적 효과는 채무보증과 유사하므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정시 이를 지급보증·채무보증으로 보아 거래상대방 위험을 산정하도록 명문화

○ PEF에 무한책임사원으로 참여시 위험액 산정방안 마련 (증권업 감독규정 2-4조, 2-24조 : 2005/6/29 개정·시행)

— 증권회사가 PEF에 무한책임사원으로 참여시의 위험액산정방법을 명문화

- PEF의 차입 또는 채무보증에 대해서는 무한책임사원이 사실상 부담해야 하므로 거래상대방 위험액을 산정

- * 동 채무보증 등에 대해서는 자산건전성을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적립

- PEF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증권회사의 영업용순자본에서 추가 차감

○ 구조적 포지션에 대한 외환위험액 감액 (증권업 감독규정 2-21조 : 2005/6/29 개정·시행)

— 구조적 외환포지션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외환 위험값을 감액해 줄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

- 외환위험액은 통화별 포지션에 8%를 곱하여 산정하고 있는데, 환율 변동에 따른 환위험이 헤지되는 구조적 포지션의 경우에도 8%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비합리적이었음

○ 특수관계인 발행증권의 소유제한 완화 (증권업 감독규정 2-61조 : 2005/6/29 개정·시행)

— 차익거래 또는 장외파생상품 영업의 헤지목적으로 계획·관리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 유가증권 소유한도(8%)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

— 헤지거래 인정요건

- 다른 포지션과 분리되어 별도로 관리될 것
- 헤지거래를 목적으로 계획되고 매매거래됨을 입증할 것

○ 적기시정조치 관련 규정의 개정 (증권업 감독규정 2-35조 : 2005/6/29 개정 · 시행)

-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한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적기시정조치는 물론, 동 유예조치의 대상도 아닌 것으로 개선

○ 적격기관투자자의 범위 확대 (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4-1조 6호~8호 : 2005/4/27 개정 · 시행)

- 실질적으로 적격기관투자자에 해당하지만, 적격기관투자자의 범위에서 누락된 기관투자자를 적격기관투자자에 추가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의 유동화전문회사
(단, 적격기관투자자를 자산관리자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우체국보험 적립금 · 우체국예금을 운용하는 정보통신부 장관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단, 적격기관투자자를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라. 가격규제 및 기업지배구조 등

- 고객에 대한 위탁매매수수료 관련규제 폐지 (증권업 감독규정 4-31조 : 2005/4/27 개정·시행)
 - ‘고객간 수수료의 부당한 차별금지’ 조항이 시행령에서 삭제됨에 따라, 증권업감독규정의 고객간 정당한 수수료 차별사유 및 교섭수수료 관련규제를 폐지하여 증권회사의 영업자유성을 제고함

- 위탁수수료에 연동한 대가지급의 제한 (증권업 감독규정 4-32조 : 2005/4/27 개정·시행)
 - 증권회사 위탁계좌 개설대행업무를 모든 검사대상 금융기관이 공정한 경쟁조건 하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간의 차등규정을 폐지
 - 금융회사가 계좌개설대행업무 등과 관련하여 증권회사로부터 위탁수수료 수입에 연동한 대가를 받는 것을 금지하여 유사 위탁매매업의 영업소지를 차단

2. 자산운용회사

가. 진입규제

- 자산운용회사 지배주주의 변경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승인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5조의2 : 2005/7/29 개정, 2006/1/30 시행)
 - 자산운용회사 주식의 취득으로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충분한 출자능력을 갖추어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감독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명령을 할 수 있음

- 관공선만을 대상으로 한 선박투자회사의 설립 인가 (선박투자회사법 13조의2 : 2005/7/29 개정, 10/30 시행)
 - 선박투자회사를 활용한 관공선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공선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의 설립을 인가할 수 있음

- 투자자문위원회의 설치 (선박투자회사법 14조의2 : 2005/7/29 개정, 10/30 시행)
 - 선박투자업 인가에 대한 심사와 관련하여 해운 및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자문을 듣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투자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

- 선박운용회사 등과 특별관계자의 주식소유제한 완화 (선박투자회사법 18조
: 2005/7/29 개정, 10/30 시행)
 - 선박운용회사 등과 특별관계자의 주식소유제한을 완화
 - 20% → 25%

- 선박운용회사의 진입 강화 (선박투자회사법 34조 : 2005/7/29 개정, 10/30
시행)
 - 선박운용회사의 무분별한 난립 방지를 위해 선박운용회사에 대한 등
록제를 허가제로 강화

- 선박운용회사의 최저순자산액 유지의무 (선박투자회사법 34조의2 :
2005/7/29 개정, 10/30 시행)
 - 선박운용회사는 설립허가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저순자산액을 유지
해야 함

- 부동산투자회사의 예비인가 절차 규정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3조 :
2005/4/22 개정, 4/23 시행)
 - 부동산투자회사의 예비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자본금 및 발기인에 관
한 사항 등이 기재된 예비인가신청서를 작성 후 건교부장관에게 제출
 - 예비인가여부 결정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에게 불리한 계약조건
의 포함여부 및 자산의 투자·운영시의 투자자보호 방안을 확인

- 현물출자 부동산의 평가에 관한 객관적 기준 마련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9조 : 2005/4/22 개정, 4/23 시행)
 -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시에 현물출자 하는 부동산가액의 평가를 수익환원법 등에 의하도록 함
 - 평가를 수행한 감정평가업자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검사인으로 선임될 수 없음

나. 영업 · 상품규제

- 선박투자회사의 해외자회사의 업무범위 명확화 (선박투자회사법 3조 3항 : 2005/7/29 개정, 10/30 시행)
 - 선박투자회사가 해외에 설립하는 해외자회사의 업무에 대해서는 선박투자회사가 행한 것으로 간주

- 자산관리회사의 겸영제한의 예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22조 : 2005/4/22 개정, 4/23 시행)
 - 자산관리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의 위탁업무 외에 신탁업, 자산을 SOC투자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법인의 자산관리 및 운용업무, 부동산의 취득 · 관리 · 처분 및 개발에 대한 자문업무 등을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

- 내부통제기준의 내용 및 준법감시인의 요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45조, 46조 : 2005/4/22 개정, 4/23 시행)
 - 자산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관리,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절차 등을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포함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두는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 한국은행 등에서 일정한 근무경력이 있고,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률을 위반하여 건교부장관 등으로부터 주의·경고의 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등

- 보고서 서식 정비 (간접투자 자산운용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지 13-2호, 26호 : 2005/10/7 개정·시행)
 - 신탁약관 변경보고서 서식을 별도로 제정하여 신탁약관 제정 및 변경보고서 동일한 양식을 사용함에 따른 혼란을 해소
 - 역외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자결과보고서 고객통보 실적 및 업무방법의 준수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실적을 기재토록 영업보고서 내용을 보완

- 투자설명서 (간접투자 자산운용업 감독규정 시행세칙별지 17호, 18호 : 2005/12/23 개정, 2006/2/1 시행)
 - 기본정보와 상세정보로 나누어 기술

- 법정화 되지 않은 내용을 삭제하고 투자설명서를 일반투자자를 위한 부분과 전문투자자를 위한 부분으로 분리하여, 투자설명서 1부는 일반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기본정보 위주로 작성하고, 2~4부는 전문투자자에 도움이 되는 상세정보를 중심으로 기술
- 투자설명서 요약은 투자자들이 주로 참고하는 기본정보를 위주로 재구성

— 투자위험에 대한 설명 강화

- 투자설명서 요약에 투자위험을 설명하는 항목을 추가
- 펀드의 투자위험을 최소 5단계 이상으로 구분하여 등급을 매기고 이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에 대해 상세히 기술
- 투자설명서 작성요령에 부동산·파생상품·선박펀드 등의 경우 해당 펀드의 특수한 위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기술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시

— 총 보수·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의 기재 의무화

- 총 보수·비용비율을 공시하도록 함
- 재간접펀드의 경우 피투자펀드에서 징구되는 간접적인 보수를 포함한 비율도 병행해서 산출토록 함
- * 펀드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된 각종 보수 및 비용을 순자산의 연평잔액으로 나눈 비율로서 최초 설정 1년 이후부터 투자설명서 갱신 시마다 매년 산출하며 펀드간 운용·관리의 효율성 비교가 가능

다. 재무건정성규제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제한의 예외 인정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20조 : 2005/4/22 개정, 4/23 시행)

— 일정한 경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와 그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 및 그 특별관계자가 서로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

- 일반분양·경쟁입찰방식에 의한 거래, 부동산을 이사회가 정한 가격 이상으로 임대하는 거래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합병·해산에 의한 불가피한 거래 등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수익률 제고를 위해 주주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와 그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간의 거래를 허용

-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제한 예외 인정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29조 : 2005/4/22 개정, 4/23 시행)

—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상업지역 내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신축,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지역 내에서 개발된 토지의 취득 또는 건축물 신축 등의 부동산개발사업에는 부동산투자회사가 총자산의 3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

- 부동산투자회사의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의 활성화를 기대

○ 위험대비 자기자본비율제도 개선 (간접투자 자산운용업 감독규정 26조, 29조 : 2005/10/7 개정, 2006/4/8 시행)

— 시가평가펀드에 대해 펀드규모별로 위험률을 차등화하여 수탁고 증가에 따른 자산운용회사의 과도한 자본확충 부담을 일부 완화하고 펀드 대형화를 유도

- 일정규모 미만 펀드의 위험률은 기존(0.1%)보다 높이고, 일정규모 이상 펀드의 위험률은 기존보다 낮추어 위험액을 산정

* 약관상 주식편입비율 50% 이상 증권펀드 : 펀드규모에 따라 0.12%(순자산총액 100억원 이하)에서 0.06%(1조원초과)까지 구간별 위험률을 적용

* 기타 펀드 : 펀드규모에 따라 0.14%(100억원 이하)에서 0.07%(1조원 초과)까지 구간별 위험률을 적용

— 장부가평가펀드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0.2%의 위험률을 적용하여 위험액을 산정

- 다만, 일정규모(개인전용 3,000억원, 법인전용 5,000억원) 이상이면서 시가과리율이 양(+인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MMF)의 위험률은 0.18%를 적용

— 사모투자전문회사(PEF)는 0.2%의 위험률을 적용하여 위험액을 산정

—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해서는 산정된 위험액의 10%를 감액

○ 적기시정조치 유예제도 개선 (간접투자 자산운용업 감독규정 34조 : 2005/10/7 개정 · 시행)

— 재무건전성기준을 충족시킨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적기시정조치는 물론 유예조치의 대상도 아닌 것으로 함

○ MMF 운용규제 완화 (간접투자 자산운용업 감독규정 62조, 58조 : 2005/10/7 개정·시행)

— 산금채, 중기채 및 수출금융채 편입한도 확대

- MMF의 산업은행, 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 발행채권의 편입한도를 정부투자기관 발행 채권과 동일하게 자산총액의 30%까지 확대

— 국고채금리를 기준금리로 하는 변동금리부채권의 편입허용

- 투자대상자산의 만기보다 장기의 만기를 가진 자산의 금리를 기준금리로 사용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폐지하여 국고채 등을 기준금리로 사용하는 변동금리채권의 편입을 허용

○ 파생상품거래 관련 규제 완화 (간접투자 자산운용업 감독규정 74조 : 2005/10/7 개정·시행)

— 총위험평가액 산정시 파생상품거래증거금 제외

- 증권펀드의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총위험평가액 산정시 파생상품 거래 증거금을 위험액 산정대상에서 제외하여 총위험평가액 계산의 합리성을 제고

— 파생상품 거래시 위험액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위험회피거래의 개념을 명확화

- 용어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델타중립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위험회피거래는 파생상품거래의 위험액 산정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하여 채권의 듀레이션개념을 이용한 위험회피거래도 위험액 산정대상에서 제외

- 무보증사채의 신용평가기관에 해외신용평가기관 인정 (간접투자 자산운용업 감독규정 68조 : 2005/10/7 개정 · 시행)
 - 펀드에서 편입할 수 있는 무보증사채의 신용평가기관에 무디스, S&P 및 피치 등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을 포함하여 펀드의 해외무보증사채 투자의 장애요인을 제거

- 후순위차입금 한도 승인권자 변경 (간접투자 자산운용업 감독규정 30조 : 2005/10/7 개정 · 시행)
 - 자산운용회사의 순자산액에 가산할 수 있는 후순위차입금 총한도 예외 승인권자를 금융감독원장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변경

- 고유재산운용 승인사항 금융감독원장 위탁제도 개선 (간접투자 자산운용업 감독규정 108조 : 2005/10/7 개정 · 시행)
 -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상 고유재산운용에 대한 승인사항 중 금산법상 다른 회사 주식소유에 대한 승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 위탁대상에서 제외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승인하도록 함
 -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한 업무중 자산보관회사 등록 취소와 같이 업무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행위 등 업무특성상 위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처리토록 함

- MMF의 시가산정기준 명확화 (간접투자 자산운용업 감독규정 63조 : 2005/10/7 개정 · 시행)
 - 자산운용회사가 MMF의 시가과리율을 계산하기 위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시행령에서 정한 시가평가펀드 평가기준을 준용하도록 평가기준을 명확화

○ 경영실태평가제도 개선 (간접투자 자산운용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지 3호, 6호~8호 : 2005/10/7 개정, 2006/4/8 시행)

— 자본의 적정성부문 계량평가항목에 법정자본금잠식률 항목을 신설하여 경영실태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 법정자본금 잠식회사는 자본의 적정성부문 계량평가등급이 3등급을 초과하여 상위등급으로 되지 않도록 등급상한을 설정

— 또한, 자본의 적정성부문 계량평가항목 중 회사별 변별력이 작은 실질 자기자본비율 항목을 삭제

○ 자산운용보고서 (간접투자 자산운용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지 19호 : 2005/12/23 개정, 2006/2/1 시행)

— 중복·과다정보 제공 지양

- 당해 운용기간 중 자본변동 현황, 계열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의 투자내용, 간접투자기구간 자전거래(이체거래) 내역 등 법에서 정하지 않는 내용을 삭제
-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을 거래종류 및 자산유형별 총 거래금액만 공시
- 매매회전율을 간접투자기구내 전체주식을 대상으로 계산하고 매매회전율 계산시 주식의 평균가액을 주식을 보유한 일수로 명시
- “자산구성 현황 및 비율”의 주식내용을 삭제하되 기타 자산평가액 및 비율 항목을 신설

— 공시양식 정비

- 부동산보유 및 운용현황이 실제 운용현황(임대 또는 자금대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양식 개정

- 간접투자기구에서 지급한 보수 지급액 및 총보수·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 공시 항목 신설

- 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보고서 (간접투자 자산운용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지 20호 : 2005/12/23 개정, 2006/2/1 시행)
 -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을 거래 종류 및 자산유형별 총거래금액만 공시
 - “운용전문인력의 변경”에서 “학력”, “수익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의결내용”에서 “장소”의 기재란을 삭제

3. 선물회사

- 선물업자의 분기별 영업보고서 제출 및 공시 (선물거래법 47조 : 2005/5/31 개정, 12/1 시행)
 - 선물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월간·6월간·9월간·12월간의 영업실적·재무상태 등을 기재한 영업보고서를 해당 기간 경과후 45일 이내에 금감위에 제출하여야 함
 - 선물업자는 영업보고서를 금감위 제출일로부터 1년간 본점·지점·영업소에 1년간 비치하거나 전자문서로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

○ 선물회사 지배주주의 변경에 대한 금감위의 사전승인 (선물거래법 32조의3
: 2005/7/29개정, 2006/1/30 시행)

- 선물회사 주식의 취득으로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충분한 출자 능력을 갖추어 금감위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 금감위의 승인없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감위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명령을 할 수 있음

○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선물거래법 시행령 6조의2 1항, 6조의3 :
2005/1/27 개정 · 시행)

-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총적립금액, 회원별 적립률 및 적립방법은 선물시장에서의 회원별 거래위험, 기타 상황을 고려하여 증권선물거래소가 회원관리규정으로 정함
 -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한도에 관한 규정은 폐지

○ 선물업자 영업보고서의 기재사항 구체화 (선물거래법 시행령 12조의2 :
2005/12/1 개정·시행)

- 선물업자가 제출하는 영업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전문인력 보유현황 등 임·직원에 관한 사항,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에 관한 사항,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등으로 명시함
 - 선물업자의 영업실적과 재무상태에 관한 공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영업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선물거래법」이 개정(2005/5/31)됨

○ 일임선물거래의 방법 및 거래내역 보고 (선물거래법 시행규칙 3조 : 2005/1/27 개정·시행)

- 선물업자가 일임선물거래를 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일임선물거래방법을 명시하고, 거래내역을 금감위와 증권선물거래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 사전에 고객과 서면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좌의 관리자를 지정
 - 일임선물거래의 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
 - 고객의 성명, 선물거래의 계약수·가격·거래시기 등을 선물거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

○ 기초위험액 산정방식 변경 (선물업 감독규정 24조 : 2005/10/7 개정·시행)

- 기초위험액 산정대상을 유지증거금으로 한정하여 선물거래와 직접 연계되지 않은 예탁재산액 증가에 따라 영업용순자본비율이 하락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되
- 기초위험액을 유지증거금의 10%로 정하여 규제완화에 따른 급격한 영업용순자본비율 변동을 완화함
 - * 기초위험액 : 위탁자 예탁재산액중 선물거래 유지증거금으로 사용된 금액의 4%와 잔여금액의 2%를 합산한 금액(총위험액의 97% 차지)

○ 위탁자에 대한 통장 등 발급의 예외규정 신설 (선물업 감독규정 54조 : 2005/10/7 개정·시행)

- 위탁자로부터 재산을 수탁받은 경우 통장 등을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위탁자가 통장 등의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고객예탁금 잔액 등 보고의 선물협회로의 일원화 (선물업 감독규정 75조 : 2005/10/7 개정·시행)

— 고객예탁금·미수금 등의 보고자료를 선물협회가 보고받아 집중관리 하도록 함

- 종래에는 거래소 회원은 거래소에, 비회원은 선물협회에 고객예탁금·미수금 등을 각각 보고함에 따라 동 보고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공시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증권회사 고객예탁금·미수금 보고자료의 경우 증권업협회가 집중 관리

○ 채권관련시장위험액의 위험상당치 세분화 (선물업 감독규정 별표3 : 2005/10/7 개정·시행)

— 채권을 4개 유형(정부발행채권, 우량채권, 일반채권, 기타채권)으로 세분화하여 위험액 적용을 차별화

< 채권시장위험액의 위험상당치 >

구 분	정부발행채권	우량채권(신용등급 BBB 이상)			일반채권(신용등급 BB)	기타채권
		6개월이하	6개월초과 24개월 이하	24개월 초과		
위험상당치(%)	0.15	0.50	2.00	3.60	10.00	18.00

* 기존에는 채권을 3개 유형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차별적인 위험액 적용에 한계가 있었음

○ 거래상대방위험액의 위험상당치 세분화 (선물업 감독규정 별표6 : 2005/10/7 개정·시행)

— 거래상대방을 7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거래상대방 위험액의 적용을 차별화

< 거래상대방 위험액의 위험상당치 >

구 분	정부 등	지자체 등	AA이상	A	BBB	BB	B이하 또는 Workout등
위험상당치(%)	0	0.9	1.8	2.7	3.6	10.0	18.0

* 기존에는 거래상대방을 3개 유형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차별적인 위험액 적용에 한계가 있었음

○ 분기 영업보고서의 제출 및 공시 (선물업 감독규정 7조, 42조 : 2005/10/7 개정, 2006/4/1 시행)

— 분기 영업보고서 제도가 도입·시행(2005.12.)됨에 따라 영업보고서의 기재내용, 서식 및 공시방법 등을 마련

○ 일임선물거래 관련규정 신설 (선물업 감독규정 52조의5, 52조의6 : 2005/10/7 개정·시행)

— 선물거래법이 그 동안 금지한 일임선물거래를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허용하고 그 세부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일임선물거래계약의 체결방법, 일임선물거래계좌의 관리 및 보고사항 등을 정함

○ 위탁자에 대한 통지의 예외규정 신설 (선물업 감독규정 51조 : 2005/10/7
개정·시행)

— 위탁자가 주문내역 등을 전자통신상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서면통
지를 의무화하고 있어 불필요한 업무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전자통신
방법에 의한 통지도 서면통지한 것으로 간주함

○ 일임선물거래 관련규정 신설 (선물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11조의2, 11조의3
: 2005/10/7 개정·시행)

— 일임선물거래가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허용됨에 따라, 일임선물거래계
좌의 관리, 일임선물거래의 주문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

III. 증권감독

1. 법적규제기관

- 증권회사 임원결격 요건의 적용회피행위 방지 (증권거래법 33조 2항 6호, 57조의2 : 2005/12/29 개정, 2006/3/30 시행)
 - 증권거래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도 일정기간 동안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함
 -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기 전에 퇴임 또는 퇴직함으로써 증권회사 임원결격 요건의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

- 금융감독위원회 명령 위반자에 대한 형사벌칙 삭제 (증권거래법 209조 7호 : 2005/12/29 개정, 2006/3/30 시행)
 - 금융감독위원회가 투기거래 방지와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증권회사에 하는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삭제함

-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권 구체화 (증권거래법 54조 : 2005/12/29 개정, 2006/3/30 시행)
 - 금융감독위원회가 투기거래 방지와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증권회사에 할 수 있는 명령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함

- 계량적·비계량적 위반행위 및 고의·중과실에 따른 기본부과율 차등 폐지
(증권·선물조사 업무규정 별표3 4호 : 2005/7/14 개정·시행)

— 위반행위의 중요도 등급을 기존의 3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

<위반행위의 중요도 등급별 기본부과율>

기 존					개 정				
구 분		상	중	하	I	II	III	IV	V
계 량	고 의	100%	90%	80%	100%	80%	60%	40%	20%
	중과실	70%	60%	50%					
비계량	고 의	100%	80%	60%					
	중과실	60%	40%	20%					

- 중요도 판단기준의 재조정 (증권·선물조사 업무규정 : 2005/7/14 개정·시행)

— 위반행위의 중요도가 특정등급에 편중되지 않도록 중요도 판단기준을 재조정

<계량적 위반행위의 중요도 판단기준>

유 형	기 존			개 정				
	상	중	하	I	II	III	IV	V
1. 손익사항	16%* 이상	16% ~8%	8% 미만	16% 이상	16% ~8%	8% ~4%	4% ~2%	2% 미만
2. 손익외항목의 과대(과소) 계상	64% 이상	64% ~32%	32% 미만	64% 이상	64% ~32%	32% ~16%	16% ~8%	8% 미만
3. 우발채무등 주석사항 미기재	80% 이상	80% ~40%	40% 미만	80% 이상	80% ~40%	40% ~20%	20% ~10%	10% 미만
4. 기타 계량적 위반사항	160% 이상	160% ~80%	80% 미만	160% 이상	160% ~80%	80% ~40%	40% ~20%	20% 미만

* 해당비율 : 위반금액 ÷ 회사규모기준

<비계량적 위반행위의 중요도 판단기준>

유형	기존			개정				
	상	중	하	I	II	III	IV	V
1. 주요경영사항*	4배 이상	2배 ~4배	2배 미만	8배 이상	6배 ~8배	4배 ~6배	2배 ~4배	2배 미만
2.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5% 이상	1% ~5%	1% 미만	15% 이상	15% ~10%	10% ~5%	5% ~1%	1% 미만
3. 주기변동률	50% 이상	20% ~50%	20% 미만	200% 이상	200%~100%	100% ~50%	50% ~25%	25% 미만
4. 불공정거래행위 관련성	검찰 고발	수사 기관 통보	기 타	검찰 고발	수사 기관 통보	경고		
5. 위반행위의 횟수	10회 이상	3-9회	3회 미만	30회 이상	20회 ~29회	10 ~19회	3~9회	3회 미만

* 주요경영사항 : 위반금액 ÷ 공시대상기준금액

**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 위반금액 ÷ 자산총액

○ 유가증권신고서 위반관련 개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증권·선물조사 업무규정 별표3 7호 : 2005/7/14 개정·시행)

— 유가증권신고서 위반관련 과징금 부과대상을 「증권거래법」에 맞게 조정

-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대 상	기 준	개 정
상법상 업무집행 지시자	없음	○ 최대주주인 경우 - 관련법인 과징금의 50% 또는 5천만원×기본 부과율(최저 3천만원) 중 적은 금액 ○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 관련법인 과징금의 30% 또는 2천만원×기본 부과율(최저 1천만원) 중 적은 금액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	없음	○ 당해 신고자의 부과과징금과 용역제공수수료 등 보수액의 2배 금액 중 적은 금액

- 공개매수신고서·합병신고서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명확화 (증권·선물조사
업무규정 별표3 7호 : 2005/7/14 개정·시행)
 - 공개매수신고서, 합병신고서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실제 이루어진 금액
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고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 금융회사별 과징금 가중·감면사유의 조정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5호 : 2005/7/14 개정·시행)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중·감면사유가 여타 금융회사와 상이하게 적
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동일하게 조정
 - 과징금 가중·감경비율을 구체적으로 설정
 -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근거법령에 열거된 사유에 한하여 감면

— 위반행위자의 부담능력 등 현실적 요소를 고려하여 감면기준을 구체화 (증권회사는 제외)

- 제재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중·감경조정 후 과징금의 50% 이내 감액
- 과징금 부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면제

○ 거액의 위반금액에 대한 과징금 부과 강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4호 가목 : 2005/7/14 개정·시행)

— 위반금액이 증대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비율이 급격히 체감하므로 위반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기본부과율을 상향조정

<과징금 기본부과율>

법정부과한도액		기 존	개 정
위반금액(기준금액)	법정최고부과비율	기본부과율	기본부과율
10억원 이하 (1단계)	×법정최고부과비율 ×	7/10 (70%)	7/10 (70%)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2단계)		7/20 (35%)	7/20 (35%)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3단계)		7/60 (12%)	7/40 (18%)
1천억원 초과 1조원 이하 (4단계)		7/240 (3%)	7/80 (9%)
1조원 초과 (5단계)		7/480 (1.5%)	7/160 (4.4%)

○ 보험회사의 특별이익 제공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강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4호, 5호 : 2005/7/14 개정·시행)

— 위반금액 단계별 구간범위를 축소조정하고, 구간별 기본부과율을 상향 조정

- 기존에는 위반금액의 단계별 구간범위가 넓어 3단계 이상(1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위규발생 건수가 미미했음

<특별이익 제공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식>

기 존		개 정	
위반금액(기준금액)	기본부과율	위반금액(기준금액)	기본부과율
1천만원 이하 (1단계)	7/10	1천만원 이하 (1단계)	7/10
1천만원 ~ 1억 (2단계)	7/20	1천만원 ~ 5천만(2단계)	7/20
1억원 ~ 10억 (3단계)	7/60	5천만원 ~ 2.5억 (3단계)	7/40
10억원~100억원(4단계)	7/240	2.5억원 ~ 10억 (4단계)	7/80
100억원 초과 (5단계)	7/480	10억원 초과 (5단계)	7/160

— 특별이익 제공금액을 과징금 조정단계에서 반영

- 과징금 산정시 특별이익 제공금액의 과다가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이익 제공금액이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가중

<특별이익 제공(약속)시 관련과징금 부과방식>

특별이익 제공유형	기본과징금의 조정
• 금품제공, 보험료 할인, 수수료 제공, 보험료·이자 대납 등	• 특별이익 제공금액이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가중
• 특별이익 제공의 약속 • 보험금 과다지급의 약속	• 특별이익 제공 약속금액의 50%가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가중

- 주의조치를 “기관주의”와 “개인주의 요구”로 명확하게 구분·운영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17조 1항 : 2005/8/31 개정·시행)
 - 기관주의는 업무성격상 기관에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활용
 - 개인주의 요구는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대상자에게 사전통지하도록 의무화
 - 금융기관의 자율규제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 등 조치의뢰대상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조치의뢰대상에 포함하여 운영

- 가중제재의 근거마련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22조 3항 : 2005/8/31 개정·시행)
 -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주의조치를 받은 임·직원이 다시 주의 조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중제재함

- 리스크 중심 검사(Risk Based Examination) 원칙 명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4조 : 2005/11/3 개정·시행)
 - 금융회사의 경영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 규모와 리스크 관리수준 등에 대한 상시감시결과를 바탕으로 검사자원을 차별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 리스크가 큰 금융회사 및 부문을 중심으로 검사자원을 배분

- 자금세탁방지 위반관련 제재근거 명확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3조 16호 : 2005/11/3 개정·시행)
 - “금융관련법규”의 정의에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포함

- 금융회사 이사회 의사결정권자 열람의무 삭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16조의2 : 2005/11/3 개정·시행)
 - 금융감독원장이 통보한 검사서를 금융회사가 이사회에 열람하도록 한 규정이 유효기간 만료(04. 12. 31.)됨에 따라 동 규정을 삭제

- 금융기관의 과태료부과 기본금액 변경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별표3 : 2005/12/15 개정·시행)
 - 금융기관의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을 여타 과태료 부과대상자와 동일하게 법정최고금액으로 변경

- 과태료부과 예정금액의 산정방법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별표3 : 2005/12/15 개정·시행)
 - 위반동기는 고의·과실로 구분하고, 위반결과는 중대·보통·경미로 구분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예정금액을 산정
 - 위반행위가 단순착오에 기인하거나 극히 경미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없이 견책·주의 또는 시정조치 등으로 갈음

○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방법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별표3 : 2005/12/15 개정·시행)

— 예정금액을 기준으로 50% 범위내에서 가중·감경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

- 가중·감경사유별 구체적 비율한도를 설정하고, 단순 가담·추종한 경우에는 그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감경할 수 있도록 함

○ 과태료 면제사유의 명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별표3 : 2005/12/15 개정·시행)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등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RM의 상시감시활동 내용 반영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 세칙 6조, 6조의2·3 : 2005/11/3 개정·시행)

— RM의 주요한 상시감시활동인 임직원 면담과 조사출장의 근거 및 방법을 명시

- 검사원은 상시감시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특이사항 또는 경영상 취약부문에 대한 확인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 임직원과 면담을 실시
- 임직원 면담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은 조사출장 등을 활용하되, 금융회사에 사전 통지

- 상시감시관련 자료요구의 기본원칙 제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6조의4 : 2005/11/3 개정·시행)
 - 검사원은 상시감시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금융회사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중복적인 자료제출 요구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
 - 검사원은 금융회사의 규모와 특성, 현안사항의 성격 등을 감안한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자료요구 범위를 차등화

- 검사원 제척제도 명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3조의2 : 2005/11/3 개정·시행)
 - 금감원 출신 금융회사 감사와 최근 2년 내 동일부서에서 근무한 검사원은 당해 금융회사 검사 및 상시감시업무에서 제외
 - 다만, 긴급한 경우 및 검사원의 일시대량 투입으로 검사인력의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등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용 배제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고발대상의 명확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32조 : 2005/11/3 개정·시행)
 - 「특경법」상 고발대상은 가중처벌대상 뿐만 아니라 동법에 열거된 죄는 원칙적으로 모두 해당된다는 점을 명시
 - 동법에 열거된 죄는 횡령·배임, 재산 국외도피, 수재, 무인가 단기 금융업, 알선수재, 사금융알선, 저축관련부당행위, 사기, 공갈 등임

- 금융사고 통계 정비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2호 서식 : 2005/11/3 개정·시행)
 - 금전적 피해가 수반되는 '금전사고'와 여타의 '금융질서 문란행위'를 구분
 - '손실예상금액'(사고금액 - 회수예상가액)란을 신설·집계

- 소송지원대상의 확대 (금융분쟁조정세칙 32조의2 1항 : 2005/8/29 개정·시행)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회부 전 조정신청 사건중 조정선례 및 판례 등에 비추어 금융회사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도 소송 지원대상에 포함

- 소송지원여부의 결정 및 소송지원금액 규모 (금융분쟁조정세칙 32조의2 1항·2항 : 2005/8/29 개정·시행)
 - 소송지원여부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금감원장이 결정함
 - 소송지원금액은 소송지원사건 심급별로 1천만원 이내로 함

- 소송지원의 중단사유 신설 (금융분쟁조정세칙 32조의2 3항 : 2005/8/29 개정·시행)
 - 신청인이 소송당사자로서의 의무를 해태한 경우
 - 신청인이 소송지원 신청시 제출한 자료나 진술이 허위인 경우
 - 소송지원 중에 새로이 발견된 사실로 인해 소송지원의 실익이 없게 되거나 공익목적상 부적절하게 된 경우

○ 포상금 지급결정권자의 변경 등 (증권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8조 : 2005/12/16 개정·시행)

- 포상금 지급결정권자를 증선위에서 금감원장으로 변경
- 금감원장은 포상금 지급결과를 매년 말에 증선위에 보고

○ 2005년 금융권역별 분담요율 결정 (금융기관 분담금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호~3호 : 2005/6/1 개정·시행)

- 증권권역은 9.458803/10,000으로 결정
- 산정방식은 기존 방식을 적용
 - 총부채(50%), 투입인력(40%), 총자산(5%), 영업수익(5%)을 반영한
혼합방식 적용
 - 총부채대비 가중치는 은행·비은행(1) : 보험(5) : 증권·기타(10)

< 2005년도 금융권역별 분담요율 >

구 분	감독분담요율	법시행령상 분담요율 한도
은행·비은행	0.683912/10,000	3/10,000
보 험	2.552574/10,000	15/10,000
증권·기타	9.458803/10,000	30/10,000

○ 감독분담금 면제 대상기관 추가 (금융기관 분담금징수 등에 관한 규정별표
4호 마목 : 2005/6/1 개정·시행)

-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등 관련 법률의 제·개정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에 포함된 기관에 대해, 해당 회사의 성격, 업무특성 등
을 감안하여 분담금 부과를 면제함

-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간접투자기구 평가회사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관리회사, 일반사무수탁회사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부동산 투자자문회사, 일반사무 등 위탁기관
-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 선박운용회사

2. 자율규제기관

- 코스닥시장 거래대상 유가증권 추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시행령 3조 : 2005/1/27 제정·시행)
 - 코스닥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동 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유가증권을 주권, 외국법인 발행주권 및 상장지수펀드 외에 사채권, 신주인수권 증권을 추가
-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심리대상이 되는 이상거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시행령 5조 : 2005/1/27 제정·시행)
 - 유가증권 또는 선물거래품목의 가격 또는 거래량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등을 증권선물거래소의 심리대상이 되는 이상거래로 함

○ 시장효율화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대상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시행령 12조, 13조 : 2005/1/27 제정·시행)

-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임원 등으로 시장효율화위원회의 구성원을 명시하고 위원장을 민간전문가인 위원간 호선으로 선출함
- 증권·선물시장의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심의대상을 100억원 이상의 전산투자자로 함

○ 증권거래소 업무규정의 규제대상 일부조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 2005/1/21 제정, 1/27 시행)

- 기존의 증권거래소 업무규정의 매매거래 및 수탁제도의 기본 내용을 유지하면서 일부 사항을 이관·통합
 - 회원의 종류, 결제의 위임금지, 결제의 위탁 및 배상기금적립
 - 회원관리규정
 - 이상매매의 심리, 회원감리 및 분쟁조정
 - 시장감시규정 및 분쟁조정규정
 - 경매시장규정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 회원의 수탁 및 주문처리와 관련된 금지행위 개선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83조 2항, 85조 2항 : 2005/1/21 제정, 1/27 시행)

- 위탁자의 거래목적, 규모 및 경험 등을 고려하지 않은 투자권유를 하거나, 근거 없는 투자판단자료를 제공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

- 위탁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수탁없이 위탁자의 재산으로 매매거래하는 행위를 금지

- 회원시스템의 규정적합성 의무 신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104조 4항·5항 : 2005/1/21 제정, 1/27 시행)
 - 회원시스템이 관련법규, 업무규정 또는 업무규정에 의한 조치사항에 적합하여야 함을 명시
 - 호가입력내용과 관련된 회원시스템에 관한 정보를 거래소에 보고

- 일상적 매매감시 근거 신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106조 1항 : 2005/1/21 제정, 1/27 시행)
 - 각종 시장조치 등 효율적인 시장관리를 위해 매매거래상황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회원의 시스템정보 보고의무 신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31조 : 2005/1/25 제정, 1/27 시행)
 - 호가입력내용과 관련된 회원시스템의 IP주소를 매월 5일까지 거래소에 보고

- 증권선물위원회 조치와 연계한 시장조치 개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8조, 29조 : 2005/12/9 개정, 12/12 시행)
 - 분식회계 및 불공정거래와 관련하여 증선위 조치결과와 연계한 시장조치 폐지

- 회원의 금지행위 및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 금지사항 신설 (시장감시규정 3조, 4조 : 2005/1/21 제정, 1/27 시행)
 - 회원의 신의성실의무 및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의 금지 등을 행위유형에 따라 금지행위 및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금지로 구분하고, 연계거래와 관련한 금지행위를 신설

- 불공정거래 예방활동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회원의 보고사항 추가
 - (시장감시규정 7조 3항·4항 : 2005/1/21 제정, 1/27 시행)
 - 회원의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고 고객과의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일임매매·일임선물거래 보고의무 및 고객관련 분쟁·민원정보의 보고의무 신설

- 공정한 심리 또는 감리를 위한 감리요원의 회피의무 신설
 - (시장감시규정 9조 : 2005/1/21 제정, 1/27 시행)
 - 감리요원의 심리 또는 감리의 회피의무를 신설하여 심리 또는 감리업무의 공정성 제고

- 연계감시·연계거래의 개념정의 및 구분 (시장감시규정 2조, 18조, 19조 : 2005/1/21 제정, 1/27 시행)
 - 연계감시
 - 연계거래와 관련한 시장감시, 심리 및 감리로 연계시장 감시, 연계심리 및 연계감리로 구분

— 연계거래

- 유가증권의 종목, 선물거래의 종목 또는 옵션거래의 종목 중 가격 연동성이 있는 2개 이상의 종목을 연계하여 행하는 거래로 정의

— 연계감시의 방법 등에 관하여 시장감시, 심리 및 감리 관련규정을 준용

- 회원의 징계사유 및 징계종류 추가 (시장감시규정 21조 5호, 22조 1항 1호 · 2호 : 2005/1/21 제정, 1/27 시행)

— 회원의 징계사유에 자료제출 등 요청의 거부를 추가하고, 제명 · 회원 자격정지 등의 징계와 회원제재금의 하한 규정 신설

- 약식제재금 부과제도 신설 (시장감시규정 28조 : 2005/1/21 제정, 1/27 시행)

— 보고의무 위반 등 경미한 위규행위로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약식제재금을 부과하여 회원의 징계부담을 완화하고 규정준수를 촉진

- 규율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명시 및 연임근거 마련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21조 1항 · 2항 : 2005 /3/24 개정 · 시행)

—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상의 거래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또는 감독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 또는 감봉 이상의 징계조치를 받은 자를 규율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지정

— 위원이 연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초대 위원의 임기에 대한 특례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부칙 2항 :
2005/3/24 개정 · 시행)
 - 규율위원회의 연속성을 위해, 초대 위원의 임기를 1/2은 2년, 1/2은 1년으로 함

- 시장감시위원회 및 분쟁조정심의회 설치 (분쟁조정규정 13조, 18조 :
2005/1/21 제정, 1/27 시행)
 - 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를 분쟁조정기구로 하고, 별도의 심의기구로 분쟁조정심의회를 설치
 -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최종적인 조정결정은 시장감시위원회가 담당하고, 조정 및 심의기능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심의회를 설치

- 분쟁조정대상의 확대 (분쟁조정규정 2조 1항, 3조 : 2005/1/21 제정, 1/27 시행)
 - 선물거래와 관련된 분쟁조정이 통합거래소의 업무로 규정됨에 따라, 분쟁조정대상을 선물거래와 관련된 분쟁으로 확대

- 분쟁조정신청인의 편의도모 (분쟁조정규정 4조 2항 · 5항, 9조 1항 :
2005/1/21 제정, 1/27 시행)
 - 구술에 의한 분쟁조정신청도 허용
 - 거래소 직원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조서의 작성

— 종결처리사유 중 분쟁발생 후 3년 경과규정을 삭제

- 위탁자 보호를 위해 위원회 회부 전 종결처리사유 중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를 삭제

○ 피신청인의 조정신청에 대한 의견서 제출 허용 (분쟁조정규정 7조 2항 :

2005/1/21 제정, 1/27 시행)

— 피신청인이 적극적으로 의견서와 관련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피신청인에게 방어권 부여

- 기존에는 거래소가 피신청인에게 의견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분쟁조정규정 5조 2항·5항, 18조 4항

: 2005/1/ 21 제정, 1/27 시행)

— 위원장의 대표자 선정 요구권 신설

- 동일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다수의 신청인에게 대표자 선정을 요구할 수 있음
-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대표자 외의 다른 신청인에 대하여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위원회 계류중인 분쟁조정사건에 대한 위원장의 종결처리

- 일정한 분쟁조정사안에 대하여는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위원장이 직접 종결처리 가능
 - * 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에 취하서가 제출된 경우
 - * 법원에 제소된 경우
 - * 법원에 민사조정 신청 또는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 분쟁종결처리를 위한 거래소에의 통지의무 신설 (분쟁조정규정 9조 2항 : 2005/1/21 제정, 1/27 시행)
 - 분쟁조정 신청 후 법원에 제소하거나 법원에 민사조정 등을 신청한 당사자는 지체없이 거래소에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

- 회원사의 조정안 수락률 제고를 위한 보고의무 및 소송지원제도 도입
 - (분쟁조정규정 19조 5항, 22조 : 2005/1/21 제정, 1/27 시행)
 - 회원인 당사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지 않은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 피신청인인 회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조정결정 수락을 거부하여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사건으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신청인의 신청으로 신청인의 소송행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분쟁조정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의 결격사유 명시 및 연임근거 마련
 - (분쟁조정규정 시행세칙 11조 2항·3항 : 2005/3/24 개정·시행)
 - 금감위 등 감독기관의 문책경고 또는 감봉 이상의 조치 등을 심의위원 결격사유로 명시
 - 심의위원이 연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초대 심의위원의 임기에 대한 특례 (분쟁조정규정 시행세칙 부칙 2항 : 2005/3/24 개정·시행)
 - 분쟁조정 심의위원회의 연속성을 위해, 초대 심의위원의 임기를 1/2은 2년, 1/2은 1년으로 함

○ 거래소의 '주식회사' 전환에 따른 규정 정비 (회원관리규정 : 2005/1/21
제정, 1/27 시행)

— 회원의 출자·지분, 회원총회, 회원의결권 등 회원제에 고유한 규정을
삭제

- 회원의 가입·탈퇴 및 전환에 관한 승인권자, 회원의 제명·자격정
지의 징계권자를 회원총회에서 이사회로 변경

○ 거래소 통합에 따른 회원 재분류 및 회원지위 승계 (회원관리규정 3조,
부칙 2조 : 2005/ 1/21 제정, 1/27 시행)

— 회원의 재분류

- 회원이 참가하는 시장종류에 따라 증권거래회원과 선물거래회원으로
구분
- 증권거래회원과 선물거래회원을 각각 거래소에 대한 결제이행책임
의 부담여부에 따라 결제회원과 거래전문회원으로 재분류

— 회원지위의 승계

- 거래소 통합전 각 시장의 회원은 별도의 회원가입절차 없이 동일한
성격의 통합거래소의 회원으로 그 지위가 승계됨

○ 증권거래회원·선물거래회원 자격의 개방 (회원관리규정 4조 : 2005/1/21
제정, 1/27 시행)

— 증권거래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증권거래법 28조 2항 1호 또는 2호
의 증권업 허가를 받은 법인으로 함

- 기존 증권거래소에서는 증권업경영업자는 회원이 아닌 ‘특별참가자’ 지위를 가졌으나, 통합거래소에서는 모두 회원의 지위를 갖게 됨
- 선물거래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선물거래법 37조에 의하여 선물업 허가를 받은 법인으로 함

○ 회원가입사항의 일부 보완 및 거래소간 상이한 내용 통일

(회원관리규정 5조~9조 : 2005/1/21 제정, 1/27 시행)

- 회원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증권업 또는 선물업 허가를 받은 자 외에, 예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신청한 자로 확대
 - 증권업 또는 선물업 허가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도 거래소와 회원 가입절차를 사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업무편의를 도모
- 회원가입의 승인시에 일정조건을 부과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함
 - 승인시점에서 일부 미비사항이 있더라도, 업무개시 시점까지 보완이 가능한 경우, 이를 조건으로 회원가입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여 회원가입 승인절차의 효율성 도모
- 회원의 임의탈퇴후 3년 이내에는 회원가입을 제한
 - 가입비 등 회원가입에 따른 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동일인의 잦은 회원가입 및 탈퇴의 반복을 방지
- 회원가입과 관련하여 거래소간 상이한 내용을 일치시킴
 - 회원가입요건을 규정으로 명시하고, 회원가입시에 일정한 재무요건의 충족을 회원가입요건의 하나로 명시

○ 주식회사로의 전환에 따라 회원가입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회원관리규정 8조 : 2005/1/21 제정, 1/27 시행)

— 회원제하에서의 출자의무를 삭제

- 증권거래소 : 정회원은 약 363억원의 출자의무 부담
- 선물거래소 : 정회원은 약 30억원, 준회원은 5억원의 출자의무 부담

— 가입비를 이사회결의로 정하되, 회원 지위가 시장참가자 지위로 변경됨에 따라 대폭 완화됨

— ‘연회비’ 제도를 삭제하여 회원가입후 거래에 따른 수수료 외의 부담요인을 제거함

○ 합병으로 인한 회원탈퇴시 회원지위의 승계에 관한 근거 명시

(회원관리규정 13조 : 2005/1/21 제정, 1/27 시행)

— 합병으로 탈퇴하는 회원지위를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이 거래소의 승인을 얻어 승계할 수 있도록 함

- 이 경우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이 회원이 아닌 경우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간주

○ 회원전환 관련사항의 보완 및 거래소간 상이한 내용 일치

(회원관리규정 16조~19조 : 2005/1/21 제정, 1/27 시행)

— 회원전환의 심사에 관한 내용을 회원가입의 경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회원전환의 승인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기존의 증권거래소의 경우 거래전문회원에서 결제회원으로서의 전환만 허용했으나, 통합거래소에서는 반대방향의 회원전환도 허용

- 공동기금의 이원화 (회원관리규정 23조 : 2005/1/21 제정, 1/27 시행)
 - 공동기금을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에 대한 공동기금과 선물시장에 대한 공동기금 등 2개의 공동기금으로 구분하여 적립
 - 코스닥시장 결제안정기금은 유가증권시장 공동기금으로 통합(증권거래법 부칙 2조 1항)

- 공동기금의 적립방법을 위험기준방식으로 변경 (회원관리규정 24조 : 2005/1/21 제정, 1/27 시행)
 - 분기마다 현재의 회원의 거래규모나 위험수준을 반영하여 공동기금의 적립액을 재산정하여, 직전분기말 현재 적립액과의 차액을 수수하는 방식으로 공동기금 적립방법을 개선
 - 현행 총 적립규모가 약 2,000억원 정도임을 감안하여, 각 공동기금의 적립규모를 각각 1,000억원으로 설정
 - 회원별 적립액은 기본적립금과 변동적립금의 합계액으로 함
 - 결제회원으로서 최소한의 공동기금 부담을 의무화하기 위해 회원간에 차등없는 일정 균등액의 기본적립금을 설정
 - 변동적립금은 적립총액에서 총 기본적립금을 차감한 금액을 회원별 거래규모나 위험수준에 비례하여 배분
 -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포함) 회원별 적립액
 - 기본적립금 : 5억원
 - 변동적립금 : (적립총액 1천억원 - 기본적립금 총액) × (직전 분기말 이전 1년간 당해 결제회원의 일평균 주식거래대금 / 직전 분기말 이전 1년간 전체 결제회원의 일평균 주식거래대금)

— 선물시장 회원별 적립액

- 기본적립금 : 5억원
- 변동적립금 : (적립총액 1천억원 - 기본적립금 총액) × (직전 분기말 이전 1년간 당해 회원의 일평균 거래증거금 / 직전 분기말 이전 1년간 전체 회원의 일평균 거래증거금)

○ 공동기금 적립방안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회원관리규정 부칙 6조 :

2005/1/21 제정, 1/27 시행)

—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포함) 공동기금 총 적립액(약 1,500억원)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약 500억원)을 선물시장 공동기금으로 전환

- 개선된 공동기금 적립방식에 의할 경우 현행 회원별 공동기금 적립 부담액에 상당한 변동이 발생하는 부담을 완화하게 위해, 개선방안에 따른 공동기금 적립액을 1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

○ 결제불이행시 공동기금을 유가증권시장과 선물시장으로 구분·사용

(회원관리규정 25조 : 2005/1/21 제정, 1/27 시행)

- 결제불이행 발생시 우선 결제불이행 회원의 재원으로 손실보전
- 결제불이행 회원의 재원으로 결제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 다른 결제회원의 공동기금으로 손실보전
- 당해 결제불이행 회원의 재원 또는 다른 결제회원의 공동기금으로 손실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 거래소에 적립된 청산결제기금 등 거래소의 재산으로 손실보전

- 거래소는 임의적립금 중 일부를 '결제적립금'으로 적립

- 회원에 대한 영업용순자본비율 유지의무 부과 (회원관리규정 7조 :
2005/1/21 제정, 1/27 시행)
 - 증권회사 및 선물회사인 회원은 각각 증권업감독규정과 선물업감독규정에 의한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함
 - 결제회원 : 증권업감독규정 또는 선물업감독규정에 의한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회원가입시에는 180%) 이상일 것, 자본금이 100억원 이상일 것
 - 거래전문회원 : 증권업감독규정 또는 선물업감독규정에 의한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00%(회원가입시에는 150%) 이상일 것

- 회원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의 미달시 거래소에 보고 (회원관리규정 30조 2항 : 2005/1/21 제정, 1/27 시행)
 - 회원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이 결제회원은 180%, 거래전문회원은 150%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미달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함

- 회원의 재무요건 미충족시 거래의 정지 (회원관리규정 36조, 37조 :
2005/1/21 제정, 1/27 시행)
 - 회원이 재무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조치를 함
 - 단, 자본확충 또는 자산매각 등으로 재무요건 충족이 확실시되거나 단기간 내에 이를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기간 거래정지조치의 유예 가능

○ 회원의 보고와 관련된 업무편의 도모 (회원관리규정 32조 2항 : 2005/1/21
제정, 1/27 시행)

- 거래소에 대한 보고사항이 공시규정에 의한 공시사항인 경우, 당해 사
항의 공시로 거래소에 대한 보고를 갈음하여 회원의 업무편의성을 제고

○ 회원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거래소의 시정조치 요구
(회원관리규정 34조 : 2005/1/21 제정, 1/27 시행)

- 거래소는 회원의 업무 또는 재산상황이 거래소의 목적 또는 회원관리
규정 등에 비추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원에 대해 시정
을 요구할 수 있음
 - 회원은 거래소의 시정요구시, 그 처리결과를 거래소에 보고

○ 회원에 대한 조치 및 회원의 임·직원의 징계요구 (회원관리규정 36조 :
2005/1/21 제정, 1/27 시행)

- 회원에 대한 조치
 - “제명, 6월 이내의 회원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6월 이내의 거
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10억원 이하의 위약금 부과, 경고 또는 주
의” 등의 조치를 조치사유의 경중 및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취함
 - 위약금 부과조치를 받은 회원이 납부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납된 위약금에 체납일수 및 1,0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가산금 부과

— 회원의 임원·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 임원의 경우 : 해임·직무정지·경고 또는 주의
- 직원의 경우 : 면직·정직·감봉·견책·경고 또는 주의

- 재무요건 미달시의 회원조치 유예사유의 개선 (회원관리규정 37조 1항 :
2005/8/26 개정, 8/29 시행)
 - 재무요건을 충족시킨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회원조치 및 동 유예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함
 - 기존에는 자본확충 또는 자산 매각 등으로 재무요건을 충족시킨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도 회원조치 유예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유예조치를 의결할 당시에는 이미 회원조치의 원인이 소멸하여 유예조치를 할 실익이 없었음

- 증권금융회사의 채권거래자격에 대한 특례 신설 (회원관리규정 41조 2항 : 2005/8/26 개정, 8/29 시행)
 - 정부 및 한국은행의 경우에 준하여 채권거래 참가특례를 인정함
 - 단, 결제안정성 측면에서 공동기금 및 보증금 관련규정은 적용

-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채권거래자격 특례의 범위 명시
(회원관리규정 시행세칙 13조 : 2005/9/1 개정 · 시행)
 - 증권금융회사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Repo거래)에 한하여 참가

- 분쟁조정 신청인을 위한 소송지원제도의 도입 (증권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26조 : 2005/6/16 개정 · 시행)
 - 회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불수락하고, 신청인이 소송지원을 요청하는 사건 중에서 투자자보호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회장이 위촉하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소송을 지원함

- 협회소속 변호사를 활용하여 무료 소송지원
 - 소액재판 적용대상사건(소송가액이 2,000만원 이하)은 신청인에 대한 소송자문업무를 수행
 - 인지대, 송달료, 공탁금, 증인신청비용, 감정비용 등 변호사 수입료 이외의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 패소판결 등 위원회의 조정결정보다 불리한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분쟁조정실 및 협회소속 변호사의 소송지원 적정성 검토를 거쳐 상소에 따른 지원여부를 결정
- 단, 신청인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보다도 유리한 판결을 받고 상소하는 경우 등은 제외

IV. 발행기업

1. 기업경영감시

- 비공개 중소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 유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조의2 : 2005/5/31 개정, 6/30 시행)
 - 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2007년 6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말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 및 운영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 회계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및 포상금 지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5조의3 4항·5항: 2005/5/31 개정, 6/30 시행)
 - 회사의 회계부정을 신고 또는 고지한 자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한 회사·당해 회사의 임직원은 신고자 또는 고지자에게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 증권선물위원회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운영이 면제되는 비공개 중소기업의 범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의2 1항 : 2005/6/30 개정·시행)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운영이 2년간 면제되는 비공개 중소기업의 범위를 정함

-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주식회사

○ 회계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의2 : 2005/6/30 개정·시행)

- 회계부정행위 신고자에게 증권선물위원회가 1억원의 범위 안에서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도록 함

○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미실시 사유 추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48조 2항 4호 : 2005/3/15 개정, 3/10 시행)

- 증선위가 재량으로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함

- 2004/12/31 이전에 결산일이 도래한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포함된 기업회계기준 위반사항에 대하여, 2006/12/31까지 결산일이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전기오류수정 손익처리 등 실질에 맞는 방향으로 수정하여 공시한 경우

- * 따라서 과거 회계기준 위반행위를 수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및 이를 단서로 한 과거연도의 관련사항에 대한 감리는 실시하지 않음. 다만, 기타 기업회계기준 위반행위는 종전과 동일하게 감리 및 조치의 대상이 됨

2. 지원 · 관리제도

-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방법 확대 (증권거래법 189조의2 1항 3호 : 2005/12/29 개정, 2006/3/30 시행)
 - 주권상장법인 등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신탁계약 등의 해지 · 종료로 인하여 자기주식을 반환받는 방법을 추가함

- 이사회 결의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대한 규제 강화 (증권거래법 189조의4 3항 · 4항 : 2005/12/29 개정, 2006/3/30 시행)
 -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자 중 당해 법인의 이사를 제외하고,
 - 당해 법인의 이사를 제외한 기타 임·직원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사후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함

- 우리사주제도의 개선 (증권거래법 시행령 2조의7, 84조의15 3항 : 2005/12/9 개정·시행)
 - 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의 요건 등을 개정된 「근로자복지기본법」의 규정에 맞추어 일원화하여, 차입형 우리사주조합도 자기 회사의 모 집 또는 매출시에 우선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

V. 기업구조조정

1. 일반기업

- 주식대량보유 보고시 경영권 취득목적 여부의 명시 의무화 (증권거래법 200조의2 1항 : 2005/1/17 개정, 3/29 시행)
 - 주식의 대량보유(주식 총수의 5% 이상 보유) 등의 보고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명시하여 보유목적은 보고하도록 함
 - 보유목적의 경영권에 대한 영향 유무를 기준으로 주식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내용을 차등화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주식 등의 대량보유목적에 따른 보고내용 차등화 (증권거래법 시행령 86조의7, 86조의9 : 2005/3/28 개정, 3/29 시행)
 -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등을 위해 회사나 그 임원에게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주식의 대량보유가 아닌 경우에는 보고내용을 간소화함
 - 주식 등의 보유목적에 따라 보고내용을 차등화하고, 보유목적 변경 시에도 보고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의 내용과 보고방법의 세부사항을 정함

2. 금융기관

○ 금융지주회사의 유가증권 투자한도 규제의 실효성 제고

(금융지주회사법 43조 2항 : 2005/5/31 개정, 9/1 시행)

— 다음의 사유로 금융지주회사가 유가증권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한도에 적합하도록 조치해야 함

- 자기자본의 감소
- 유가증권의 가격 변동
- 금융지주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위반시에는 초과투자액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 금융지주회사 등의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지배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2조 3항 : 2005/5/26 개정 · 시행)

—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업무집행사원인 경우,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지배하는 것으로 간주

-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배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해짐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등의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 특수목적회사에 대한 금융지주회사 등의 지배 범위 인정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2조 3항 4호 : 2005/5/26 개정·시행)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지정 받은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특수목적회사를 금융지주회사 등이 지배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대상에서 제외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특수목적회사의 최대출자자가 되더라도 금융지주회사 등의 지배를 받는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은행, 보험 등 금융기관이 SOC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 손자회사로 편입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하여 다른 자회사의 출자 허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27조 1항 2호 라목 : 2005/5/26 개정·시행)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자회사에 속하는 손자회사인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유한책임사원으로 출자하는 것을 허용함

-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편입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다른 자회사로부터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되어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 금융기관의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의 지배 허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 1항 1호 가목 : 2005/ 5/26 개정·시행)

— 금융기관이 지배할 수 있는 다른 회사의 범위를 확대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 금융기관이 일반금융회사에 속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주도적으로 설립할 수 있게 되므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 금융기관의 SOC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특수목적회사 지배의 허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 1항 1호 나목 : 2005/5/26 개정·시행)

— 금융기관이 지배할 수 있는 다른 회사의 범위에 SOC 민간투자사업을 위해 설립되는 특수목적회사를 추가

- 금융기관이 SOC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민간투자사업간 경쟁이 촉진되고,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 구조조정 추진 중인 증권회사에 대한 후순위채 만기요건의 완화

(증권업 감독규정 2-15조 : 2005/6/29 개정·시행)

— 금산법상 합병 등에 의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증권회사의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금감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만기 2년 이상의 후순위차입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

- 동양종합금융증권은 동양오리온투자증권의 구조조정을 위해 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나, 규정상 만기 5년 이상인 후순위차입(채권발행 포함)의 경우만을 영업용순자본으로 인정하고 있어,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증권회사가 시장에서 후순위차입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합병 시 자금조달의 애로요인인 후순위채의 만기요건을 완화

VI. 기타

○ 용어의 변경 (증권거래법 시행령 2조의2 등 : 2005/1/27 개정·시행)

— 증권거래 및 선물거래에 관한 업무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로 통합되고, 증권거래법이 개정되어 증권거래소 및 증권업협회의 유가증권거래업무에 관한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변경

- 증권의탁원 → 증권의탁결제원
- 협회중개시장 → 코스닥시장
- 협회등록법인 → 코스닥상장법인
- 협회등록주식 → 코스닥상장주식
- 협회등록취소 → 상장폐지
- 등록일 → 상장일

○ 용어의 변경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1조의4 등 : 2005/1/27 개정·시행)

— 증권거래 및 선물거래에 관한 업무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로 통합되고, 증권거래법이 개정되어 증권거래소 및 증권업협회의 유가증권거래업무에 관한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변경

- 협회중개시장 → 코스닥시장
- 협회등록법인 → 코스닥상장법인

○ 과거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적용특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부칙 4항 : 2005/3/10 개정·시행)

- 2005년 1월 1일 이전에 결산일이 도래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과대계상, 과소계상, 누락)하여 작성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그 이후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결산일이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작성시에 그 위반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거나 실질에 맞게 해소(과대계상 금액의 감소, 과소계상 금액의 증가, 누락금액의 계상)하여,
- 그 재무제표가 포함된 유가증권신고서, 사업설명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를 금감위 또는 거래소에 제출하거나 일반인에게 공람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집단소송법의 적용을 유예

○ 종합신탁제도 도입 (신탁업법 3조 2항, 10조 1항·2항 : 2005/1/17 개정, 4/18 시행)

- 신탁회사가 하나의 신탁계약에 의해 위탁자가 보유하고 있던 금전·유가증권·부동산 등 여러 유형의 재산 중 2이상의 재산을 종합하여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
- 신탁회사가 신탁계약을 통해 인수할 수 있는 재산에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무체재산권을 추가

○ 신탁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신탁업법 24조의4 : 2005/1/17 개정, 4/18 시행)

- 신탁재산의 건전한 운용과 수익자 보호를 위해 신탁회사의 임·직원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도록 의무화함
 - 6개월 이내에(2005/10/17까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 신탁업 인가시 금융기관에 대한 조건의 부가 (신탁업법 3조 4항 : 2005/7/29
개정·시행)

— 금감위는 신탁업 인가시 신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업무 특성을 감안하여 대출업무 제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증권회사 및 보험회사의 신탁업 영위 허용 (신탁업법 29조의3 : 2005/7/29
개정·시행)

—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적용이 배제되고 있는 신탁회사의 상호사용, 임원의 자격, 고유자금운영의 제한 및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규정을 증권회사 및 보험회사에 대하여도 그 적용을 배제함

○ 금융기관에 대한 신탁업 겸영 인가요건의 완화 (신탁업법 시행령 2조의2
5항 단서 : 2005/ 11/25 개정·시행)

—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본적정성 요건을 충족하는 기존 금융기관이 신탁업을 겸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주요출자자에 관한 요건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주요출자자의 요건이 신규인가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어, 은행·증권회사 및 보험회사 등 기존 금융기관이 신탁업을 겸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부 요건을 적용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함

○ 자산운용규제의 완화 (신탁업법 시행령 11조 1항 6호·7호·14호 :
2005/11/25 개정·시행)

— 신탁자금의 운용방법에 외화표시자산·실물자산에의 운용 등을 추가

- 신탁자금 운용방법이 확대되어 다양한 신탁상품의 개발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고객에게 종합적인 자산관리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
- 기금의 주식 및 부동산 투자제한 폐지 (기금관리기본법 3조 3항 : 2005/1/27 개정·시행)
 - 다양한 자산운용을 통하여 기금의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 기금의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원칙적으로 허용
 - 기금관리주체의 PEF의 무한책임사원 금지 (기금관리기본법 3조의2 2항·3항 : 2005/1/27 개정·시행)
 - 기금자산운용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금관리주체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음
 - 자산운용지침의 작성 (기금관리기본법 11조의5 : 2005/1/27 개정, 7/28 시행)
 - 기금관리주체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위해 기금자산운용에 관한 자산운용지침을 자산운용위원회 및 기금운용심의회에 심의를 거쳐 작성하여 14일 이내에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 자산운용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
 - 투자결정 및 위험관리의 기준과 절차, 투자자산별 배분, 자산운용실적의 평가 및 공시, 보유주식의 의결권행사 기준 및 절차 등

- 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 원칙 (기금관리기본법 3조의6 : 2005/1/27 개정·시행)
 - 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이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지 않도록 하며, 기금의 이익을 위해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하고 의결권의 행사내용을 공시함

- 자산운용 전담부서의 설치 (기금관리기본법 11조의4 : 2005/1/27 개정, 4/28 시행)
 - 자산운용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유자금이 1조원을 초과하는 기금에 대해서는
 - 자산운용전담부서를 설치하고,
 - 자산운용평가 및 위험관리와 관련된 전담부서를 두거나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의무화함

- 공무원의 기금자산운용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배제 (기금관리기본법 : 15조 1항·2항 : 2005/1/27 개정·시행)
 - 공무원이 직원남용으로 자산운용담당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민·형사상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산운용담당자와 연대하여 배상

○ 장기투자에 적합한 사회기반시설 투융자회사로의 전환에 관한 규정 마련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1조, 41조의2~41조의9, 42조~44조 :
2005/1/27 개정·시행)

— 기존의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융자회사는 단기분산투자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어 장기적인 집중투자에 부적합하므로, 장기투자에 적합한 사회기반시설 투융자회사로 전환

— 사회기반시설 투융자회사의 신주발행 및 자금차입을 허용하고, 증권시장의 상장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장하도록 하여, 투자자가 증권시장을 통해 출자금을 쉽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함

- 사회기반시설 투융자회사는 투자자산 확보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단기간에 신규펀드를 설립하기 어려우므로, 일반 증권투자회사보다 신축적으로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

○ 한국투자공사의 설립 및 업무 (한국투자공사법 3조, 5조, 29조 : 2005/3/24
제정, 7/1 시행)

— 한국은행 등 위탁기관이 위탁한 외환보유액 등의 자산을 활용하여 투자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투자공사를 설립

- 정부가 전액출자하는 자본금 1조원의 법인으로 설립

○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한국투자공사법 9조 : 2005/3/24 제정, 7/1
시행)

— 한국투자공사의 업무에 관한 기본방침의 수립, 예산·결산의 승인 및 경영성과의 평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설치

○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한국투자공사법 10조~12조 : 2005/3/24 제정, 7/1 시행)

-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한국투자공사에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을 위탁한 기관의 장, 민간위원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 민간위원 6인 이내 및 동 공사의 사장으로 구성
-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함

○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한국투자공사법 26조 : 2005/3/24 제정, 7/1 시행)

-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자산위탁자의 보호를 위해 임원·직원이 직무수행시 준수해야 하는 내부통제기준을 정함
- 공사의 사장은 이사회 의결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에 보고하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함

○ 대외지급 준비자산의 확충을 위한 위탁계약의 특약 (한국투자공사법 30조 : 2005/3/24 제정, 7/1 시행)

-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자산위탁시 동 공사와 위탁기관간에 체결하는 자산위탁의 계약내용에, 다음과 같은 일정한 경우에는 위탁자산에 대한 조속한 회수를 요청할 수 있는 특약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외환보유액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대외지급 준비자산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한국투자공사의 자산운용방법 (한국투자공사법 31조 : 2005/3/24 제정, 7/1 시행)
 - 한국투자공사는 유가증권의 매매, 외국환의 매매, 국내·외 부동산의 매매, 국내·외 자산운용회사에 재위탁 등을 통해 자산을 운용

-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경영평가의 국회보고 (한국투자공사법 부칙 5조 : 2005/3/24 제정, 7/1 시행)
 - 정부는 공사설립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외부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공사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운영위원회 위원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2조 : 2005/6/30 제정, 7/1 시행)
 - 한국투자공사에 1조원 이상을 위탁한 기관의 장은 한국투자공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함
 - 일정금액 이상을 위탁한 기관이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 및 투자담당이사의 자격요건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3조 : 2005/6/30 제정, 7/1 시행)

 - 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 및 투자담당이사의 자격요건과 관련된 금융기관과 국제금융기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 민간위원 및 투자담당 이사의 자격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의 범위를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자산운용회사·은행·보험회사·증권회사 및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으로 함

○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10조 :

2005/6/30 제정, 7/1 시행)

- 한국투자공사의 내부통제기준에 위험관리지침, 경영의사결정 전달체계,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확인절차 등을 포함
 - 대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의 임·직원을 교육·훈련·통제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한국투자공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점검하여 통제

○ 위탁자산의 회수특약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11조 : 2005/6/30 제정, 7/1 시행)

- 한국투자공사에 위탁된 자산에 대하여 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조기회수를 요청할 수 있는 특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
 - 외환보유액이 월말을 기준으로 전월대비 10% 이상 2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의 경우에는 자산위탁기관이 한국투자공사에 위탁된 자산의 회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은행이 한국투자공사에 위탁한 외환보유액의 무분별한 조기회수로 인하여 한국투자공사의 안정적인 경영이 저해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

○ 담보주택에 대한 대출한도 증액 (한국주택금융공사법 9조 3항 2호 :

2005/1/27 개정 · 시행)

- 침해된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고 서민·중산층의 주택구입시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담보주택에 대한 대출한도를 3억원 이내로 증액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설립 당시에는 주택가격 상승 및 투기수요 증가 등에 대한 우려로 담보주택에 대한 대출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

○ 채권유동화 관련 대출한도의 증액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28조 2항

1호, 38조 2호 : 2005/4/27 개정 · 시행)

- 채권유동화를 목적으로 하는 신규분양주택의 중도금대출에 대한 신용보증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증액함
- 신탁중앙회의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대출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증액함

○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의 세부기준 (퇴직연금 감독규정 3조 : 2005/11/3 제정,

12/1 시행)

- 운용관리기관으로 등록하고자하는 자는 연금계리 전문인력, 전산 전문인력, 운용 전문인력 및 전산기기·설치환경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인력 및 설비를 구비해야 하며,
- 자산관리기관으로 등록하고자하는 자는 전산 전문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인력을 갖추어야 함

- 등록절차 및 등록요건의 유지 (퇴직연금 감독규정 5조~7조 : 2005/11/3
제정, 12/1 시행)
 - 등록신청자는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금감위에 제출하고 금감위는 30일
이내에 등록여부를 결정
 - 퇴직연금사업자가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등록요건
을 충족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금
감위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 다만, 재무건전성요건 미달시는 금감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적용

-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취급기관 등 (퇴직연금 감독규정 8조 : 2005/11/3
제정, 12/1 시행)
 -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취급은 투자적격 신용등급 및 적기시정조치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비율을 갖춘 금융기관에 한해 허용
 - 신용등급 기준이 없는 경우 동 기준의 적용을 2006년 5월 31일까지
유예 (부칙 2조)

- 적립금 운용방법 중 취급가능한 유가증권의 종류 (퇴직연금 감독규정 9조
: 2005/11/3 제정, 12/1 시행)
 - 국채·지방채, 투자적격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채권, 국내 상장주식, 외
국(OECD국가) 국채, 감독원장이 정하는 적격 해외주식시장 상장주식,
신탁회사 및 자산운용사 발행 수익증권, 외국 자산운용사 발행 수익증
권(국내판매분), 주택저당증권, 투자적격 기업어음, 주가연계증권(최대
손실범위가 40% 이내인 경우) 등

- 사용자와 지배회사 및 종속회사 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유가증권은 운용방법에서 제외 (10조)
- 기타 적립금 운용방법 (퇴직연금 감독규정 11조 : 2005/11/3 제정, 12/1 시행)
- 환매조건부채권 매수계약, 장내파생상품·장외파생상품 거래계약(위험 회피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및 은행·증권회사의 발행어음·표지어음을 기타 적립금 운용방법으로 인정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위험자산의 종류 및 투자한도
(퇴직연금 감독규정 12조 1항 : 2005/11/3 제정, 12/1 시행)
- 국내외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투자회사 주식 제외), 주식형 간접투자증권, 외국 간접투자증권, 전환사채, 후순위채권 등의 투자한도는 30% 이내
 - 혼합형 간접투자증권, 투자적격등급 이외의 채권 등에 30% 이상 투자하는 간접투자증권, 주식형·혼합형 간접투자증권 등에 50% 이상 투자하는 재간접투자증권, 신탁회사 발행 수익증권, 외국 채권에 50% 이상 투자하는 간접투자증권, 외국의 투자적격 채권(환위험이 헤지되고 신용등급이 A- 이상인 국채는 제외) 등의 투자한도는 40% 이내
 - 집중투자로 인한 투자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회사 발행주식의 10% 이내 등 투자한도를 설정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위험자산의 종류 및 투자한도

(퇴직연금 감독규정 12조 3항 : 2005/11/3 제정, 12/1 시행)

- 적립금 운용방법으로 인정되지 않은 유가증권, 주식 및 주식형·혼합형 간접투자증권, 투자적격등급 이외의 채권 등에 30% 이상 투자하는 간접투자증권 등에 대해서는 투자할 수 없음
- 외국의 투자적격 채권(환위험이 헤지되고 신용등급이 A- 이상인 국채는 제외), 주식의 투자한도가 40% 이하인 외국 간접투자증권에 대한 투자한도는 30% 이내
- 사용자와 계열회사 또는 지분법 적용관계에 있는 회사가 발행한 신용공여 성격의 투자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는 10% 이내
- 동일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간접투자증권 제외)에 대한 투자한도는 30% 이내

○ 간접투자운용방법의 투자한도 (퇴직연금 감독규정 13조 : 2005/11/3 제정, 12/1 시행)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간접투자 운용방법의 경우 위험자산에 대한 총투자한도는 운용방법별로 적립금 금액의 40% 이내

○ 퇴직연금사업자의 약관의 보고 등 (퇴직연금 감독규정 15조~18조 :

2005/11/3 제정, 12/1 시행)

- 퇴직연금사업자가 약관의 제정 및 변경시 10영업일전까지 금감위에 보고하되, 표준약관을 원용하거나 사용자·가입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 사후제출을 허용

- 퇴직연금사업자별 관련 협회가 약관을 제정·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금감위에 보고
 - 퇴직연금사업자 및 협회가 제정하는 약관 및 표준약관의 작성·운용 기준 및 감독당국의 심사기준을 설정
- 약관의 변경명령 (퇴직연금 감독규정 19조 : 2005/11/3 제정, 12/1 시행)
- 금감위가 보고받은 약관이 법규에 위반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약관의 변경 및 보완을 명령
-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보고서 제출 및 공시 (퇴직연금 감독규정 20조, 21조 : 2005/11/3 제정, 12/1 시행)
- 퇴직연금사업자는 정기적(분기별·연별)으로 업무보고서 제출
 -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 운용에 관한 사항(수익률, 수수료, 약관 등)을 매연도말 공시
- 적격 국내·국외 신용평가기관의 범위 (퇴직연금 감독규정 시행세칙 3조 : 2005/11/3 제정, 12/1 시행)
-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및 적립금 운용 등과 관련한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신용평가기관(3개사), 국외 신용평가기관(4개사)를 설정
 - 적격 국내 신용평가기관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허가를 받은 자를 인정(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 적격 국외 신용평가기관으로 Standard & Poor's, Moody's, Fitch, A.M. Best Company 등 4개사를 인정

○ 해외 적격주식시장의 범위 (퇴직연금 감독규정 시행세칙 4조 : 2005/11/3 제정, 12/1 시행)

— 적립금 운용방법으로 인정되는 해외주식 상장시장(9개 시장)을 규정

- 뉴욕증권거래소, 나스닥시장, 동경·런던증권거래소 등 9개 시장(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9조의2 참고)

< 부록 > 규정별 변경내용

I. 법령

1. 증권거래법

- 주식 등의 공개매수제한 폐지 (23조 3항 : 2005/1/17 개정, 3/29 시행)
 - 공개매수공고일부터 과거 6월간 공개매수를 통하여 주식 등을 매수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한 공개매수제한을 폐지

- 공개매수기간 중 유가증권 발행 허용 (23조 4항 : 2005/1/17 개정, 3/29 시행)
 - 공개매수기간에도 주식 등의 발행인이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의결권에 변동을 초래하는 유가증권의 발행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

- 주식대량보유 보고시 경영권 취득목적 여부의 명시 의무화 (200조의2 1항 : 2005/1/17 개정, 3/29 시행)
 - 주식의 대량보유(주식 총수의 5% 이상 보유) 등의 보고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명시하여 보유목적은 보고하도록 함
 - 보유목적의 경영권에 대한 영향 유무를 기준으로 주식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내용을 차등화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주식대량보유 목적의 변경이 있는 경우의 보고의무화

(200조의2 4항, 200조의3 2항 : 2005/1/17 개정, 3/29 시행)

- 주식의 대량보유목적의 변경이 있는 경우 5일 이내에 금감위와 증권선물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하고, 보유목적은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하는 자에 대하여 5일 동안 의결권을 제한하며, 주식 등의 추가취득을 금지

○ 허위보고 등에 대한 제재 및 처벌 (200조의3 1항, 210조 5호의2 : 2005/1/17

개정, 3/29 시행)

- 주식대량보유의 보고상황 및 그 변동내용 중 중요내용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기재를 누락한 자에 대하여 위반주식 등에 대한 의결권행사를 제한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 증권회사 지배주주의 변경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승인

(32조의3 : 2005/7/29 개정, 2006/1/30 시행)

- 증권회사 주식의 취득으로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충분한 출자능력을 갖추어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없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감독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명령을 할 수 있음

- 증권회사 임원결격 요건의 적용회피행위 방지 (33조 2항 6호, 57조의2 :
2005/12/29 개정, 2006/3/30 시행)
 - 증권거래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도 일정기간 동안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함
 -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기 전에 퇴임 또는 퇴직함으로써 증권회사 임원결격 요건의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

-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권 구체화 (54조 : 2005/12/29 개정, 2006/3/30 시행)
 - 금융감독위원회가 투기거래 방지와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증권회사에 할 수 있는 명령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함

- 시세고정·안정행위의 원칙 금지, 예외 허용 명시 (188조의4 3항 :
2005/12/29 개정, 2006/3/30 시행)
 - 유가증권의 시세고정·안정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시장조성·안정조작의 개념, 주체 등을 규정함

-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방법 확대 (189조의2 1항 3호 : 2005/12/29 개정, 2006/3/30 시행)
 - 주권상장법인 등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신탁계약 등의 해지·종료로 인하여 자기주식을 반환받는 방법을 추가함

○ 이사회 결의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대한 규제 강화

(189조의4 3항·4항 : 2005/12/29 개정, 2006/3/30 시행)

-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자 중 당해 법인의 이사를 제외하고,
- 당해 법인의 이사를 제외한 기타 임·직원에게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사후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함

○ 금융감독위원회 명령 위반자에 대한 형사벌칙 삭제 (209조 7호 : 2005/12/29

개정, 2006/3/30 시행)

- 금융감독위원회가 투기거래 방지와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증권회사에 하는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삭제함

2. 증권거래법 시행령

○ 용어의 변경 (2조의2 등 : 2005/1/27 개정·시행)

- 증권거래 및 선물거래에 관한 업무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로 통합되고, 증권거래법이 개정되어 증권거래소 및 증권업협회의 유가증권거래업무에 관한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변경

- 증권예탁원 → 증권예탁결제원
- 협회중개시장 → 코스닥시장
- 협회등록법인 → 코스닥상장법인

- 협회등록주식 → 코스닥상장주식
- 협회등록취소 → 상장폐지
- 등록일 → 상장일

○ 익명조합 등의 출자지분의 유가증권성 인정 (2조의3 1항 3호의5·8호 :

2005/3/28 개정, 3/29 시행)

— 상법상 익명조합·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파생금융상품과 전통적 유가증권의 성격이 결합된 파생결합증권을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으로 인정함

- 출자지분 등의 모집·매출시에 일정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도모

○ 증권회사의 겸영업무 범위의 확대 (36조의2 : 2005/3/28 개정, 3/29 시행)

— 증권회사의 업무기반을 확대하고 영업의 자율성을 제고

- 증권회사에 대하여 신탁업과 장외파생금융상품의 겸영 허용
- 장외파생금융상품의 겸영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 삭제
- 투자일임업·투자자문업 겸영시 수수료 징수제한 규정 삭제

○ 사업보고서 기재방법의 개선 (83조의3 4항~6항 : 2005/3/28 개정, 3/29 시행)

—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의무가 있는 법인은 사업보고서 작성시 연결재무제표를 주된 재무제표로 하되,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경과 후 30일까지 연결재무제표의 제출을 유예

-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의무가 있는 법인도 개별재무제표를 주된 재무제표로 사용하여 투자자가 회사의 재무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종속회사를 포함하여 충실하고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공시하도록 하여 투자자보호를 강화함

○ 주식 등의 대량보유목적에 따른 보고내용 차등화 (86조의7, 86조의9 :

2005/3/28 개정, 3/29 시행)

-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등을 위해 회사나 그 임원에게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주식의 대량보유가 아닌 경우에는 보고내용을 간소화함

- 주식 등의 보유목적에 따라 보고내용을 차등화하고, 보유목적 변경시에도 보고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의 내용과 보고방법의 세부사항을 정함

○ 우리사주제도의 개선 (2조의7, 84조의15 3항 : 2005/12/9 개정·시행)

- 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의 요건 등을 개정된 「근로자복지기본법」의 규정에 맞추어 일원화하여, 차입형 우리사주조합도 자기 회사의 모 집 또는 매출시에 우선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

3.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 용어의 변경 (1조의4 등 : 2005/1/27 개정·시행)
 - 증권거래 및 선물거래에 관한 업무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로 통합되고, 증권거래법이 개정되어 증권거래소 및 증권업협회의 유가증권거래업무에 관한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변경
 - 협회중개시장 → 코스닥시장
 - 협회등록법인 → 코스닥상장법인

- 파생결합증권의 발행기준 및 기초자산 명시 (1조의3 2항·3항 : 2005/3/28 개정, 3/29 시행)
 - 주식과 관련된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인을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의 겸영허가를 받은 증권회사로 한정하고,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을 유가증권 및 신용위험 외에 외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통화 및 일반상품으로 함
 - 파생결합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회사의 업무영역을 확대

- 장외신용파생금융상품 거래의 위험한도 명시 (36조의18 4항 : 2005/3/2 개정, 3/29 시행, 2008/3/28일까지 유효)
 - 증권회사의 장외신용파생금융상품의 거래에 따른 거래상대방 1인당 위험액의 한도를 자기자본의 5%로 제한
 - 장외신용파생 금융상품거래를 통한 계열회사 등에 대한 부당한 지원을 방지

4.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 자산운용회사 지배주주의 변경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승인

(5조의2 : 2005/7/29 개정, 2006/1/30 시행)

- 자산운용회사 주식의 취득으로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충분한 출자능력을 갖추어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감독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명령을 할 수 있음

5. 선물거래법

○ 선물업자의 분기별 영업보고서 제출 및 공시 (47조 : 2005/5/31 개정, 12/1 시행)

- 선물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월간·6월간·9월간·12월간의 영업실적·재무상태 등을 기재한 영업보고서를 해당 기간 경과후 45일 이내에 금감위에 제출하여야 함
- 선물업자는 영업보고서를 금감위 제출일로부터 1년간 본점·지점·영업소에 1년간 비치하거나 전자문서로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

- 선물회사 지배주주의 변경에 대한 금감위의 사전승인 (32조의3 : 2005/7/29 개정, 2006/1/30 시행)
 - 선물회사 주식의 취득으로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충분한 출자 능력을 갖추어 금감위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 금감위의 승인없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감위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명령을 할 수 있음

6. 선물거래법 시행령

-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6조의2 1항, 6조의3 : 2005/1/27 개정·시행)
 -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총적립금액, 회원별 적립률 및 적립방법은 선물시장에서의 회원별 거래위험, 기타 상황을 고려하여 증권선물거래소가 회원관리규정으로 정함
 -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한도에 관한 규정은 폐지
- 선물업자 영업보고서의 기재사항 구체화 (12조의2 : 2005/12/1 개정·시행)
 - 선물업자가 제출하는 영업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전문인력 보유현황 등 임·직원에 관한 사항,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에 관한 사항,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등으로 명시함

- 선물업자의 영업실적과 재무상태에 관한 공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영업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선물거래법」이 개정(2005/5/31)됨

7. 선물거래법 시행규칙

○ 공개된 정보의 범위 (2조 : 2005/1/27 개정·시행)

— 미공개 정보의 이용행위 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개된 정보의 범위를 규정

- 금감위와 증권선물거래소에 법령에 따라 신고되거나 보고된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로서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비치된 날부터 1일이 지난 정보
-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신문 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신문에 그 내용이 게재된 날부터 1일이 지난 정보
- 전국을 가시청권으로 하는 방송을 통하여 그 내용이 방송된 후 12시간이 지난 정보
- 금감위 또는 거래소가 설치·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하여 그 내용이 공개된 후 24시간이 지난 정보

○ 일임선물거래의 방법 및 거래내역 보고 (3조 : 2005/1/27 개정·시행)

— 선물업자가 일임선물거래를 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일임선물거래방법을 명시하고, 거래내역을 금감위와 증권선물거래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 사전에 고객과 서면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좌의 관리자를 지정
- 일임선물거래의 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
- 고객의 성명, 선물거래의 계약수·가격·거래시기 등을 선물거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

8.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과거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적용특례 (부칙 4항 : 2005/3/10 개정·시행)

- 2005년 1월 1일 이전에 결산일이 도래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과대계상, 과소계상, 누락)하여 작성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그 이후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결산일이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작성시에 그 위반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거나 실질에 맞게 해소(과대계상 금액의 감소, 과소계상 금액의 증가, 누락금액의 계상)하여,
- 그 재무제표가 포함된 유가증권신고서, 사업설명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를 금감위 또는 거래소에 제출하거나 일반인에게 공람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집단소송법의 적용을 유예

9.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시행령

- 코스닥시장 거래대상 유가증권 추가 (3조 : 2005/1/27 제정·시행)
 - 코스닥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동 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유가증권을 주권, 외국법인 발행주권 및 상장지수펀드 외에 사채권, 신주인수권 증권을 추가

-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심리대상이 되는 이상거래 (5조 : 2005/1/27 제정·시행)
 - 유가증권 또는 선물거래품목의 가격 또는 거래량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등을 증권선물거래소의 심리대상이 되는 이상거래로 함

- 시장효율화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대상 (12조, 13조 : 2005/1/27 제정·시행)
 -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임원 등으로 시장효율화위원회의 구성원을 명시하고 위원장을 민간전문가인 위원간 호선으로 선출함
 - 증권·선물시장의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심의대상을 100억원 이상의 전산투자자로 함

10. 신탁업법

- 종합신탁제도 도입 (3조 2항, 10조 1항·2항 : 2005/1/17 개정, 4/18 시행)
 - 신탁회사가 하나의 신탁계약에 의해 위탁자가 보유하고 있던 금전·유가증권·부동산 등 여러 유형의 재산 중 2이상의 재산을 종합하여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
 - 신탁회사가 신탁계약을 통해 인수할 수 있는 재산에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무체재산권을 추가

- 신탁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4조의4 : 2005/1/17 개정, 4/18 시행)
 - 신탁재산의 건전한 운용과 수익자 보호를 위해 신탁회사의 임·직원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도록 의무화함
 - 6개월 이내에(2005/10/17까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 신탁업 인가시 금융기관에 대한 조건의 부가 (3조 4항 : 2005/7/29 개정·시행)
 - 금감위는 신탁업 인가시 신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대출업무 제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증권회사 및 보험회사의 신탁업 영위 허용 (29조의3 : 2005/7/29 개정 · 시행)

—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적용이 배제되고 있는 신탁회사의 상호사용, 임원의 자격, 고유자금운영의 제한 및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규정을 증권회사 및 보험회사에 대하여도 그 적용을 배제함

11. 신탁업법 시행령

○ 금융기관에 대한 신탁업 겸영 인가요건의 완화 (2조의2 5항 단서 : 2005/11/25 개정 · 시행)

—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본적정성 요건을 충족하는 기존 금융기관이 신탁업을 겸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주요출자자에 관한 요건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주요출자자의 요건이 신규인가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어, 은행 · 증권회사 및 보험회사 등 기존 금융기관이 신탁업을 겸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부 요건을 적용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함

○ 자산운용규제의 완화 (11조 1항 6호 · 7호 · 14호 : 2005/11/25 개정 · 시행)

— 신탁자금의 운용방법에 외화표시자산 · 실물자산에의 운용 등을 추가

- 신탁자금 운용방법이 확대되어 다양한 신탁상품의 개발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고객에게 종합적인 자산관리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

1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비공개 중소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 유예 (2조의2 : 2005/5/31 개정, 6/30 시행)
 - 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2007년 6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말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 및 운영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 회계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및 포상금 지급 (15조의3 4항·5항: 2005/5/31 개정, 6/30 시행)
 - 회사의 회계부정을 신고 또는 고지한 자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한 회사·당해 회사의 임직원은 신고자 또는 고지자에게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 증권선물위원회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1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운영이 면제되는 비공개 중소기업의 범위 (2조의2 1항 : 2005/6/30 개정·시행)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운영이 2년간 면제되는 비공개 중소기업의 범위를 정함

-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주식회사

○ 회계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15조의2 : 2005/6/30 개정 · 시행)

- 회계부정행위 신고자에게 증권선물위원회가 1억원의 범위 안에서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도록 함

14. 금융지주회사법

○ 금융지주회사의 유가증권 투자한도 규제의 실효성 제고

(43조 2항 : 2005/5/31 개정, 9/1 시행)

- 다음의 사유로 금융지주회사가 유가증권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한도에 적합하도록 조치해야 함

- 자기자본의 감소
- 유가증권의 가격 변동
- 금융지주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위반시에는 초과투자액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15.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 금융지주회사 등의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지배 (2조 3항 : 2005/5/26 개정·시행)

-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업무집행사원인 경우,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지배하는 것으로 간주
 -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배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해짐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등의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 특수목적회사에 대한 금융지주회사 등의 지배 범위 인정

(2조 3항 4호 : 2005/5/26 개정·시행)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지정 받은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특수목적회사를 금융지주회사 등이 지배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대상에서 제외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특수목적회사의 최대출자자가 되더라도 금융지주회사 등의 지배를 받는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은행, 보험 등 금융기관이 SOC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 손자회사로 편입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하여 다른 자회사의 출자 허용

(27조 1항 2호 라목 : 2005/5/26 개정·시행)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자회사에 속하는 손자회사인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유한책임사원으로 출자하는 것을 허용함

-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편입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다른 자회사로부터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되어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16.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금융기관의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의 지배 허용 (6조 1항 1호 가목 :

2005/5/26 개정·시행)

— 금융기관이 지배할 수 있는 다른 회사의 범위를 확대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 금융기관이 일반금융회사에 속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주도적으로 설립할 수 있게 되므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 금융기관의 SOC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특수목적회사 지배의 허용

(6조 1항 1호 나목 : 2005/5/26 개정·시행)

— 금융기관이 지배할 수 있는 다른 회사의 범위에 SOC 민간투자사업을 위해 설립되는 특수목적회사를 추가

- 금융기관이 SOC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민간투자사업간 경쟁이 촉진되고,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17. 선박투자회사법

○ 선박투자회사의 해외자회사의 업무범위 명확화 (3조 3항 : 2005/7/29 개정, 10/30 시행)

— 선박투자회사가 해외에 설립하는 해외자회사의 업무에 대해서는 선박투자회사가 행한 것으로 간주

○ 관공선만을 대상으로 한 선박투자회사의 설립 인가 (13조의2 : 2005/7/29 개정, 10/30 시행)

— 선박투자회사를 활용한 관공선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공선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의 설립을 인가할 수 있음

- 투자자문위원회의 설치 (14조의2 : 2005/7/29 개정, 10/30 시행)
 - 선박투자업 인가에 대한 심사와 관련하여 해운 및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자문을 듣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투자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

- 선박운용회사 등과 특별관계자의 주식소유제한 완화 (18조 : 2005/7/29 개정, 10/30 시행)
 - 선박운용회사 등과 특별관계자의 주식소유제한을 완화
 - 20% → 25%

- 선박운용회사의 진입 강화 (34조 : 2005/7/29 개정, 10/30 시행)
 - 선박운용회사의 무분별한 난립 방지를 위해 선박운용회사에 대한 등록제를 허가제로 강화

- 선박운용회사의 최저순자산액 유지의무 (34조의2 : 2005/7/29 개정, 10/30 시행)
 - 선박운용회사는 설립허가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저순자산액을 유지해야 함

18.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 부동산투자회사의 예비인가 절차 규정 (3조 : 2005/4/22 개정, 4/23 시행)
 - 부동산투자회사의 예비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자본금 및 발기인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된 예비인가신청서를 작성 후 건교부장관에게 제출
 - 예비인가여부 결정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의 포함여부 및 자산의 투자·운영시의 투자자보호 방안을 확인

- 현물출자 부동산의 평가에 관한 객관적 기준 마련 (9조 : 2005/4/22 개정, 4/23 시행)
 -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시에 현물출자 하는 부동산가액의 평가를 수익환원법 등에 의하도록 함
 - 평가를 수행한 감정평가업자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검사인으로 선임될 수 없음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제한의 예외 인정 (20조 : 2005/4/22 개정, 4/23 시행)
 - 일정한 경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와 그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 및 그 특별관계자가 서로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
 - 일반분양·경쟁입찰방식에 의한 거래, 부동산을 이사회가 정한 가격 이상으로 임대하는 거래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합병·해산에 의한 불가피한 거래 등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수익률 제고를 위해 주주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와 그 자산의 투자 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간의 거래를 허용

○ 자산관리회사의 경영제한의 예외 (22조 : 2005/4/22 개정, 4/23 시행)

- 자산관리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의 위탁업무 외에 신탁업, 자산을 SOC투자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법인의 자산관리 및 운용업무, 부동산의 취득·관리·처분 및 개발에 대한 자문업무 등을 경영할 수 있도록 허용

○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제한 예외 인정 (29조 : 2005/4/22 개정, 4/23 시행)

-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상업지역 내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신축,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지역 내에서 개발된 토지의 취득 또는 건축물 신축 등의 부동산개발사업에는 부동산투자회사가 총자산의 3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
 - 부동산투자회사의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의 활성화를 기대

○ 내부통제기준의 내용 및 준법감시인의 요건 (45조, 46조 : 2005/4/22 개정, 4/23 시행)

- 자산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관리,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절차 등을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포함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두는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 한국은행 등에서 일정한 근무경력이 있고,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률을 위반하여 건교부장관 등으로부터 주의·경고의 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등

19. 기금관리기본법

- 기금의 주식 및 부동산 투자제한 폐지 (3조 3항 : 2005/1/27 개정·시행)
 - 다양한 자산운용을 통하여 기금의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 기금의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원칙적으로 허용

- 기금관리주체의 PEF의 무한책임사원 금지 (3조의2 2항·3항 : 2005/1/27 개정·시행)
 - 기금자산운용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금관리주체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음

- 자산운용지침의 작성 (11조의5 : 2005/1/27 개정, 7/28 시행)
 - 기금관리주체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위해 기금자산운용에 관한 자산운용지침을 자산운용위원회 및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작성하여 14일 이내에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 자산운용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

- 투자결정 및 위험관리의 기준과 절차, 투자자산별 배분, 자산운용실적의 평가 및 공시, 보유주식의 의결권행사 기준 및 절차 등

○ 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 원칙 (3조의6 : 2005/1/27 개정·시행)

- 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이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지 않도록 하며, 기금의 이익을 위해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하고 의결권의 행사내용을 공시함

○ 자산운용 전담부서의 설치 (11조의4 : 2005/1/27 개정, 4/28 시행)

- 자산운용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유자금이 1조원을 초과하는 기금에 대해서는
 - 자산운용전담부서를 설치하고,
 - 자산운용평가 및 위험관리와 관련된 전담부서를 두거나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의무화함

○ 공무원의 기금자산운용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배제

(15조 1항·2항 : 2005/1/27 개정·시행)

- 공무원이 직원남용으로 자산운용담당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민·형사상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산운용담당자와 연대하여 배상

20.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장기투자에 적합한 사회기반시설 투융자회사로의 전환에 관한 규정 마련

(41조, 41조의2 ~ 41조의9, 42조 ~ 44조 : 2005/1/27 개정·시행)

— 기존의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융자회사는 단기분산투자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어 장기적인 집중투자에 부적합하므로, 장기투자에 적합한 사회기반시설 투융자회사로 전환

— 사회기반시설 투융자회사의 신주발행 및 자금차입을 허용하고, 증권시장의 상장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장하도록 하여, 투자자가 증권시장을 통해 출자금을 쉽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함

- 사회기반시설 투융자회사는 투자자산 확보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단기간에 신규펀드를 설립하기 어려우므로, 일반 증권투자회사보다 신속적으로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

21. 한국투자공사법

○ 한국투자공사의 설립 및 업무 (3조, 5조, 29조 : 2005/3/24 제정, 7/1 시행)

— 한국은행 등 위탁기관이 위탁한 외환보유액 등의 자산을 활용하여 투자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투자공사를 설립

- 정부가 전액출자하는 자본금 1조원의 법인으로 설립

-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9조 : 2005/3/24 제정, 7/1 시행)
 - 한국투자공사의 업무에 관한 기본방침의 수립, 예산·결산의 승인 및 경영성과의 평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설치

-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0조~12조 : 2005/3/24 제정, 7/1 시행)
 -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한국투자공사에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을 위탁한 기관의 장, 민간위원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 민간위원 6인 이내 및 동 공사의 사장으로 구성
 -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함

-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26조 : 2005/3/24 제정, 7/1 시행)
 -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자산위탁자의 보호를 위해 임원·직원이 직무수행시 준수해야 하는 내부통제기준을 정함
 - 공사의 사장은 이사회 의결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에 보고하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함

- 대외지급 준비자산의 확충을 위한 위탁계약의 특약 (30조 : 2005/3/24 제정, 7/1 시행)
 -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자산위탁시 동 공사와 위탁기관간에 체결하는 자산위탁의 계약내용에, 다음과 같은 일정한 경우에는 위탁자산에 대한 조속한 회수를 요청할 수 있는 특약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외환보유액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대외지급 준비자산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한국투자공사의 자산운용방법 (31조 : 2005/3/24 제정, 7/1 시행)

- 한국투자공사는 유가증권의 매매, 외국환의 매매, 국내·외 부동산의 매매, 국내·외 자산운용회사에 재위탁 등을 통해 자산을 운용

○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경영평가의 국회보고 (부칙 5조 : 2005/3/24 제정, 7/1 시행)

- 정부는 공사설립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외부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공사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22.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 운영위원회 위원 (2조 : 2005/6/30 제정, 7/1 시행)

- 한국투자공사에 1조원 이상을 위탁한 기관의 장은 한국투자공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함

- 일정금액 이상을 위탁한 기관이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 및 투자담당이사의 자격요건 (3조 : 2005/6/30 제정, 7/1 시행)

— 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 및 투자담당이사의 자격요건과 관련된 금융기관과 국제금융기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 민간위원 및 투자담당 이사의 자격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의 범위를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자산운용회사·은행·보험회사·증권회사 및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으로 함

○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0조 : 2005/6/30 제정, 7/1 시행)

— 한국투자공사의 내부통제기준에 위험관리지침, 경영의사결정 전달체제,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확인절차 등을 포함

- 대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의 임·직원을 교육·훈련·통제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한국투자공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점검하여 통제

○ 위탁자산의 회수특약 (11조 : 2005/6/30 제정, 7/1 시행)

— 한국투자공사에 위탁된 자산에 대하여 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조 기회수를 요청할 수 있는 특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

- 외환보유액이 월말을 기준으로 전월대비 10% 이상 2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의 경우에는 자산위탁기관이 한국투자공사에 위탁된 자산의 회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은행이 한국투자공사에 위탁한 외환보유액의 무분별한 조기회수로 인하여 한국투자공사의 안정적인 경영이 저해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

2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담보주택에 대한 대출한도 증액 (9조 3항 2호 : 2005/1/27 개정·시행)
 - 침체된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고 서민·중산층의 주택구입시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담보주택에 대한 대출한도를 3억원 이내로 증액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설립 당시에는 주택가격 상승 및 투기수요 증가 등에 대한 우려로 담보주택에 대한 대출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

2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 채권유동화 관련 대출한도의 증액 (28조 2항 1호, 38조 2호 : 2005/4/27 개정·시행)
 - 채권유동화를 목적으로 하는 신규분양주택의 중도금대출에 대한 신용보증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증액함
 - 신탁중앙회의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대출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증액함

25. 법인세법 시행령

○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111조 2항 : 2005/2/19 개정, 7/1 시행)

— 종전에는 금융기관의 수입원천인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면제하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채권 등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도 원천징수를 면제함

- 채권시장의 활성화 및 금융기관의 업무성격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면제할 필요성이 있음
- 금융기관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채권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유가증권 대차거래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132조 14항 : 2005/2/19 개정 · 시행)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과 유가증권 대차거래를 하여 유가증권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배당 등의 보상금상당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음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에 이루어지는 유가증권 대차거래시 차입자가 대여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상당액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당해 유가증권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대하여도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과세될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

- 유가증권 대차거래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유가증권 대차시장의 활성화를 기대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제도 개선 (161조 : 2005/2/19 개정·시행)

—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제출의무를 면제함

-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투자전문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 등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법인의 범위에서 제외
-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에게 귀속되는 주식 등의 변동상황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대상에서 제외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는 법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과세활용의 실익이 적은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여 줄 필요성이 있음

26. 소득세법 시행령

○ 이자부·배당부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 (23조 7항 : 2005/2/19 개정·시행)

— 투자신탁의 투자자가 거주자 1인 또는 그와 친족 등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만 구성되고, 당해 투자자가 사실상 투자자산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투자신탁의 이익분배금에 대하여는, 신탁재산운영에 따른 소득원천에 따라 이자소득·배당소득·양도소득으로 나누어 과세함

- 기존에는 이자부 투자신탁이나 배당부 투자신탁의 수익분배금에 대해서는 이자소득·배당소득으로 보아 저율 또는 분리과세를 하였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조세회피가 우려되었음
- 동 시행령의 시행 후 설정되는 투자신탁분부터 적용

27.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 증권거래세 미납시의 가산세 이자율 명시 (8조의2 : 2005/2/19 개정·시행)

—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 미납일수에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 이자율을 감안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당해 이자율을 1일 3/10,000으로 정함

- 기존에는 일률적으로 미납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
- 2005년 1월 1일 이후 양도되는 주권 등에 대해 적용

II. 금융감독위원회 규정

1.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주식대량보유 등의 보고서 보유목적별 보고사항의 이원화

(134조 : 2005/3/28 개정·시행)

— 경영참가 또는 단순투자 등 보유목적에 따른 세부보고사항을 정함

- 경영참가의 경우 보고자의 실체 및 취득재원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
- 보고자가 paper company인 경우 당해 회사 및 자산운용자 각각에 대하여 인적사항 등을 기재
- 단순투자시에는 보유목적 미기재 등 보고부담을 완화

○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용어 정비 (2005/3/28 개정·시행)

- 한국증권거래소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 협회중개시장 → 코스닥시장
- 협회등록법인 → 코스닥상장법인
- 증권예탁원 → 증권예탁결제원

○ 새로운 증권에 대한 유가증권신고서 기재사항 마련 (17조, 20조 : 2005/4/27 개정·시행)

—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범위에 상법상 익명조합·합자회사·유한회사의 출자지분증권 및 파생금융상품과 전통적 유가증권의 성격이 결합된 파생결합증권이 추가됨에 따라, 유가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등을 정함

○ 유가증권신고서 등의 공시기간 연장 (8조, 33조, 44조, 74조, 96조, 118조, 114조 : 2005/4/27 개정·시행)

— 증권거래법 시행령상 유가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 등의 비치·열람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유가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 등의 공시기간을 연장

- 등록법인결산서류, 유가증권신고서, 사업설명서, 사업보고서, 합병 등 신고서, 자기주식취득처분신고서 등
- 증권거래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가능기간(3년)과의 일관성 유지

○ 주요 경영사항 신고항목의 축소·정비 (68조, 68조의2, 69조, 70조, 71조 : 2005/12/29 개정, 2006/4/1 시행)

— 상장법인의 주요경영사항 신고항목 중 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법인의 경영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만 존치하고, 기타 시급히 공시할 필요성 및 정보의 중요성이 낮은 사항은 삭제하거나 거래소규정으로 이관 (200개 → 71개)

- 법령 사항(44개), 회사의 존폐 및 조직변경 관련사항(8개), 기업지배 구조 관련사항(4개), 국내외 동시상장법인의 공시사항(4개) 등 71개 사항은 존치
- 정기·특수공시 등의 공시사항과 중복되거나 시급히 공시할 필요성이 적은 사항 등 129개 사항은 삭제하거나 거래소규정으로 이관(거래소규정 이관 42개, 자율공시 전환 41개, 삭제 46개)

○ 전환사채 등의 전환가액 산정기준 개선 (61조 : 2005/12/29 개정, 2006/1/1 시행)

—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일반공모방식 발행에 대하여 다음의 3개 시가 중 '높은 가액 이상'에서 '낮은 가액 이상'으로 변경

- ① 1개월 평균종가·1주일 평균종가·최근일 종가의 산술평균, ② 최근일 종가, ③ 청약일 3거래일전의 종가

○ 외부평가기관과의 합병비율 평가계약 체결내역에 대한 공시의무 폐지

(83조 : 2005/12/29 개정, 2006/1/1 시행)

—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계약 체결공시는 합병정보의 사전유출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중복적인 공시규제이므로 폐지함

○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의 보고기간 산정 시 토요일 제외

(133조 : 2005/12/29 개정, 2006/1/1 시행)

— 공시서류의 토요 접수제 폐지에 따라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5% 보고)의 보고기간(5일) 산정 시 토요일을 제외

2. 증권업 감독규정

- 증권회사의 고객에 대한 재산상이익의 제공한도 신설 (4-8조 : 2005/4/27 개정·시행)
 - 증권회사의 영업자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경품 등 재산상이익의 제공을 허용함
 - 고객 1인에게 1년간 제공되는 재산상이익의 합계액은 증권회사가 직전 사업연도 중에 당해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수수료의 10% 이내
 - 고객 전체에게 1사업연도 동안 제공하는 재산상이익의 합계액은 증권회사의 직전사업연도 중 당해영업에서 발생한 수수료수익의 1% 이내
 - 재산상이익의 범위는 물품, 금전, 할인권, 상품권 등으로 함

- 고객에 대한 위탁매매수수료 관련규제 폐지 (4-31조 : 2005/4/27 개정·시행)
 - ‘고객간 수수료의 부당한 차별금지’ 조항이 시행령에서 삭제됨에 따라, 증권업감독규정의 고객간 정당한 수수료 차별사유 및 교섭수수료 관련규제를 폐지하여 증권회사의 영업자율성을 제고함

- 호가중개시스템 (제3시장) 관련규정의 정비 (5-47조 : 2005/4/27 개정·시행)
 - 호가중개시스템의 운영주체가 증권업협회로 변경됨에 따라, 중개대상 유가증권의 지정·해제기준 등의 업무기준을 증권업협회가 정하여 금감위에 통보하도록 변경

- 증권업감독규정상 호가중개시스템의 지정·해제기준, 매매거래방법, 결제방법 등에 관한 규정 삭제
 - 증권거래법 시행령에서 금감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인의 재무상태 등을 공시하도록 함에 따라, 정기·수시공시사항 및 공시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증권회사의 부수업무 사전신고제 폐지 (5-64조 : 2005/4/27 개정·시행)
- 증권회사의 경영자율성 제고를 위해 부수업무 개시 7일 전 금감위에 대한 사전신고의무를 폐지
 - 단, 부수업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감독차원에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므로, 부수업무 개시 또는 폐지 후 최초로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도록 업무보고서식을 보완
- 외국증권회사 국내지점의 건전성 감독 개선 (2-63조의3, 2-69조 : 2005/4/27 개정·시행)
- 외국증권업자 국내지점의 결산대차대조표 공고기한을 '회계연도 경과 후 60일 이내'에서 국내 증권회사와 동일하게 '회계연도 경과후 3월 이내'로 완화
 - 외국증권회사 국내지점이 매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을 당기순이익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함
 - 외국증권회사 국내지점의 결산결과, 보유자산이 영업기금과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보전시한을 결산일로부터 60일로 정함

- 고객예탁금 운용방법의 변경 (3-3조 : 2005/4/27 개정 · 시행)
 - 고객예탁금 예치기관인 증권금융의 국제담보대출 상대방을 지정함
 - 금감위의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국고채 전문딜러)으로 정함
 - * 단, 적기시정조치의 대상이거나 조치가 유예중인 기관은 제외
 - 예치기관은 고객예탁금 관리시, 현물고객예탁금과 선물고객예탁금을 구분하여 관리

- 선물·옵션관련 조문의 정비 (4-1조, 4-27조 등 : 2005/4/27 개정 · 시행)
 - 선물·옵션이 증권거래법령상의 유가증권에서 제외되고 선물거래법령의 규제를 받음에 따라, 선물·옵션계좌개설 절차, 위탁증거금 추가납부 요구, 거래내역 보고의무 등 선물·옵션관련규정을 삭제·정비

- 투자자집단의 대표투자자계좌 운용방식의 확대 (7-8조 : 2005/4/27 개정 · 시행)
 - 증권회사 명의의 통합계좌(외국인거래전용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한 후, 투자집단 소속 펀드별로 배분하는 방식도 허용
 - 다수의 펀드로 구성된 투자자집단내의 특정펀드의 계좌를 대표투자자계좌로 정하여 다수 펀드의 주문을 일괄처리하는 기존의 방법은 계속 유지

- 투자자집단의 가격배분방식의 명확화 (7-8조 : 2005/4/27 개정 · 시행)
 - 증권회사가 투자자집단의 일괄주문을 받아 체결한 경우, 사전에 합의된 가격(예: 거래량 가중평균가격)으로 개별 외국인계좌에 각각 배분할 수 있도록 함

- 투자자집단 신고제도 간소화 (7-10조 : 2005/4/27 개정 · 시행)
 - 외국인이 투자자집단제도 이용시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증권회사에 신고하도록 하며, 증권회사가 투자자집단의 여부 등을 확인 · 관리하도록 함

- 외국인의 장외거래 허용범위 확대 (7-8조 : 2005/4/27 개정 · 시행)
 - 장외거래의 부작용이 적고 거래내역에 대한 감시가 용이한 거래를 대상으로 장외거래의 허용범위를 확대함
 - 국내에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경쟁입찰방식을 통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 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로 인한 유가증권의 취득

- 조사분석자료의 공표와 자기매매금지 관련규제의 보완 (4-7조 : 2005/4/27 개정 · 시행)
 - 증권회사는 조사분석자료 작성과정에 참여한 자에게 공표후 24시간 전까지는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거래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조사분석자료의 작성과정에의 참여하지 못하도록 함

- 최선의 매매거래 집행기준의 완화 (4-25조 : 2005/4/27 개정 · 시행)
 - 증권회사가 장외에서 고객의 유가증권 매매거래를 수탁 · 중개 · 대리할 경우 2인 이상의 업자로부터 호가를 확인해야 최선의 매매거래를 집행한 것으로 인정하던 조항을 삭제
 - 유가증권 거래여건의 변화로 규제의 현실성이 저하됨

- 위탁수수료에 연동한 대가지급의 제한 (4-32조 : 2005/4/27 개정 · 시행)
 - 증권회사 위탁계좌 개설대행업무를 모든 검사대상 금융기관이 공정한 경쟁조건 하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간의 차등 규정을 폐지
 - 금융회사가 계좌개설대행업무 등과 관련하여 증권회사로부터 위탁수수료 수입에 연동한 대가를 받는 것을 금지하여 유사 위탁매매업의 영업소지를 차단

- 일반투자자의 투자대상 외화증권의 범위 확대 (5-73조 : 2005/4/27 개정 · 시행)
 - 외국주가연계증권은 국내 ELS와 성격이 유사하고 외국 ELS와 유사한 성격의 파생상품형 수익증권이 일반투자자의 투자대상으로 이미 허용된 점 등을 감안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대상 외화증권에 추가

- 적격금융기관 이외의 금융회사에 대한 거래상대방 위험액 조정

(별표 12 : 2005/4/27 개정 · 시행)

 - 증권회사의 영업용 순자본비율관련 거래상대방 위험액 산정시, 신용등급이 없는 적격금융기관 이외의 금융회사라도 금융권별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투자적격업체(BBB 등급)의 위험값(3.2%)을 적용
 - 기존에는 자산운용회사 · 상호저축은행 등 적격금융기관이 아닌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신용등급이 없으면 투자부적격 등급법인(BB이하)에 해당하는 높은 위험값(8.0%)을 적용하였음

- 합병 및 영업양수도 (예비)인허가 신청시 연명신청 근거마련
(1-3조, 1-7조 : 2005/4/27 개정 · 시행)
 - 증권회사가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시 그 상대방이 금융기관인 경우 당사자가 연명으로 (예비)인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의 공공적 법인 주식취득한도 초과취득사유 추가 (7-6조 : 2005/4/27 개정 · 시행)
 - 외국인이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 등의 행사로 인해 불가피하게 공공적 법인의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한도초과를 인정하는 초과취득사유를 확대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의한 일시적인 한도초과도 예외사유에 추가

- 증권금융의 고객예탁금 운용대상을 확대 (3-3조 : 2005/4/27 개정 · 시행)
 - 고객예탁금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MMF의 건전성 제고 등 금융환경이 변화한 점을 감안하여 운용수단을 확대함
 - MMF 운용한도를 콜론과 합산하여 20%에서 30%로 확대
 - MMF가 편입자산의 신용등급 상향, 잔존 만기단축, 분산투자요건 강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건전성이 대폭 향상된 점을 반영
 - 투자대상채권의 범위에 주택저당증권(MBS), BIS 10%를 초과한 은행이 발행한 은행채를 추가(후순위채 및 주식관련채권은 제외)
 - Repo 매수대상채권에 신용등급 AAA인 비상장법인 발행채권을 추가
 - 직접취득, Repo 매수, 담보대출로 취득한 유가증권의 대여를 제한적으로 허용

- 유가증권 대여의 거래상대방은 적격금융기관으로 한정
- 유가증권 대여한도는 유가증권의 종목별 50% 이내로 제한
- 유가증권 대여시, 담보로 취득한 자금으로 유가증권을 매수하거나 담보로 취득한 유가증권의 매도 금지

○ 합병증권회사의 종합금융업무 경영기간을 연장 (1-11조 : 2005/6/29 개정 · 시행)

— 합병증권회사의 종합금융업무 경영기간을 7년에서 금산법이 허용하고 있는 10년으로 연장

- 우리투자증권과 동양종합금융증권은 과거 종합금융회사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계열 종합금융회사를 합병하여 7년 동안 종합금융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바, 이들이 계속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구조조정 추진 중인 증권회사에 대한 후순위채 만기요건의 완화

(2-15조 : 2005/6/29 개정 · 시행)

— 금산법상 합병 등에 의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증권회사의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금감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만기 2년 이상의 후순위차입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

- 동양종합금융증권은 동양오리온투자증권의 구조조정을 위해 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나, 규정상 만기 5년 이상인 후순위차입(채권발행 포함)의 경우만을 영업용순자본으로 인정하고 있어,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증권회사가 시장에서 후순위차입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합병 시 자금조달의 애로요인인 후순위채의 만기요건을 완화

○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별 적용위험값을 세분화 (별표 12 : 2005/6/29 개정 · 시행)

—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별 적용위험값을 세분화하여 신용상태에 따라 필요자본규모를 차별화함

- 신BIS협약에서도 신용등급에 따라 신용위험을 차별화하도록 권고

< 거래상대방 신용등급별 위험값 >

구 분	AAA, AA-	A+, A-	BBB+, BBB-	BB+, BB-	B+, B-	개인	Workout등
기 준(%)	1.6		3.2	8			8 or 16
개 정(%)	1.2	1.6	3.2	8	12	8	12

— 신용파생상품거래에 의한 신용보장 제공의 경제적 효과는 채무보증과 유사하므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정시 이를 지급보증·채무보증으로 보아 거래상대방 위험을 산정하도록 명문화

○ PEF에 무한책임사원으로 참여시 위험액 산정방안 마련

(2-4조, 2-24조 : 2005/6/29 개정 · 시행)

— 증권회사가 PEF에 무한책임사원으로 참여시의 위험액산정방법을 명문화

- PEF의 차입 또는 채무보증에 대해서는 무한책임사원이 사실상 부담해야 하므로 거래상대방 위험액을 산정

* 동 채무보증 등에 대해서는 자산건전성을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적립

- PEF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증권회사의 영업용순자본에서 추가 차감

- 구조적 포지션에 대한 외환위험액 감액 (2-21조 : 2005/6/29 개정 · 시행)
 - 구조적 외환포지션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외환 위험값을 감액해 줄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
 - 외환위험액은 통화별 포지션에 8%를 곱하여 산정하고 있는데, 환율 변동에 따른 환위험이 헤지되는 구조적 포지션의 경우에도 8%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비합리적이었음

- 특수관계인 발행증권의 소유제한 완화 (2-61조 : 2005/6/29 개정 · 시행)
 - 차익거래 또는 장외파생상품 영업의 헤지목적으로 계획 · 관리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 유가증권 소유한도(8%)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
 - 헤지거래 인정요건
 - 다른 포지션과 분리되어 별도로 관리될 것
 - 헤지거래를 목적으로 계획되고 매매거래됨을 입증할 것

- 적기시정조치 관련 규정의 개정 (2-35조 : 2005/6/29 개정 · 시행)
 -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한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적기시정조치는 물론, 동 유예조치의 대상도 아닌 것으로 개선

3. 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 적격기관투자자의 범위 확대 (4-1조 6호~8호 : 2005/4/27 개정·시행)
 - 실질적으로 적격기관투자자에 해당하지만, 적격기관투자자의 범위에서 누락된 기관투자자를 적격기관투자자에 추가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의 유동화전문회사
(단, 적격기관투자자를 자산관리자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우체국보험 적립금·우체국예금을 운용하는 정보통신부 장관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단, 적격기관투자자를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4. 간접투자 자산운용업 감독규정

- 위험대비 자기자본비율제도 개선 (26조, 29조 : 2005/10/7 개정, 2006/4/8 시행)
 - 시가평가펀드에 대해 펀드규모별로 위험률을 차등화하여 수탁고 증가에 따른 자산운용회사의 과도한 자본확충 부담을 일부 완화하고 펀드 대형화를 유도
 - 일정규모 미만 펀드의 위험률은 기존(0.1%)보다 높이고, 일정규모 이상 펀드의 위험률은 기존보다 낮추어 위험액을 산정

* 약관상 주식편입비율 50% 이상 증권펀드 : 펀드규모에 따라 0.12%
(순자산총액 100억원 이하)에서 0.06%(1조원초과)까지
구간별 위험률을 적용

* 기타 펀드 : 펀드규모에 따라 0.14%(100억원 이하)에서 0.07%(1조
원 초과)까지 구간별 위험률을 적용

— 장부가평가펀드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0.2%의 위험률을 적용하
여 위험액을 산정

• 다만, 일정규모(개인전용 3,000억원, 법인전용 5,000억원) 이상이면서
시가괴리율이 양(+인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MMF)의 위험률은 0.18%
를 적용

— 사모투자전문회사(PEF)는 0.2%의 위험률을 적용하여 위험액을 산정

—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자산운용회사에 대
해서는 산정된 위험액의 10%를 감액

○ 적기시정조치 유예제도 개선 (34조 : 2005/10/7 개정 · 시행)

— 채무건전성기준을 충족시킨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적기시정조치
는 물론 유예조치의 대상도 아닌 것으로 함

○ MMF 운용규제 완화 (62조, 58조 : 2005/10/7 개정 · 시행)

— 산금채, 중기채 및 수출금융채 편입한도 확대

• MMF의 산업은행, 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 발행채권의 편입한도를
정부투자기관 발행 채권과 동일하게 자산총액의 30%까지 확대

- 국고채금리를 기준금리로 하는 변동금리부채권의 편입허용
 - 투자대상자산의 만기보다 장기의 만기를 가진 자산의 금리를 기준금리로 사용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폐지하여 국고채 등을 기준금리로 사용하는 변동금리채권의 편입을 허용

- 파생상품거래 관련 규제 완화 (74조 : 2005/10/7 개정·시행)
 - 총위험평가액 산정시 파생상품거래증거금 제외
 - 증권펀드의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총위험평가액 산정시 파생상품 거래 증거금을 위험액 산정대상에서 제외하여 총위험평가액 계산의 합리성을 제고

 - 파생상품 거래시 위험액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위험회피거래의 개념을 명확화
 - 용어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델타중립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위험회피거래는 파생상품거래의 위험액 산정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하여 채권의 듀레이션개념을 이용한 위험회피거래도 위험액 산정대상에서 제외

- 무보증사채의 신용평가기관에 해외신용평가기관 인정 (68조 : 2005/10/7 개정·시행)
 - 펀드에서 편입할 수 있는 무보증사채의 신용평가기관에 무디스, S&P 및 피치 등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을 포함하여 펀드의 해외무보증사채 투자의 장애요인을 제거

- 후순위차입금 한도 승인권자 변경 (30조 : 2005/10/7 개정·시행)
 - 자산운용회사의 순자산액에 가산할 수 있는 후순위차입금 총한도 예외 승인권자를 금융감독원장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변경

- 고유재산운용 승인사항 금융감독원장 위탁제도 개선 (108조 : 2005/10/7 개정·시행)
 -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상 고유재산운용에 대한 승인사항 중 금산법상 다른 회사 주식소유에 대한 승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 위탁대상에서 제외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승인하도록 함
 -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한 업무중 자산보관회사 등록 취소와 같이 업무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행위 등 업무특성상 위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처리토록 함

- MMF의 시가산정기준 명확화 (63조 : 2005/10/7 개정·시행)
 - 자산운용회사가 MMF의 시가과리율을 계산하기 위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시행령에서 정한 시가평가펀드 평가기준을 준용하도록 평가기준을 명확화

- 신용불량자 용어정의 삭제에 따른 자구 수정 (별지 8호·9호 : 2005/10/7 개정·시행)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에 맞게 신용불량자 용어를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변경

5. 간접투자 자산운용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 경영실태평가제도 개선 (별지 3호, 6호~8호 : 2005/10/7 개정, 4/8 시행)
 - 자본의 적정성부문 계량평가항목에 법정자본금잠식률 항목을 신설하여 경영실태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 법정자본금 잠식회사는 자본의 적정성부문 계량평가등급이 3등급을 초과하여 상위등급으로 되지 않도록 등급상한을 설정
 - 또한, 자본의 적정성부문 계량평가항목 중 회사별 변별력이 작은 실질 자기자본비율 항목을 삭제

- 보고서 서식 정비 (별지 13-2호, 26호 : 2005/10/7 개정·시행)
 - 신탁약관 변경보고서 서식을 별도로 제정하여 신탁약관 제정 및 변경 보고서 동일한 양식을 사용함에 따른 혼란을 해소
 - 역외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자결과보고서 고객통보 실적 및 업무방법의 준수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실적을 기재토록 영업보고서 내용을 보완

- 투자설명서 (별지 17호, 18호 : 2005/12/23 개정, 2006/2/1 시행)
 - 기본정보와 상세정보로 나누어 기술
 - 법정화 되지 않은 내용을 삭제하고 투자설명서를 일반투자자를 위한 부분과 전문투자자를 위한 부분으로 분리하여, 투자설명서 1부는 일반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기본정보 위주로 작성하고, 2~4부는 전문투자자에 도움이 되는 상세정보를 중심으로 기술

- 투자설명서 요약에 투자자들이 주로 참고하는 기본정보를 위주로 재구성

— 투자위험에 대한 설명 강화

- 투자설명서 요약에 투자위험을 설명하는 항목을 추가
- 펀드의 투자위험을 최소 5단계 이상으로 구분하여 등급을 매기고 이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에 대해 상세히 기술
- 투자설명서 작성요령에 부동산·파생상품·선박펀드 등의 경우 해당 펀드의 특수한 위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기술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시

— 총 보수·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의 기재 의무화

- 총 보수·비용비율을 공시하도록 함
- 재간접펀드의 경우 피투자펀드에서 징구되는 간접적인 보수를 포함한 비율도 병행해서 산출토록 함
 - * 펀드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된 각종 보수 및 비용을 순자산의 연평균액으로 나눈 비율로서 최초 설정 1년 이후부터 투자설명서 갱신 시마다 매년 산출하며 펀드간 운용·관리의 효율성 비교가 가능

○ 자산운용보고서 (별지 19호 : 2005/12/23 개정, 2006/2/1 시행)

— 중복·과다정보 제공 지양

- 당해 운용기간 중 자본변동 현황, 계열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의 투자내용, 간접투자기구간 자전거래(이체거래) 내역 등 법에서 정하지 않는 내용을 삭제

-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을 거래종류 및 자산유형별 총거래금액만 공시
- 매매회전율을 간접투자기구내 전체주식을 대상으로 계산하고 매매회전율 계산시 주식의 평균가액을 주식을 보유한 일수로 명시
- “자산구성 현황 및 비율”의 주식내용을 삭제하되 기타 자산평가액 및 비율 항목을 신설

— 공시양식 정비

- 부동산보유 및 운용현황이 실제 운용현황(임대 또는 자금대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양식 개정
- 간접투자기구에서 지급한 보수 지급액 및 총보수·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 공시 항목 신설

○ 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보고서 (별지 20호 : 2005/12/23 개정, 2006/2/1 시행)

-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을 거래종류 및 자산유형별 총거래금액만 공시
- “운용전문인력의 변경”에서 “학력”, “수익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의결내용”에서 “장소”의 기재란을 삭제

6. 선물업 감독규정

○ 기초위험액 산정방식 변경 (24조 : 2005/10/7 개정·시행)

— 기초위험액 산정대상을 유지증거금으로 한정하여 선물거래와 직접 연계되지 않은 예탁재산액 증가에 따라 영업용순자본비율이 하락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되

— 기초위험액을 유지증거금의 10%로 정하여 규제완화에 따른 급격한 영업용순자본비율 변동을 완화함

* 기초위험액 : 위탁자 예탁재산액중 선물거래 유지증거금으로 사용된 금액의 4%와 잔여금액의 2%를 합산한 금액(총위험액의 97% 차지)

○ 위탁자에 대한 통장 등 발급의 예외규정 신설 (54조 : 2005/10/7 개정·시행)

— 위탁자로부터 재산을 수탁받은 경우 통장 등을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위탁자가 통장 등의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고객예탁금 잔액 등 보고의 선물협회로의 일원화 (75조 : 2005/10/7 개정·시행)

— 고객예탁금·미수금 등의 보고자료를 선물협회가 보고받아 집중관리하도록 함

- 종래에는 거래소 회원은 거래소에, 비회원은 선물협회에 고객예탁금·미수금 등을 각각 보고함에 따라 동 보고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공시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 증권회사 고객예탁금·미수금 보고자료의 경우 증권업협회가 집중 관리

○ 채권관련시장위험액의 위험상당치 세분화 (별표3 : 2005/10/7 개정·시행)

- 채권을 4개 유형(정부발행채권, 우량채권, 일반채권, 기타채권)으로 세분화하여 위험액 적용을 차별화

< 채권시장위험액의 위험상당치 >

구 분	정부발행채권	우량채권(신용등급 BBB 이상)			일반채권 (신용등급 BB)	기타채권
		6개월이하	6개월초과 24개월 이하	24개월 초과		
위험상당치(%)	0.15	0.50	2.00	3.60	10.00	18.00

- 기존에는 채권을 3개 유형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차별적인 위험액 적용에 한계가 있었음

○ 거래상대방위험액의 위험상당치 세분화 (별표6 : 2005/10/7 개정·시행)

- 거래상대방을 7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거래상대방 위험액의 적용을 차별화

< 거래상대방 위험액의 위험상당치 >

구 분	정부 등	지자체 등	AA이상	A	BBB	BB	B이하 또는 Workout등
위험상당치(%)	0	0.9	1.8	2.7	3.6	10.0	18.0

- 기존에는 거래상대방을 3개 유형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차별적인 위협액 적용에 한계가 있었음
- 분기 영업보고서의 제출 및 공시 (7조, 42조 : 2005/10/7 개정, 2006/4/1 시행)
 - 분기 영업보고서 제도가 도입·시행(2005.12.)됨에 따라 영업보고서의 기재내용, 서식 및 공시방법 등을 마련
 - 일임선물거래 관련규정 신설 (52조의5, 52조의6 : 2005/10/7 개정·시행)
 - 선물거래법이 그 동안 금지한 일임선물거래를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허용하고 그 세부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일임선물거래계약의 체결방법, 일임선물거래계좌의 관리 및 보고사항 등을 정함
 - 위탁자에 대한 통지의 예외규정 신설 (51조 : 2005/10/7 개정·시행)
 - 위탁자가 주문내역 등을 전자통신상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서면통지를 의무화하고 있어 불필요한 업무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전자통신 방법에 의한 통지도 서면통지한 것으로 간주함

7. 선물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 일임선물거래 관련규정 신설 (11조의2, 11조의3 : 2005/10/7 개정·시행)
 - 일임선물거래가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허용됨에 따라, 일임선물거래계좌의 관리, 일임선물거래의 주문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

8. 신탁업 감독규정

- 신탁회사의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에 관한 구체적 기준 마련
(35조 : 2005/7/19 개정·시행)
 - 신탁부문과 고유부문간의 조직 분리, 임직원의 겸직제한, 신탁재산에 대한 별도 장부관리, 정보교류의 제한, 고유계정을 위한 신탁재산 운용금지* 등 구체적 기준 마련
 - * 고유계정의 이익 또는 손실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고유계정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에게 신탁자금을 운용하는 행위금지 등

- 신탁자금의 운용대상인 어음발행기관의 범위 설정 (10조의2 : 2005/7/19 개정·시행)
 - 시행령(12조), 시행규칙(6조)에서 정하고 있는 어음은 모두 운용가능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내용을 감독규정으로 이관
 - 금융기관이 발행·매출·중개한 어음
 - 상장법인이 발행한 어음
 - 정부투자기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KT&G, KT, 한국중공업(두산중공업)이 발행한 어음

- 신탁자금 운용방법의 구체적 범위 및 기준 설정 (10조의3, 11조 4항 : 2005/7/19 개정·시행)
 - 시행규칙(5조)에서 정하고 있는 자행예금 운용금지, 원화신탁자금의 외국금융기관 예금제한, 고유계정 보유 금전채권 매입금지에 관한 내용을 감독규정으로 이관

- 장외파생상품 및 유가증권 대여거래의 리스크를 감안하여 장외파생상품(신탁재산의 10% 이내), 유가증권 대여거래(신탁재산의 50% 이내)의 운용한도를 설정

- 동일인 대출한도의 개선 (11조 1항 1호 : 2005/7/19 개정·시행)
 - 동일인 대출한도 산정기준을 변경하여, 총신탁대출금의 감소로 인해 신규대출 없이도 불가피하게 대출한도가 초과되는 상황을 개선
 - 총신탁대출금의 5% → 불특정금전신탁 수탁고잔액의 5%

- 신탁경영은행 공탁한도 축소 (26조 : 2005/7/19 개정·시행)
 - 신탁업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신탁경영 시중은행의 공탁한도를 축소
 - 자본금의 10% → 자본금의 2.5%

- 신탁거래 약관제정·변경 등의 사후보고기준 마련 (32조 : 2005/7/19 개정·시행)
 - 수익자의 권익을 확대하거나 이미 보고된 약관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 사후보고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신설

- 수익증권 발행보고 조항 신설 (32조의2 : 2005/7/19 개정·시행)
 - 신탁업법에서 수익증권의 발행절차를 금감위 사전보고로 간소화함에 따라, 수익증권 발행인가조항을 폐지하고 발행보고조항을 신설

○ 금감위 권한의 감독원장 위탁근거 조문 정비 (3조, 19조, 27조 : 2005/7/19 개정·시행)

- 종래 금감원장에 위임되어 있는 정관변경, 주요 회계처리기준, 경영공시에 관한 사항을 금감위가 직접 수행하도록 감독규정을 정비

○ 고유부문을 통한 유가증권 운용의 제한 (13조의2 1항 : 2005/11/30 개정·시행)

- 불특정 금전신탁상품에 대해서는 고유부문의 중개를 통한 신탁자금의 유가증권 운용(응모·인수·매입·매도 등)을 금지

- 불특정 금전신탁자금은 증권회사가 임의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 이해상충의 발생가능성이 높음

- 특정 금전신탁상품은 소액계좌(3억원 미만)에 한해 고유부문의 중개를 통한 신탁자금의 유가증권 운용을 제한

- 소액계좌의 경우 고객 운용지시가 포괄적이고, 신탁회사가 매매종목, 수량, 횟수 등에서 재량권을 행사하므로 이해상충 발생이 우려
- 다만, 장내거래 주식은 가격산정이 투명하고 시장유동성 확보에 문제가 없어 고객의 포괄적 운용지시만으로도 이해상충가능성이 제한되므로 예외를 인정

○ 신탁자금에 의한 고유부문 보유 유가증권의 매입 제한

(13조의2 2항 : 2005/11/30 개정·시행)

- 고유부문의 부실 전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탁자금으로 고유부문 보유 유가증권의 매입을 금지(제3자와 교차거래 등 편법거래도 금지)

- 다만, 수탁액이 3억원 이상인 특정금전신탁으로서 위탁자가 서면에 의해 구체적인 투자대상을 지정한 경우는 예외 인정
- 계열회사 유가증권의 운용한도 설정 (13조의2 3항 : 2005/11/30 개정·시행)
- 고유부문 또는 계열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운용한도를 수탁고의 10% 이내로 설정
 - 다만, 특정 금전신탁으로서 위탁자가 서면에 의해 구체적인 투자대상을 지정한 경우에는 한도에서 배제
- 불건전 영업행위 범위 확대 등 (34조 : 2005/11/30 개정·시행)
- 고유부문의 영업지원 행위,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 제3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을 통한 제한업무 우회행위, 특별이익 제공행위 등을 불건전영업행위에 추가
- 공시제도의 개선 (27조 : 2005/11/30 개정·시행)
- 신탁겸영 금융기관의 재무·손익현황 등 기본적인 경영공시항목을 규정
 - 신탁업감독규정에 겸영금융회사 신탁부문 경영공시의 기본항목 및 작성기준에 관한 내용이 미비된 점을 보완
 - 의결권행사의 공시방법으로 영업소 게시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를 병행

- 신탁겸영 금융기관의 연간 공탁금액 설정 (26조 1항 : 2005/11/30 개정 · 시행)
 - 신탁겸영 증권회사 · 보험회사의 연간 공탁금액을 자본금의 2,500분의 1로 설정
 - 신탁겸영 증권회사 · 보험회사의 공탁부담을 완화

- 정관변경보고 간주대상을 신탁겸영 증권 · 보험회사로 확대 (3조 : 2005/11/30 개정 · 시행)
 - 신탁겸영 금융기관이 설립근거법에 의해 정관변경을 신고한 경우 신탁업법상 정관변경 보고를 한 것으로 간주

- 주식투자 금지 임직원의 범위를 “신탁부문” 주식운용 담당 임직원으로 한정 (34조 5호 : 2005/11/30 개정 · 시행)
 - 증권회사의 경우 증권거래법(42조)에 따라 증권저축 등을 통한 임직원 주식투자가 허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

- 신탁보수의 자율화 범위 확대 (부칙 3조 : 2005/11/30 개정 · 시행)
 - 1998년 이전 설정된 불특정 금전신탁상품 중 연금형신탁에 대해 신탁보수를 추가로 자율화
 - 연금형신탁은 만기가 장기로 중도해지시 수익자의 세계채택환급 등으로 해지가 자유롭지 않은 점을 감안

- 자행예금 운용 일부 허용 (10조의3 1항 : 2005/11/30 개정 · 시행)
 - 계좌별 수탁액이 3억원 이상인 특정금전신탁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특정금전신탁으로서 원리금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자행예금 운용을 허용
 - 위탁자의 구체적 운용지시로 이루어지는 자행예금은 이해상충 가능성이 없는 점을 감안

- 원화 신탁자금의 해외금융기관 예금 허용 (10조의3 2항 : 2005/11/30 개정 · 시행)
 - 외국통화 신탁자금에 한해 해외금융기관 예금운용을 허용한 기존 규제를 폐지

9. 증권 · 선물조사 업무규정

- 계량적 · 비계량적 위반행위 및 고의 · 중과실에 따른 기본부과율 차등 폐지
(별표3 4호 : 2005/7/14 개정 · 시행)
 - 위반행위의 중요도 등급을 기존의 3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

<위반행위의 중요도 등급별 기본부과율>

기 준				개 정					
구 분		상	중	하	I	II	III	IV	V
계 량	고 의	100%	90%	80%	100%	80%	60%	40%	20%
	중과실	70%	60%	50%					
비계량	고 의	100%	80%	60%					
	중과실	60%	40%	20%					

○ 중요도 판단기준의 재조정 (2005/7/14 개정 · 시행)

— 위반행위의 중요도가 특정등급에 편중되지 않도록 중요도 판단기준을 재조정

<계량적 위반행위의 중요도 판단기준>

유 형	기 준			개 정				
	상	중	하	I	II	III	IV	V
1. 손익사항	16%* 이상	16% ~8%	8% 미만	16% 이상	16% ~8%	8% ~4%	4% ~2%	2% 미만
2. 손익외항목의 과대(과소) 계상	64% 이상	64% ~32%	32% 미만	64% 이상	64% ~32%	32% ~16%	16% ~8%	8% 미만
3. 우발채무등 주석사항 미기재	80% 이상	80% ~40%	40% 미만	80% 이상	80% ~40%	40% ~20%	20% ~10%	10% 미만
4. 기타 계량적 위반사항	160% 이상	160% ~80%	80% 미만	160% 이상	160% ~80%	80% ~40%	40% ~20%	20% 미만

* 해당비율 : 위반금액 ÷ 회사규모기준

<비계량적 위반행위의 중요도 판단기준>

유 형	기 준			개 정				
	상	중	하	I	II	III	IV	V
1. 주요경영사항*	4배 이상	2배 ~4배	2배 미만	8배 이상	6배 ~8배	4배 ~6배	2배 ~4배	2배 미만
2.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5% 이상	1% ~5%	1% 미만	15% 이상	15% ~10%	10% ~5%	5% ~1%	1% 미만
3. 주가변동률	50% 이상	20% ~50%	20% 미만	200% 이상	200% ~100%	100% ~50%	50% ~25%	25% 미만
4. 불공정거래행위 관련성	검찰 고발	수사 기관 통보	기 타	검찰 고발	수사 기관 통보	경고		
5. 위반행위의 횟수	10회 이상	3-9회	3회 미만	30회 이상	20회 ~29회	10 ~19회	3~9회	3회 미만

* 주요경영사항 : 위반금액 ÷ 공시대상기준금액

**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 위반금액 ÷ 자산총액

○ 유가증권신고서 위반관련 개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별표3 7호 : 2005/7/14 개정 · 시행)

— 유가증권신고서 위반관련 과징금 부과대상을 「증권거래법」에 맞게 조정

-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대 상	기 준	개 정
상법상 업무집행 지시자	없음	○ 최대주주인 경우 - 관련법인 과징금의 50% 또는 5천만원×기본 부과율(최저 3천만원) 중 적은 금액 ○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 관련법인 과징금의 30% 또는 2천만원×기본 부과율(최저 1천만원) 중 적은 금액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	없음	○ 당해 신고자의 부과과징금과 용역제공수수료 등 보수액의 2배 금액 중 적은 금액

○ 공개매수신고서·합병신고서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명확화

(별표3 7호 : 2005/7/14 개정·시행)

- 공개매수신고서, 합병신고서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실제 이루어진 금액
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고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10.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미실시 사유 추가 (48조 2항 4호 : 2005/3/15
개정, 3/10 시행)

- 증선위가 재량으로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
는 사유를 확대함

- 2004/12/31 이전에 결산일이 도래한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포함된 기업회계기준 위반사항에 대하여, 2006/12/31까지 결산일이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전기오류수정 손익처리 등 실질에 맞는 방향으로 수정하여 공시한 경우

* 따라서 과거 회계기준 위반행위를 수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및 이를 단서로 한 과거연도의 관련사항에 대한 감리는 실시하지 않음. 다만, 기타 기업회계기준 위반행위는 종전과 동일하게 감리 및 조치의 대상이 됨

11.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금융회사별 과징금 가중·감면사유의 조정 (별표2 5호 : 2005/7/14 개정·시행)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중·감면사유가 여타 금융회사와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동일하게 조정
- 과징금 가중·감경비율을 구체적으로 설정
-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근거법령에 열거된 사유에 한하여 감면
- 위반행위자의 부담능력 등 현실적 요소를 고려하여 감면기준을 구체화 (증권회사는 제외)
- 제재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중·감경조정 후 과징금의 50% 이내 감액

- 과징금 부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면제

○ 거액의 위반금액에 대한 과징금 부과 강화 (별표2 4호 가목 : 2005/7/14 개정·시행)

- 위반금액이 증대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비율이 급격히 체감하므로 위반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기본부과율을 상향조정

<과징금 기본부과율>

법정부과한도액		기 존	개 정
위반금액(기준금액)	법정최고부과비율	기본부과율	기본부과율
10억원 이하 (1단계)	×법정최고부과비율 ×	7/10 (70%)	7/10 (70%)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2단계)		7/20 (35%)	7/20 (35%)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3단계)		7/60 (12%)	7/40 (18%)
1천억원 초과 1조원 이하 (4단계)		7/240 (3%)	7/80 (9%)
1조원 초과 (5단계)		7/480 (1.5%)	7/160 (4.4%)

○ 보험회사의 특별이익 제공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강화

(별표2 4호, 5호 : 2005/7/14 개정·시행)

- 위반금액 단계별 구간범위를 축소조정하고, 구간별 기본부과율을 상향조정

- 기존에는 위반금액의 단계별 구간범위가 넓어 3단계 이상(1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위규발생 건수가 미미했음

<특별이익 제공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식>

기 존		개 정	
위반금액(기준금액)	기본부과율	위반금액(기준금액)	기본부과율
1천만원 이하 (1단계)	7/10	1천만원 이하 (1단계)	7/10
1천만원 ~ 1억 (2단계)	7/20	1천만원 ~ 5천만(2단계)	7/20
1억원 ~ 10억 (3단계)	7/60	5천만원 ~ 2.5억 (3단계)	7/40
10억원~100억원(4단계)	7/240	2.5억원 ~ 10억 (4단계)	7/80
100억원 초과 (5단계)	7/480	10억원 초과 (5단계)	7/160

— 특별이익 제공금액을 과징금 조정단계에서 반영

- 과징금 산정시 특별이익 제공금액의 과다가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이익 제공금액이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가중

<특별이익 제공(약속)시 관련과징금 부과방식>

특별이익 제공유형	기본과징금의 조정
• 금품제공, 보험료 할인, 수수료 제공, 보험료·이자 대납 등	• 특별이익 제공금액이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가중
• 특별이익 제공의 약속 • 보험금 과다지급의 약속	• 특별이익 제공 약속금액의 50%가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가중

○ 주의조치를 “기관주의”와 “개인주의 요구”로 명확하게 구분·운영

(17조 1항 : 2005/8/31 개정·시행)

— 기관주의는 업무성격상 기관에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활용

- 개인주의 요구는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대상자에게 사전통지하도록 의무화
 - 금융기관의 자율규제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 등 조치의뢰대상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조치의뢰대상에 포함하여 운영

- 가중제재의 근거마련 (22조 3항 : 2005/8/31 개정·시행)
 -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주의조치를 받은 임·직원이 다시 주의 조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중제재함

- 리스크 중심 검사(Risk Based Examination) 원칙 명시 (4조 : 2005/11/3 개정·시행)
 - 금융회사의 경영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 규모와 리스크 관리수준 등에 대한 상시감시결과를 바탕으로 검사자원을 차별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 리스크가 큰 금융회사 및 부문을 중심으로 검사자원을 배분

- 자금세탁방지 위반관련 제재근거 명확화 (3조 16호 : 2005/11/3 개정·시행)
 - “금융관련법규”의 정의에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포함

- 금융회사 이사회에 검사서 열람의무 삭제 (16조의2 : 2005/11/3 개정·시행)
 - 금융감독원장이 통보한 검사서를 금융회사가 이사회에 열람하도록 한 규정이 유효기간 만료(04. 12. 31.)됨에 따라 동 규정을 삭제

- 금융기관의 과태료부과 기본금액 변경 (별표3 : 2005/12/15 개정·시행)
 - 금융기관의 과태료부과 기본금액을 여타 과태료 부과대상자와 동일하게 법정최고금액으로 변경

- 과태료부과 예정금액의 산정방법 (별표3 : 2005/12/15 개정·시행)
 - 위반동기는 고의·과실로 구분하고, 위반결과는 중대·보통·경미로 구분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예정금액을 산정
 - 위반행위가 단순착오에 기인하거나 극히 경미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없이 견책·주의 또는 시정조치 등으로 갈음

-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방법 (별표3 : 2005/12/15 개정·시행)
 - 예정금액을 기준으로 50% 범위내에서 가중·감경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
 - 가중·감경사유별 구체적 비율한도를 설정하고, 단순 가담·추종한 경우에는 그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감경할 수 있도록 함

- 과태료 면제사유의 명시 (별표3 : 2005/12/15 개정·시행)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등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2.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RM의 상시감시활동 내용 반영 (6조, 6조의2·3 : 2005/11/3 개정·시행)
 - RM의 주요한 상시감시활동인 임직원 면담과 조사출장의 근거 및 방법을 명시
 - 검사원은 상시감시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특이사항 또는 경영상 취약부문에 대한 확인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 임직원과 면담을 실시
 - 임직원 면담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은 조사출장 등을 활용하되, 금융회사에 사전 통지

- 상시감시관련 자료요구의 기본원칙 제시 (6조의4 : 2005/11/3 개정·시행)
 - 검사원은 상시감시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금융회사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중복적인 자료제출 요구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
 - 검사원은 금융회사의 규모와 특성, 현안사항의 성격 등을 감안한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자료요구 범위를 차등화

- 검사원 제척제도 명시 (3조의2 : 2005/11/3 개정·시행)
 - 금감원 출신 금융회사 감사와 최근 2년 내 동일부서에서 근무한 검사원은 당해 금융회사 검사 및 상시감시업무에서 제외
 - 다만, 긴급한 경우 및 검사원의 일시대량 투입으로 검사인력의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등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용 배제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고발대상의 명확화
(32조 : 2005/11/3 개정·시행)
 - 「특경법」상 고발대상은 가중처벌대상 뿐만 아니라 동법에 열거된 죄는 원칙적으로 모두 해당된다는 점을 명시
 - 동법에 열거된 죄는 횡령·배임, 재산 국외도피, 수재, 무인가 단기 금융업, 알선수재, 사금융알선, 저축관련부당행위, 사기, 공갈 등임

- 금융사고 통계 정비 (별지 2호 서식 : 2005/11/3 개정·시행)
 - 금전적 피해가 수반되는 '금전사고'와 여타의 '금융질서 문란행위'를 구분
 - '손실예상금액'(사고금액 - 회수예상가액)란을 신설·집계

13. 금융분쟁조정세척

- 소송지원대상의 확대 (32조의2 1항 : 2005/8/29 개정·시행)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회부 전 조정신청 사건 중 조정선례 및 판례 등에 비추어 금융회사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도 소송지원대상에 포함

- 소송지원여부의 결정 및 소송지원금액 규모 (32조의2 1항·2항 : 2005/8/29 개정·시행)
 - 소송지원여부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금감원장이 결정함
 - 소송지원금액은 소송지원사건 심급별로 1천만원 이내로 함

- 소송지원의 중단사유 신설 (32조의2 3항 : 2005/8/29 개정·시행)
 - 신청인이 소송당사자로서의 의무를 해태한 경우
 - 신청인이 소송지원 신청시 제출한 자료나 진술이 허위인 경우
 - 소송지원 중에 새로이 발견된 사실로 인해 소송지원의 실익이 없게 되거나 공익목적상 부적절하게 된 경우

14. 증권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 포상금 지급결정권자의 변경 등 (8조 : 2005/12/16 개정·시행)
 - 포상금 지급결정권자를 증선위에서 금감원장으로 변경
 - 금감원장은 포상금 지급결과를 매년 말에 증선위에 보고

15. 금융기관 분담금징수 등에 관한 규정

○ 2005년 금융권역별 분담요율 결정 (별표 1호 ~ 3호 : 2005/6/1 개정·시행)

— 증권권역은 9.458803/10,000으로 결정

— 산정방식은 기존 방식을 적용

- 총부채(50%), 투입인력(40%), 총자산(5%), 영업수익(5%)을 반영한 혼합방식 적용
- 총부채대비 가중치는 은행·비은행(1) : 보험(5) : 증권·기타(10)

< 2005년도 금융권역별 분담요율 >

구 분	감독분담요율	법시행령상 분담요율 한도
은행·비은행	0.683912/10,000	3/10,000
보 험	2.552574/10,000	15/10,000
증권·기타	9.458803/10,000	30/10,000

○ 감독분담금 면제 대상기관 추가 (별표 4호 마목 : 2005/6/1 개정·시행)

—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등 관련 법률의 제·개정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에 포함된 기관에 대해, 해당 회사의 성격, 업무특성 등을 감안하여 분담금 부과를 면제함

-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간접투자기구 평가회사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관리회사, 일반사무수탁회사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부동산 투자자문회사, 일반사무 등 위탁기관
-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 선박운용회사

16.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 금융회사의 업무위탁에 대한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 규제방식(negative system)의 도입 (3조 : 2005/7/27 개정·시행)

— 금융회사의 업무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다음의 업무위탁은 금지

-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 관련법령에서 금융기관이 수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 금융기관의 건전성·신인도를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 및 금융이용자의 피해발생이 심히 우려되는 경우

— 본질적 요소를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기타 사항은 원칙적으로 위탁을 허용하여, 감독당국의 재량에 의한 판단을 배제

- 금융회사의 입장에서 구체적 업무의 위탁가능성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 업무위탁대상에 후선·지원업무의 추가 (2조 : 2005/7/27 개정·시행)
 - 후선·지원업무 위탁에 대한 정책의 일관성·투명성 및 금융회사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업무위탁에 대한 정의조항을 신설하여 후선·지원업무를 대상업무에 포함
 - 업무위탁 : 금융기관이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 제3자의 용역 또는 시설 등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행위
 - 후선·지원업무에 대해 원칙적으로 위탁을 허용하되, 관련법령에서 금융기관이 수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거나, 금융이용자의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

- 개인에 대한 업무위탁의 명시적 허용 (2조 : 2005/7/27 개정·시행)
 - 업무위탁대상을 제3자(개인 포함)로 명시하여 규정해석상의 혼란을 예방하고 위탁범위의 확대를 도모

- 보고생략 대상의 명확화 (4조 : 2005/7/27 개정·시행)
 - 주된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 대한 업무위탁시 보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에 명시

- 중요사항에 대한 사전보고제 확대 (4조 : 2005/7/27 개정·시행)
 - 부적절한 업무의 위·수탁의 사전방지 등 감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새로운 유형의 업무위탁에 대해서는 사후보고제를 사전보고제로 전환

○ 약식보고 실시 (4조 : 2005/7/27 개정·시행)

- 보고누락을 방지하고 상시감시를 원활히 하기 위해 기존의 보고생략 대상 업무위탁에 대해 반기별로 약식보고하도록 함
 - 별도의 첨부자료 없이 정해진 보고양식에 의거하여 계약이유 등을 약술하여 보고

○ 업무 위·수탁 운영기준(금융회사 내부지침) 마련 (3조의2 : 2005/7/27 개정·시행)

- 업무 위·수탁에 따른 리스크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해 금융회사가 업무 위·수탁 운영기준을 마련·운영하도록 함
 - 업무위탁규정에 제시된 업무 위·수탁기준을 반영하고 각 금융권역 별 특성 및 위탁대상자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마련

○ 업무수탁에 대한 감독 보완 (5조 : 2005/7/27 개정·시행)

-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신인도 저해, 금융질서의 문란, 금융이용자의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업무수탁을 제한
- 금감원장이 변경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7. 은행업 감독규정

- 비상장은행의 경영공시(수시공시) 항목 확대 (41조 3항 4호~10호 :
2005/3/30 개정, 4/30 시행)
 - 비상장은행의 수시공시항목에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상의 상장법인의 수시공시항목(69조) 중 은행에 적용가능한 수시공시항목을 추가
 - 재무구조, 경영환경, 채권채무관계, 투자 및 출자관계, 손익구조 등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을 추가

-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에 적용 (41조 3항 : 2005/3/30 개정, 4/30 시행)
 -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에 적용하되, 상장은행 또는 당해 은행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가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일한 내용을 수시공시하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수출입은행은 「은행업 감독규정」(94조)에 따라 경영공시 적용을 배제

18. 퇴직연금 감독규정

-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의 세부기준 (3조 : 2005/11/3 제정, 12/1 시행)
 - 운용관리기관으로 등록하고자하는 자는 연금계리 전문인력, 전산 전문인력, 운용 전문인력 및 전산기기·설치환경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인력 및 설비를 구비해야 하며,
 - 자산관리기관으로 등록하고자하는 자는 전산 전문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인력을 갖추어야 함

- 등록절차 및 등록요건의 유지 (5조~7조 : 2005/11/3 제정, 12/1 시행)
 - 등록신청자는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금감위에 제출하고 금감위는 30일 이내에 등록여부를 결정
 - 퇴직연금사업자가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등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금감위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 다만, 재무건전성요건 미달시는 금감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적용

-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취급기관 등 (8조 : 2005/11/3 제정, 12/1 시행)
 -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취급은 투자적격 신용등급 및 적기시정조치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비율을 갖춘 금융기관에 한해 허용
 - 신용등급 기준이 없는 경우 동 기준의 적용을 2006년 5월 31일까지 유예 (부칙 2조)

○ 적립금 운용방법 중 취급가능한 유가증권의 종류 (9조 : 2005/11/3 제정, 12/1 시행)

- 국채·지방채, 투자적격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채권, 국내 상장주식, 외국(OECD국가) 국채, 감독원장이 정하는 적격 해외주식시장 상장주식, 신탁회사 및 자산운용사 발행 수익증권, 외국 자산운용사 발행 수익증권(국내판매분), 주택저당증권, 투자적격 기업어음, 주가연계증권(최대 손실범위가 40% 이내인 경우) 등
- 사용자와 지배회사 및 종속회사 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유가증권은 운용방법에서 제외 (10조)

○ 기타 적립금 운용방법 (11조 : 2005/11/3 제정, 12/1 시행)

- 환매조건부채권 매수계약, 장내파생상품·장외파생상품 거래계약(위험 회피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및 은행·증권회사의 발행어음·표지어음을 기타 적립금 운용방법으로 인정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위험자산의 종류 및 투자한도

(12조 1항 : 2005/11/3 제정, 12/1 시행)

- 국내외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투자회사 주식 제외), 주식형 간접투자증권, 외국 간접투자증권, 전환사채, 후순위채권 등의 투자한도는 30% 이내
- 혼합형 간접투자증권, 투자적격등급 이외의 채권 등에 30% 이상 투자하는 간접투자증권, 주식형·혼합형 간접투자증권 등에 50% 이상 투자하는 채간접투자증권, 신탁회사 발행 수익증권, 외국 채권에 50% 이상 투자하는 간접투자증권, 외국의 투자적격 채권(환위험이 헤지되고 신용등급이 A- 이상인 국채는 제외) 등의 투자한도는 40% 이내

- 집중투자로 인한 투자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회사 발행주식의 10% 이내 등 투자한도를 설정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위험자산의 종류 및 투자한도

(12조 3항 : 2005/11/3 제정, 12/1 시행)

- 적립금 운용방법으로 인정되지 않은 유가증권, 주식 및 주식형·혼합형 간접투자증권, 투자적격등급 이외의 채권 등에 30% 이상 투자하는 간접투자증권 등에 대해서는 투자할 수 없음
- 외국의 투자적격 채권(환위험이 헤지되고 신용등급이 A- 이상인 국채는 제외), 주식의 투자한도가 40% 이하인 외국 간접투자증권에 대한 투자한도는 30% 이내
- 사용자와 계열회사 또는 지분법 적용관계에 있는 회사가 발행한 신용공여 성격의 투자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는 10% 이내
- 동일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간접투자증권 제외)에 대한 투자한도는 30% 이내

○ 간접투자운용방법의 투자한도 (13조 : 2005/11/3 제정, 12/1 시행)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간접투자 운용방법의 경우 위험자산에 대한 총투자한도는 운용방법별로 적립금 금액의 40% 이내

○ 퇴직연금사업자의 약관의 보고 등 (15조~18조 : 2005/11/3 제정, 12/1 시행)

- 퇴직연금사업자가 약관의 제정 및 변경시 10영업일전까지 금감위에 보고하되, 표준약관을 원용하거나 사용자·가입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 사후제출을 허용

- 퇴직연금사업자별 관련 협회가 약관을 제정·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금감위에 보고
 - 퇴직연금사업자 및 협회가 제정하는 약관 및 표준약관의 작성·운용 기준 및 감독당국의 심사기준을 설정
- 약관의 변경명령 (19조 : 2005/11/3 제정, 12/1 시행)
- 금감위가 보고받은 약관이 법규에 위반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약관의 변경 및 보완을 명령
-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보고서 제출 및 공시 (20조, 21조 : 2005/11/3 제정, 12/1 시행)
- 퇴직연금사업자는 정기적(분기별·연별)으로 업무보고서 제출
 -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 운용에 관한 사항(수익률, 수수료, 약관 등)을 매연도말 공시

19. 퇴직연금 감독규정 시행세칙

- 적격 국내·국외 신용평가기관의 범위 (3조 : 2005/11/3 제정, 12/1 시행)
-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및 적립금 운용 등과 관련한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신용평가기관(3개사), 국외 신용평가기관(4개사)를 설정

- 적격 국내 신용평가기관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허가를 받은 자를 인정(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 적격 국외 신용평가기관으로 Standard & Poor's, Moody's, Fitch, A.M. Best Company 등 4개사를 인정

○ 해외 적격주식시장의 범위 (4조 : 2005/11/3 제정, 12/1 시행)

— 적립금 운용방법으로 인정되는 해외주식 상장시장(9개 시장)을 규정

- 뉴욕증권거래소, 나스닥시장, 동경·런던증권거래소 등 9개 시장(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9조의2 참고)

III. 증권선물거래소 규정

1.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 증권거래소 업무규정의 규제대상 일부조정 (2005/1/21 제정, 1/27 시행)
 - 기존의 증권거래소 업무규정의 매매거래 및 수탁제도의 기본 내용을 유지하면서 일부 사항을 이관·통합
 - 회원의 종류, 결제의 위임금지, 결제의 위탁 및 배상기금적립
 - 회원관리규정
 - 이상매매의 심리, 회원감리 및 분쟁조정
 - 시장감시규정 및 분쟁조정규정
 - 경매시장규정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 공매도관련 규정의 국제정합성 제고 (17조, 18조 : 2005/1/21 제정, 1/27 시행)
 - 공매도를 유가증권을 소유하지 않거나(소유가 불분명한 경우 포함) 차입한 증권으로 결제하기 위한 매도로 정의
 - 결제불이행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의 허용범위를 확대
 - * DR의 원주전환청구로 취득한 주식매도로서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
 - * 고객과 VWAP으로 시간외시장에서 거래하기로 약정한 수량범위 이내에서 장중에 미리 매도하는 경우 등

- 차입한 증권의 매도시, 직전가 이하의 가격으로 매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가격이 상승중인 경우에는 직전가로 호가하는 것을 허용
 - 단, 원활한 차익거래를 위해 가격제한의 예외를 확대
 - * 해외 DR과 원주와의 차익거래를 위한 매도
 - * 동일한 지수를 대상자산으로 하는 ETF간 차익거래를 위한 매도 등

- 매매거래중단제도의 변경 및 개선 (26조, 49조 : 2005/1/21 제정, 1/27 시행)
 - 업무규정의 종목별 '매매거래중단'을 종목별 '매매거래정지'로 변경
 - 공시규정에 의한 매매거래정지와 업무규정에 의한 매매거래중단의 혼용으로 인한 투자자의 혼란예방
 - 매매거래정지 사유의 변경
 - 풍문 등의 내용 중 '자본금 전액잠식'사유를 '자본금의 50% 이상 잠식'으로 변경하고, 매출액 50억원 미만 요건을 신설

- 장중 대량매매의 허용 및 대량매매요건의 완화 (31조, 32조, 35조, 36조 : 2005/1/21 제정, 1/27 시행)
 - 정규시장의 매매시간 중의 대량매매 및 바스켓매매를 허용
 - 단, 가격은 당일 형성된 최고가격과 최저가격 이내로 제한
 - 시간외대량매매 및 바스켓매매의 가격범위를 당일의 가격제한폭 이내로 확대

○ 결제관련업무의 명확화 (73조~76조 : 2005/1/21 제정, 1/27 시행)

-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이행책임의 주체가 면책적 채무인수의 방법에 의하여 거래소임을 규정
 - 결제회원과 거래전문회원간에는 결제위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제회원이 거래전문회원의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
-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의 확정은 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통합하여 증권 또는 대금을 차감
-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의 수수는 결제회원이 결제시한 이전에 거래소에 납부하고 거래소는 결제시한 이후에 결제회원에게 지급
 - 거래소의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의 수수업무는 증권예탁결제원이 수행
 -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의 수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증권예탁결제원이 정하는 결제업무규정에 의하며, 증권예탁결제원이 동 규정을 변경할 경우 거래소와 협의
- 결제회원의 결제불이행시 증권예탁결제원은 이를 즉시 거래소에 통보하고, 거래소는 결제회원에 대해 매매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회원의 수탁 및 주문처리와 관련된 금지행위 개선 (83조 2항, 85조 2항 :

2005/1/21 제정, 1/27 시행)

- 위탁자의 거래목적, 규모 및 경험 등을 고려하지 않은 투자권유를 하거나, 근거 없는 투자판단자료를 제공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
- 위탁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수탁없이 위탁자의 재산으로 매매거래하는 행위를 금지

- 회원시스템의 규정적합성 의무 신설 (104조 4항·5항 : 2005/1/21 제정, 1/27 시행)
 - 회원시스템이 관련법규, 업무규정 또는 업무규정에 의한 조치사항에 적합하여야 함을 명시
 - 호가입력내용과 관련된 회원시스템에 관한 정보를 거래소에 보고

- 일상적 매매감시 근거 신설 (106조 1항 : 2005/1/21 제정, 1/27 시행)
 - 각종 시장조치 등 효율적인 시장관리를 위해 매매거래상황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경매시장규정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에 통합 (112조 1항~5항 : 2005/1/21 제정, 1/27 시행)
 - 경매시장규정 중 경매방법 및 경락자의 선정방법 등 경매에 관한 기본사항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으로 통합
 - 기타사항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으로 이관

- 용어정비 (2005/1/21 제정, 1/27 시행)
 - 재경부의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 전문딜러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 반영 (55조)
 - 국채전문딜러 → 국고채전문딜러
 - 예비국채전문딜러 → 예비국고채전문딜러
 - 시장감시위원회의 회원감리와의 구분을 명확화 (106조 2항)
 - 감리종목 → 이상급등종목으로 변경

○ 장종료 후 시간외시장의 매매거래시간 확대 (4조 : 2005/5/13 개정, 5/30 시행)

— 장종료 후 시간외시장의 매매거래 종료시간을 연장함

• (기존) 16:00 → (개정) 18:00

— 단, 장종료 후 시간외 종가매매의 매매거래시간은 단축함

• (기존) 15:10 ~ 16:00 → (개정) 15:10 ~ 15:30

○ 장종료 후 시간외시장에 시간외단일가매매제도 도입 (34조의2 : 2005/5/13 개정, 5/30 시행)

— 매매거래시간 : 15:30 ~ 18:00

— 매매거래방법 : 주기적 단일가매매방법

— 호가가격범위 : 종가대비 $\pm 5\%$ 범위 이내(단, 당일 정규시장 중 가격제한폭 범위 이내)

○ 증권회사 주문수탁제도의 개선 (2조, 84조 : 2005/5/13 개정, 5/30 시행)

— 거래량 가중평균가격(VWAP) 등 특정가격수준을 목표로 매매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주문유형을 허용

— 원칙적으로 미수위탁자에 대하여 금지했던 신규주문의 수탁 및 현금·유가증권의 인출을 증권회사가 약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 주식워런트증권의 매매방법 규정 (4조, 19조, 26조 : 2005/7/22 개정, 10/31 시행)

— 주식시장 등과 구별된 별도의 시장개설

- 주식워런트증권에 유동성공급제도 도입
 - 시장에 제출된 호가의 범위가 주식워런트증권의 발행인이 정하여 거래소에 신고한 최대스프레드를 벗어난 경우, 5분 내에 유동성호가를 제출하도록 함
- 주식워런트증권의 매매거래 정지사유를 정함
 - 기초주권의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 주식워런트증권 발행인에 관한 부도 등의 풍문 등이 있는 경우
- 주식옵션 권리행사시의 결제방법 변경에 따른 규정 정비
(17조, 89조, 90조 : 2005/7/22 개정, 시행일은 세칙으로 정함)
 - 주식옵션거래로 주권을 수령할 투자자의 공매도 관련사항 및 주권을 지급해야 하는 투자자의 주권매수와 관련된 규정 삭제
-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회원자격 (20조의2 : 2005/11/25 개정, 2006/1/2 시행)
 - 자기매매 영업허가를 받은 결제회원
 - 과거 유동성공급실적이 있는 경우 그 실적을 평가한 결과가 일정수준 이상인 회원
- 유동성공급계약의 체결 (20조의3 : 2005/11/25 개정, 2006/1/2 시행)
 -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권상장법인과 유동성공급과 관련된 내용을 정하도록 함

- 유동성공급호가의 제출 의무화 (20조의4 : 2005/11/25 개정, 2006/1/2 시행)
 - 스프레드비율이 3% 이내에서 회원과 주권상장법인이 계약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
 - * 스프레드비율 = (매도호가의 가격 - 매수호가의 가격)/매수호가의 가격 × 100

- 유동성공급호가의 제출방법 (20조의5 : 2005/11/25 개정, 2006/1/2 시행)
 - 유동성공급호가는 별도계좌를 통하도록 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취지를 고려하여 호가의 가격을 다음과 같이 정함
 -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 < 매도호가의 가격 ≤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 × (1+스프레드비율)'과 최우선매도호가의 가격 중 높은 가격
 - '최우선매도호가의 가격 × (1-스프레드비율)'과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 중 낮은 가격 ≤ 매수호가의 가격 < 최우선매도호가의 가격
 -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도·매수 양방의 호가를 제출

- 유동성공급회원에 대한 평가 (20조의6 : 2005/11/25 개정, 2006/1/2 시행)
 -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한 회원에 대한 평가근거를 마련함

2.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공매도 관련규정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23조, 27조, 28조 : 2005/1/25 제정, 1/27 시행)
 - 공매도를 수탁시 회원이 확인서 등에 의하여 결제가능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개선
 - 기존의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상의 확인방법을 유지하되, 적격기관투자자로서의 신용도가 높은 경우 확인절차 생략 가능
 - 차입주식매도에도 불구하고 가격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로서 ETF간 차익거래 및 주식예탁증서 차익거래의 개념을 신설

- 장중 대량매매 허용 및 대량매매의 요건 완화 (48조, 49조, 50조, 52조 : 2005/1/25 제정, 1/27 시행)
 - 신고대량매매 및 시간외 대량매매의 수량 및 금액요건 개선
 - 대량매매요건을 매매수량단위의 500배 이상 또는 1억원 이상으로 변경
 - * 기존의 대량매매요건 : 1만주 이상 또는 2억원 이상
 - 정규시장의 매매시간중 대량매매 및 바스켓매매를 허용
 - 요건 및 절차 등 매매제도는 시간외시장의 매매제도를 준용

- 결제관련업무의 명확화 (100조, 101조 : 2005/1/25 제정, 1/27 시행)
 - 결제기일이 동일한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을 차감하지 않는 예외를 규정

- 회원이 복수회원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회원번호별로 차감
 - 시장관리상 필요한 경우 특정종목을 제외하거나, 채권의 당일결제 거래의 경우 매매건별로 결제증권과 결제대금을 확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매매거래시간의 변경 등 시장관리상 필요한 경우 증권예탁결제원에 결제시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회원의 시스템정보 보고의무 신설 (131조 : 2005/1/25 제정, 1/27 시행)
- 호가입력내용과 관련된 회원시스템의 IP주소를 매월 5일까지 거래소에 보고
- 시간외 단일가매매제도의 매매방법 규정 (11조, 12조, 14조, 51조의2 : 2005/5/13 개정, 5/30 시행)
- 호가접수시간 : 15시 30분부터 장종료후 시간외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종료시까지
- 호가의 종류 : 지정가호가에 한정
- 매매체결주기 : 매 30분 (총 5회)
- 매매수량단위 : 1주
- 호가의 우선순위 : 가격 및 시간우선원칙 적용
- 가격결정 직전 5분간의 예상체결가격과 30분 시점에서의 잠정체결가격과의 괴리율이 3% 이상일 경우 호가접수시간을 5분 이내에서 연장하여 가격을 결정하도록 함

- 기타 시장운영과정상의 미비점 보완 (2005/5/13 개정, 5/30 시행)
 - 대표투자자계좌 외에 증권회사의 통합계좌를 이용한 외국인투자자의 주문의 경우에도 이를 구분하도록 함 (12조 : 2005/7/18 시행)
 - 회원이 다른 회원 또는 비회원 증권회사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은 경우, 원위탁자를 기준으로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함 (12조)
 - 상장지수펀드(ETF)의 호가가격단위를 5원으로 일원화 (32조 : 2005/7/18 시행)
 - 전자우편, 메신저 등의 방법으로 주문을 위탁받아 회원의 임·직원이 주문내용을 입력하는 경우, 전화로 수탁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함을 명시 (109조)

- 주식워런트증권(ELW)의 매매방법 명시 (10조, 29조, 40조 : 2005/8/26 개정, 10/31 시행)
 - 주식워런트증권의 경우 지정가호가에 한하여 인정함
 - 유동성공급호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양방향호가를 제출하도록 하고, 유동성 공급호가제출의 면제사유를 정함
 - 풍문 등으로 매매거래가 정지될 경우 매매거래 재개방법을 정함

- 기준가격제도의 개선 (30조, 별표 1·2 : 2005/8/26 개정, 9/1 시행)
 -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주식소각을 함으로써 자본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주식병합과 동일한 기준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함

— 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시가기준가종목으로서 기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평가가격을 다음 매매일의 기준가격으로 정함

* 기세요건 : 정규시장 종료시에 평가가격보다 높은 매수호가 또는 낮은 매도호가가 존재

— 배당락 또는 권리락시의 기준가격을 신주인수권의 가치에 중점을 두고 산정

— 선박투자회사 등이 신규상장전 공모금액의 일부를 소액주주에게 지급시 이를 반영하여 평가가격을 산정함

○ 채권의 신고매매제도의 확대 (76조 : 2005/8/26 개정, 8/29 시행)

— 국채금융대행기관이 국고채 전문딜러와 Repo 거래시 신고매매 허용

○ Paper Company에 대한 유동성공급자제도의 비적용 (31조의2 : 2005/12/1 개정, 2006/1/2 시행)

— Paper Company에 대해서는 유동성공급자제도를 도입하지 않음

○ 유동성공급계약의 포함내용 (31조의4 : 2005/12/1 개정, 2006/1/2 시행)

— 정규시장에 유지하여야 할 호가스프레드비용

— 호가수량 및 계약기간

— 유동성공급자가 매매한 수량이 일정수량 이상일 경우 유동성공급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사항 등

- 유동성공급호가 제출 면제사항 (31조의5 : 2005/12/1 개정, 2006/1/2 시행)
 - 스프레드(비율)이 의무스프레드(비율) 범위 이내인 경우
 - 단일가매매를 위한 호가접수시간 및 그 때부터 5분 이내
 - 유동성공급자가 매도할 수량이 없는 경우
 - 기초자산의 가격이 상한가 또는 하한가인 경우 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한 유동성공급호가 등

- 유동성공급호가의 제출방법 (31조의6 : 2005/12/1 개정, 2006/1/2 시행)
 - 최우선평가가 없는 경우 예상최우선평가 및 직전가격을 감안하여 호가가격의 범위를 정함
 - 주권의 경우 매도(매수)측에 회원이 제출한 유동성공급호가 있는 상태에서 매수(매도)측에 제출하는 유동성공급호가는 회원이 신고한 호가스프레드비율을 충족할 수 있는 가격으로 제출하도록 함
 - 유동성공급호가의 호가수량을 정함
 - 주권 : 매매수량단위의 5배 이상으로서 회원과 상장법인이 합의한 수량
 - 상장지수펀드 및 주식워런트증권 : 100주(증권)
 - 유동성공급호가에 대한 가격을 정정하는 경우의 호가수량을 정함
 - 미체결잔량이 신규호가 제출시 적용되는 최소수량 미만인 경우 미체결수량 전량에 대해서는 정정이 가능하도록 함

- 상장지수펀드의 매매수량단위 (33조 : 2005/12/1 개정, 2006/1/16 시행)
 - 상장지수펀드의 매매수량단위를 1주로 정함

- 자기주식매매신청서의 제출방법 다양화 (57조 : 2005/12/1 개정, 2006/1/16 시행)
 - 자기주식매매신청서를 문서 외에 K-BloX 등을 이용한 전자통신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

3.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 상장규정의 체계 정비 (2005/1/21 제정, 1/27 시행)
 - 유가증권의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청구부터 상장폐지까지의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
 - 8장 3절 52조 → 7장 8절 105조

- 통합거래소 출범에 따른 용어 변경 (2005/1/21 제정, 1/27 시행)
 - 한국증권선물거래법상의 정의규정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반영
 - 거래소 상장법인 → 주권상장법인
 - 협회등록법인 → 코스닥상장법인

-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시행에 따른 용어 변경 (2005/1/21 제정, 1/27 시행)
 - 증권투자회사법, 증권투자신탁업법이 폐지되고,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으로 통합됨에 따른 용어정리
 - 증권투자회사 → 투자회사
 - 상장지수 증권투자회사 → 상장지수 간접투자기구 투자회사
 - 상장지수 투자신탁 → 상장지수 간접투자기구 투자신탁

- 부채비율의 적용기준 개선 (32조 1항 5호 가목 : 2005/7/22 개정, 7/25 시행)
 - 재무적 안정성, 산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부채비율요건을 적용제외함

- 상장전 유·무상 증자제한 완화 (32조 2항 : 2005/7/22 개정, 2005/7/25 시행)
 - 기업 필요에 따른 자유로운 상장전 유·무상증자를 허용하되, 기존의 유·무상증자 제한범위 초과분에 대해서는 상장후 매각제한(lock-up)을 하는 경우 유·무상증자 제한적용을 제외

-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비율 변동제한 완화 (32조 1항 13호 : 2005/7/22 개정, 2005/7/25 시행)
 - 상장적격성과 관련이 없는 소유주식비율 변동제한의 범위를 기존 1%에서 5% 이상 주주로 완화
 - 변동범위는 0.1%로 동일

○ 주식워런트증권의 신규상장기준 마련 (41조의2 : 2005/7/22 개정, 10/4 시행)

— 장외파생금융상품 인가를 받은 증권회사가 KOSPI 100 구성 주식 및 주식바스켓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공모를 통해 10억원(프리미엄) 이상 발행할 것

• 잔존권리행사기간이 3월 이상 3년 이내이고 회원증권사 1사 이상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 주식워런트증권의 상장폐지기준 마련 (86조의2 : 2005/7/22 개정, 10/4 시행)

— 발행회사가 자기자본규제비율 또는 자기자본요건에 미달하거나 부도·은행거래정지·회사정리·해산을 한 경우

— 기초자산인 대상주식의 상장폐지기준 해당, 대상 주가지수 산출중지, 권리행사기간의 만료 또는 권리행사의 완료, 유동성공급자가 없거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1월 이내 미지정, 발행회사가 주식워런트증권을 전부 보유한 경우

○ 주식워런트증권의 매매거래정지 (95조 : 2005/7/22 개정, 10/4 시행)

— 기초자산인 주권이 매매거래정지되거나 주가지수 산출이 중단된 경우

— 자기자본규제비율 또는 자기자본요건에 미달된 경우

- 우회상장 유사행위(지배권 변동)에 대한 매각제한 제도 개선
(46조 : 2005/12/9 개정, 12/12 시행)
 - 합병시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만 매각제한
 - 포괄적 주식교환 등을 통해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비상장법인 최대주주 등의 신주에 대한 매각제한 신설

-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관리종목지정제도 폐지 (75조 1항 12호 : 2005/12/9 개정, 12/12 시행)
 -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인한 검찰기소, 증선위의 검찰고발·검찰통보 의결시 관리종목지정제도를 폐지

- 감사의견 관련 퇴출제도 보완 (93조 4항 : 2005/12/9 개정, 12/12 시행)
 - 계속기업으로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감사의견거절·부적정의 경우로서 상장폐지 이전에 당해 사유 해소시 회생기회 부여

- 유동성공급계약 체결시 거래량요건 면제 (75조 1항 6호 마목 : 2005/12/9 개정, 2006/1/2 시행)
 - 업무규정에 유동성공급자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유동성공급계약 체결 시에는 퇴출규정 중 거래량요건의 적용을 면제

- 상장신청 및 상장심사 가능기간 확대 (10조 1호 : 2005/12/9 개정, 12/12 시행)
 - 연중 상장신청 및 상장심사가 가능하도록 상장예비심사청구시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의 기준 사업년도를 탄력적으로 적용

- 국내기업 신규상장요건 개선 (32조 1항 : 2005/12/23 개정, 12/26 시행)
 - 기업규모와 관련된 투자지표로서의 효용성이 미흡한 자본금요건 폐지
 - 기업의 자율적 재무활동을 제약하고 재무안정성 판단기준으로서의 신뢰성이 미흡한 부채비율요건 폐지
 - 주식분산요건 중 최대주주 등 지분율 요건을 폐지함으로써 우량대형 기업의 원활한 신규상장 도모

- 국내기업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제도 개선 (75조 1항 : 2005/12/23 개정, 12/26 시행)
 - 거래량요건 산정방법과 적용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상장법인의 상장 부담의 경감을 도모
 - 유동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퇴출되는 불합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분산요건 중 최대주주 등 지분율요건을 폐지
 - 공시의무위반과 관련된 벌점제에 의한 퇴출기준 폐지 및 관리종목지정기준의 합리적 개선

- 외국기업의 상장요건 개선 (34조, 34조의2 : 2005/12/23 개정, 12/26 시행)
 - 증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국거재소에 상장되지 않은 외국기업의 1차상장(primary listing)을 허용
 - “국내·외기업 차별금지 및 동등대우 원칙”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일한 신규상장요건을 적용
 - 다만 본국법 규제 등 외국법인의 특성을 고려해 일부 요건을 탄력적으로 변경

— 외국지주회사에 대해서도 국내지주회사와 동일하게 자회사 실적 등을 고려한 상장요건 적용방법을 신설

○ 외국기업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제도 개선 (76조, 83조 : 2005/12/23 개정, 12/26 시행)

— 진입시와 동일하게 “국내·외기업 차별금지 및 동등대우 원칙”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일한 퇴출요건을 적용

- 다만 본국법 규제 등 외국법인의 특성을 고려해 일부 요건을 탄력적으로 변경

4.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2005/1/26 제정, 1/27 시행)

—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등의 제·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 주권상장 증권투자회사 → 주권상장 투자회사
- 상장지수 증권투자회사 → 상장지수 간접투자기구 투자회사
- 상장지수 투자신탁 → 상장지수 간접투자기구 투자신탁
- 부동산투자회사의 일반사무수탁회사 → 일반사무 등 위탁기관
- 주권상장 증권투자회사의 일반사무수탁회사 → 일반사무관리회사
-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위탁회사 →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의 자산운용회사

- 수익증권 상장신청시 제출서류 관련사항 신설 (14조 1항 3호 : 2005/1/26
제정, 1/27 시행)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상장신청시 제출하는 첨부
서류 관련사항을 신설
 - 수익증권의 권종별 견양, 채권유동화계획서 사본, 채권관리 위탁계
약서 사본, 주택저당증권 신탁약관 등

- 소유주식변동 상황명세서 제출대상 축소 (4조 : 2005/7/22 개정, 7/25 시행)
 - 상장규정 개정으로 지분변동제한 대상을 1% 이상 주주에서 5% 이상
주주로 변경함에 따라, 신규상장시 첨부서류인 소유주식변동 상황명세
서 제출대상도 1% 이상인 주주에서 5% 이상 주주로 변경

- 전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변경상장수수료 개선 (별표2 : 2005/7/22 개정,
7/25 시행)
 - 주주의 전환권 행사로 인한 종류변경 상장신청시 신주상장수수료 산
정방법을 준용하여 상장법인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

- 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 등 신고사항 신설 (35조의2 : 2005/9/14 개정,
10/4 시행)
 - 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 등 주요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의
무를 부과하여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고 공정한 가격형성을 도모

- 주식워런트증권 등의 유동성공급자 의무이행 평가기준 (48조 : 2005/9/14 개정, 10/4 시행)
 - 상장지수펀드 및 주식워런트증권의 유동성공급자 의무이행 평가기준을 정비하고 신설함
 - 유동성 공급이 필요한 상태가 5분 이상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공급호가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 주식워런트증권의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부과기준 등 신설 (50조 5항 2호, 별표2 : 2005/9/14 개정, 10/4 시행)
 - 채권, 신주인수권증권 등에 준해 주식워런트 증권에 신규상장수수료, 변경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부과기준 등 신설

- 주식워런트증권의 기초자산인 주가지수의 한정 (24조의2 : 2005/10/28 개정, 10/31 시행)
 - 시장개설 초기임을 감안해 상장이 가능한 주식워런트증권의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를 코스피200지수로 한정

- 최대주주의 소유주식 변동보고서 서식 개선 (별지 24호 서식 : 2005/12/1 시행)
 - 금감위의 5% Rule 및 임원/주요주주의 소유주식변동보고서 서식중 개인정보관련 서식이 개정됨에 따라 동 사항을 반영

- 부채비율 산정방법 삭제 (24조 : 2005/12/28 개정, 12/29 시행)
 - 진입요건 중 부채비율요건 삭제에 따라 부채비율 산정방법을 삭제

- 관리종목지정 및 해제기준 정비 (42조 1항·2항 : 2005/12/28 개정, 12/29 시행)
 - 관리종목지정기준 및 해제기준 변경에 따른 관리종목지정·해제 관련 조항을 정비

- 외국주 관리종목지정 및 해제기준의 정비 (42조 3항 : 2005/12/28 개정, 12/29 시행)
 - 국내법인 관리종목지정 및 해제시기 등을 준용한 외국주 관리종목지정 및 해제시기 관련조항을 정비

- 연부과금 면제조항의 신설 (50조 5항 13호 : 2005/12/28 개정, 12/29 시행)
 - 유동성공급기간 동안의 연부과금 면제조항을 마련

5.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 수시공시관련 3개 규정을 통합 (2005/1/21 제정, 1/27 시행)
 - 기존의 수시공시관련 규정인 「상장법인 공시규정」, 「자산운용회사 등의 상장법인 의결권행사 등에 관한 규정」 및 「상장법인 등의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의 3개 규정을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으로 통합
 - 수시공시 관련 3개 규정을 통합하여, 이용편의성 및 효율성을 제고

- 수시공시 의무사항의 삭제 (7조 1항·2항, 11조 : 2005/12/23 개정, 2006/4/1 시행)
 - 외환위기 이후 경영투명성 강화에 따라 누적적으로 증가되어온 공시 의무사항 중 중복되는 사항 및 정보가치가 낮은 사항을 삭제 (56개 사항)
 - 사업목적 변경·집중투표제(주총의안·결과공시와 중복), 주식관련 사채의 행사가격조정·중도상환(상장규정 신고사항)·발행완료(사후 관리), 최대주주등과의 거래 등

- 수시공시의무 비율기준의 재조정 (7조 1항·2항 : 2005/12/23 개정, 2006/4/1 시행)
 - 기존 4단계인 공시의무 비율기준을 공시실효성 및 공시항목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2단계(5%, 10%)로 조정 (24개 사항)
 - 재무지표의 1%, 3%, 5% → 5%, 10% → 유지

- 누계금액(잔액)기준 공시항목을 건별금액기준으로 변경
 - 누계금액(잔액)공시는 공시사항 발생 이후 상당기간 경과 후 공시되어 적시성이 떨어지고 정기보고서의 기재내용과도 중복

○ 자율공시의 확대 (28조 : 2005/12/23 개정, 2006/4/1 시행)

- 기존 수시공시 의무사항에서 호재성 공시사항 및 중요성이 다소 떨어지는 공시사항 중 자율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을 자율공시로 전환 (43개 사항)
 - 장래계획 및 자진공시제도는 자율공시제도로 수용

○ 수시공시업무절차 등 개선

- 분식회계의 거래소 대신공시 삭제 (5조 : 2005/12/23 개정, 12/26 시행)
 - 증선위로부터의 조기 통보채널 불비 및 증권관련 집단소송 등 따른 거래소 개입소지
- 공시위반사실 제보자 포상제도 폐지 (82조 : 2005/12/23 개정, 2006/4/1 시행)
 - 조사권 없는 거래소 입증한계 및 조회공시 등으로 사전해결가능
- 주총개최 결의·결과공시를 익일에서 당일공시로 변경

(7조 1항 : 2005/12/23 개정, 2006/4/1 시행)

 - 주총결의사항과 중복되는 공시 삭제 등으로 주총공시의 중요성 증대

○ 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조회공시위반 제재기준 개선

(30조 3호 : 2005/12/23 개정, 2006/4/1 시행)

- 공시위반 대상을 외부결정사항을 제외한 모든 사항을 적용하는 방식에서 시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한정하는 방식으로 개선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관련 제도 개선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시 매매정지와 중복제재 소지가 있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시 매매정지제도 폐지 (40조 1항 : 2005/12/23 개정, 2006/4/1 시행)

- 다만, 투자자보호를 위해 조회공시요구 불응시 매매정지제도 존치

- 이의신청법인의 공시위원회 출석·의견진술기회 부여 근거 명확화

(34조 3항 : 2005/12/23 개정, 2006/4/1 시행)

- 공시위원회 심의기능 강화 (35조 3항·4항·6항 : 2005/12/23 개정, 2006/4/1 시행)

-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위반·과실정도, 공시내용의 진실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예고별점을 기준으로 2점 이내의 별점 범위내에서 가중·경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성실공시법인에 대한 별점경감제도 신설(경감 별점 3점 이내)

- 공시의무 위반사유에 의한 상장폐지기준 적용시에는 공시위원회 심의절차 의무화

— 불성실공시 미지정 또는 벌점부과 후 1년내 허위증빙자료 등으로 결정의 부당함이 발견될 경우 제재조치 근거 마련 (35조 5항 : 2005/12/23 개정, 2006/4/1 시행)

- 이의신청에 의한 미지정법인으로 한정되어 있는 세척내용을 모든 관련법인으로 확대하면서 규정으로 이관

○ 상장외국법인의 수시공시 의무사항 조정 (25조 1항·2항·5항 : 2005/12/23 개정, 2006/4/1 시행)

— 투자자보호 및 역차별 해소를 위해 원칙적으로 국내법인과 동일한 공시의무 부과

- 주요경영사항공시,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공시 및 자율공시 등
- 상장외국법인 특유의 공시사항 추가 : 본국 등에서 공개매수·안정 조작 발생, 본국 등에서 받은 증권관련제재 원인사유발생 등

— 공시시한

- 본국(해외)거래소에 공시하는 사항은 지체 없이 공시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공시의무사항은 국내공시시한 적용(당일 또는 익일)

— 조회공시

- 상장외국법인에 부과되는 공시의무사항 및 이에 준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적용하되 답변시한은 1일 이내로 하며, 보도수집범위 조정 근거 마련

○ 공시 화폐단위 조정 (25조 4항 : 2005/12/23 개정, 2006/4/1 시행)

— 본국 화폐 및 기준 환율에 따른 한국 화폐단위로 병기

- 공시대리인의 정의 명확화 (26조 4항 : 2005/12/23 개정, 2006/4/1 시행)
 - 상장외국법인의 경우 공시대리인을 공시담당자로 간주
 - * 공시대리인 :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자로서 외국법인의 모든 신고에 대하여 당해법인을 대리하는 자

6.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 조회공시 관련사항 정비
 -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조회공시번복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시사항을 구체적으로 한정함
 - 시황변동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 후 15일 이내 매매거래정지 대상 중요정보 등을 공시하는 경우 제재 (9조 : 2005/12/27 개정, 2006/4/1 시행)

매매거래정지 사항	증자 또는 감자, 주식의 이익소각, 주식배당,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탈퇴, 주식교환·주식이전, 영업양수도·합병·분할
기타 중요공시사항	자기주식 취득·처분, 매출액의 10% 이상 단일판매계약·공급계약, 주식분할·병합, 자기자본의 5%이상 출자·출자지분 처분, 현금배당, 간이합병·소규모합병, 상장폐지결정, 주식관련사채·해외DR 발행결정

- 조회공시 불응시 매매거래 정지신설에 따른 정지기간 명확화
(16조 3항 1호 : 2005/12/27 개정, 2006/4/1 시행)

- 당해 조회공시요구에 응하여 답변공시하는 때 매매거래 재개
- 조회공시요구시 매매거래정지대상의 공시사항의 경우 답변공시후 30분 경과 후 매매거래재개

○ 자율공시 관련 공시사항 구체화

- 공시 필요성을 당해법인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자율공시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함 (7조의2 : 2005/12/27 개정, 2006/4/1 시행)

14개 사항	기술도입·이전, 자원개발 투자·개발자원 경제성 판명, 특허권 양수·양도, 단기차입금 감소, 파생상품거래 이익발생, 채무면제 이익발생, 회사정리절차 종결·폐지 신청, 재산증여·수증, 상호저축은행 과점주주·BIS비율 하락·재무제표 확정, 합병·영업양수도 등 승인 주총결의의 무효 또는 취소소송의 제기 등,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대여,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개선조치 요구, 금융기관이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받은 때,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	--

○ 불성실공시법인 제재 합리화 관련 (13조, 13조의2 : 2005/12/27 개정, 2006/4/1 시행)

-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벌점부과 절차 명확화
 -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벌점부과기준”을 “예고벌점기준”으로 하여 거래소 실무자가 부과벌점을 예고하고
 - 당해법인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 예고벌점과 동일한 벌점 부과
 -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 : 예고벌점 또는 당해 예고벌점을 기준으로 가감·조정한 벌점 부과

— 별점경감의 대상이 되는 성실공시법인의 구체적 기준 명시

- 최근 5년 이상 공시위반사실이 없는 법인
- 최근 3년 이상 공시위반사실이 없는 법인으로서 다음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 최근 1년간 당해법인 총 공시건수 중 자율공시건수의 비율이 30% 이상이고 그 공시건수가 15건 이상인 법인
 - * 최근 1년간 풍문·보도와 관련한 조회공시 건수가 없는 법인

○ 매매정지·재개 관련 사항 (16조 1항 : 2005/12/27 개정, 2006/4/1 시행)

— 영업활동 및 생산활동 관련사항에 대한 매매정지대상 명확화

- 영업활동 및 생산활동 관련사항 중 정지·중단사항만 매매정지 대상으로 하되,
- 노사분규·재해발생 또는 생산활동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시적 생산활동 중단은 매매정지대상에서 제외

—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탈퇴전 주식교환·이전이 있는 경우 동일사항에 대한 자회사 편입·탈퇴시 매매정지대상에서 제외

○ 공시시한 관련 사항 (25조 : 2005/12/27 개정, 2006/1/1 시행)

— 토요일공시휴무 실시로 일수를 매매거래일 기준으로 계산

- 주권상장법인의 집단휴가·창사기념일 등으로 인한 회사의 휴무일수는 기간에 불산입
- 연말 휴장일은 기간에 산입(회사의 휴무일수는 제외)

- 공시운영시한 단축으로 당일·익일공시시한 및 당해 시한종료일이 오
후인 조회공시시한은 당해 시한종료일의 18시를 기준으로 명확화
 - 다만, 당일·익일공시시한의 경우 당해 신고사항이 시한종료일 18
시 이후에 발생하는 등 당해법인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익일 07시 20분까지 신고가능

7.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 코스닥시장의 호가의 가격제한폭 확대 (14조 2항 : 2005/3/25 개정, 3/28
시행)
 - 호가의 가격제한폭을 기준가격대비 $\pm 12\%$ 에서 $\pm 15\%$ 로 확대
- 시간외시장의 매매시간 연장 및 단일가매매 근거 마련 (4조 2항 : 2005/5/16
개정, 5/30 시행)
 - ECN시장기능 수용을 위해 장종료 후 시간외시장을 18시까지 연장
 - 기존의 시간외 종가매매는 15시30분까지로 단축하고, 시간외 단일
가매매는 15시30분부터 18시까지 운영

구 분	기 준	개 정
장종료 후 시간외시장	15:10 ~ 16:00	15:10 ~ 18:00
· 시간외 종가매매	15:10 ~ 16:00	15:10 ~ 15:30
· 시간외 단일가매매	<신설>	15:30 ~ 18:00

- 시간외 단일가매매의 운영방법 규정 (21조의2 : 2005/5/16 개정, 5/30 시행)
 - 매매대상 : 정규시장 매매형성 종목
 - 매매방법 :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 가격제한폭 : 종가대비 ±5% (상·하한가 한도)

- 공매도개념의 명확화 및 허용범위의 확대 (2조 11항, 9조의2 1항 : 2005/5/16 개정, 5/30 시행)
 - 공매도의 개념을 유가증권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매도 후 유가증권의 제공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포함)에서의 매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함
 - 기존에는 차입한 유가증권의 매도에 국한되는 것으로 정의
 - 공매도의 허용범위를 DR의 원주전환청구로 취득할 주권의 매도와 대여중인 유가증권의 매도로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까지 확대

구 분	기 존	개 정
허용대상	· 타기관에 보관된 증권매도	<좌동>
	· 차입증권의 매도	<좌동>
	· 매수증권의 결제전 매도	<좌동>
	· 유상증자, 전환청구 등으로 취득한 증권 또는 ETF의 입고전 매도	<좌동>
	<신설>	· DR의 원주전환청구후 매도
	<신설>	· 대여증권의 반환전 매도

- 공매도 가격규제의 실효성 제고 (9조의3 : 2005/5/16 개정, 5/30 시행)
 - 공매도 호가를 직전가보다 높은 가격으로만 가능하도록 하여 가격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함

- 단, 상승장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전가호가도 허용
- 공매도 가격제한 예외인정의 범위를 DR 차익거래를 위한 매도시까지 확대

구 분	기 존	개 정
가격제한	• 직전가 또는 그 이상가격으로 호가가능	• 직전가보다 높은 가격만 가능 • 단, 상승장인 경우 직전가도 가능
가격제한 예외인정	• 지수차익거래를 위한 매도 • ETF 차익거래를 위한 매도 • <신설>	<좌동> <좌동> • DR 차익거래를 위한 매도

○ 호가유형의 다양화를 위한 조건부 지정가호가 도입

(2조 6항 5호 2005/5/16 개정, 5/30 시행)

- 지정가호가로서 종가결정 전까지 체결이 안 된 경우, 종가결정시 시장가호가로 전환되는 조건부 지정가호가를 도입

기 존	개 정
• 지정가호가, 시장가호가	<좌동>
• 최유리지정가호가	<좌동>
• 최우선지정가호가	<좌동>
<신설>	• 조건부 지정가호가

○ 시간외 대량매매시 당일결제의 근거 마련 (7조의2 : 2005/5/16 개정, 5/30 시행)

- 정부출자법인 등으로부터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해 자기주식을 매수할 경우 당일결제제도를 도입하여 자기주식 취득의 원활화를 도모

- 전산장애 또는 호가폭주시 매매중단 등의 근거 마련 (25조의2 : 2005/5/16 개정, 5/30 시행)
 - 전산장애 또는 호가폭주로 인해 전산장애가 우려되는 경우, 매매거래를 중단하거나 호가접수를 중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대용증권의 지정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의 범위 확대 (43조 2항·3항 : 2005/5/16 개정, 5/30 시행)
 - 상장된 외국주식예탁증서를 추가하여 대용증권의 범위를 확대
 - 코스닥법인이 발행한 주권, 상장지수펀드(ETF), 유가증권시장 대용증권에 상장외국 DR을 추가
 - 사정비율에 관한 사항은 업무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도록 위임

- 장중대량매매 허용 (19조의2 : 2005/11/25 개정, 동세칙에서 정하는 날 시행)
 - 종래 시간외시장에 한하여 운영중인 대량매매를 장중에도 허용함으로써 대량매매 기능의 원활화를 기함

기 존	개 정
< 신 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중대량매매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매거래시간 : 09:00 ~ 15:00 — 가격제한폭 : 최고·최저가 이내 — 금액요건, 매매수량 및 호가 가격단위 : 세칙에 위임

○ 시간외대량매매의 가격제한 완화 (21조 2항 : 2005/11/25 개정, 동세척에서 정하는 날 시행)

— 시간외대량매매의 가격 허용범위를 당일 가격제한폭 이내로 확대

기 준	개 정
당일 종가의 $\pm 7\%$ 이내 (당일 가격제한폭 한도) 또는 거래량가중평균가격	당일 가격제한폭 이내

8.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이상급등종목 지정요건 및 지정예고요건 변경 (54조 1항·4항 : 2005/3/25 개정, 3/28 시행)

— 가격제한폭이 15%로 확대됨에 따라 '지정예고요건'을 변경

기 준	개 정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60% 이상인 경우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75% 이상인 경우

— 가격제한폭이 15%로 확대됨에 따라 '지정요건'을 변경

기 준	개 정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60% 이상 2일간 계속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75% 이상 2일간 계속
최근 20일간 최저종가지수 대비 최고종가지수 상승률의 4배 이상	최근 20일간 주가지수 상승률의 4배 이상

- 시간외 단일가매매의 매매방법 등 마련 (6조, 25조의2 : 2005/5/16 개정, 5/30 시행)

- 장종료 후 시간외시장의 호가접수시간을 조정

구 분	기 준	개 정
장종료 후 시간외시장	15:00 ~ 16:00	15:00 ~ 18:00
· 시간외 종가매매	15:00 ~ 16:00	15:00 ~ 15:30
· 시간외 단일가매매	<신설>	15:30 ~ 18:00

- 시간외 단일가매매방법 : 30분 단위의 단일가 매매

- Random End 적용 : 예상체결가가 3% 이상 변동할 경우

- 주문유형의 신설 및 주문수탁제도의 개선 (37조의2, 41조 : 2005/5/16 개정, 5/30 시행)

- 주문유형을 신설하고 목표가주문에 대한 근거 마련

- 전자우편, 메신저 등의 방법으로 주문을 위탁받아 회원의 임·직원이 주문내용을 입력할 경우 전화수탁과 동일하게 처리

- 대용증권 및 기준가격산정 제도 개선 (48조, 48조의2 : 2005/5/16 개정, 5/30 시행)

- 사정비율 이내에서 회원사가 사정비율을 변경하도록 허용

- 대용증권 중 유가증권 상장종목의 경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대용가격을 적용함

○ 각종 보고 및 서식 등을 통일 (38조, 39조, 43조, 51조, 업무서식(별지) :
2005/5/16 개정, 5/30 시행)

- 주간프로그램 매매현황 보고사항 중 지수차익거래와 비차익거래로 분류하여 보고하던 것을 비차익거래만 보고하도록 개선
- 계좌설정시 성명, 비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함
- 증권회사의 약관 등의 보고·통보시한을 정비함

통보 및 보고사항	기존	개정
· 개별약관 변경통보	7일 이내	5매매일 이내
· 위탁증거금 징수기준 변경보고	2일 이내	5매매일 이내
· 위탁수수료 징수기준 변경통보	2일 이내	5매매일 이내

- 각종 신청서 및 보고서의 수신주체를 이사장 및 한국증권선물거래소로 일원화하되 본부를 구분하도록 함

○ 조건부 지정가호가의 시장가호가 전환조항 신설 (8조, 8조의2 : 2005/6/28
개정, 10/24 시행)

- 장중 미체결수량에 대해 종가결정시 가격우선·시간우선원칙에 따라 시장가호가로 전환
- 신규·재상장, 가격제한이 있는 공매도호가, 종가결정을 위한 호가시에는 조건부 지정가호가를 제한

- 공매도 확인방법 명시 및 가격규제의 예외인정 (8조의3, 8조의4, 9조의2 : 2005/6/28 개정, 7/18 시행)
 - 공매도 확인방법을 결제이행확약서 징구, 구두·전화·모사전송 등으로 확인하고 녹음 등으로 기록·유지하도록 명시
 - 공매도 가격규제의 실효성이 없는 시가, 상한가 매매 및 시간외 대량 매매의 경우 가격규제의 예외를 인정
 - DR 차익거래 방법 명시
 - DR 매수(매도)와 동시 또는 전후에 원주의 매도(매수)

- 동시호가 수량배분의 개선 (19조 : 2005/6/28 개정, 7/18 시행)
 - 동시호가 수량배분으로 인한 매매체결 지연, 실효성 미흡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률배분방식을 정량배분방식으로 변경

- 자사주 매입시 당일결제거래 지정 신설 (4조의2 : 2005/6/28 개정, 7/18 시행)
 - 정부출자법인 등으로부터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한 자사주 매입시 당일결제로 지정

- 대응가격산출 특례인정범위 확대 (48조 : 2005/6/28 개정, 7/18 시행)
 - 신규상장 등의 경우 매매개시 당일 대응증권 지정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인정하고, 공모가격 등을 적용하도록 함

○ 최초 매매개시 기준가격 산정방식 개선 (별표 1 : 2005/6/28 개정, 7/18 시행)

- 최저호가가격을 상장공모가격과 같이 합리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90%로 적용하고, 기타 재상장 등의 경우 50%를 적용

<최저호가가격 산정시 적용비율>

대 상		기 존	개 정
신규상장	보통주	90%	(좌동)
	우선주	90%	50%
재 상 장	보통주	90%	50%
	우선주	90%	50%
주식병합	보통주	50%	(좌동)
	우선주	50%	(좌동)

○ 전산장애시 시장운영방법의 명확화 (4조, 30조, 30조의2 : 2005/6/28 개정, 7/18 시행)

- 전산장애 판단범위를 회원시스템 장애의 경우도 포함하고, 회원시스템 장애의 판단기준을 명시
 - 장애가 발생한 회원의 주식거래량이 전체거래량의 75% 이상시
- 전산장애시 매매거래 중단·재개 등의 근거를 명시하고, 재개시 단일 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법으로 정함
- 매매거래 폭주종목의 판단근거
 - 매매계약 체결이 60분 이상 지연되는 경우
- 전산장애로 인한 정규시장의 매매거래 연장의 종결시점 근거 명시

○ 외국인투자자 매매편의 제고 및 관리개선 (7조 : 2005/6/28 개정, 7/18 시행)

- 투자자집단을 위한 대표투자자 계좌 또는 증권회사 명의의 외국인거래 전용계좌를 이용하여 호가가 가능하도록 함
- 외국인투자자 관리 등을 위해 대표투자자 계좌 또는 외국인거래 전용계좌를 구분하여 입력하도록 함

○ 자기매매 위탁·위탁매매의 재위탁 규제의 효율성 제고

(7조 : 2005/6/28 개정, 7/18 시행)

- 자기매매의 위탁·위탁매매의 재위탁에 관한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기매매를 위탁받은 경우, 위탁한 증권회사 명의로 호가를 구분하여 표시
- 위탁매매 재위탁시 원위탁자 기준으로 호가내용을 입력
 - 위탁매매 또는 자기매매의 구분, 계좌번호, 투자자분류 코드 등

○ 거래전문회원의 매매거래내용 통보사항 신설 (29조 : 2005/9/27 개정, 9/28 시행)

- 거래소는 거래전문회원의 매매거래에 대해 다음의 매매거래내용을 지정결제회원에게 통지함
 - 거래전문회원 회원번호
 - 종목별 매수(도)수량
 - 종목별 매수(도)거래대금

○ 프로그램매매 관리 기준지수의 변경 (2조, 부칙 3조 : 2005/10/14 개정, 11/7 시행)

— 지수차익거래·비차익거래, 프로그램매매호가 효력정지제도(Sidecar)의 적용기준이 되는 대상지수를 스타지수로 변경

* 비차익거래 대상종목수 10종목 (기존 유지)

— 다만, 프로그램매매 관리 강화와 공시기능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코스닥50지수에 대한 프로그램매매도 당해 선물·옵션 상장폐지까지 프로그램매매로 관리

○ 권리락 및 배당락 기준가격 산정방식 개선 (별표2 : 2005/10/14 개정, 11/7 시행)

— 신주인수권의 가치에 중점을 둔 기존 기준가격조정방식을 유지하되, 산식을 단순화하고 용어를 명확히 함(유가증권시장과 통일)

• 보통주만 상장된 경우에 우선주를 배정하는 경우 배당락의 경우와 동일하게 권리락 조치를 통해 기준가격 조정

○ 최초 매매개시기준가격 산정기준 중 일부 개선 (별표1 : 2005/10/14 개정, 11/7 시행)

—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주식소각에 의해 자본이 감소하는 경우 주식병합의 경우와 동일하게 감자비율을 적용하여 기준가격 결정방법을 적용

— 주권의 신규상장, 재상장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해 최초 매매기준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당일 가격 미형성 및 기세요건 미해당시 당해 종목의 평가가격을 익일 기준가격으로 적용

- 외국주, 외국주식예탁증서의 평가가격을 모집 또는 매출시의 발행가액으로 산정토록 신설
 - 재상장 및 변경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이 “양”이 아닌 경우 최저호가 가격 등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장중대량매매의 수량 요건 및 호가 가격단위의 명시 (22조의2 5항 : 2005/12/23 개정, 2006/4/24 시행)
- 시간외대량매매의 경우와 동일하게 수량요건은 1억원 이상, 호가가격단위는 1원으로 함
- 대량매매네트워크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규정 (22조의2 1항~4항 : 2005/12/23 개정, 2006/4/24 시행)
- 시간외대량매매 및 장중대량매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대량매매등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동 네트워크 장애시 처리방법을 정함
- 전자문서에 의한 자기주식매매 신청 (10조 4항 : 2005/12/23 개정, 2006/1/16 시행)
- 자기주식매매신청은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산장애시 등의 처리방법을 정함

- 매매체결정보에 대한 투자참고사항 공표 범위 확대 (52조 6항 : 2005/12/23 개정, 2006/4/24 시행)
 - 대량매매, 자기주식매매의 체결정보를 투자참고사항으로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9.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중견기업요건의 폐지 (7조 : 2005/3/25 개정, 3/28 시행)
 - 진입요건중 중견기업요건을 폐지하여 코스닥시장을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시장으로 차별화

- 성장형 벤처기업에 대한 상장특례 인정 (7조 : 2005/3/25 개정, 3/28 시행)
 - 기술력·성장성이 인정되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수익성요건(ROE, 경상이익)의 적용을 면제함
 -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ROE(일반 10%, 벤처 5%) 및 경상이익요건을 충족해야 함
 - 기술력 및 성장성의 검증을 위해 상장위원회, 전문가 자문제도 및 전문평가기관을 적극 활용하도록 함

○ 코스닥상장기업의 신규상장시 부채비율요건을 개선 (6조 : 2005/3/25 개정, 3/28 시행)

— 부채비율 상장요건을 코스닥상장기업의 동업종 평균부채비율 또는 코스닥상장기업 전체 평균부채비율 중 큰 것의 1.5배 미만으로 변경

- 외환위기 이후 코스닥상장기업의 평균부채비율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부채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

<진입요건의 신·구 비교>

		기 존			개 정	
		일반	중견	벤처	일반	벤처*
규모	자본금	10억	-	5억	10억	5억
	자기자본	-	100억	-	-	-
	자산총계	-	500억	-	-	-
안정성	자본잠식	없을 것	없을 것	없을 것	없을 것	없을 것
	부채비율	1.5배** (100%)	1.0배 (100%)	-	1.5배**	-
수익성	경상이익	있을 것	-	있을 것	있을 것	있을 것
	ROE	10%	-	5%	10%	5%

* 기술력·성장성이 인정되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수익성요건의 적용을 면제

** 부채비율의 배수기준 : 동업종평균(기존), 동업종평균과 전체 코스닥상장기업평균 중 큰 것(개정)

○ 관리종목 지정사유 확대로 사전 경고기능 강화 (28조 1항 2호의2·3호 :

2005/3/25 개정, 3/28 시행)

— 반기보고서상 자본전액이 잠식된 기업을 관리종목으로 지정

○ 상장폐지 유예기간 단축 등 퇴출절차의 신속화 (28조 1항 3호 : 2005/3/25 개정, 3/28 시행)

— 자본잠식요건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경우 상장폐지까지의 유예기간을 단축함

• 1년 → 6월

— 사업연도말 자본잠식요건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상장기업의 퇴출요건 강화

• 반기보고서상 감사의견 미달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 한정) 및 반기감사보고서 미제출시 퇴출사유에 추가

○ 수익성 악화기업의 조기퇴출 유도 (28조 1항 2호의2, 38조 1항 4호의2 : 2005/3/25 개정, 3/28 시행)

— 수익성 악화가 지속된 기업의 조기퇴출을 유도

• 경상손실이 자기자본의 50% 이상으로 2년 이상 지속시 관리종목 지정, 3년 이상 지속시 상장폐지 (2005년, 2006년 연속한 법인부터 관리종목 지정)

○ 시가총액에 의한 상장폐지기준 강화 (38조 1항 8호 : 2005/3/25 개정, 10/1 시행)

— 상장폐지기준이 되는 시가총액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강화

< 퇴출요건의 신·구 비교 >

기 준	개 정
(관리종목) ·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률이 50%이상 · (신설) · 시가총액 10억미만 (30일연속) · (신설)	(관리종목) ·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률이 50%이상 · 반기보고서상 자본전액잠식 · 시가총액 20억미만 (30일연속) · 자기자본 50%이상의 경상손실이 2년 계속
(퇴출) · 사업연도말 자본 전액잠식 · 관리종목(자본잠식률 50%)지정법인이 - 다음 사업연도말 자본잠식률 50% 이상 - (신설) - (신설) · 시가총액 10억미만 (일정기간) · (신설)	(퇴출) · 사업연도말 자본 전액잠식 · 관리종목(자본잠식률 50%)지정법인이 - 다음 사업연도말 자본잠식률 50% 이상 - 다음 반기말 자본잠식률 50%이상 - 다음 반기말 감사의견 미달(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 한정) 및 반기 감사 보고서 미제출 · 시가총액 20억미만 (일정기간) · 자기자본 50%이상의 경상손실이 3년 계속

○ 중대한 증권범죄의 발생시 퇴출조치 (38조 1항 22호 : 2005/3/25 개정, 3/28 시행)

— 중대한 증권범죄로 투자자보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퇴출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

○ 부실기업에 대한 현장실사의 근거 마련 (38조 7항 : 2005/3/25 개정, 3/28 시행)

— 일정한 경우 코스닥기업에 대한 현장실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중대한 증권범죄로 인한 상장폐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 주된 영업의 정지나 양도결정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의 신속한 상장폐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 거래량에 의한 퇴출기준 개선 (27조 : 2005/3/25 개정, 3/28 시행)

— 기존에는 거래량 부족에 대한 획일적 시장조치로 인해 주식분산이 우수한 기업의 자전거래 등 기업부담이 증가하였음

— 주식분산기준을 발행주식총수에서 유동주식총수로 개선하여 유가증권 시장과 동일하게 운영하고, 거래실적 부진에 의한 퇴출기준을 개선하되, 주식분산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

- 발행주식총수의 0.3%~1% → 유동주식총수의 1%

* 유동주식수 = 보통주식수 - (정부소유주식 + 외국투자자 소유주식 + 회사정리법 등에 따라 발행된 주식 중 보호예수된 주식)

- 절대거래량(월간 5만주 이상) 충족기업 또는 주식분산 우량(소액주주의 수가 300인 이상이고 소액주주의 지분이 20%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

○ 매각제한기간(lock-up period)의 단축 (21조 : 2005/3/25 개정, 3/28 시행)

—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매각제한제도를 합리적으로 완화

- 증권선물거래소 설립일(2005/1/27)이후 예비심사청구법인부터 적용

대 상	기 존	개 정
최대주주 등	2년(1년 경과시 매월 5%)	1년(6월 경과시 매월 5%)
상장주선인*	6월	폐지

* 상장주선인에 대한 상장예정기업의 주식소유금지

○ 코스닥 상장후 무상증자 제한폐지 (34조 : 2005/3/25 개정, 3/28 시행)

— 최대주주 등의 무상증자분 매각제한조치에 따라 자본이득 취득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폐지

- 종래에는 상장 후 1년간 이익배당한도 내에서만 무상증자가 가능하였음

○ 시장이전비용 징수제도 등의 폐지 (51조 : 2005/3/25 개정, 3/28 시행)

— 코스닥시장과 유가증권시장의 운영주체가 통합됨에 따라 시장이전비용 징수제도를 폐지

- 종래에는 코스닥 상장후 단기간 내(5년 이내)에 시장을 이전할 경우 일정액(IPO 금액의 0.1%~0.3%)의 시장이전비용을 징수

○ 상장을 주선한 증권사의 주선기업 주식보유 의무 폐지 (26조 : 2005/3/25 개정, 3/28 시행)

— 코스닥시장의 유동성 확보로 상품보유를 통한 호가제출의 실익이 없으므로 폐지

- 종래에는 상장주선 대상인 코스닥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 또는 1천만원 중 적은 금액이상을 상장후 1년간 보유

○ 합병요건 심사대상 축소 (19조 : 2005/7/22 개정, 7/25 시행)

— 코스닥상장기업과 비공개기업과의 합병시 비공개기업의 합병요건 심사대상을 축소

- 비공개기업이 자산·자본금·매출액 중 2가지 이상이 코스닥상장기업보다 큰 경우에만 합병요건*을 심사

* 합병요건 : 자본잠식, 경상이익, 부채비율, 유·무상증자제한, 감사의견, 지분변동제한, 소송 및 부도

기 준	개 정
코스닥기업과 합병하는 모든 비상장기업에 대해 거래소가 정하는 합병요건을 적용	코스닥기업과 합병하는 비상장기업이 자산, 자본금 및 매출액중 2가지 이상이 큰 경우 당해 비상장기업에 대해 거래소가 정하는 합병요건을 적용

○ 부채비율 요건의 합리적 개선 (6조 1항 7호 : 2005/7/22 개정, 7/25 시행)

— 부채비율 요건은 유지하되 재무적 안정성, 산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예외를 인정

○ 프리보드 지정법인에 대한 우대방안 마련 (6조 1항 15호 : 2005/7/22 개정, 7/25 시행)

— 지분변동 제한요건 적용대상을 종래대로 최대주주 등과 5% 이상 주주로 유지하되, 프리보드 지정법인에 한해 최대주주 등 및 10% 이상 주주로 요건적용대상을 완화

○ Lock up 대상 확대 (22조의3 : 2005/12/9 개정, 12/12 시행)

— 3자배정증자와 연계한 영업·자산양수(주식스왑 포함)의 경우에도 합병 및 포괄적주식교환에 준하는 보호예수의무 부과

○ 우회상장 성격에 따른 Lock up 기간 차등 적용 (22조의4 : 2005/12/9 개정, 12/12 시행)

— 합병 및 포괄적주식교환

• 현행대로 2년을 적용하되,

* 우회상장과 관련하여 지배권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으로 단축

* 지배권 변동이 있고 비공개기업이 재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강화

— 3자배정 증자와 연계한 영업(자산)양수(주식스왑 포함)

• 지배권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년, 있는 경우에는 2년 적용

- 연중 상시심사체계 구축 (4조 : 2005/12/9 개정, 12/12 시행)
 - 연중 상시심사체계 구축으로 기업의 상시청구가 가능토록 함으로써 기업의 적기 자금조달 계획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예비심사 청구시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의 기준 사업연도를 탄력적으로 적용
 - 결산확정전(1~2월) 청구시에는 전년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 등으로 우선 심사하고 직전사업연도 결산후 심사결과 확정

- 성장형 벤처기업에 대한 퇴출요건 보완 (28조 : 2005/12/9 개정, 12/12 시행)
 - 성장벤처 특례를 적용받은 벤처기업에 대해 일정기간(상장일이 속하는 당해연도 및 익년도)동안 매출액 미달(30억원 미만)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 및 퇴출조치 적용 유예

- 증권선물위원회 조치와 연계한 시장조치 개선 (28조, 29조 : 2005/12/9 개정, 12/12 시행)
 - 분식회계 및 불공정거래와 관련하여 증선위 조치결과와 연계한 시장조치 폐지

- 감사의견에 의한 즉시퇴출제도 개선 (38조 : 2005/12/9 개정, 12/12 시행)
 - 감사의견에 의한 퇴출사유 발생기업에 대해 그 사유가 「계속기업 불확실성」인 경우에 한해 일정기간 퇴출을 유예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10일 이내에 동일한 감사인의 사유해소에 대한 의견서 제출시 반기까지 퇴출 유예
 - 반기보고서상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퇴출여부 결정 (유예 불인정)

○ 상장요건 개선 (6조, 7조 : 2005/12/23 개정, 12/26 시행)

- 기업규모 요건을 자본금 기준(일반기업 10억원, 벤처기업 5억원)에서 자기자본 기준(일반기업 30억원, 벤처기업 15억원)으로 변경하여 기업 규모 측정 지표의 유의성 제고
- 자기자본이익률 요건(일반 10%, 벤처 5%)을 자기자본이익률과 이익규모(일반 20억, 벤처 10억) 중 선택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장기 이익누적 등으로 자기자본이 증가한 기업에 대한 상장기회 확대
- 일률적인 부채비율 요건(업종 또는 코스닥전체평균의 1.5배)을 폐지하고 이를 재무안정성에 대한 질적 심사로 대체하여, 기업별 최적자본구조 선택 및 투자 활성화를 지원

○ 퇴출요건 개선 (27조, 38조 : 2005/12/23 개정, 12/26 시행)

- 거래량요건의 개선
 - 퇴출요건 적용을 위한 거래량 산정주기를 확대하여 일시적인 시장 상황(시장의 전반적인 유동성 저하)에 의한 퇴출을 방지하고, 비율에 의한 거래량요건의 적용을 면제받는 절대거래량 기준을 현실화

기 준	개 정
— 거래량부진*이 3월간 계속되는 경우 퇴출 * 월간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 (단, 월간거래량 5만주 이상시 적용 예외)	— 거래량부진*이 2분기간 계속되는 경우 퇴출 * 분기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 (단, 월간거래량 1만주 이상시 적용 예외)

— 삼진아웃제의 폐지

- 불성실공시 횡수(2년간 3회, 삼진아웃제)에 의한 상장폐지기준은 폐지하되 성실공시 담보를 위해 고의·중과실에 의한 공시위반시 상장폐지 근거 마련
-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주의 환기를 위해 투자유의종목 지정제도는 유지하되 지정기준 완화(2년 2회 → 1년 1.5회)

— 상호저축은행 관련 투자유의종목 지정제도 폐지

- 금융감독원의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적기 시정조치(5% 미만) 등 여타 투자자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상호저축은행과 관련된 투자유의종목 지정 제도를 폐지

○ 외국기업 상장예비심사 제도 도입 등 상장절차 개선 (4조의2·3, 41조 :

2005/12/23 개정, 12/26 시행)

- 외국기업(1차상장, 2차상장 공통)도 국내기업과 동일한 상장예비심사를 거치도록 심사절차를 개선하여, 외국기업에 대한 심사기능 제고
- 외국기업의 경우 코스닥상장 추진시 상장대리인 선임 및 거래소와의 사전협의(상장절차 및 시기 등 관련)를 의무화
- 외국기업의 경우 투자유의·관리종목 지정 및 퇴출결정시의 이의신청 기한을 국내기업과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외국기업 상장요건 및 퇴출요건 개선 (7조의2, 41조 : 2005/12/23 개정,

12/26 시행)

- “국내·외기업 차별금지 및 동등 대우 원칙”에 따라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국내기업과 동일한 규제 적용

- 다만, 본국법 규제 등 외국법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 불가능하거나 타당성을 결여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 1차상장과 2차상장의 차이를 고려하여 규제 차별화가 필요한 요건 정비

○ 외국지주회사 상장요건 적용방법 명시 (7조의2 : 2005/12/23 개정, 12/26 시행)

- 외국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재무요건 심사시 연결재무제표를 반영하고 자회사의 영업기간을 고려하는 등 지주회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상장요건을 적용

10.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 수익성요건의 적용이 배제되는 벤처기업의 범위 명시

(7조 3항 : 2005/3/30 30 개정, 4/1 시행)

- 수익성(ROE, 경상이익) 요건의 적용을 배제하는 성장형 벤처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심사요건 적용의 객관성을 제고함
 - 정부가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등의 업종으로서,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기술평가결과가 A등급 이상인 기업

○ 코스닥시장의 질적심사기준의 개선 (8조 : 2005/3/30 개정, 4/1 시행)

— 기업의 특성에 따른 질적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심사기준을 구체화

— 수익성(ROE, 경상이익) 요건 충족기업

- 재무상태, 경영성 및 시장성(매출의 지속여부)을 반영

— 수익성(ROE, 경상이익) 요건 미충족기업

- 시장성, 수익성, 재무상태, 기술성 및 경영성을 반영

○ 기술평가제도의 개선 (9조 : 2005/3/30 개정, 4/1 시행)

— 성장형 벤처기업(ROE 및 경상이익 요건의 미충족기업)에 대해 기술평가를 의무화함

- 거래소가 지정하는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도록 함 (평가비용은 청구기업이 부담)

— ROE 및 경상이익 요건을 충족한 기업의 상장예비심사청구시에는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기술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평가비용은 거래소가 부담)

- 다만, 수익성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상장적격성 판단을 위해 일부기업*에 대해서는 기술평가를 의무화함 (평가비용은 청구기업이 부담)

*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설립후 경과년수가 2년 미만인 기업,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최근 3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이 30
억원 미만인 기업

- 청문위원 구성 등의 명확화 (11조, 35조 : 2005/3/30 개정, 4/1 시행)
 - 상장 및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시 청문절차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심의절차의 투명성을 제고
 - 청문위원의 구성 : 코스닥시장 본부장, 상장위원회 위원중 2인 및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4인 이내

-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시기의 명확화 (26조 : 2005/3/30 개정, 4/1 시행)
 - 매출액(30억원) 및 자본잠식(사업연도말 50%) 요건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시기를 명확화
 - 신설되는 관리종목 지정사유인 “반기말 전액 자본잠식” 및 “경상손실지속”요건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시기 신설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시기의 신·구 비교>

구 분		기 존	개 정
매출액 30억원 미만	지정	확인된 날의 익일	사업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 날의 익일
	해제	차기 사업보고서에 의하여 사유해소가 확인된 날의 익일	(기존과 동일)
사업연도말 자본잠식률 50%이상	지정	사업보고서 법정제출 기한의 익일	(기존과 동일)
	해제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익일	차기 사업보고서에 의하여 사유해소가 확인된 경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익일
반기말 전액 자본잠식	지정	(신 설)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익일
	해제	(신 설)	사업보고서에 의하여 사유해소가 확인된 경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익일
경상손실 2년연속 자기자본의 50%이상	지정	(신 설)	사업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 날의 익일
	해제	(신 설)	차기 사업보고서에 의하여 사유해소가 확인된 날의 익일

- 상장주선인의 주식보유현황의 보고의무 폐지 (23조 : 2005/3/30 개정, 4/1 시행)
 - 상장주선인의 주선기업 주식보유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된 현황보고의무도 폐지

- 퇴출요건(경상손실 지속) 신설에 따른 퇴출절차 정비 (33조 : 2005/3/30 개정, 4/1 시행)
 - 경상손실 지속요건은 상장위원회의 심의 및 이의신청대상에서 제외

- 상장요건 특례대상이 되는 프리보드 지정법인의 범위 명확화
 - (2005/7/22 개정, 7/25 시행)
 - 상장요건 중 지분변동제한 특례*를 적용받는 프리보드 지정법인의 범위를 프리보드 지정후 1년이 경과한 법인으로 명확화
 - * 프리보드 지정법인에 대해서는 지분변동이 제한되는 주주의 범위를 축소(일반법인 5% 이상 주주 → 지정법인 10% 이상 주주)

- 기술평가 결과의 효력에 대한 유효기간 신설 (2005/7/22 개정, 7/25 시행)
 - 기술평가 후 6월 이내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기술평가 결과의 유의성을 제고

- 상장예비심사 결과통보 기한의 연장근거 마련 (2005/7/22 개정, 7/25 시행)
 - 상장위원회 심의의 연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비심사결과 통지기한(3월)의 연장을 가능하게 하여, 상장심사의 효율성을 제고

- 주된 영업정지의 범위 확대 (41조의2 : 2005/7/22 개정, 7/25 시행)
 - 주된 영업활동의 정지(관리종목 지정) 대상에 분기매출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연중상시심사체계 도입에 따른 서류제출시기 조정 (3조 : 2005/12/12 개정 · 시행)
 - 공모 이전에 주식분산요건을 갖춘 기업이 결산확정 이전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사업보고서의 제출시기를 결산확정 이후로 유예 (연중상시심사에 따른 탄력 적용)

- 우회상장시 최대주주변경에 대한 기준 설정 (20조의2 : 2005/12/12 개정 · 시행)
 - 우회상장시 Lock-up 기간이 가중되는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
 - 합병 및 포괄적 주식교환의 경우
 - 합병 및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가 코스닥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 영업·자산양수의 경우
 - 영업·자산양수 신고서 제출일 이후 6월 이내에 비공개법인 또는 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가 제3자배정으로 주식등을 배정받아 코스닥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 주식스왑의 경우

- 자산양수 신고서 제출일 이후 6월 이내에 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가 제3자배정으로 주식 등을 배정받아 코스닥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 매각제한주식의 질권설정을 위한 예외인출 허용 사유 명확화

(21조 : 2005/12/12 개정 · 시행)

- 유상증자 대금 마련을 위한 질권설정 허용에 있어서, 주주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만 인정

○ 차명계좌 보유 최대주주에 대한 추가 Lock-up기간 합리화

(22조 : 2005/12/12 개정 · 시행)

- 차명 보유분을 포함한 전체 매각제한대상 주식에 대하여 당초 보호에 수기간에 1년을 추가하여 적용

○ 외국기업의 제출서류 개선 (3조의2, 13조, 18조 : 2005/12/26 개정 · 시행)

- 외국기업의 상장예비심사 청구, 신규상장 및 변경·추가상장시 제출하는 서류를 외국기업의 특성에 맞게 정비

○ 투자유의 종목 지정 및 해제시기 정비 (24조 : 2005/12/26 개정 · 시행)

- 거래량 산정기간이 분기로 확대됨에 따라 투자유의종목 지정·해제시기 및 거래량 요건 적용기준 정비
-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투자유의 종목지정 기준이 완화(2년 2회 → 1년 1.5회)됨에 따라 투자유의종목 지정 및 해제시기 정비
- 상호저축은행 관련 투자유의종목 지정제도 폐지에 따른 조문정비

○ 감사의견에 의한 즉시퇴출제도 개선에 따른 필요사항 정비

(29조 : 2005/12/12 개정 · 시행)

- 계속기업 불확실성 사유 해소로 퇴출이 유예되는 경우 감사의견 확인 이후 퇴출결정시까지 매매거래정지
- 감사인의 사유해소에 대한 의견서 서식 신설

11.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 수시공시 의무사항 삭제 및 시장신고 전환 (6조 1항 · 2항 : 2005/12/27

개정, 2006/4/1 시행)

- 수시공시 의무사항 중 중복되거나 정보가치가 낮은 사항의 삭제 및 사후 관리적 성격의 공시사항에 대한 시장신고 전환

< 삭제 및 시장신고 전환 >

삭제	이익소각을 위한 주식취득 및 주식소각 완료, CB·BW·EB·DR 발행완료, 해외 일반채권 발행결정(완료), 장기차입결정, 회계정책·추정변경 결정, 사업목적변경, 외부감사 중도해지, 은행거래재개, 법정관리(화의) 종결·폐지신청 및 결정사실 통보 등, 최대주주등과의 거래
시장신고 전환	발행주식총수의 1%이상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전환권·신주인수권·교환청구권 행사, CB·BW·EB 행사 가격(시가하락) 조정, CB·BW·EB 중도상환

- 수시공시의무 비율조정 (6조 1항 : 2005/12/27 개정, 2006/4/1 시행)
 - 종래 3단계인 공시의무 비율기준을 공시실효성, 항목간 형평성 등을 고려 2단계(5%, 10%)로 조정
 - 재무지표(자기자본, 자산총액, 매출액)의 3%, 5%, 10% → 5%, 10%
 - 누계금액(잔액) 기준 공시항목을 건별금액기준으로 단순화
 - 누계금액공시는 발생 이후 상당기간 경과후 공시되어 적시성이 떨어지고 분기별로 제출되는 정기보고서의 기재내용과도 중복

- 대규모기업 기준 차등적용 (6조 1항 : 2005/12/27 개정, 2006/4/1 시행)
 - 코스닥시장의 대규모기업 기준을 기존 자산 2조원(4개사)에서 자산총액 1천억원(103사) 이상(코스닥대기업)으로 변경하여 유가증권시장과 차별
 - 코스닥대기업(자산 1천억원 이상)에 대해 차등적용 하더라도 공시비율기준 적정화를 통하여 신규로 대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추가 공시부담은 없음

- 자율공시 확대 (6조 1항, 15조 : 2005/12/27 개정, 2006/4/1 시행)
 - 공시의무중 호재성 정보 및 중요성이 다소 떨어지는 사항은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자율공시로 전환하고, 기존 자진공시도 자율공시로 수용
 - 초기 시행에 따른 혼란예방을 위해 자율공시사항은 세칙에 예시적으로 열거

- 자율공시라 하더라도 공시반복·공시변경·기공시내용 변동의 경우 불성실공시 제재 부과

< 자율공시 전환 >

특히 양수·도, 기술도입계약체결(해지), 자원개발 투자결정·경제성 판명, 단기차입금 감소, 채무면제를 받은 경우, 증여결정·수증사실, 파생상품 거래이익 발생, 관계상호저축은행 관련사항,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 등 조치, 합병·영업양수도 등 무효(취소) 소송제기

- 자기자본 변동분의 적정반영 (2조 6항 : 2005/12/27 개정, 2006/4/1 시행)
 - 사업연도 중 합병, 회사분할 등에 따른 대규모 자기자본 변동을 반영
- 고정자산 취득 및 처분 공시대상 축소 (6조 1항 : 2005/12/27 개정, 2006/4/1 시행)
 - 가격변동 위험이 커서 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공시건수가 많은 토지, 건물 등 유형자산으로 한정
- 출자 및 출차지분 처분 공시대상 제한 (6조 1항 : 2005/12/27 개정, 2006/4/1 시행)
 - 공개매수에 의한 출자, 금융기관의 단기매매증권 취득·처분(담보 등 권리실행을 위한 경우 포함)을 제외

○ 조회공시 위반에 대한 불성실공시 및 매매거래정지 제도개선

(29조 3호, 35조 1항 5호 : 2005/12/27 개정, 2006/4/1 시행)

- 시황변동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 후 15일 이내 공시의무사항 발생시 공시번복으로 제재하는 기준을 세척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제재대상을 축소하여 합리적으로 개선
- 조회공시 요구에 대하여 당해 기업이 불응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 근거 신설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관련 업무 개선 (33조, 33조의2 : 2005/12/27 개정, 2006/4/1 시행)

- 불성실공시법인의 지정횟수
 - 자율공시 정착을 위해 성실하게 공시하는 기업에 대해 불성실공시 제재(심의)시 감경(영문공시, IR 등 세척반영)
 - 공정공시 및 자율공시 위반에 대하여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횟수를 1/2로 적용
- 불성실공시법인의 지정절차
 - 불성실공시법인으로 미지정하는 경우 성실공시 이행 촉구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법인의 이의신청시 의견진술권 부여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시 금감위 통보대상을 명확화(공시규정 및 금감위규정(제6장제2절)의 공통규정사항)

- 소송이 제기된 발행 유가증권의 공시대상 통일 (6조 1항 : 2005/12/27 개정, 2006/4/1 시행)
 - 상장 이전 유가증권에 대한 소송제기도 수시공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해당 조문을 명확화
 - 코스닥상장주권 → 상장 또는 상장대상 유가증권

- 시황급변 조회공시 답변시한 연장 및 요구면제 제도 도입 (12조 2항 : 2005/12/27 개정, 2006/4/1 시행)
 - 시황급변 관련 조회공시 요구시 답변을 위한 충분한 시간부여
 - 반나절 → 익일까지
 - 시황급변 관련 조회공시를 요구한 이후 15일 이내 재차 동일 사유해당시 조회공시 요구 면제

- 기공시내용의 변동사항 미신고시 처리절차 통일 (28조, 31조 : 2005/12/27 개정, 2006/4/1 시행)
 - 기공시내용의 변동사항 미신고시 불성실공시 유형(공시불이행 간주)으로 명확화하고 공시시한(원래 공시 시한 적용) 명시

- 공시의무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현지출장 근거 신설 (34조 2항 : 2005/12/27 개정, 2006/4/1 시행)
 - 기업의 해당 공시의무 성실히 이행 여부에 대한 실제파악(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의 사실확인 등)이 용이토록 현지출장 근거를 신설
 -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현지방문을 통한 이행점검 제도 시행중

- IR 관련 자료의 신고 등 업무처리 절차 개선 (37조 : 2005/12/27 개정, 2006/4/1 시행)
 - IR 관련 신고의 공시기관을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에서 거래소로 변경하고, IR 제공자료의 공정성·객관성 유지 및 공정공시 대상정보의 신고의무 부여

- 상장법인 등에 대한 표창 및 포상제도 (43조 : 2005/12/27 개정, 2006/4/1 시행)
 - 코스닥상장기업의 성실공시 풍토정착을 위하여 공시업무 모범기업 및 임·직원의 표창근거 신설

- 공시위원회의 심의기능 확충 (44조 1항 : 2005/12/27 개정, 2006/4/1 시행)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지정횟수 심의 이외에 공시제도 및 운영에 관한 의견 제시

- 공시시한 단축 (12조 3항 : 2005/12/27 개정, 2006/4/1 시행)
 - 토요일공시 폐지로 인한 조회공시 시한 개선
 - 오전 → 당일오후 / 오후 → 다음날(매매일) 오전

- 외국기업의 수시공시의무 및 조회공시 적용기준 정비 (16조 : 2005/12/27 개정, 2006/4/1 시행)
 - 원칙적으로 해외증시 상장여부를 불문하고 국내기업과 동일한 수시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수시공시의무 인정 범위를 기준으로 조회공시 가능토록 개선

- 외국기업에 대하여 공시대리인 선임 의무화 (16조의3 : 2005/12/27 개정, 2006/4/1 시행)
 - 외국기업에 대하여 공시책임자 외에 공시대리인 선임을 의무화함으로써 전문가의 후견(Sponsor)을 통한 투자자보호 도모
 - 당해 외국기업이 공시대리인에게 대리권한을 부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개선

- 외국기업 공시서류의 작성방법(공시언어·화폐단위)

(16조의4 : 2005/12/27 개정, 2006/4/1 시행)

 - 국내 투자자보호를 위해 수시공시의 경우 한글공시를 원칙으로 함
 - 금액표시는 본국통화·원화(환율 포함) 표시 병기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본국통화 표시 허용

- 외국기업에 대한 공시시한의 탄력적 운용 (16조의5 : 2005/12/27 개정, 2006/4/1 시행)
 - 공시신고 시한은 공시사유 발생 시점의 국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당해 외국기업의 시차를 고려하여 공시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명확화

- 외국기업의 불성실공시 적용예외 (16조의6 : 2005/12/27 개정, 2006/4/1 시행)
 - 국내기업에 준하여 처리하되, 외국기업의 지리적 여건·본국의 관습 등 고려하여 불성실공시 적용예외 가능

12.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 조회공시 요구대상 풍문·보도 등 범위 명확화 (6조 2항·3항 : 2005/12/27 개정, 2006/4/1 시행)

- 조회공시 요구대상 풍문·보도 등을 거래소가 수집한 내용 및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지(경제지)에 게재된 기사로 명확화
- 토요일 폐지로 조회공시 요구·답변이 불가능한 토요일을 요구·답변시한 산정시 제외

○ 조회공시 반복에 대한 제재기준 완화 (8조 : 2005/12/27 개정, 2006/4/1 시행)

- 시황변동에 대한 조회공시 반복시 제재기준(공시반복)을 매매거래정지 대상 중요정보 등으로 한정
 - 시황변동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후 15일 이내 매매거래정지 대상 중요정보 등 공시하는 경우 제재

< 매매거래정지 대상 중요정보 등 >

매매거래 정지대상	증자·감자, 이익소각, 주식배당,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탈퇴, 주식교환·이전, 영업양수도·합병·분할
기타 중요정보	자사주 취득·처분, 매출액의 10%이상 단일판매계약·공급계약, 주식분할·병합, 자기자본의 5%이상 출자·출자지분 처분, 현금배당, 간이합병·소규모합병, 상장폐지 결정

○ 조회공시 불응시 매매거래정지 신설에 따른 정지기간 명확화

(11조 2항 4호 : 2005/12/27 개정, 2006/4/1 시행)

— 위반사실 확인시점부터 조회결과를 공시한 후 60분이 경과한 후 매매 거래를 재개

- 다만,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종료 9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매매거래 재개, 당일 정규시장 개시 이전인 경우에는 당일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 후 60분이 경과한 후 재개

○ 자율공시 대상 공시의무사항의 예시적 열거 (6조의2 : 2005/12/27 개정, 2006/4/1 시행)

— 공시의무 중 호재성 정보 및 중요성이 다소 떨어지는 사항은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자율공시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초기 시행에 따른 혼란예방을 위해 예시적으로 열거

< 자율공시 대상 공시의무사항 >

<p>예시적 열거 (8개 사항)</p>	<p>특허권 및 중요한 자산 양수·도, 기술도입·이전 계약체결·해지, 자원개발 투자결정,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단기차입금 감소·채무면제 받은 때·증여·수증·파생상품 이익, 상호저축은행 과점주주·BIS비율 8%미만 하락·재무제표 확정·소송제기 등,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 합병·영업양수도 등 승인 주총결의의 무효 또는 취소 소송의 제기 등</p>
---------------------------	---

○ 반기 자본전액잠식 사실 및 분식회계 공시시 매매거래정지 신설

(11조 1항 : 2005/12/27 개정, 2006/4/1 시행)

- 반기말 자본전액잠식 사실을 공시하는 경우 중요내용 공시에 준하여 매매거래정지 신설
- 분식회계에 대한 거래소의 대신공시 및 관리종목 지정제도 폐지에 따라 해당 사실을 당해 기업이 공시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주의환기토록 매매거래정지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시 매매거래정지 폐지 (11조 2항 5호 : 2005/12/27 개정, 2006/4/1 시행)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시의 매매거래정지(60분)는 해당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의 제재이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시의 매매거래정지(1일)와 중복제재이므로 폐지

○ 최대주주 변경시 상세정보 추가요구 및 매매거래 재개시기 연장 제도 폐지 (11조 4항 : 2005/12/27 개정, 2006/4/1 시행)

- 변경후 최대주주에 대한 추가 상세정보 요구 및 동 상세정보 제공시까지 매매거래를 재개하지 않는 기존 제도를 폐지
 - 공시실무상 코스닥상장법인이 변경 후 최대주주에 대한 상세정보를 현실적으로 알 수 없는 경우까지도 매매거래가 재개되지 않는 불합리 제거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횟수 세분화 및 성실공시 기업에 대한 제재 가중·감경 제도 도입 (별표1 : 2005/12/27 개정, 2006/4/1 시행)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횟수 결정시 가중·감경의 범위 및 제재의 최대·최소한도를 명확화

- 가중·감경의 범위 : 0.25회 기준
- 제재의 최대·최소한도 : 1.25회~0회

— 위반의 동기 및 중요성을 기준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횟수 부과범위를 개선

- 3단계(1회, 0.5회, 0회) → 5단계(1회, 0.75회, 0.5회, 0.25회, 0회)

< 제재 심의기준표 >

위반의 동기 위반의 중요성	고의·중과실	과실	단순착오
중대한 위반	1회	0.75회	0.5회
통상의 위반	0.75회	0.5회	0.25회
경미한 위반	0.5회	0.25회	0회

— 성실공시 관행 정착을 위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횟수 결정시 제재 감경 기준 신설

- 최근 2년간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
- 최근 1년간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없는 법인이 다음의 1에 해당시
 - * 최근 1년간 총 공시건수 중 자율공시 건수의 비율이 30%이상이거나 15건 이상
 - * 최근 3년간 공시업무 또는 IR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상 경력이 있는 법인

- * 최근 1년간 풍문·보도 등과 관련하여 조희공시 건수가 없는 법인
- * 최근 1년간 영문공시 건수의 비율이 당해 법인의 전체 공시건수 대비 10%이상이거나 10건 이상인 법인
- * 최근 1년간 IR 개최사실을 거래소에 신고한 횟수가 2회 이상인 법인

— 성실공시 관행 정착을 위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횟수 결정시 제재 가중 기준을 신설

-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으로 거래소가 성실공시 이행촉구 등 조치하였으나 그 후 6월내 재차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는 경우
- 최근 1년간 규정 제36조, 제38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법인의 이의신청시 의견진술권 보장에 따른 관련 서식 개정 (공시서식 2 : 2005/12/27 개정, 2006/4/1 시행)

— 이의신청 법인의 의견진술권 보장이 공시규정에 명문화됨에 따라 이의신청서 제출시 의견진술권을 행사할 것인가의 여부를 표시토록 개선

○ 공시운영시간 단축에 따른 공시신고시한 등 개선 (14조 : 2005/12/27 개정, 2006/4/1 시행)

— 연말 휴장일(1일)은 매매일이 아니지만 공시기간 계산시 이를 산입토록 명시하여 투자자보호를 도모

— 공시운영시간 단축으로 당일·익일공시, 조희공시 답변시한 등 공시시한은 18시를 기준으로 함을 명시

- 다만, 의결권행사 공시의 경우 자산운용회사의 업무 특성 등을 고려 신고시한을 전자공시시스템 운영시간까지로 연장
 - * 전자공시시스템 장애 및 공시처리시간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시시한(18:00, 7:20)을 연장하여 운영 가능토록 개선

○ 외국기업 조회공시 요구대상 “보도”의 범위 한정 (6조의3 : 2005/12/27 개정, 2006/4/1 시행)

- 외국기업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대상 중 “보도”의 범위는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거래소가 수집한 내용 및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지(경제지)에 게재된 기사로 한정

○ 외국기업 주권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신고사항 (6조의4 : 2005/12/27 개정, 2006/4/1 시행)

- 공시규정 제17조의 시장신고사항
- 외국주식예탁증서 발행에 따른 예탁기관 또는 예탁계약 내용 변경
- 외국주식예탁증서의 실질소유자 명부가 작성되었을 경우
- 외국주식예탁증서의 외국주권 전환청구로 인하여 외국주식예탁증서의 수가 변경되었을 경우

○ 외국기업 공시(금액표시)에 적용될 기준 환율 마련 (6조의5 : 2005/12/27 개정, 2006/4/1 시행)

-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고시되는 매매기준율 및 재정된 매매기준율로 금액표시하여 공시토록 함

○ 공시대리인 대리권한 수여에 관한 입증서식 마련 (공시서식 4 : 2005/12/27 개정, 2006/4/1 시행)

— 공시대리인 선임(변경 포함)시 외국기업이 당해 공시대리인에게 대리 권한을 부여하였음을 증명할 입증서류를 신설

13. 공정공시 운영기준

○ 토요일공시 휴무에 따른 신고시한 조정 (7조 : 2005/12/27 개정, 2006/1/1 시행)

— 매매거래시간 이전에 간담회 등을 통한 중요정보를 제공하거나 전자 공시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신고시한에서 토요일 관련사항을 삭제

14. 선물시장 업무규정

○ 주식옵션 권리행사시의 결제방식 변경 (196조 4항 : 2005/7/22 개정, 10/31 이내에서 세척이 정하는 날 시행)

— 주식옵션 권리행사시의 결제방법을 실물인수도방식에서 유동성 제고에 유리한 현금결제방식으로 변경

- 정밀도 높은 헤지의 원활화, 자산운용수단의 다양화 및 연계거래를 통한 주식시장의 유동성 제고 등 주식옵션시장의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함

○ 최종거래일의 거래시간 단축 (197조 1항 1호·3호 : 2005/7/22 개정, 10/31 이내에서 세칙이 정하는 날 시행)

- 현금결제방식의 경우 주식시장보다 늦게 종료할 필요가 없고 주식시장 증가에 미치는 영향의 차단을 위해, 최종거래일의 거래시간을 단축
 - 주식시장의 증가 단일가결정을 위한 호가접수시간(14:50 ~ 15:00)의 개시시점인 14시 50분에 주식옵션거래를 종료

○ 기초주권 선정대상에서 정리매매종목 제외 (203조 1항 1호 : 2005/7/22 개정, 10/31 이내에서 세칙이 정하는 날 시행)

- 정리매매종목을 기초주권으로 하는 경우, 주식옵션 상장기간의 한정, 투자자의 불측의 손해가능성, 극히 낮은 프리미엄의 옵션종목 속출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정리매매종목을 기초주권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 현금결제 주식옵션의 4개 결제월 동시상장 (부칙 2항~4항 : 2005/7/22 개정, 10/31 이내에서 세칙이 정하는 날 시행)

- 현금결제 주식옵션의 상장일에 4개 결제월을 모두 상장하고 기존의 실물인수도 주식옵션 4개 결제월의 최종결제일을 상장일의 전일로 앞당겨 일괄 상장폐지되도록 함
 - 전산시스템의 단순화, 중복상장에 따른 유동성 분산 및 투자자의 혼란 방지

- 3년 국채선물에 협의대량거래 허용 (25조 5항·6항 : 2005/7/22 개정, 10/31 이내에서 세척이 정하는 날 시행)
 - 3년 국채선물에 협의대량거래를 허용하여, 기관투자자 등 대량거래를 충족시키고 대량거래에 따른 가격급등락을 방지하며, 대량포지션의 원활한 이월(Roll-over)을 가능하게 하여 3년 국채선물시장의 헤지기능을 제고
 - 3년 국채선물 협의대량거래의 가격제한범위는 협의를 완료된 때의 직전 15분간의 최고가격과 최저가격 이내로 함

- 호가잔량기준 5개에서 호가 Tick 기준 5개로 변경 (231조 1항 3호·6호 : 2005/7/22 개정, 10/31 이내에서 세척이 정하는 날 시행)
 - 최우선호가가격을 포함한 호가Tick기준 연속 5개 가격의 호가잔량을 공개
 - 매도 : 최우선매도호가의 가격 및 그 가격에 호가가격단위를 순차적으로 더한 4개 가격의 호가수량
 - 매수 :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 및 그 가격에서 호가가격단위를 순차적으로 뺀 4개 가격의 호가수량

- 금리관련 품목의 연말휴장 (3조 1항 4호 : 2005/7/22 개정, 10/31 이내에서 세척이 정하는 날 시행)
 - 거래수요의 부족과 회원업무의 부담에 따라 금리관련 품목도 연말에 휴장

- 대용증권범위에서 투자유의종목 제외 (54조 1항 1호 : 2005/7/22 개정, 10/31 이내에서 세척이 정하는 날 시행)
 - 코스닥시장의 투자유의종목 등을 대용증권에서 제외하여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대용증권범위와 균형을 도모하고 결제안전성을 제고

- 미국달러옵션의 권리행사기준 가격 변경 (123조 : 2005/7/22 개정, 10/31 이내에서 세척이 정하는 날 시행)
 - 미국달러옵션의 권리행사기준가격을 기존 최종거래일 12시의 환율에서 미국달러옵션의 거래종료시점인 11시 30분의 환율로 변경

- 주식옵션의 실물인수도 관련제도 폐지 (247조 2항 단서·3항 단서·5항·7항, 251조, 255조 : 2005/7/22 개정, 10/31 이내에서 세척이 정하는 날 시행)
 - 손실발생시 권리행사 허용, 이익발생시 권리행사 포기 및 실물인수도 곤란시의 권리행사제한 제도를 폐지
 - 권리행사시 주권과 그 대가인 권리행사대금의 수수제도를 폐지
 - 결제대용증제도를 폐지

- 스타지수선물거래 제도 (198조 1항 2호, 214조 2항 2호 : 2005/10/14 개정, 11/7 시행)
 - 선물거래의 대상
 - 지수명칭 : 스타지수
 - 구성종목 :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중 30종목
 - 기준일 : 2003년 1월 2일(기준일의 지수를 1,000포인트로 함)
 - 산출기관 : 거래소

- 산출방법 : 시가총액방식

— 1계약의 금액

- 스타지수에 1만원을 곱한 금액

* 스타지수선물거래의 1계약 금액(1,000P×1만원)은 코스닥50선물 (100P×20만원)의 1/2, KOSPI200선물(100P×50만원)의 1/5 수준임

— 여타 제도 : 한국주가지수 200 선물거래와 동일함

구 분	제 도 내 용
결제월	3·6·9·12월
최장거래기간	1년(항상 4개 결제월 존재)
최종거래일	각 결제월의 두번째 목요일
거래개시일	최종거래일의 익일
거래시간	최종거래일이 아닌 날 : 09:00 ~ 15:15 최종거래일 : 09:00 ~ 14:50
호가 종류	지정가·시장가·조건부지정가 및 최유리지정가호가
거래체결방법	개별경쟁거래, 전산거래
거래임의중단	거래소 또는 회원의 시스템 장애시 등
거래필요중단	서킷브레이크 발동시
선물스프레드거래	종목수는 최근월물과 여타 각 원월물과의 3개 종목 가격 : 원월물 가격 - 최근월물 가격 매도(매수)성립시 원월물 매도(매수)와 동시에 최근월 물 매수(매도)된 것으로 함
회원과 거래소간 결제	결제시한 : T+1, 16시 최종결제가격 : 최종거래일의 최종현물스타지수
거래증거금	순위험기준으로 산출하되, 양 지수의 가격상관성을 감안 하여 KOSPI 200 선물거래증거금과 상쇄가능 T+1, 12시까지 거래소에 예탁 전액 대응증권으로 예탁가능
미결제약정 보유한도	순미결제약정 5,000계약(투기포지션 기준)

- 스타지수선물 결제일의 거래개시방법 (부칙 4조 : 2005/10/14 개정, 11/7 시행)
 - 시행일에 4개 결제일을 동시에 거래개시함
 - 2005년 11월 7일에 2005년 12월물, 2006년 3월물·6월물 및 9월물 일괄상장

- 코스닥50 선물 및 옵션의 상장폐지방법 (부칙 2조, 3조, 5조 : 2005/10/14 개정, 11/7 시행)
 - 시행일 이후에는 새로운 결제일을 상장하지 아니함
 - 시행일의 전일 이후 거래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코스닥50선물 또는 코스닥50옵션 결제일의 미결제약정이 없는 날의 익일부터 거래를 하지 아니함(상장폐지)
 - 코스닥50선물 또는 코스닥50옵션 결제일이 마지막으로 상장폐지되는 날의 익일부터 코스닥50선물 및 코스닥50옵션에 관한 규정은 삭제되는 것으로 함(2005/10/14 시행)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의 개정 (부칙 6조 : 2005/10/14 개정, 11/7 시행)
 - 코스닥시장의 프로그램매매호가 효력정지제도(Sidecar)는 스타지수선물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스타지수선물과 코스닥50선물이 중복 상장되는 경우 빈번한 Sidecar 발동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중복상장 기간에도 스타지수선물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Sidecar : 스타지수선물의 전일 거래량 최다 결제월(통상 최근월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대비 6%이상 변동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에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을 5분간 정지하여 주식현물시장에의 충격을 완화하는 제도

15.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주식옵션 기초주권의 재무상태 등의 기준 명시 (70조 : 2005/9/16 개정, 9/26 시행)

— 기초주권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관리종목 제외)으로서 유통주식수(1,000만주 이상), 소액주주수(10,000인 이상), 거래대금(연간 5,000억원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권중 시가총액 및 「재무상태 등」을 감안하여 세칙에서 정하도록 한 바, 「재무상태 등」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기초주권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함

- 선정일(2005. 5. 2) 직전 3개월 추가평균이 1만원(액면가 5,000원 기준) 이상인 주권일 것
- 선정일 직전 5사업년도의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 50%이상인 법인이 발행한 주권이 아닐 것
- 선정일 직전 5사업년도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적정인 법인이 발행한 주권일 것
- 선정일 직전 5사업년도중에 회사정리절차, 화의, 거래은행 또는 채권금융기관이 경영관리 또는 공동관리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권이 아닐 것

— 시가총액이 큰 순서로 23개 기초주권 추가 선정

- 광범위한 투자자에게 정밀도 높은 헤지 및 자산운용의 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주권중에서 시가총액이 큰 순서로 23개 기초주권을 추가로 선정함

* 종래 7개 기초주권은 대부분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가 보유하고 있어 주식옵션거래의 수요진작에 한계가 있었음

Ⅲ. 증권선물거래소 규정

기 존 (7개)	추 가 (23개)
삼성전자, 포스코, SK텔레콤, 한국전력, 국민은행, 케이티, 현대자동차	LG전자, SK, 신한금융지주, 삼성SDI, 케이티앤지, 하나은행, 현대모비스, 기아자동차, LG, 삼성화재, 강원랜드, LG화학, 현대중공업, 한국가스공사, 삼성물산, 삼성전기, GS홀딩스, CJ, 한국타이어, 한진해운, 삼성증권, 대한항공, INI스틸

○ 권리행사가가격의 간격 축소 (72조 1항 3호 : 2005/9/16 개정, 9/26 시행)

- 종래 권리행사가가격간 간격의 최소단위인 100원·250원 및 500원중 250원을 200원으로 축소함으로써 기초주권의 현물가격이 가급적 최고·최저의 권리행사가가격(ATM±4)범위내에서 변동하도록 함

< 주식옵션 행사가격 설정간격 >

행사가가격(S)	기 존		개 선	
	간격(A)	ATM ± 4간격(B)/S	간격(A)	ATM ± 4간격(B)/S
5천원 미만	100원	8.0%~	100원	8.0%~
5천원~1만원 미만	250원	10~20%	200원	8~16%
1만원~2만원 미만	500원	10~20%	500원	10~20%
2만원~5만원 미만	1,250원	10~25%	1천원	8~20%
5만원~10만원 미만	2,500원	10~20%	2천원	8~16%
10만원~20만원 미만	5천원	10~20%	5천원	10~20%
20만원~50만원 미만	12,500원	10~25%	1만원	8~20%
50만원~100만원 미만	2만5천원	10~20%	2만원	8~16%
100만원 이상	5만원	~20%	5만원	~20%

○ 최종거래일 근접시 최근월물의 권리행사가격 특별설정 제한

(77조 : 2005/9/16 개정, 9/26 시행)

— 기초주권의 분할·병합, 유·무상증자 등이 있는 경우, 통상 전후의 주식옵션가치가 일치하도록 행사가격 및 승수를 조정하고 동시에 이와 별도로 표준화된 승수 및 행사가격의 간격으로 행사가격을 특별히 설정

• 동일한 행사가격이 2개 이상이 되는 때에는 한개만 설정함

— 그러나 최근월물의 최종거래일이 속하는 첫영업일부터 최종거래일까지의 기간에 표준 방식으로 행사가격을 특별 설정할 경우 유동성이 분산되고 기 보유 미결제약정의 해소가 곤란하므로 조정만 하고 특별 설정을 하지 않음

• 기초주권의 현물가격변동에 따라 추가 설정할 경우 조정행사가격의 위 또는 아래에 표준방식으로 설정함

○ 기관투자자의 입증 헤지·차익거래의 거래증거금수준 인하

(111조 5항·6항 : 2005/9/16 개정, 9/26 시행)

— 적격기관투자자의 입증 헤지거래 또는 차익거래의 거래증거금을 통상보다(10%) 낮은 수준인 8%로 인하하여 기관투자자의 헤지·차익거래 활성화 및 현·선물간 적정 균형가격 발견기능을 제고함

— 인하 거래증거금의 산출이 용이하도록 기존의 10% 거래증거금액(옵션가격증거금액 + 선물·옵션가격변동증거금액 + 선물스프레드증거금액)의 80%(8/10)와 최소선물·옵션순위험거래증거금 중 큰 금액으로 함

○ 인하 거래증거금 계좌의 거래소 신고 (108조 2항·3항 : 2005/9/16 개정, 9/26 시행)

- 회원이 인하 거래증거금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인하 거래증거금융 헤지 또는 차익거래 계좌와 함께 이와 연계된 주식계좌를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하여 헤지·차익거래의 입증을 용이하게 함
- 회원이 인하된 거래증거금을 예탁하는 때에는 헤지·차익거래의 증빙서류(위탁매매의 경우 증빙서류 사본)를 지체없이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함

○ 차근월종목의 시장가호가 입력허용기간 단축 (80조 1호 : 2005/9/16 개정, 9/26 시행)

- 차근월종목에 대한 시장가호가 및 시장가호가 성격이 있는 호가(조건부지정가호가 및 최유리지정가호가)의 입력허용시점을 종래 최근월종목의 최종거래일이 속하는 월의 첫영업일에서 최종거래일이 속하는 주의 첫영업일로 변경
 - 시장운영결과 최근월종목의 최종거래일이 속하는 월의 초일부터 최종거래일까지의 기간중(9~12일) 초반은 유동성이 극히 낮아 시장가호가의 단점(가격급등락 및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이 종종 발생하나 후반은 어느 정도 유동성이 있어 시장가호가의 장점 발휘 가능(신속한 거래)

○ 거래증거금 구간수치간 간격 단축 (110조 2항 : 2005/9/16 개정, 9/26 시행)

- 위탁증거금과 거래증거금의 구간수치간격을 동일하게 하되, 간격을 1%로 축소하여 증거금 산출의 정확도를 제고함

- 기존에는 거래증거금융 구간수치(11개) 각각의 간격(2% : 거래증거금률 10%×1/5)과 위탁증거금융 구간수치(11개) 각각의 간격(3% : 위탁증거금률 15%×1/5)의 불일치로 선물·옵션간 적절히 조합된 포트폴리오의 경우 거래증거금이 위탁증거금보다 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었음

○ 거래증거금 관련 기초주권군 분류 및 가격상관율 (114조 : 2005/9/16 개정, 9/26 시행)

— 업종별로 위험상쇄를 위한 기초주권군 분류

- 동일업종에 속하는 기초주권은 통상 가격상관성이 높으므로 업종(중분류)을 기준으로 기초주권군을 분류하되, 동일계열사에 속하는 기초주권간에도 높은 가격상관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6개 기초주권군으로 분류함

* 가격상관성이 높은 서로 다른 기초주권옵션의 미결제약정을 반대방향으로 보유할 경우 위험이 상쇄되므로 서로 위험을 상쇄시킬 기초주권군을 선정

중분류업종 등	기초주권군
통신업종군	KT, SK텔레콤
금융업종군	국민은행, 삼성증권, 신한지주
자동차제조업종군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전자제조업종 및 동일계열군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물산, LG전자, LG화학
전기업종군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운송업	대한항공, 한진해운

— 가격상관율 설정

- 동일한 기초주권에 속하는 기초주권간 가격상관율(결정계수 : R^2)은 증거금의 보수적 운영을 위하여 최저율로 함

중분류업종 등	기초주권군	가격상관율
통신업종군	KT, SK텔레콤	30%
금융업종군	국민은행, 삼성증권, 신한지주	30%
자동차제조업종군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25%
전자제조업종 및 동일계열군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물산, LG전자, LG화학	20%
전기업종군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10%
운송업	대한항공, 한진해운	20%

○ 국채선물의 주문가격제한범위 축소 (8조 1항 : 2005/9/16 개정, 9/26 시행)

— 착오매매방지를 위하여 설정한 기존 일부 품목의 주문가격 제한범위가 과대 설정되어 제도의 취지달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축소하여 투자자를 보호

- 3년 국채선물 : $\pm 4.00p \rightarrow \pm 3.00p$
- 5년 국채선물 : $\pm 6.00p \rightarrow \pm 4.50p$

○ 3년 국채선물 협의대량거래의 거래가능수량 등 (16조 ~ 19조 : 2005/9/16 개정, 9/26 시행)

— 3년 국채선물 협의대량거래의 거래가능수량은 500 ~ 3,000계약으로 정하고, 미국달러선물 협의대량거래의 최대거래수량도 동일하게 3,000계약으로 확대 (18조)

— 협의대량거래의 신청방식이 종전의 팩스신청방식에서 전산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협의대량거래의 신청 종료시간을 14시 30분에서 14시 50분으로 20분 연장하여 협의대량거래의 기회를 확대 (16조)

○ 통안증권금리선물과 5년 국채선물의 거래증거금률 인하

(26조 2항 : 2005/9/16 개정, 9/26 시행)

— 통안증권금리선물과 5년 국채선물의 증거금률이 현물시장의 변동성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인하하여 선물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함

• 통안증권금리선물 : 0.3% → 0.2%

• 5년 국채선물 : 1.5% → 1.2%

○ 미결제약정 상계방식의 변경 허용 (4조 3항 : 2005/9/16 개정, 9/26 시행)

— 자동상계방식에서 신청상계방식으로 미결제약정 상계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허용

○ 주식옵션 행사신고 의제금액 인하 (120조 1항 2호 : 2005/9/16 개정, 9/26 시행)

— 종래 회원은 거래금액의 일정률로 위탁수수료를 부과하고 현금결제 주식옵션의 경우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음을 감안하여, 권리행사신고 의제금액을 기존 5,000원에서 5원으로 대폭 인하하여 회원의 업무 부담 경감 및 신고누락에 따른 투자자의 손실을 방지

- 대용증권의 범위 확대 (29조 1항 5호 : 2005/9/16 개정, 9/26 시행)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각각 대용증권으로 지정된 유가증권은 거래증거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별 대용증권의 범위를 일치시키고 보유유가증권의 활용도를 제고함

- 기존 실물인수도방식의 주식옵션에 대한 호가입력 제한
(부칙 3조 : 2005/9/16 개정, 9/26 시행)
 - 실물인수도와 현금결제방식의 주식옵션을 중복상장할 경우, 一物二價, 유동성분산, 주문착오 등 투자자 혼란, 전산시스템의 비효율의 문제가 있으므로 실물인수도방식의 모든 결제월의 최종거래일을 현금결제방식 시행일의 전일로 앞당겨 일괄적으로 상장폐지함
 - 시행일전에 실물인수방식의 주식옵션 호가의 입력시 반대매매 곤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의 불측의 손해방지를 위하여 시행전 일정기간부터 호가입력을 제한함

- 시행일 (부칙 1항 : 2005/11/2 개정, 11/7 시행)
 - 스타지수선물시장 개설관련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7일부터 시행
 - 다만, 코스닥 50 선물과 옵션에 관한 규정은 그 결제월이 마지막으로 상장폐지되는 날의 다음날에 삭제

- 호가가격단위 (86조 2호, 89조 2호 : 2005/11/2 개정, 11/7 시행)
 - 스타지수 선물거래 및 스타지수 선물스프레드거래의 호가가격단위를 각각 코스피200선물(0.05P=25,000원)의 1/5 수준이 되도록 0.50P(5,000원)로 설정함

- 스타지수선물 1계약의 금액($1,000P \times 1\text{만원} = 1,000\text{만원}$)이 코스피200선물 ($100P \times 50\text{만원} = 5,000\text{만원}$)의 1/5 수준임을 고려
- 임의적 거래중단 장애발생 주식종목수 (100조 3항 2호 : 2005/11/2 개정, 11/7 시행)
- 코스닥시장의 장애발생으로 스타지수 구성종목(30종목)의 50%인 15종목 이상이 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 스타지수선물거래를 중단·정지할 수 있도록 함
 - 코스피200선물의 경우 주가지수 구성종목(200종목)의 50%(100종목) 이상에 장애 발생시 거래를 중단·정지할 수 있음을 고려
- 필요적 거래중단 선물가격 급변 기준 (102조 1항 1호 나목, 102조 1항 2호 : 2005/11/2 개정, 11/7 시행)
- 스타지수선물의 선물가격 급변관련 필요적 중단(Circuit Breakers) 기준은 유가증권시장의 Sidecar(5%)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코스피200선물과 같이 6% 이상으로 함
- 계약당 거래증거금액 (111조 2항 2호 : 2005/11/2 개정, 11/7 시행)
- 최소증거금액 산출을 위한 스타지수선물의 계약당 선물거래증거금액은 코스피200선물(5만원)의 1/5인 1만원으로 함
 - 스타지수선물 1계약의 금액($1,000P \times 1\text{만원} = 1,000\text{만원}$)이 코스피200선물($100P \times 50\text{만원} = 5,000\text{만원}$)의 1/5 수준임을 고려

○ 계약당 선물스프레드 거래증거금액 (111조 3항 2호 : 2005/11/2 개정, 11/7 시행)

— 스타지수선물의 계약당 선물스프레드 거래증거금액은 코스닥시장의 상관계수(0.283)를 고려하여 코스피200선물(100만원)의 1/2 수준인 50만원으로 함

- 선물거래의 순위험 거래증거금은 대상지수가 10% 변동할 경우 근월물과 원월물 모두 동일한 위험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나 실제 시장에서는 근월물과 원월물의 가격변동폭이 다르므로 선물스프레드 증거금제도를 두고 있음

< 스타지수선물과 코스피200선물의 비교 >

구 분	스타지수선물	코스피200선물
호가가격단위	0.50P	0.05P
임의중단기준 주식시장 장애 종목수	15종목 이상	100종목 이상
Circuit Breakers 발동 선물가격 급변 기준	6% 이상	5% 이상
계약당 거래증거금액	1만원	5만원
계약당 선물스프레드 거래증거금액	50만원	100만원

○ 거래증거금 (110조, 111조 : 2005/11/2 개정, 11/7 시행)

— 거래증거금은 주가지수선물·옵션(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옵션 및 스타지수선물)에 관한 거래증거금과 주식옵션에 관한 거래증거금을 별도로 산출한 후 합산한 금액으로 함

- 주가지수상품에 관한 거래증거금은 원칙적으로 옵션에 관한 가격증거금, 선물에 관한 스프레드증거금, 선물과 옵션에 공통적인 가격변동증거금의 합계로 함
 - 가격변동증거금의 산출을 위한 스타지수선물의 거래증거금구간수치는 코스피200과 동일하게 최종스타지수, 최종스타지수의 1% 간격으로 최종스타지수에 순차적으로 더한 10개 및 최종스타지수에서 순차적으로 뺀 10개의 총 21개로 함
- 시스템장애로 인한 거래시간의 변경 (69조 : 2005/11/2 개정, 11/7 시행)
- 거래소시스템에 10분 이상 장애가 발생하거나 약정수량을 기준으로 75% 이상 회원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 거래소는 거래시간을 변경할 수 있음
- 차익거래 및 헤지거래의 정의 (79조 : 2005/11/2 개정, 11/7 시행)
- 주가지수차익거래
 - 스타지수와 연동되는 주식집단의 가격과 스타지수선물의 가격과의 차를 이용한 이익목적의 연계거래
 - 주가지수헤지거래
 - 스타지수와 연동되는 주식집단의 가격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실의 회피·경감을 위한 스타지수선물의 매도 또는 매수

- 스프레드거래 호가의 입력제한 (80조 5호 : 2005/11/2 개정, 11/7 시행)
 - 최근월물과 원월물을 동시에 매도·매수하는 선물스프레드거래의 성질상 스타지수선물 최근월물의 거래시간 종료후(14:50~15:15)에는 스프레드거래호가의 입력을 제한함

- 스타지수 선물거래의 기준가격 (84조 : 2005/11/2 개정, 11/7 시행)
 - 각 결제월별 거래개시일에는 전일 스타지수의 종가지수 등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선물이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함
 - 거래개시일 익일부터 최초의 거래성립일까지는 전일의 기세 또는 전일의 기준가격, 최초의 거래성립일 익일 이후에는 전일의 정산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함

- 선물가격 급변기준(6%)을 제외한 Circuit Breakers 기준
(102조 : 2005/11/2 개정, 11/7 시행)
 - 코스닥시장의 단일가호가시간 종료후 5분 이후부터, 선물가격이 1분이상 지속하여 기준가격보다 6% 이상 높고(낮고) 현재의 스타지수를 기준으로 산출되는 중단이론가격보다 3% 이상 높은(낮은) 경우에는 스타지수선물거래를 5분간 중단함
 - 코스닥지수의 10% 이상 하락으로 코스닥시장 모든 종목의 거래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스타지수선물거래를 20분간 중단함
 - 거래종료가 임박한 14시 20분 이후 또는 선물가격 급변으로 스타지수 선물을 중단한 이후 다시 선물가격 급변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타지수선물거래를 중단하지 않음

○ 하나은행과 관련된 기초주권의 변경 (별표7의2 : 2005/12/16 개정, 12/19 시행)

- 기초주권에서 하나은행을 제외하고 하나금융지주를 기초주권에 추가함
 - 주식옵션거래의 대상인 기초주권(30개)에서 하나은행의 주권을 제외하고 하나금융지주의 주권을 기초주권으로 선정함

○ 기초주권 선정기준 정비 (70조 7항 : 2005/12/16 개정, 12/19 시행)

- 합병·분할·지주회사의 설립 등으로 재상장·신규상장되는 회사의 재무상태 등 실질적 기준이 종전회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산출기간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기초주권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기존 기초주권의 발행회사가 지주회사의 설립, 합병 등으로 신규상장·재상장되는 경우 재무상태 등이 선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산출기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실질적 기업내용과 무관하게 기초주권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였음

16.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 사후위탁증거금의 적용품목 확대 (28조 5항 : 2005/7/22 개정, 10/31일 이내에 세칙이 정하는 날 시행)

- 국채선물 등 모든 품목에 사후위탁증거금을 허용하여 품목간 제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기관투자자의 선물시장 참여도를 제고함

- 적격기관투자자의 모든 거래유형에 사후위탁증거금 적용 (28조 5항, 54조 2항·4항 : 2005/7/22 개정, 10/31일 이내에 세칙이 정하는 날 시행)
 - 적격기관투자자의 모든 거래(헤지·차익·투기거래)에 대하여 사후위탁증거금을 적용함으로써 헤지·차익거래 증빙이 불필요하게 되어 활발한 이용을 기대

- 증빙된 헤지·차익거래의 경우 위탁증거금 차등징수 (54조 2항·4항 : 2005/7/22 개정, 10/31일 이내에 세칙이 정하는 날 시행)
 - 증빙된 헤지·차익거래에 대해서는 투기거래(15%)보다 낮은 수준(12%)의 위탁증거금을 예탁하도록 함
 - 금융기회비용의 축소, 헤지·차익거래를 통한 현물시장의 유동성 제고 및 현·선물가격간의 적정한 균형 유지

- 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시한 단축 (2005/7/22 개정, 10/31일 이내에 세칙이 정하는 날 시행)
 - 사후위탁증거금 예탁시한인 익일 12시를 거래종료후 당일중 회원이 정하는 시한으로 단축하여 결제의 안정성 제고 (28조 5항, 54조 2항)
 - 사후위탁증거금은 거래가 성립한 날에 적용하므로 추가증거금(마진콜)은 거래가 없는 날에 한하여 적용 (32조 1항, 56조 1항)
 -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추가 위탁증거금 미납시와 동일하게 미결제약정의 반대매매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34조 1항, 57조 1항)

- 사후위탁증거금 미납자에 대한 수탁거부 근거마련 (16조 1항 2호 :
2005/7/22 개정, 10/31일 이내에 세칙이 정하는 날 시행)
—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지 않은 적격기관투자자가 주문할 경우 수탁
을 거부하도록 하여 결제의 안정성을 제고

- 대용증권 범위에서 투자유의종목 제외 (18조 1항 1호 다목·라목 :
2005/7/22 개정, 10/31일 이내에 세칙이 정하는 날 시행)
— 코스닥시장의 투자유의종목 등을 대용증권에서 제외하여 유가증권시
장 및 코스닥시장의 대용증권 범위와 균형을 도모하고 결제의 안정성
을 제고함

- 협의대량거래 신청시 위탁증거금 면제 (28조 4항 : 2005/7/22 개정,
10/31일 내에 세칙이 정하는 날 시행)
— 포지션의 이월목적으로 행하는 협의대량거래는 기존 결제월분에 대하
여 예탁한 위탁증거금이 타 결제월분으로 충당·대체되는 것에 불과
하고 순위험이 증가하지 않으므로 신청시에 위탁증거금을 면제함으로
써 거래불편을 해소하여 이용도를 제고

- 회원의 고객 미결제약정 반대매매시 주문유형을 세칙으로 이관 (34조 2항,
49조 1항·2항 : 2005/7/22 개정, 10/31일 이내에 세칙이 정하는 날 시행)
— 고객이 위탁증거금 및 결제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고객의 미결제
약정 해소를 위한 (반대매매) 주문의 유형을, 3년 국채선물 등은 수탁
계약준칙에서, KOSPI 200 선물 등은 동 시행세칙(52조)에서 정하므로,
소관규정을 시행세칙으로 단일화

- 주식옵션의 현금결제에 따른 불필요한 제도 폐지 (66조 2항·3항, 68조, 69조 : 2005/7/22 개정, 10/31일 이내에 세척이 정하는 날 시행)
 - 손실발생시 권리행사 허용 및 이익발생시 권리행사 포기제도를 폐지
 - 실물인수방식의 경우 권리행사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의결권 등을 위해 권리행사를 할 수 있고,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주가변동으로 주권수령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나, 현금결제시에는 이를 인정할 실익이 없음
 - 권리행사시 주권과 그 대가인 권리행사대금의 수수제도를 폐지
 - 권리행사로 수령할 기초주권의 결제시한전 매도제도를 폐지

- 스타지수선물거래 수탁제도 : 한국주가지수200 선물과 동일
(2005/10/14 개정, 11/7 시행)

항 목	주 요 내 용
계좌개설등	· 한국주가지수200선물· 옵션과 통합계좌 사용
기본예탁금	· 1,500만원 이상에서 회원이 정하는 금액
위탁증거금	· 사전위탁증거금(주문시 징수하는 위탁증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격기관투자자 이외의 투자자에 적용 · 사후위탁증거금(거래종료후 징수하는 위탁증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제이행능력이 충분하다고 회원이 인정하는 적격기관투자자에 적용 · 미결제약정에 대한 위탁증거금은 순위험 기준으로 산출하되, 양지수의 가격상관성을 감안하여 KOSPI 200 선물 위탁증거금과 상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위탁증거금은 T+1, 12시까지 예탁
미결제약정 보유한도	· 순미결제약정 5,000계약(투기포지션 기준)

○ 코스닥50선물 및 옵션 관련조항 폐지 (부칙 2항 : 2005/10/14 개정, 10/14 시행)

- 선물시장 업무규정 개정 부칙 제5조에 의한 결제월이 마지막으로 상장폐지되는 날의 익일에 코스닥50선물 및 옵션에 관한 규정은 삭제되는 것으로 함

○ 시행일 (부칙 1항 : 2005/11/2 개정, 11/7 시행)

- 스타지수선물시장 개설관련 개정규정 등은 2005년 11월 7일부터 시행
 - 코스닥 50 선물과 옵션에 관한 규정은 그 결제월이 마지막으로 상장폐지되는 날의 다음날에 삭제
 - 위탁증거금 충당시의 예탁현금에 전일 대응증권 매도대금을 반영하는 개정규정은 회원의 시스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05년 11월 30일 이내에서 회원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

○ 계약당 선물스프레드 위탁증거금액 등 (36조 2항 2호, 37조 3항 2호, 48조 2항 2호 : 2005/11/2 개정, 11/7 시행)

- 스프레드거래의 주문시에 예탁하는 계약당 선물스프레드 위탁증거금액과 선물스프레드 포지션에 대한 계약당 체결선물스프레드 위탁증거금액은 계약당 선물스프레드 거래증거금액과 동일하게 코스피200선물(150만원)의 1/2 수준인 75만원으로 함
- 계약당 선물스프레드 유지위탁증거금액의 최저금액도 동일한 방법으로 코스피200선물(100만원)의 1/2 수준인 50만원으로 함

○ 계약당 위탁증거금액 (37조 2항 2호 : 2005/11/2 개정, 11/7 시행)

- 최소증거금액 산출을 위한 스타지수선물의 계약당 선물순위험 위탁증거금액은 코스피200선물(5만원)의 1/5인 1만원으로 함
- 스타지수선물 1계약의 금액(1,000P×1만원=1,000만원)이 코스피200선물(100P×50만원=5,000만원)의 1/5 수준임을 고려

< 스타지수선물과 코스피200선물의 비교 >

구 분	스타지수선물	코스피200선물
계약당 선물스프레드 위탁증거금액	75만원	150만원
계약당 체결선물스프레드 위탁증거금액	75만원	150만원
계약당 체결선물스프레드 유지위탁증거금의 최저금액	50만원	100만원
계약당 위탁증거금액	1만원	5만원

○ 위탁증거금 (32조 2항 2호, 37조 1항, 48조 4항 2호 : 2005/11/2 개정, 11/7 시행)

- 위탁증거금은 주가지수선물·옵션(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옵션 및 스타지수선물)에 관한 위탁증거금과 주식옵션에 관한 위탁증거금을 별도로 산출한 후 합산한 금액으로 함
- 가격변동증거금의 산출을 위한 스타지수선물의 위탁증거금구간수치는 코스피200과 동일한 방법으로 전일의 최종스타지수, 전일 최종스타지수의 1% 간격으로 전일 최종스타지수에 순차적으로 더한 15개(이상) 및 전일 최종스타지수에서 순차적으로 뺀 15개(이상)의 총 31개(이상)로 함

- 유지증거금 산출을 위한 스타지수선물의 유지위탁증거금구간수치는 코스피200과 동일한 방법으로 전일의 최종스타지수, 전일 최종스타지수의 1% 간격으로 전일 최종스타지수에 순차적으로 더한 10개(이상) 및 전일 최종스타지수에서 순차적으로 뺀 10개(이상)의 총 21개(이상)로 함

17. 선물시장 수탁계약준칙 시행세칙

- 위탁자파악사항에 적격기관투자자 인정여부 등 추가 (4조 1항 6호·7호 : 2005/9/16 개정, 9/26 시행)
 - 선물·옵션계좌개설시 회원이 파악하는 위탁자관련사항(know your customers rule)에 적격기관투자자의 인정여부, KOSPI 200선물·KOSPI 200 옵션 및 주식옵션의 위탁증거금 할인계좌 등 계좌구분을 추가

위탁증거금 계좌 구분	계좌의 성격
사전계좌	모든 유형의 거래 주문시 15% 위탁증거금이 적용되는 선물·옵션계좌
사후 일반계좌	적격기관투자자의 모든 유형의 거래에 대해 15% 위탁증거금을 사후에 징수하는 선물·옵션계좌
사후 할인계좌	적격기관투자자의 입증 헤지·차익거래에 대해 12% 위탁증거금을 사후에 징수하는 선물·옵션계좌

○ KOSPI 200 선물 등의 사후계좌 신고 (4조 2항 : 2005/9/16 개정, 9/26 시행)

— KOSPI 200 선물·KOSPI 200 옵션 및 주식옵션의 경우 계좌의 구분에 따라 거래증거금 수준이 상이하므로 회원은 적격기관투자자의 사후위탁증거금계좌를 설정·변경 또는 해지하는 때에는 사전에 그 사실을 거래소에 신고

- 사후일반계좌 및 사후할인계좌의 헤지거래 또는 차익거래와 연계된 주권계좌도 함께 신고

○ KOSPI 200 선물 등의 수탁거부사유에 사후위탁증거금 관련사항 추가

(7조 2항 : 2005/9/16 개정, 9/26 시행)

— 회원의 수탁거부사유에 사전계좌, 사후일반계좌 및 사후할인계좌 등 계좌구분에 부합하지 않는 위탁을 받는 경우를 추가함

— 사후할인계좌(12% 수준)의 경우 차익·헤지거래의 증빙을 하지 않고 또한 15% 수준의 위탁증거금도 예탁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빙을 하거나 15% 수준의 증거금을 예탁할 때까지 회원은 수탁을 거부하도록 함

○ 적격기관투자자의 범위 확대 (21조의2 : 2005/9/16 개정, 9/26 시행)

— 사후위탁증거금 적용을 받는 적격기관투자자의 범위를 선물업감독규정상의 범위까지 확대하되, 거래수요 및 결제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자산유동화회사·투자자문회사·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제외하고, 선물업자·우체국예금자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운용자·간접투자자산운용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적격기관투자자의 범위에 추가함

- 상호저축은행, 기금의 관리·운용법인 및 공제사업법인에 적용되는 자산규모 또는 자산운용규모 1,000억원 이상의 요건은 이들 적격기관투자자에 대한 헤지·차익거래의 과도한 제한, 여타 기관투자자와의 형평성 및 사후증거금 적용여부는 최종적으로 회원이 고객의 결제이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점을 감안하여 그 요건을 삭제함

○ 국채선물 등의 사후위탁증거금액 (21조의3 : 2005/9/16 개정, 9/26 시행)

- 국채선물 등의 사후위탁증거금은 신규거래(각 종목의 순미결제약정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가 성립된 적격기관투자자에 한하여 적용함

- 거래가 전혀 없거나 각 종목의 순미결제약정수량을 감소시키는 거래만 한 경우에는 사후위탁증거금이 적용되지 않고 추가증거금제도가 적용

- 사후위탁증거금은 당일(장종료후)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이 경우 증거금기준가격은 해당 거래일의 증거금기준가격을 적용

- 사후위탁증거금을 적용받는 계좌의 경우에도 장중에는 사전증거금을 적용하는 경우와 동일한 기준으로 인출을 제한하며, 인출가능금액은 사전증거금을 적용하는 경우와 동일

- * KOSPI 200선물·옵션과 달리 차익·헤지거래에 대한 증거금률 차등은 적용되지 않으며, 차익·헤지거래의 증빙도 불필요

○ KOSPI 200 선물 등의 사후위탁증거금액 (37조의2 : 2005/9/16 개정, 9/26 시행)

- 사후위탁증거금은 신규거래(각 종목의 매도·매수별 미결제약정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가 성립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거래가 전혀 없거나 반대매매(각 종목의 매도·매수별 미결제약정 수량을 감소시키는 거래)만 한 경우에는 사후위탁증거금이 적용되지 않고 추가증거금제도가 적용
 - 15% 수준의 사후위탁증거금은 당일(장종료후)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적격기관투자자의 헤지·차익·투기거래 등 모든 유형의 거래에 적용하여 헤지·차익거래의 증빙 곤란 등에 따른 이용도 저조 현상을 해소
 - 증빙된 차익·헤지거래에 대하여는 낮은 수준의 사후위탁증거금(12%)을 적용함으로써 거래비용 축소를 통한 헤지·차익거래의 활성화 및 현·선물간 적정 균형가격 발견 기능을 제고
 - 12% 적용 사후위탁증거금은 산출이 용이하도록 기존의 15% 적용 위탁증거금액(옵션가격증거금액 + 선물·옵션가격변동증거금액 + 선물스프레드증거금액)의 80%(12/15)와 최소선물·옵션위탁증거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함
- 위탁증거금 할인적용 차익·헤지거래요건 등 (38조 2항 : 2005/9/16 개정, 9/26 시행)
- 위탁증거금할인의 차익거래는 현·선물간 적정한 균형가격발견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현·선물간 가격피리기준 및 동시 발주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로 한정
 - 매수차익거래(선물매도와 현물매수)의 경우 직전의 선물가격이 현물가격보다 높고, 매도차익거래(선물매수와 현물매도)의 경우 직전의 선물가격이 현물가격보다 낮을 것
 - 연계되는 현물과 선물의 주문이 동시(시간적 근접성이 가까운 것 포함)에 제출될 것

- 합성선물의 경우 기초자산·결제월·행사가격이 각각 동일한 옵션의 매도와 매수를 합성한 선물로 한정함
- 위탁증거금할인의 헤지거래는 매도헤지거래(현물매수와 선물매도)로 한정하여 증빙을 용이하게 함

○ KOSPI 200 선물 등의 차익·헤지거래의 증빙 (38조 4항·5항 : 2005/9/16 개정, 9/26 시행)

- 회원은 위탁증거금할인적용 차익거래 또는 헤지거래의 증빙서류를 당일중 회원이 정하는 시간까지 제출받아 확인·보관하고 그 사본을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함
 - 거래소 및 회원은 증빙이 부실한 때에는 증빙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회원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보완하지 않는 경우 포함)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15% 적용 위탁증거금의 예탁 요구
 - 미결제약정의 반대매매 또는 대용증권의 매도
 - 장종료후의 경우 고객에 대해 사후할인계좌를 사후일반계좌 또는 사전계좌로의 변경 요구, 미결제약정의 사후일반계좌 또는 사전계좌로의 이관 요구

○ KOSPI 200 선물 등의 사후현금위탁증거금액 (45조의2 : 2005/9/16 개정, 9/26 시행)

- 사후현금위탁증거금은 신규거래(각 종목의 매도·매수별 미결제약정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가 성립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거래가 전혀 없거나 반대매매(각 종목의 매도·매수별 미결제약정 수량을 감소시키는 거래)만 한 경우에는 사후현금위탁증거금이 적용되지 않고 추가현금증거금제도가 적용
 - 5% 사후현금위탁증거금은 당일(장종료후)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적격 기관투자자의 헤지·차익·투기거래 등 모든 유형의 거래에 적용
 - 증빙된 차익·헤지거래에 대하여는 낮은 수준의 사후현금위탁증거금(4%)을 적용
 - 다만, 산출이 용이하도록 기존의 5% 적용 사후현금위탁증거금액(옵션가격증거금액 + 선물·옵션가격변동증거금액 + 선물스프레드증거금액)의 80%(4/5)와 최소선물·옵션위탁증거금액중 큰 금액으로 함
- KOSPI 200 선물 등의 장중 사후위탁증거금 지급·충당시 사전증거금액 산출방식 적용 (45조의2 : 2005/9/16 개정, 9/26 시행)
- 장중에 사후일반증거금은 사전계좌와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하고 사전 할인증거금의 경우 주문분증거금 및 미결제약정분 증거금은 각각 할 인하되, 당일옵션순매수금액은 전액 반영함
- 통안증권금리선물과 5년 국채선물의 위탁증거금률, 계약당 주문증거금 인하 및 유지증거금률의 인하 (19조 1항, 20조 1항, 22조 1항 : 2005/9/16 개정, 9/26 시행)
- 통안증권금리선물과 5년 국채선물의 증거금률이 현물시장의 변동성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인하하여 선물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함

품 목	위탁증거금률	계약당 주문증거금	유지증거금률
통안증권금리선물	0.45% → 0.3%	100만원 → 70만원	0.3% → 0.2%
5년국채선물	2.25% → 1.8%	280만원 → 230만원	1.5% → 1.2%

○ 롤오버거래에 대한 주문증거금의 면제요건 완화 (21조 : 2005/9/16 개정, 9/26 시행)

— 롤오버 목적의 정형복합주문에 대한 사전증거금 면제요건을 전 품목 및 전 기간으로 확대하고, 동일 목적의 협의대량거래의 신청에 대해서도 사전증거금 면제요건을 마련함

○ 기본예탁금 예탁(유예)제도 정비 (31조 2항 : 2005/9/16 개정, 9/26 시행)

— 미결제약정의 전량해소후 익일 12시전에는 선물·옵션기본예탁금의 납부없이도 주문이 허용되고 만약 1계약도 체결되지 않고 익일 12시가 경과된 때에도 예탁의무가 없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익일 12시 후에는 기본예탁금을 예탁하거나 제출된 주문 전부를 취소하도록 함

* 기본예탁금은 미결제약정이 없는 위탁자가 주문시에 예탁하여야 하나 미결제약정 전량 반대매매후에는 익일 12시까지 기본예탁금 예탁없이도 주문 허용

○ 위탁증거금구간수치의 간격 및 수 변경 (32조 2항, 48조 4항 : 2005/9/16 개정, 9/26 시행)

— 위탁증거금과 유지증거금의 구간수치간격을 동일하게 하되, 간격을 1%로 축소하여 증거금 산출의 정확도를 제고함

• 종래의 경우 위탁증거금용 구간수치(11개) 각각의 간격(3% : 위탁증거금률 15%×1/5)과 유지증거금용 구간수치(11개) 각각의 간격(2% : 유지위탁증거금률 10%×1/5)의 불일치로 선물·옵션간 적절히 조합된 포트폴리오의 경우 유지증거금이 위탁증거금보다 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었음

○ 위탁증거금 관련 기초주권군 분류 및 가격상관율 (2005/9/16 개정, 9/26 시행)

- 업종별로 위험상쇄를 위한 기초주권군 분류
- 동일업종에 속하는 기초주권은 통상 가격상관성이 높으므로 업종(중분류)을 기준으로 기초주권군을 분류하되, 동일계열사에 속하는 기초주권간에도 높은 가격상관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6개 기초주권군으로 분류함

* 가격상관성이 높은 서로 다른 기초주권옵션의 미결제약정을 반대방향으로 보유할 경우 위험이 상쇄되므로 서로 위험을 상쇄시킬 기초주권군을 선정

중분류업종 등	기초주권군
통신업종군	KT, SK텔레콤
금융업종군	국민은행, 삼성증권, 신한지주
자동차제조업종군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전자제조업종 및 동일계열군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물산, LG전자, LG화학
전기업종군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운송업	대한항공, 한진해운

— 가격상관율 설정

- 동일한 기초주권에 속하는 기초주권간 가격상관율(결정계수 : R^2)은 증거금의 보수적 운영을 위하여 최저율로 함

중분류업종등	기초주권군	가격상관율
통신업종군	KT, SK텔레콤	30%
금융업종군	국민은행, 삼성증권, 신한지주	30%
자동차제조업종군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25%
전자제조업종 및 동일계열군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물산, LG전자, LG화학	20%
전기업종군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10%
운송업	대한항공, 한진해운	20%

○ 옵션매수 미결제약정만 보유한 경우의 기본예탁금 인출제도 개선

(47조 2항 2호·3항 : 2005/9/16 개정, 9/26 시행)

- 종래의 경우 옵션의 매수미결제약정보유자가 최저호가가격(KOSPI 200 옵션 : 0.01P, 주식옵션 : 10원)으로 전량 매도주문한 경우에는 익일 12시 이전에 기본예탁금을 인출할 수 있었음
- 그러나 최저호가한도가격이 최저호가가격단위보다 높은 경우에는 사실상 기본예탁금 인출이 곤란하므로 이 경우에는 최저호가한도가격으로 전량 매도주문한 때에는 인출을 허용하도록 하여 투자자의 편의를 도모함

○ 회원의 반대매매시 호가가격의 합리화 (49조의2 : 2005/9/16 개정, 9/26 시행)

- 회원이 결제·추가증거금(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을 불이행한 위탁자의 미결제약정을 접속매매로 반대매매할 경우 상대호가를 기준으로 호가잔량의 유무와 관계없이 최우선호가를 포함하는 연속 10개 가격범위내의 지정가격으로 하여 상대호가유인에 의한 가격연속성 도모 및 고객의 불측의 손실을 방지함
 - 다만 고객의 동의가 있거나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장가호가를 허용하여 반대매매의 신속성을 도모함
 - * 종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시장가호가이어야 하며 시장가호가가 허용되지 않는 종목의 경우 5개 우선호가의 가격 이내로 함

18. 선물시장 업무규정 위임사항 결정에 관한 기준

○ 미국달러선물의 정산가격 결정시 회원제시가격 감안 (2-가 : 2005/6/17 개정, 9/1 시행)

— 거래시간 종료전 1분간 거래체결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업무규정 59조 3항·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정산가격으로 함

- 예외적으로 그 정산가격이 미국달러의 현물환거래에서 형성되는 최종환율에 회원이 제시한 가격을 가산한 가격중에서 상하 각 2개의 가격을 제외한 가격의 평균가격(회원제시가격)보다 0.3원 이상 크거나 작은 경우에는 회원제시가격을 정산가격으로 함
- 회원이 제시하는 가격은 종목별로 적정한 정산가격으로 인정되는 가격에서 최종환율을 차감한 가격으로 함

19. 시장감시규정

○ 회원의 금지행위 및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 금지사항 신설

(3조, 4조 : 2005/1/21 제정, 1/27 시행)

— 회원의 신의성실의무 및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의 금지 등을 행위유형에 따라 금지행위 및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금지로 구분하고, 연계거래와 관련한 금지행위를 신설

○ 불공정거래 예방활동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회원의 보고사항 추가

(7조 3항·4항 : 2005/1/21 제정, 1/27 시행)

- 회원의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고 고객과의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일임매매·일임선물거래 보고의무 및 고객관련 분쟁·민원정보의 보고의무 신설

○ 공정한 심리 또는 감리를 위한 감리요원의 회피의무 신설

(9조 : 2005/1/21 제정, 1/27 시행)

- 감리요원의 심리 또는 감리의 회피의무를 신설하여 심리 또는 감리업무의 공정성 제고

○ 연계감시·연계거래의 개념정의 및 구분 (2조, 18조, 19조 : 2005/1/21 제정, 1/27 시행)

— 연계감시

- 연계거래와 관련한 시장감시, 심리 및 감리로 연계시장 감시, 연계심리 및 연계감리로 구분

— 연계거래

- 유가증권의 종목, 선물거래의 종목 또는 옵션거래의 종목 중 가격연동성이 있는 2개 이상의 종목을 연계하여 행하는 거래로 정의

- 연계감시의 방법 등에 관하여 시장감시, 심리 및 감리 관련규정을 준용

- 회원의 징계사유 및 징계종류 추가 (21조 5호, 22조 1항 1호·2호 : 2005/1/21 제정, 1/27 시행)
 - 회원의 징계사유에 자료제출 등 요청의 거부를 추가하고, 제명·회원 자격정지 등의 징계와 회원제재금의 하한 규정 신설

- 약식제재금 부과제도 신설 (28조 : 2005/1/21 제정, 1/27 시행)
 - 보고의무 위반 등 경미한 위규행위로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약식제재금을 부과하여 회원의 징계부담을 완화하고 규정준수를 촉진

20. 시장감시

- 분쟁조정대상의 확대 (2조 1항, 3조 : 2005/1/21 제정, 1/27 시행)
 - 선물거래와 관련된 분쟁조정이 통합거래소의 업무로 규정됨에 따라, 분쟁조정대상을 선물거래와 관련된 분쟁으로 확대

- 분쟁조정신청인의 편의도모 (4조 2항·5항, 9조 1항 : 2005/1/21 제정, 1/27 시행)
 - 구술에 의한 분쟁조정신청도 허용
 - 거래소 직원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조서의 작성
 - 종결처리사유 중 분쟁발생 후 3년 경과규정을 삭제

- 위탁자 보호를 위해 위원회 회부 전 종결처리사유 중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를 삭제

○ 피신청인의 조정신청에 대한 의견서 제출 허용 (7조 2항 : 2005/1/21 제정, 1/27 시행)

— 피신청인이 적극적으로 의견서와 관련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피신청인에게 방어권 부여

- 기존에는 거래소가 피신청인에게 의견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5조 2항·5항, 18조 4항 : 2005/1/21 제정, 1/27 시행)

— 위원장의 대표자 선정 요구권 신설

- 동일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다수의 신청인에게 대표자 선정을 요구할 수 있음
-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대표자 외의 다른 신청인에 대하여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위원회 계류중인 분쟁조정사건에 대한 위원장의 종결처리

- 일정한 분쟁조정사안에 대하여는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위원장이 직접 종결처리 가능
 - * 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에 취하서가 제출된 경우
 - * 법원에 제소된 경우
 - * 법원에 민사조정 신청 또는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 분쟁종결처리를 위한 거래소에의 통지의무 신설 (9조 2항 : 2005/1/21
제정, 1/27 시행)

- 분쟁조정 신청 후 법원에 제소하거나 법원에 민사조정 등을 신청한
당사자는 지체없이 거래소에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

- 회원사의 조정안 수락을 제고를 위한 보고의무 및 소송지원제도 도입

(19조 5항, 22조 : 2005/1/21 제정, 1/27 시행)

- 회원인 당사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지 않은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 피신청인인 회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조정결정 수락을 거부하여 조정
이 성립하지 않은 사건으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신청인의 신
청으로 신청인의 소송행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1. 분쟁조정규정 시행세칙

- 분쟁조정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의 결격사유 명시 및 연임근거 마련

(11조 2항·3항 : 2005/3/24 개정·시행)

- 금감위 등 감독기관의 문책경고 또는 감봉 이상의 조치 등을 심의위
원 결격사유로 명시

- 심의위원이 연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초대 심의위원의 임기에 대한 특례 (부칙 2항 : 2005/3/24 개정 · 시행)
 - 분쟁조정 심의위원회의 연속성을 위해, 초대 심의위원의 임기를 1/2은 2년, 1/2은 1년으로 함

22. 회원관리규정

- 거래소의 '주식회사' 전환에 따른 규정 정비 (2005/1/21 제정, 1/27 시행)
 - 회원의 출자 · 지분, 회원총회, 회원의결권 등 회원제에 고유한 규정을 삭제
 - 회원의 가입 · 탈퇴 및 전환에 관한 승인권자, 회원의 제명 · 자격정지의 징계권자를 회원총회에서 이사회로 변경
- 거래소 통합에 따른 회원 재분류 및 회원지위 승계

(3조, 부칙 2조 : 2005/ 1/21 제정, 1/27 시행)

 - 회원의 재분류
 - 회원이 참가하는 시장종류에 따라 증권거래회원과 선물거래회원으로 구분
 - 증권거래회원과 선물거래회원을 각각 거래소에 대한 결제이행책임의 부담여부에 따라 결제회원과 거래전문회원으로 재분류
 - 회원지위의 승계
 - 거래소 통합전 각 시장의 회원은 별도의 회원가입절차 없이 동일한 성격의 통합거래소의 회원으로 그 지위가 승계됨

○ 증권거래회원·선물거래회원 자격의 개방 (4조 : 2005/1/21 제정, 1/27 시행)

— 증권거래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증권거래법 28조 2항 1호 또는 2호의 증권업 허가를 받은 법인으로 함

- 기존 증권거래소에서는 증권업경영업자는 회원이 아닌 '특별참가자' 지위를 가졌으나, 통합거래소에서는 모두 회원의 지위를 갖게 됨

— 선물거래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선물거래법 37조에 의하여 선물업 허가를 받은 법인으로 함

○ 회원가입사항의 일부 보완 및 거래소간 상이한 내용 통일

(5조~9조 : 2005/1/21 제정, 1/27 시행)

— 회원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증권업 또는 선물업 허가를 받은 자 외에, 예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신청한 자로 확대

- 증권업 또는 선물업 허가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도 거래소와 회원 가입절차를 사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업무편의를 도모

— 회원가입의 승인시에 일정조건을 부과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함

- 승인시점에서 일부 미비사항이 있더라도, 업무개시 시점까지 보완이 가능한 경우, 이를 조건으로 회원가입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여 회원가입 승인절차의 효율성 도모

— 회원의 임의탈퇴후 3년 이내에는 회원가입을 제한

- 가입비 등 회원가입에 따른 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동일인의 잦은 회원가입 및 탈퇴의 반복을 방지

— 회원가입과 관련하여 거래소간 상이한 내용을 일치시킴

- 회원가입요건을 규정으로 명시하고, 회원가입시에 일정한 재무요건의 충족을 회원가입요건의 하나로 명시

○ 주식회사로의 전환에 따라 회원가입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8조 : 2005/1/21 제정, 1/27 시행)

— 회원제하에서의 출자의무를 삭제

- 증권거래소 : 정회원은 약 363억원의 출자의무 부담
- 선물거래소 : 정회원은 약 30억원, 준회원은 5억원의 출자의무 부담

— 가입비를 이사회결의로 정하되, 회원 지위가 시장참가자 지위로 변경됨에 따라 대폭 완화됨

— ‘연회비’ 제도를 삭제하여 회원가입후 거래에 따른 수수료 외의 부담요인을 제거함

○ 합병으로 인한 회원탈퇴시 회원지위의 승계에 관한 근거 명시

(13조 : 2005/1/21 제정, 1/27 시행)

— 합병으로 탈퇴하는 회원지위를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이 거래소의 승인을 얻어 승계할 수 있도록 함

- 이 경우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이 회원이 아닌 경우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간주

○ 회원전환 관련사항의 보완 및 거래소간 상이한 내용 일치

(16조~19조 : 2005/1/21 제정, 1/27 시행)

— 회원전환의 심사에 관한 내용을 회원가입의 경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회원전환의 승인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기존의 증권거래소의 경우 거래전문회원에서 결제회원으로의 전환만 허용했으나, 통합거래소에서는 반대방향의 회원전환도 허용

○ 공동기금의 이원화 (23조 : 2005/1/21 제정, 1/27 시행)

— 공동기금을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에 대한 공동기금과 선물시장에 대한 공동기금 등 2개의 공동기금으로 구분하여 적립

- 코스닥시장 결제안정기금은 유가증권시장 공동기금으로 통합(증권거래법 부칙 2조 1항)

○ 공동기금의 적립방법을 위험기준방식으로 변경 (24조 : 2005/1/21 제정, 1/27 시행)

— 분기마다 현재의 회원의 거래규모나 위험수준을 반영하여 공동기금의 적립액을 재산정하여, 직전분기말 현재 적립액과의 차액을 수수하는 방식으로 공동기금 적립방법을 개선

- 현행 총 적립규모가 약 2,000억원 정도임을 감안하여, 각 공동기금의 적립규모를 각각 1,000억원으로 설정

— 회원별 적립액은 기본적립금과 변동적립금의 합계액으로 함

- 결제회원으로서 최소한의 공동기금 부담을 의무화하기 위해 회원간에 차등없는 일정 균등액의 기본적립금을 설정

- 변동적립금은 적립총액에서 총 기본적립금을 차감한 금액을 회원별 거래규모나 위험수준에 비례하여 배분

—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포함) 회원별 적립액

- 기본적립금 : 5억원
- 변동적립금 : (적립총액 1천억원 - 기본적립금 총액) × (직전 분기말 이전 1년간 당해 결제회원의 일평균 주식거래대금/직전 분기말 이전 1년간 전체 결제회원의 일평균 주식거래대금)

— 선물시장 회원별 적립액

- 기본적립금 : 5억원
- 변동적립금 : (적립총액 1천억원 - 기본적립금 총액) × (직전 분기말 이전 1년간 당해 회원의 일평균 거래증거금/직전 분기말 이전 1년간 전체 회원의 일평균 거래증거금)

○ 공동기금 적립방안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6조 : 2005/1/21 제정, 1/27 시행)

—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포함) 공동기금 총 적립액(약 1,500억원)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약 500억원)을 선물시장 공동기금으로 전환

- 개선된 공동기금 적립방식에 의할 경우 현행 회원별 공동기금 적립 부담액에 상당한 변동이 발생하는 부담을 완화하게 위해, 개선방안에 따른 공동기금 적립액을 1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

○ 결제불이행시 공동기금을 유가증권시장과 선물시장으로 구분·사용

(25조 : 2005/1/21 제정, 1/27 시행)

- 결제불이행 발생시 우선 결제불이행 회원의 재원으로 손실보전
- 결제불이행 회원의 재원으로 결제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 다른 결제회원의 공동기금으로 손실보전
- 당해 결제불이행 회원의 재원 또는 다른 결제회원의 공동기금으로 손실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 거래소에 적립된 청산결제기금 등 거래소의 재산으로 손실보전
 - 거래소는 임의적립금 중 일부를 '결제적립금'으로 적립

○ 회원에 대한 영업용순자본비율 유지의무 부과 (7조 : 2005/1/21 제정, 1/27 시행)

- 증권회사 및 선물회사인 회원은 각각 증권업감독규정과 선물업감독규정에 의한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함
 - 결제회원 : 증권업감독규정 또는 선물업감독규정에 의한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회원가입시에는 180%) 이상일 것, 자본금이 100억원 이상일 것
 - 거래전문회원 : 증권업감독규정 또는 선물업감독규정에 의한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00%(회원가입시에는 150%) 이상일 것

○ 회원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의 미달시 거래소에 보고 (30조 2항 : 2005/1/21
제정, 1/27 시행)

— 회원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이 결제회원은 180%, 거래전문회원은 150%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미달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함

○ 회원의 재무요건 미충족시 거래의 정지 (36조, 37조 : 2005/1/21 제정,
1/27 시행)

— 회원이 재무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
지조치를 함

• 단, 자본확충 또는 자산매각 등으로 재무요건 충족이 확실시되거나
단기간 내에 이를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기간 거
래정지조치의 유예 가능

○ 회원의 보고와 관련된 업무편의 도모 (32조 2항 : 2005/1/21 제정, 1/27
시행)

— 거래소에 대한 보고사항이 공시규정에 의한 공시사항인 경우, 당해 사
항의 공시로 거래소에 대한 보고를 갈음하여 회원의 업무편의성을 제고

○ 회원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거래소의 시정조치 요구

(34조 : 2005/1/21 제정, 1/27 시행)

— 거래소는 회원의 업무 또는 재산상황이 거래소의 목적 또는 회원관리
규정 등에 비추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원에 대해 시정
을 요구할 수 있음

- 회원은 거래소의 시정요구시, 그 처리결과를 거래소에 보고

○ 회원에 대한 조치 및 회원의 임·직원의 징계요구 (36조 : 2005/1/21 제정,
1/27 시행)

— 회원에 대한 조치

- “제명, 6월 이내의 회원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6월 이내의 거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10억원 이하의 위약금 부과, 경고 또는 주의” 등의 조치를 조치사유의 경중 및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취함
- 위약금 부과조치를 받은 회원이 납부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납된 위약금에 체납일수 및 1,0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가산금 부과

— 회원의 임원·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 임원의 경우 : 해임·직무정지·경고 또는 주의
- 직원의 경우 : 면직·정직·감봉·견책·경고 또는 주의

○ 재무요건 미달시의 회원조치 유예사유의 개선 (37조 1항 : 2005/8/26 개정,
8/29 시행)

— 재무요건을 충족시킨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회원조치 및 동 유예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함

- 기존에는 자본확충 또는 자산 매각 등으로 재무요건을 충족시킨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도 회원조치 유예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유예조치를 의결할 당시에는 이미 회원조치의 원인이 소멸하여 유예조치를 할 실익이 없었음

○ 증권금융회사의 채권거래자격에 대한 특례 신설 (41조 2항 : 2005/8/26
개정, 8/29 시행)

- 정부 및 한국은행의 경우에 준하여 채권거래 참가특례를 인정함
 - 단, 결제안정성 측면에서 공동기금 및 보증금 관련규정은 적용

23. 회원관리규정 시행세칙

○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채권거래자격 특례의 범위 명시 (13조 : 2005/9/1
개정 · 시행)

- 증권금융회사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Repo거래)에 한하여 참가

IV. 증권업협회 규정

1.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 관련법규의 변동에 따른 용어변경 (2005/1/26 개정, 1/27 시행)

- 협회중개시장 → 코스닥시장
- 협회등록법인 → 코스닥상장법인
- 한국증권거래소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 유가증권 상장규정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주권예비상장심사청구서 → 주권상장예비심사청구서
- 등록예비심사청구서 → 상장예비심사청구
- 협회등록공모 → 코스닥상장공모
- 비상장·비등록법인 공모 → 장외법인 공모

○ 기업공개시 고수익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폐지

(9조 1항 2호·4호 : 2005/3/31 개정, 4/1 시행)

- 기업공개 또는 코스닥상장공모시 고수익 간접투자기구에 공모주식의 30%를 배정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
 - 배정후 잔여주식은 기관투자자 또는 고수익 간접투자기구에 배정

○ 주권상장법인의 공모증자시 잔여주식의 배정비율 변경

(9조 2항 3호·4호 : 2005/3/31 개정, 4/1 시행)

—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공모증자시 잔여주식의 배정비율을 변경

- 고수의 간접투자기구에게 30%, 기타 청약자에게 70% 배정

→ 잔여주식을 고수의 간접투자기구 또는 기타청약자에게 배정

○ 대표주관계약의 체결시한 단축 (3조 2항 : 2005/7/26 개정, 8/1 시행)

— 기업 자금조달의 적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는 시한을 단축

- 상장예비심사청구일 6월 이전 → 상장예비심사청구일 3월 이전

○ 주관회사의 자격제한 완화 (6조 : 2005/7/26 개정, 8/1 시행)

— 증권회사가 소유하는 지분율이 1% 미만인 발행기업에 대해서는 IPO 주관업무의 수행을 허용

○ 초과배정옵션 제도개선 (10조 : 2005/7/26 개정, 8/1 시행)

— 초과배정제도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 공모가의 95% 이상인 시장매입가격을 90% 이상으로 인하

2.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 장외파생금융상품의 취급자격요건 폐지 (4-19조 : 2005/1/20 개정 · 시행)
 - 장외파생 금융상품의 매매거래에 관한 투자상담을 선물거래상담사 자격소지자로 제한한 실익이 없으므로 당해 취급자격요건을 폐지함

- 등록전문인력의 조회시스템 구축 (4-28조 3항 : 2005/1/20 개정 · 시행)
 - 일반투자자들이 등록전문인력 해당여부를 증권업협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조회시스템을 구축 · 운영
 - 무자격 투자상담행위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회사 및 증권업 종사자가 입을 수 있는 선의의 피해를 예방

- 종합자산관리계좌(Wrap Account) 편입주권의 범위 확대
(2-26조 3항 : 2005/2/17 개정, 2/24 시행)
 - 증권회사가 5% 이상 소유하고 있는 주권 중 고객계좌에 편입할 수 있는 주권의 범위를 확대
 - 기존의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의 주권(뮤추얼 펀드)에,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권 및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의 주권을 추가함

○ 홈쇼핑광고시의 준수사항 신설 (3-16의2 : 2005/2/17 개정, 2/24 시행)

— 고객과의 대면접촉 없이 장시간 동안 증권회사의 광고내용만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홈쇼핑광고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홈쇼핑채널을 통한 금융상품 광고시의 주요한 준수사항을 마련함

- 녹화방송 형태로만 광고를 하고 방송내용을 녹화·보존할 것
- 광고내용에 대한 설명은 당해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직접할 것
- 고객의 주문전화 등은 증권회사의 영업점을 이용하도록 할 것
-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은 가급적 광고내용에 포함하지 말 것
- 매매거래의 위험성 등을 고지하여야 하는 광고인 경우 시청자가 총 광고시간의 3분의 1이상의 시간동안 위험고지 내용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할 것

○ 광고의 종류별로 심의결과의 유효기간을 명시 (3-24의2 : 2005/2/17 개정, 2/24 시행)

— 증권회사가 광고예정기간을 장기로 설정하면, 심의 당시에는 적정하였더라도 실제 광고가 이루어지는 시기에는 법령에 저촉되거나 사실에 배치될 소지가 있으므로, 광고의 종류별로 당해 광고의 사용가능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유가증권 등의 운용실적이나 수익률·수수료·증거금·대출 등 수량적 문구가 포함되어 변동성을 감안한 광고의 적시성 확보가 요구되는 광고 : 3월
- 채권, ELS, 펀드Wrap, 선박펀드 등 금융상품의 판매안내와 관련된 광고 : 6월 (단 금융상품 판매광고 내에 수익률이나 운용실적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3개월)

- 회사 및 영업점 등의 대고객 이미지 제고를 위한 광고 : 2년
- 기타 이상의 유효기간을 광고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광고 : 협회가 별도로 통보
- 상기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 광고의 경우에는 짧은 유효기간을 적용함

○ 자율규제위원회의 광고심의·의결 근거 마련 (3-17조 3항 : 2005/2/17 개정, 2/24 시행)

- 자율규제위원회가 증권회사간의 공정거래질서 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광고를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함
 - 광고심의위원회는 위험고지 및 경고문구 등 광고내용의 적정성 심의를 주요업무로 하고 있음

○ 자산관리자에 대한 문화상품권 제공허용 (1-24조 : 2005/9/7 개정, 9/20 시행)

- 증권회사의 마케팅활동 지원과 식사·향응 등에 비하여 그 성격이 건전한 점 등을 감안, 예술공연 및 운동경기 관람 등과 관련된 문화상품권의 제공을 허용

○ 채용금지 대상자 중 자격시험 부정행위자 제외 (4-4조 : 2005/9/7 개정, 9/20 시행)

- 전문인력 자격시험과 관련된 부정행위의 경우 증권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가 아니므로 증권회사의 채용금지 대상에서 제외

- 사면근거 신설 (6-6조의3 : 2005/9/7 개정, 9/20 시행)
 - 정부 또는 감독기관의 사면조치 등으로 증권업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권업협회가 부과한 제재기록 및 제재효과 등을 소멸시킬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

- 인프라펀드 주권의 종합자산관리계좌 편입허용 (2-26조 3항 : 2005/9/7 개정, 9/20 시행)
 -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경우 수익구조 등이 채권과 유사한 점을 감안, 종합자산관리계좌 편입을 허용

- 영업보고서 양식의 개선 (별지 4호 서식 : 2005/10/5 개정, 10/10 시행)
 - 정보이용자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보제공과 회원사 영업보고서 작성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영업보고서의 양식을 매분기마다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는 “사업보고서” 및 “업무보고서”의 양식과 일치시킴

- 파생금융상품거래설명서의 개별주식옵션의 실물결제 관련조항 삭제 및 현금결제 설명 추가 (별표3 : 2005/10/5 개정, 10/10 시행)
 -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선물시장 수탁계약규정 시행세칙”이 개정되어 개별주식옵션이 실물결제에서 현금결제로 변경됨에 따라, 파생금융상품 거래설명서상의 개별주식옵션 내용을 삭제 및 변경함

○ 증권투자상담사의 업무범위에 주식워런트증권 추가

(4-19조, 1-8조 : 2005/12/7 개정, 12/8 시행)

- 주식워런트증권의 법률체계 및 매매거래 방식 등의 주식과의 유사성 등을 고려, 주식워런트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투자상담 및 권유 등을 증권투자상담사의 업무로 규정함
- 아울러 주식워런트증권의 매매거래의 특성 및 위험성 등에 대한 고객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일반고객에 대한 주식워런트증권 거래설명서의 교부 및 위험고지를 의무화

○ 조사분석자료의 범위확대 (1-12조 : 2005/12/7 개정, 12/8 시행)

- 주식옵션의 기초자산이 상장주식인 점과 가격변동이 당해 주식의 가격 및 당해 주식 발행기업의 경영실적 등에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점 등을 감안
 - 주식옵션을 조사분석자료와 관련된 협회규정의 적용범위내로 편입함

○ 조사분석자료 공표 제한범위 확대 (1-15조 : 2005/12/7 개정, 12/8 시행)

- 증권회사의 조사분석자료 공표 제한범위에 자기가 발행한 주식과 자기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을 추가
 - 증권회사가 조사분석자료를 통하여 자기가 발행한 주식 등의 매매거래를 권유하는 경우 증권회사와 투자자간에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행할 수 있음

3. 증권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칙

- 미수발생 위탁자로부터의 주문수탁 자율화 (4조 : 2005/9/7 개정, 9/20 시행)
 - 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에 따라 미수발생 위탁자에 대한 주문수탁 거부 및 현금·유가증권 인출제한 여부 등을 증권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변경

- ECN시장 관련조항 삭제 (1조, 8조 : 2005/9/7 개정, 9/20 시행)
 - ECN시장에서의 매매거래기능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시간외시장으로 수용됨에 따라 ECN 시장 관련 조항 삭제

- 프리보드 지정주식의 반대매매시 매도호가 제한 완화 (8조 : 2005/9/7 개정, 9/20 시행)
 - 프리보드 지정주식의 가격제한폭이 기준가격의 30%로 개정된 점을 감안, 결제불이행시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반대매매 호가범위를 100분의 85 이상에서 100분의 70 이상으로 개정

- 사후위탁증거금 예탁시한 단축 (4조 : 2005/10/5 개정, 10/10 시행)
 - 사후위탁증거금 예탁시한을 익일 12시에서 거래종료후 당일 중 증권회사가 정하는 시한으로 단축하여 결제안전성을 제고

- 사후위탁증거금 적용범위 확대 (4조 : 2005/10/5 개정, 10/10 시행)
 - 사후위탁증거금의 적용범위를 기존 “증빙된 헤지·차익거래”에서 “회사가 결제이행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적격기관투자자의 모든 거래(헤지·차익·투기거래)”로 확대

- 위탁증거금 차등징수 (4조 : 2005/10/5 개정, 10/10 시행)
 - “증빙된 헤지·차익거래”에 대하여는 투기거래(15%)보다 낮은 수준(12%)의 위탁증거금을 적용토록 하여 금융기회비용 축소 및 헤지·차익거래를 통한 현물시장의 유동성 제고 도모

- 사후위탁증거금 미납자에 대한 수탁거부 근거마련 (5조 : 2005/10/5 개정, 10/10 시행)
 - 회사가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지 아니한 적격기관투자자의 주문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 반대매매시 호가방법 변경 (7조 : 2005/10/5 개정, 10/10 시행)
 - 위탁자가 결제금액 또는 추가증거금(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지 아니하여 회사가 당해 위탁자의 미결제약정을 반대매매하는 경우, 호가방법을 최우선히가를 포함하는 연속 10개의 가격범위내에서 지정가호가(또는 조건부지정가호가)로 변경
 - 다만, 고객의 동의가 있거나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장가 호가를 허용하여 반대매매의 신속성 도모

○ 위탁자 예탁유가증권의 임의처분시의 수량 및 순서 명시

(별표1 : 2005/10/5 개정, 10/10 시행)

— 증권회사가 미수금 회수를 위하여 위탁자의 예탁유가증권을 임의처분하는 경우에 증권회사의 임의처분 수량 및 처분순서를 구체적으로 명시

- 임의처분 수량은 반대매매 예정종목의 처분당일 하한가를 기준으로 거래 단위 수량을 감안하여 산정
- 위탁자를 위하여 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임의처분 순서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름

○ 증권저축약관의 교부조항 삭제 (별표4 : 2005/10/5 개정, 10/10 시행)

— 저축계약 성립요건 중 약관교부 조항을 삭제하고, 저축자에 대한 약관 설명의무는 별도로 분리하여 상위법과 규제내용의 통일성을 도모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자에게 약관 중요내용의 고객설명은 의무화하고 있으나, 교부는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4. 증권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 분쟁조정 신청인을 위한 소송지원제도의 도입 (26조 : 2005/6/16 개정 · 시행)

— 회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불수락하고, 신청인이 소송지원을 요청하는 사건 중에서 투자자보호 및 공정거래질

서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회장이 위촉하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소송을 지원함

- 협회소속 변호사를 활용하여 무료 소송지원

— 소액재판 적용대상사건(소송가액이 2,000만원 이하)은 신청인에 대한 소송자문업무를 수행

— 인지대, 송달료, 공탁금, 증인신청비용, 감정비용 등 변호사 수입료 이외의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 패소판결 등 위원회의 조정결정보다 불리한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분쟁조정실 및 협회소속 변호사의 소송지원 적정성 검토를 거쳐 상소에 따른 지원여부를 결정

- 단, 신청인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보다도 유리한 판결을 받고 상소하는 경우 등은 제외

5.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정

○ 벤처기업 및 정규시장 퇴출기업의 진입요건 완화 (3조 : 2005/3/15 개정, 4/1 시행)

—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벤처기업 및 정규시장 퇴출기업의 진입을 허용

- 소속부 제도의 정비 (10조의2, 10조의3 : 2005/3/15 개정, 협회장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
 -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에 따라 벤처기업부와 일반기업부로 구분

- 결제전 매매제도 도입 (24조 3항 : 2005/6/16 개정, 7/4 시행)
 - 투자자의 효율적 위험관리가 가능하도록 매매체결후 결제일(T+2일) 이전에 매매를 허용
 - 기존에는 결제일까지 3일 동안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되었음

- 가격제한폭의 축소 (26조 2항 : 2005/6/16 개정, 7/4 시행)
 - 호가분산으로 인한 저조한 체결율 개선 및 과도한 가격변동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가격제한폭을 축소
 - 50% → 30%

- 호가단위의 세분화 (27조 : 2005/6/16 개정, 7/4 시행)
 - 기준가격이 5,000만원 미만인 주권의 호가가격단위를 조정하여 합리적 가격결정기능을 제고
 - 10원 → 5원

- 불합리한 호가의 제한 (28조 2항 : 2005/6/16 개정, 7/4 시행)
 - 호가제출시점에 가장 높은 매수호가보다 10호가 가격단위 이상 낮은 매도호가, 또는 가장 낮은 매도호가보다 10호가 가격단위 이상 높은 매수호가를 제한

- 가격과 수량이 일치하는 경우, 매매가 체결되는 전량호가제도 폐지

- “매매거래의 결제”에 관한 조항 신설 (33조~36조 : 2005/6/16 개정, 7/4 시행)
 - 증권거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매매거래 결제방법에 관한 규정이 증권업감독규정에서 협회규정으로 이관

- 투자유의사항 공시 확대 (45조 2항 : 2005/6/16 개정, 시행일은 자율규제 위원회 부위원장이 별도로 정함)
 -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자본이 잠식된 경우도 투자유의사항으로 공시
 - 기존의 투자유의사항
 - 거래부진 4개월 이상
 - 불성실공시 2회 이상

- 신규지정 후 최초매매거래 기준가격 산정방식의 개선 (별표1 : 2005/10/5 개정·시행)
 - 기존 액면가액으로 하고 있는 신규지정 후 최초 매매거래 기준가격을 주당 순자산가치로 개선
 - 최근 6월 이내에 공모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공모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고 있음

V. 증권예탁결제원

1.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 채권에 대한 기관투자자 결제에 파생결합증권을 추가

(23조의5 2호 : 2005/4/19 개정, 4/26 시행)

- 채권에 대한 기관투자자 결제시에 주가연계증권 외에 파생결합증권을 추가함

- 예탁유가증권의 원리금 수령대상에 파생결합증권 관련사항 추가

(40조 1항·4항 : 2005/4/19 개정, 4/26 시행)

- 예탁유가증권의 원리금 수령대상에 파생결합증권의 만기상환액을 추가함

- 예탁증명서 재발행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26조의2 4항 : 2005/7/5 개정, 7/7 시행)

- 예탁증명서를 발행받은 예탁자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탁원에 예탁증명서의 재발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유는 세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함

- 예탁증명서의 재발행을 신청받은 예탁원은 그 사유 등을 심사하여 필요한 경우 예탁증명서를 재발행할 수 있도록 함

- 상환주식의 권리행사에 관한 사항 신설 (34조 : 2005/7/5 개정, 7/7 시행)
 - 예탁자가 예탁원을 통해 상환주식에 부여된 권리(상환권)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외화통화로 표시된 채권에 대한 예탁수수료의 징수기준 마련
(별표 : 2005/7/5 개정, 7/7 시행)
 - 외화표시채권의 경우 외화표시가액에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에서 고시하는 최근거래일의 매매기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거래전문회원의 매매성립내용 통지방법 신설 (23조의11 1항 2호 :
2005/9/30개정, 10/4 시행)
 - 증권선물거래소 거래전문회원의 매매성립시 증권예탁결제원에 매매성립내용을 통지하도록 함

- 증권회사가 예탁한 신탁재산에 대한 예탁수수료 징수 (별표1 : 2005/9/30 개정, 10/4 시행)
 - 증권회사의 신탁업법상 신탁재산에 한하여 당해 증권회사로부터 예탁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함

2. 유가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매매성립내용의 통지시한에 관한 규정의 적용대상 조정

(28조의3 1항 : 2005/10/4 개정·시행)

- 매매성립내용 통지시한에 관한 규정의 적용대상인 “거래소의 회원 아닌 증권회사”를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결제업무규정상의 결제 참가자가 아닌 증권회사”로 변경함

○ 실질주주명세의 통지기간 단축 (31조 1항 1호 : 2005/10/4 개정, 2006/1/1 시행)

- 정기주주총회 및 중간배당시 이루어지고 있는 당원의 실질주주명세 통지기간을 주주명부 폐쇄기준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서 이를 “18영업일 이내”로 단축함

○ 결제대금추진제도의 이용요건 완화 (28조의10 3항 : 2005/11/8 개정, 11/14 시행)

- 결제대금차입자는 매수채권에 대한 반대매도거래의 약정이 없더라도 결제대금을 대여받을 수 있도록 함

3. 유가증권 명의개서대행 업무규정

○ 명의개서 대행업무의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의 범위 확대

(2조 3호·4호 : 2005/5/31 개정·시행)

- 유가증권의 범위에 파생결합증권을 새로 추가함
- 파생결합증권의 증권용지는 예탁결제원에서 별도로 정함
 - 통일규격 유가증권 취급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유가증권에 추가

○ 인감 등 관리업무의 개선 (38조 : 2005/5/31 개정·시행)

- 인감표의 제출수량을 축소함
 - 2매 → 1매
-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이미 등록된 인감표를 제출한 바 있는 청구인 등이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당해 인감증명서 등에 등록된 인감표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함

○ 기본수수료의 징수시기 조정 등 (21조 : 2005/9/30 개정, 11/1 시행)

- 신규로 수탁계약을 체결한 위탁회사의 기본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징수
 - 주권발행의 신청이 있는 경우 : 당해 신청 전까지
 - 그 밖의 경우 : 사무인수일로부터 20일 이내
- 기본수수료를 미납한 위탁회사의 대행업무 처리요청에 대하여는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인터넷 등을 통한 대행업무 처리의 근거 마련 (81조 : 2005/9/30 개정,
11/1 시행)

- 증권예탁결제원과 위탁회사·주주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대행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인터넷 등을 통한 대행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증권예탁결제원이 따로 정하도록 함

4. 유가증권 명의개서대행 업무규정 시행세칙

○ 업무처리시스템 운영근거 및 시스템 참가에 관한 사항

(26조, 27조 : 2005/10/7 개정, 11/1 시행)

- 예탁원은 위탁회사 및 주주와 인터넷을 통한 업무처리 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위탁회사는 예탁원소정의 신청서에 의하여 시스템 참가를 신청하고 예탁원은 이를 고려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함

○ 전자문서의 작성 및 송수신 등에 관한 사항 (28조 : 2005/10/7 개정,
11/1 시행)

- 위탁회사는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전자문서가 예탁원의 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상대방이 이를 수신한 것으로 봄
- 참가자는 권한이 있는 자로 하여금 전자문서 송수신업무를 취급하도

록 함

- 참가자는 전자문서를 송수신한 경우 지체없이 그 결과를 확인하도록 함

- 전자문서의 효력에 관한 사항 (29조 : 2005/10/7 개정, 11/1 시행)
 - 전자문서상의 공인전자서명은 직접 날인 또는 서명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을 명시함
 - 전자문서의 내용에 관하여 참가자와 서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시스템에 기록된 전자문서의 내용에 따르도록 함
 - 전자문서가 예탁원에 수신되어 업무처리가 완료된 경우에는 참가자가 이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함

- 예탁자통신시스템운영규정의 준용에 관한 사항 (30조 : 2005/10/7 개정, 11/1 시행)
 - 전자서명법 등 관련법령의 준용, 공인인증서의 발급 및 관리, 시스템 운용시간 및 이용의 해지, 참가자의 의무 등 시스템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준용함

- 주주의 인터넷을 통한 주주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31조 : 2005/10/7 개정, 11/1 시행)
 -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한 후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 예탁원에 주소변경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5. 담보콜거래관리 업무규정

- 담보대상 유가증권의 범위 확대 (14조 2호·5호 : 2005/7/5 개정·시행)
 - 상장채권에 국한된 담보대상채권의 범위를 예탁원이 예탁대상으로 지정한 채권으로 확대
 - 업무환경 변화 및 새로운 담보대상 유가증권의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이에 관한 위임규정을 마련

6. 외화증권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 예탁외화증권의 대여거래제도의 도입 (34조~34조의7 : 2005/4/19 개정, 4/20 시행)
 - 예탁외화증권의 대여조건
 - 외국보관기관이 중개하는 대차거래로 당해 외국보관기관이 대여증권의 상환을 보증하여야 함
 - 예탁외화증권 대여관리부의 작성 및 비치
 - 예탁원은 예탁외화증권을 대여할 것을 통보한 예탁자별로 예탁외화증권 대여관리부를 작성·비치해야 함
 - 예탁외화증권의 대여방법 명시
 - 예탁외화증권을 대여하고자 하는 예탁자는 그 종목, 종류, 수량 기타 대여조건을 예탁원에 통보해야 함

- 예탁원은 통보내용에 따라 대차중개기관에 예탁외화증권의 대여를 신청함
 - 예탁유가증권 대여거래 체결내역의 통지
 - 예탁원이 대차중개기관으로부터 대여거래 체결내역을 통보받으면 이를 지체없이 예탁자에게 통보함
 - 예탁외화증권 대여거래의 중도상환 및 상환불이행시의 처리
 - 예탁자는 예탁외화증권 대여거래의 종료일 이전이라도 중도상환을 신청할 수 있음
 - 예탁외화증권 대여거래의 종료일에 대여증권의 상환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예탁원은 상환불이행 사실 및 해당 대차중개기관의 이행보증에 관한 사항을 예탁자에게 통보함
 - 예탁외화증권 대여거래와 관련하여 예탁자에게 필요한 정보제공
 - 대여거래의 체결방법, 차입자, 담보제공 등 관련정보를 대차중개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예탁자에게 제공함
- 외화증권 매도대금의 국내송금방법을 일원화 (23조 3항 : 2005/4/19 개정, 4/20 시행)
- 외국보관기관이 외화증권 매도대금을 국내로 예탁자에게 송금할 경우 당해 예탁자의 외화예금계정으로 직접 이체하도록 함
- 조세관련업무의 범위를 확대 (33조 2항)
- 원천징수업무에 국한되었던 조세관련업무를 조세업무 전반으로 확대

7. 장외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담보관리 업무규정

- 담보관리대상의 확대 (2조 1항 2호, 3조 1호·2호 : 2005/4/19 개정, 5/2 시행)
 - 담보관리대상에 “미국통화로 된 현금”과 “예금(미국·유럽연합·일본 통화로 표시된 것을 포함)”을 추가

- 상임대리인에 관한 사항 신설 (7조, 12조, 22조 1항 : 2005/4/19 개정, 5/2 시행)
 - 참가자가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관련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상임대리인을 둘 수 있도록 함

- 예금의 담보권 설정, 예금담보의 담보권 실행방법, 예금담보의 해지방법 명시 (11조 1항 2호, 18조 3항 2호, 19조 2항 2호 : 2005/4/19 개정, 5/2 시행)
 - 담보권자를 질권자로 하여 금융기관에 예치된 담보권설정자의 예금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도록 함
 - 채무불이행시 예금담보에 대한 담보권 실행방법은 담보권자와 담보권 설정자가 협의하여 정함
 - 예금담보의 해지방법은 담보권자와 담보권설정자가 협의하여 정함

- 현금·예금담보의 시가평가방법 신설 (15조의2 : 2005/4/19 개정, 5/2 시행)
 - 담보권자와 담보설정자가 협의하여 정한 방법에 따라 매 영업일마다 다음의 담보를 평가하도록 함

- 미국통화로 된 현금담보
- 미국 · 유럽연합 · 일본의 통화로 표시된 예금담보